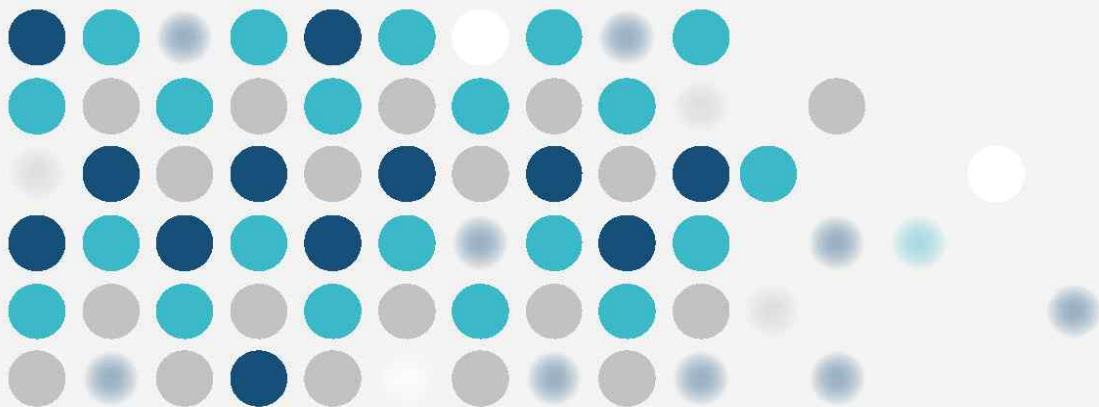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1)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Criminal Justice Policy and Future Strategy
for Social Change :
Criminal Justice Policy with Population Aging*

박형민 | 서주연



발간사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우리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의 양상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이같은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로서 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범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만으로는 설명할 수만은 없습니다. 노인 범죄율의 증가는 현재 노인인구집단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표면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령화는 형사정책적으로 미래사회의 심각한 케이프 혼(cape horn)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범죄유발 요인에 개입하여 노인 범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다면 고령화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박형민 박사와 서주연 변호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문회의를 통해 탁월한 전문지식과 귀한 의견으로 연구에 도움을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서 론 (박형민)	15
-----------------------	----

제1절 형사정책분야 미래연구의 필요성	17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	----

제2장 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박형민 · 서주연)	21
-------------------------------------	----

제1절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양상	23
----------------------------	----

제2절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	26
--------------------------	----

1. 노인 범죄	26
2. 노인 범죄 피해	30
3. 노인 학대	33
4. 노인 자살	35
5. 노인 수형자	36

제3절 노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7
-----------------------------	----

1. 노인 빈곤	37
2. 건강 악화	41
3. 사회적 소외	41
4. 세대갈등	43
5. 노인의 특성 변화	46

| 제3장 |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 (서주연) 47

제1절 개관	49
제2절 일본	51
1. 일본의 노인범죄 현황	51
2. 일본의 노인범죄 대응	57
3. 특별조정제도	73
제3절 일본 이외의 국가	80
1. 독일	80
2. 미국	89
제4절 시사점	104
1.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	104
2. 복지적 지원의 확대	106
3.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	108

| 제4장 | 형사정책에 대한 전망 (박형민) 111

제1절 조사 개요	113
1. 조사설계	113
2. 조사 내용	114
3. 응답자 특성	115
제2절 형사정책목적	117
1.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117
2. 형사정책의 목적 달성도	119
제3절 현재와 미래의 범죄	125
1. 미래 범죄 양상	125
2. 미래 이슈의 중요도	128
3. 이벤트 증가 가능성	130
4. 이벤트가 범죄 발생과 예방에 끼치는 영향	132

제4절 고령화와 노인범죄	135
1. 고령사회와 관련한 문제의 중요도	135
2.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	136
3.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증가와 예방에 미치는 영향	143

| 제5장 | 고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 (박형민) 149

제1절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	151
1. 미래의 범죄 발생 예측	151
2.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 발생 예측	156
제2절 미래의 범죄 발생 양상 시나리오	163
1. 부정적인 요인들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시나리오	163
2.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	167
3.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 졌을 때의 시나리오	170
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173
1. 단기적 형사정책	173
2. 장기적 형사정책	175

| 제6장 | 맺음말 (박형민) 179

참고문헌	185
------------	-----

Abstract	195
----------------	-----

부록	199
----------	-----

[부록1] 고령화 관련 통계표	199
------------------------	-----

[부록2]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211
[부록3]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요약	223

표 차례

〈표 1-1〉 연구 방법 및 과정	20
〈표 2-1〉 주요 국가의 고령화 추세	24
〈표 2-2〉 연령별 자살률 추이, 2004년-2014년	36
〈표 3-1〉 일본의 전체 인구 수 및 비율 추이	51
〈표 3-2〉 일반형법범의 연령별 검거인원 추이	52
〈표 3-3〉 일반형법범의 죄명별 검거인원 추이	54
〈표 3-4〉 노인수형자 입소횟수별 인원 추이	57
〈표 3-5〉 도쿄 지검 사회복지지원실 상담 건수	64
〈표 3-6〉 일본 수형자의 속성별 수용 분류 기준	69
〈표 3-7〉 일본 수형자의 범죄경향별 수용 분류 기준	69
〈표 3-8〉 후추교도소의 노인수형자 추이	71
〈표 3-9〉 사회복지사 배치 상황 및 특별조정 대상자 수	77
〈표 3-10〉 조정업무	78
〈표 3-11〉 후속업무	78
〈표 3-12〉 상담지원 업무	78
〈표 3-13〉 교정시설 퇴소 후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시설 현황	79
〈표 3-14〉 교정시설 퇴소 후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연령·장애별 현황(2014년)	80
〈표 3-15〉 연령별 검거인원 추이	81
〈표 3-16〉 죄명별 60세 이상 검거인원(2014년)	83
〈표 3-17〉 연령별 수형인원 추이	85
〈표 3-18〉 연령별 검거인원 추이	90
〈표 3-19〉 죄명별 50세 이상 검거인원(2014년)	91
〈표 3-20〉 연령별 수형인원 추이(2007년~2011년)	94
〈표 3-21〉 주별 노인수형자 조기석방 정책	102
〈표 4-1〉 조사 설계	114
〈표 4-2〉 조사 내용	114
〈표 4-3〉 일반인 응답자 특성	115
〈표 4-4〉 전문가 응답자 특성	117
〈표 4-5〉 이벤트들의 미래 증가 가능성	131
〈표 4-6〉 이벤트들이 미래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	132
〈표 4-7〉 이벤트들이 미래 범죄 예방에 끼치는 영향	134

〈표 4-8〉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문제	136
〈표 4-9〉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	137
〈표 4-10〉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가 노인 범죄 증가에 미치는 영향	144
〈표 4-11〉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가 노인 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	145
〈표 5-1〉 연령별 범죄율(1983년, 1993년, 2003년, 2013년)	162
〈부록 1-1〉 인구 추이	199
〈부록 1-2〉 성별 고령인구 추이	201
〈부록 1-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2
〈부록 1-5〉 고령자 자살에 의한 사망률	204
〈부록 1-6〉 빈곤율	205
〈부록 1-7〉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05
〈부록 1-8〉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율	206
〈부록 1-9〉 연령대별 고용률	207
〈부록 1-10〉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208
〈부록 1-11〉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	209
〈부록 3-1〉 Q1.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223
〈부록 3-2〉 Q2_1. 형사정책 목적-현재달성도(평균 : %)	223
〈부록 3-3〉 Q2_2. 형사정책목적-10년후 달성도(평균:%)	224
〈부록 3-4〉 Q2_3. 형사정책목적-30년후 달성도(평균:%)	224
〈부록 3-5〉 Q3. 10년후 우리나라 범죄 정도 예측(R)	224
〈부록 3-6〉 Q4. 30년후 우리나라 범죄 정도 예측(R)	225
〈부록 3-7〉 Q9_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225
〈부록 3-8〉 Q9_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225
〈부록 3-9〉 Q9_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226
〈부록 3-10〉 Q9_4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226
〈부록 3-11〉 Q9_5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226
〈부록 3-12〉 Q9_6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227
〈부록 3-13〉 Q9_7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227
〈부록 3-14〉 Q9_8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살(R)	227
〈부록 3-15〉 Q9_9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228
〈부록 3-16〉 Q9_10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저성장(R)	228
〈부록 3-17〉 Q9_1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228
〈부록 3-18〉 Q9_1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229
〈부록 3-19〉 Q9_1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229

〈부록 3-20〉 Q9_14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229
〈부록 3-21〉 Q9_15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230
〈부록 3-22〉 Q9_16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230
〈부록 3-23〉 Q9_17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230
〈부록 3-24〉 Q9_18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231
〈부록 3-25〉 Q9_19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231
〈부록 3-26〉 Q9_20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231
〈부록 3-27〉 Q9_2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232
〈부록 3-28〉 Q9_2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232
〈부록 3-29〉 Q9_2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232
〈부록 3-30〉 Q9_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233
〈부록 3-31〉 Q9_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233
〈부록 3-32〉 Q9_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233
〈부록 3-33〉 Q9_4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234
〈부록 3-34〉 Q9_5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234
〈부록 3-35〉 Q9_6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234
〈부록 3-36〉 Q9_7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235
〈부록 3-37〉 9_8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살(R)	235
〈부록 3-38〉 9_9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235
〈부록 3-39〉 9_10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저성장(R)	236
〈부록 3-40〉 9_1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236
〈부록 3-41〉 9_1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236
〈부록 3-42〉 9_1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237
〈부록 3-43〉 9_14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237
〈부록 3-44〉 9_15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237
〈부록 3-45〉 Q9_16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238
〈부록 3-46〉 Q9_17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238
〈부록 3-47〉 Q9_18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238
〈부록 3-48〉 Q9_19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239
〈부록 3-49〉 Q9_20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239
〈부록 3-50〉 Q9_2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239
〈부록 3-51〉 Q9_2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240
〈부록 3-52〉 Q9_2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240
〈부록 3-53〉 Q10_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240

〈부록 3-54〉 Q10_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241
〈부록 3-55〉 10_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241
〈부록 3-56〉 10_4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241
〈부록 3-57〉 Q10_5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242
〈부록 3-58〉 Q10_6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242
〈부록 3-59〉 Q10_7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242
〈부록 3-60〉 Q10_8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살(R)	243
〈부록 3-61〉 Q10_9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243
〈부록 3-62〉 Q10_10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저성장(R)	243
〈부록 3-63〉 Q10_1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244
〈부록 3-64〉 Q10_1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244
〈부록 3-65〉 Q10_1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244
〈부록 3-66〉 Q10_14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245
〈부록 3-67〉 Q10_15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245
〈부록 3-68〉 Q10_16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245
〈부록 3-69〉 Q10_17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246
〈부록 3-70〉 Q10_18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246
〈부록 3-71〉 Q10_19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246
〈부록 3-72〉 Q10_20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247
〈부록 3-73〉 Q10_2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247
〈부록 3-74〉 Q10_2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247
〈부록 3-75〉 Q10_2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248
〈부록 3-76〉 Q10_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248
〈부록 3-77〉 Q10_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248
〈부록 3-78〉 Q10_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249
〈부록 3-79〉 Q10_4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249
〈부록 3-80〉 Q10_5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249
〈부록 3-81〉 Q10_6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250
〈부록 3-82〉 Q10_7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250
〈부록 3-83〉 Q10_8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살(R)	250
〈부록 3-84〉 Q10_9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251
〈부록 3-85〉 Q10_10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저성장(R)	251
〈부록 3-86〉 Q10_1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251
〈부록 3-87〉 Q10_1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252

〈부록 3-88〉 Q10_1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252
〈부록 3-89〉 Q10_14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252
〈부록 3-90〉 Q10_15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253
〈부록 3-91〉 Q10_16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253
〈부록 3-92〉 Q10_17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253
〈부록 3-93〉 Q10_18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254
〈부록 3-94〉 Q10_19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254
〈부록 3-95〉 Q10_20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254
〈부록 3-96〉 Q10_2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255
〈부록 3-97〉 Q10_2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255
〈부록 3-98〉 Q10_2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255
〈부록 3-99〉 Q11_1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56
〈부록 3-100〉 Q11_2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56
〈부록 3-101〉 Q11_3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56
〈부록 3-102〉 Q11_4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57
〈부록 3-103〉 Q11_5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57
〈부록 3-104〉 Q11_6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57
〈부록 3-105〉 Q11_7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수형자 증가(R)	258
〈부록 3-106〉 Q11_8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발생(R)	258
〈부록 3-107〉 Q11_9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피해(R)	258
〈부록 3-108〉 Q11_1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59
〈부록 3-109〉 Q11_2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59
〈부록 3-110〉 Q11_3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59
〈부록 3-111〉 Q11_4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60
〈부록 3-112〉 Q11_5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60
〈부록 3-113〉 Q11_6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260
〈부록 3-114〉 Q11_7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수형자 증가(R)	261
〈부록 3-115〉 Q11_8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발생(R)	261
〈부록 3-116〉 Q11_9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피해(R)	261
〈부록 3-117〉 Q13_1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262
〈부록 3-118〉 Q13_2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빈곤(R)	262
〈부록 3-119〉 Q13_3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262
〈부록 3-120〉 Q13_4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자살(R)	263
〈부록 3-121〉 Q13_5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263
〈부록 3-122〉 Q13_6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263
〈부록 3-123〉 Q13_7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이혼(R)	264
〈부록 3-124〉 Q13_8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264
〈부록 3-125〉 Q13_9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264
〈부록 3-126〉 Q13_10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건강불평등(R)	265
〈부록 3-127〉 Q13_11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대(R)	265
〈부록 3-128〉 Q13_12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265
〈부록 3-129〉 Q13_13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	266
〈부록 3-130〉 Q13_15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범죄두려움(R)	266
〈부록 3-131〉 Q13_16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266
〈부록 3-132〉 Q13_17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267
〈부록 3-133〉 Q13_18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267
〈부록 3-134〉 Q13_19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267
〈부록 3-135〉 Q13_20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R)	268
〈부록 3-136〉 Q13_1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268
〈부록 3-137〉 Q13_2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빈곤(R)	268
〈부록 3-138〉 Q13_3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269
〈부록 3-139〉 Q13_4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자살(R)	269

〈부록 3-140〉 Q13_5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269
〈부록 3-141〉 Q13_6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270
〈부록 3-142〉 Q13_7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이혼(R)	270
〈부록 3-143〉 Q13_8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270
〈부록 3-144〉 Q13_9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271
〈부록 3-145〉 Q13_10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건강불평등(R)	271
〈부록 3-146〉 Q13_11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대(R)	271
〈부록 3-147〉 Q13_12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272
〈부록 3-148〉 Q13_13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	272
〈부록 3-149〉 Q13_14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박탈감(R)	272
〈부록 3-150〉 Q13_15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범죄두려움(R)	273
〈부록 3-151〉 Q13_16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273
〈부록 3-152〉 Q13_17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273
〈부록 3-153〉 Q13_18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274
〈부록 3-154〉 Q13_19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274
〈부록 3-155〉 Q13_20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R)	274
〈부록 3-156〉 Q14_1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275
〈부록 3-157〉 Q14_2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빈곤(R)	275
〈부록 3-158〉 Q14_3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275
〈부록 3-159〉 Q14_4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자살(R)	276
〈부록 3-160〉 Q14_5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276
〈부록 3-161〉 Q14_6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276
〈부록 3-162〉 Q14_7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이혼(R)	277
〈부록 3-163〉 Q14_8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277
〈부록 3-164〉 Q14_9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277
〈부록 3-165〉 Q14_10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건강불평등(R)	278
〈부록 3-166〉 Q14_11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대(R)	278
〈부록 3-167〉 Q14_12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278
〈부록 3-168〉 Q14_13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279
〈부록 3-169〉 Q14_15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범죄두려움(R)	279
〈부록 3-170〉 Q14_16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279

〈부록 3-171〉 Q14_17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280
〈부록 3-172〉 Q14_18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280
〈부록 3-173〉 Q14_19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280
〈부록 3-174〉 Q14_20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R)	281
〈부록 3-175〉 Q14_1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281
〈부록 3-176〉 Q14_2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빈곤(R)	281
〈부록 3-177〉 Q14_3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282
〈부록 3-178〉 Q14_4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자살(R)	282
〈부록 3-179〉 Q14_5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282
〈부록 3-180〉 Q14_6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283
〈부록 3-181〉 Q14_7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이혼(R)	283
〈부록 3-182〉 Q14_8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283
〈부록 3-183〉 Q14_9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284
〈부록 3-184〉 Q14_10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건강불평등(R)	284
〈부록 3-185〉 Q14_11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대(R)	284
〈부록 3-186〉 Q14_12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285
〈부록 3-187〉 Q14_13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	285
〈부록 3-188〉 Q14_14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박탈감(R)	285
〈부록 3-189〉 Q14_15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범죄두려움(R)	286
〈부록 3-190〉 Q14_16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286
〈부록 3-191〉 Q14_17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	286
〈부록 3-192〉 Q14_18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287
〈부록 3-193〉 Q14_19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287
〈부록 3-194〉 Q14_20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R)	287
〈부록 3-195〉 Q15. 고령사회 대비 위해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	288
〈부록 3-196〉 QQ1. 전문분야	288
〈부록 3-197〉 QQ2. 전공분야	289
〈부록 3-198〉 Q1.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289

〈부록 3-199〉 Q2_1. 형사정책 목적-현재 달성도(평균 : %)	289
〈부록 3-200〉 Q2_2. 형사정책 목적-10년후 달성도(평균 : %)	290
〈부록 3-201〉 Q2_3. 형사정책 목적-30년후 달성도(평균 : %)	290
〈부록 3-202〉 Q3. 10년후 우리나라 범죄 정도 예측(R)	290
〈부록 3-203〉 Q4. 30년후 우리나라 범죄 정도 예측(R)	291
〈부록 3-204〉 Q9_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291
〈부록 3-205〉 Q9_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291
〈부록 3-206〉 Q9_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292
〈부록 3-207〉 Q9_4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292
〈부록 3-208〉 Q9_5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292
〈부록 3-209〉 Q9_6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293
〈부록 3-210〉 Q9_7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293
〈부록 3-211〉 Q9_8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살(R)	293
〈부록 3-212〉 Q9_9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294
〈부록 3-213〉 Q9_10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저성장(R)	294
〈부록 3-214〉 Q9_1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294
〈부록 3-215〉 Q9_1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295
〈부록 3-216〉 Q9_1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295
〈부록 3-217〉 Q9_14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295
〈부록 3-218〉 Q9_15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296
〈부록 3-219〉 Q9_16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296
〈부록 3-220〉 Q9_18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296
〈부록 3-221〉 Q9_19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297
〈부록 3-222〉 Q9_20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297
〈부록 3-223〉 Q9_2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297
〈부록 3-224〉 Q9_2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298
〈부록 3-225〉 Q9_2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298
〈부록 3-226〉 Q9_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298
〈부록 3-227〉 Q9_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299
〈부록 3-228〉 Q9_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299
〈부록 3-229〉 Q9_4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299
〈부록 3-230〉 Q9_5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300
〈부록 3-231〉 Q9_6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300
〈부록 3-232〉 Q9_7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300

〈부록 3-233〉 Q9_8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살(R)	301
〈부록 3-234〉 Q9_9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301
〈부록 3-235〉 Q9_10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저성장(R)	301
〈부록 3-236〉 Q9_1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302
〈부록 3-237〉 Q9_1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302
〈부록 3-238〉 Q9_1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302
〈부록 3-239〉 Q9_14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303
〈부록 3-240〉 Q9_15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303
〈부록 3-241〉 Q9_16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303
〈부록 3-242〉 Q9_17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304
〈부록 3-243〉 Q9_18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304
〈부록 3-244〉 Q9_19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304
〈부록 3-245〉 Q9_20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305
〈부록 3-246〉 Q9_2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305
〈부록 3-247〉 Q9_2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305
〈부록 3-248〉 Q9_2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306
〈부록 3-249〉 Q10_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306
〈부록 3-250〉 Q10_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306
〈부록 3-251〉 Q10_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307
〈부록 3-252〉 Q10_4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307
〈부록 3-253〉 Q10_5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307
〈부록 3-254〉 Q10_6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308
〈부록 3-255〉 Q10_7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308
〈부록 3-256〉 Q10_8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살(R)	308
〈부록 3-257〉 Q10_9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309
〈부록 3-258〉 Q10_10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저성장(R)	309
〈부록 3-259〉 Q10_1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309
〈부록 3-260〉 Q10_1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310
〈부록 3-261〉 Q10_1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310
〈부록 3-262〉 Q10_14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310
〈부록 3-263〉 Q10_15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311
〈부록 3-264〉 Q10_16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311
〈부록 3-265〉 Q10_17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311
〈부록 3-266〉 Q10_18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312

〈부록 3-267〉 Q10_19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312
〈부록 3-268〉 Q10_20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312
〈부록 3-269〉 Q10_2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313
〈부록 3-270〉 Q10_2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313
〈부록 3-271〉 Q10_2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313
〈부록 3-272〉 Q10_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314
〈부록 3-273〉 Q10_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314
〈부록 3-274〉 Q10_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314
〈부록 3-275〉 Q10_4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315
〈부록 3-276〉 Q10_5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315
〈부록 3-277〉 Q10_6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315
〈부록 3-278〉 Q10_7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316
〈부록 3-279〉 Q10_8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살(R)	316
〈부록 3-280〉 Q10_9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316
〈부록 3-281〉 Q10_10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저성장(R)	317
〈부록 3-282〉 Q10_1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317
〈부록 3-283〉 Q10_1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317
〈부록 3-284〉 Q10_1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318
〈부록 3-285〉 Q10_14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318
〈부록 3-286〉 Q10_15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318
〈부록 3-287〉 Q10_16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319
〈부록 3-288〉 Q10_18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319
〈부록 3-289〉 Q10_19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319
〈부록 3-290〉 Q10_20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320
〈부록 3-291〉 Q10_2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320
〈부록 3-292〉 Q10_2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320
〈부록 3-293〉 Q10_2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321
〈부록 3-294〉 Q11_1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1
〈부록 3-295〉 Q11_2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1
〈부록 3-296〉 Q11_3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2
〈부록 3-297〉 Q11_4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2
〈부록 3-298〉 Q11_5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2
〈부록 3-299〉 Q11_6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3
〈부록 3-300〉 Q11_7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수형자 증가(R)	323
〈부록 3-301〉 Q11_8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발생(R)	323
〈부록 3-302〉 Q11_9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피해(R)	324
〈부록 3-303〉 Q11_1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4
〈부록 3-304〉 Q11_2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4
〈부록 3-305〉 Q11_3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5
〈부록 3-306〉 Q11_4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5
〈부록 3-307〉 Q11_5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5
〈부록 3-308〉 Q11_6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326
〈부록 3-309〉 Q11_7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수형자 증가(R)	326
〈부록 3-310〉 Q11_8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발생(R)	326
〈부록 3-311〉 Q11_9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피해(R)	327
〈부록 3-312〉 Q13_1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327
〈부록 3-313〉 Q13_2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빈곤(R)	327
〈부록 3-314〉 Q13_3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328
〈부록 3-315〉 Q13_4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자살(R)	328
〈부록 3-316〉 Q13_5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328
〈부록 3-317〉 Q13_6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329
〈부록 3-318〉 Q13_7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이혼(R)	329
〈부록 3-319〉 Q13_8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329
〈부록 3-320〉 Q13_9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330
〈부록 3-321〉 Q13_10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건강불평등(R)	330
〈부록 3-322〉 Q13_11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대(R)	330

〈부록 3-323〉 Q13_12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331
〈부록 3-324〉 Q13_13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331
〈부록 3-325〉 Q13_14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박탈감(R)	331
〈부록 3-326〉 Q13_15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범죄두려움(R)	332
〈부록 3-327〉 Q13_16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332
〈부록 3-328〉 Q13_17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332
〈부록 3-329〉 Q13_18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333
〈부록 3-330〉 Q13_19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333
〈부록 3-331〉 Q13_20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R)	333
〈부록 3-332〉 Q13_1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334
〈부록 3-333〉 Q13_2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빈곤(R)	334
〈부록 3-334〉 Q13_3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334
〈부록 3-335〉 Q13_4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자살(R)	335
〈부록 3-336〉 Q13_5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335
〈부록 3-337〉 Q13_6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335
〈부록 3-338〉 Q13_7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이혼(R)	336
〈부록 3-339〉 Q13_8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336
〈부록 3-340〉 Q13_9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336
〈부록 3-341〉 Q13_10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건강불평등(R)	337
〈부록 3-342〉 Q13_11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대(R)	337
〈부록 3-343〉 Q13_12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337
〈부록 3-344〉 Q13_13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338
〈부록 3-345〉 Q13_14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박탈감(R)	338
〈부록 3-346〉 Q13_15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범죄두려움(R)	338
〈부록 3-347〉 Q13_16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339
〈부록 3-348〉 Q13_17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339
〈부록 3-349〉 Q13_18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339
〈부록 3-350〉 Q13_19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340
〈부록 3-351〉 Q13_20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R)	340
〈부록 3-352〉 Q14_1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340
〈부록 3-353〉 Q14_2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빈곤(R)	341
〈부록 3-354〉 Q14_3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341
〈부록 3-355〉 Q14_4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자살(R)	341
〈부록 3-356〉 Q14_5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342
〈부록 3-357〉 Q14_7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이혼(R)	342
〈부록 3-358〉 Q14_8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342
〈부록 3-359〉 Q14_9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343
〈부록 3-360〉 Q14_10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건강불평등(R)	343
〈부록 3-361〉 Q14_11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대(R)	343
〈부록 3-362〉 Q14_12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344
〈부록 3-363〉 Q14_13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344
〈부록 3-364〉 Q14_14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타발감(R)	344
〈부록 3-366〉 Q14_15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범죄두려움(R)	345
〈부록 3-366〉 Q14_16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345
〈부록 3-367〉 Q14_17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345
〈부록 3-368〉 Q14_18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346
〈부록 3-369〉 Q14_19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346
〈부록 3-370〉 Q14_20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R)	346
〈부록 3-371〉 Q14_1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347
〈부록 3-372〉 Q14_2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빈곤(R)	347
〈부록 3-373〉 Q14_3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347
〈부록 3-374〉 Q14_4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자살(R)	348
〈부록 3-375〉 Q14_5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348
〈부록 3-376〉 Q14_6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348
〈부록 3-377〉 Q14_7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이혼(R)	349
〈부록 3-378〉 Q14_8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349
〈부록 3-379〉 Q14_9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349
〈부록 3-380〉 Q14_10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건강불평등(R)	350
〈부록 3-381〉 Q14_11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대(R)	350

〈부록 3-382〉 Q14_12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350
〈부록 3-383〉 Q14_13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	351
〈부록 3-384〉 Q14_14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박탈감(R)	351
〈부록 3-385〉 Q14_15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범죄두려움(R)	351
〈부록 3-386〉 Q14_16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352
〈부록 3-387〉 Q14_17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352
〈부록 3-388〉 Q14_18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352
〈부록 3-389〉 Q14_19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353
〈부록 3-390〉 Q14_20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R)	353
〈부록 3-391〉 Q15. 고령사회 대비 위해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	353

그림 차례

[그림 2-1] 전체 범죄자 수의 분포	26
[그림 2-2] 성범죄 범죄자 수의 분포	27
[그림 2-3] 폭력범죄 범죄자 수의 분포	28
[그림 2-4] 범죄 피해자수의 분포	31
[그림 2-5]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2
[그림 2-6]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3
[그림 2-7] 노인학대 피해 추이	34
[그림 2-8] 노인 학대 유형	35
[그림 2-9] 65세 이상 자살률	36
[그림 2-10] 지니계수	38
[그림 2-11] 상대적 빈곤률	39
[그림 2-12] 2014년 노인들의 자살충동 이유	40
[그림 2-13] 노년 부양비	44
[그림 2-14] 노령화지수와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	44
[그림 3-1] 연령별 검거인원 구성비 추이	53
[그림 3-2] 입구지원의 개념도	61
[그림 3-3] 지역생활촉진사업	74
[그림 3-4] 특별조정제도	75
[그림 3-5] 연령별 검거인원 구성비 추이	82
[그림 3-6] 연령별 수형인원 추이(2012년~2014년)	95
[그림 4-1]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118
[그림 4-2]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119
[그림 4-3] 형사정책 목적의 현재 달성도	120
[그림 4-4] 달성도-범죄예방과 감소	121
[그림 4-5] 달성도_범죄자 검거	122
[그림 4-6] 달성도_피해자 보호	123
[그림 4-7] 달성도_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124
[그림 4-8] 달성도_국민의 삶의 질 향상	125
[그림 4-9] 10년 후 범죄 양상	127
[그림 4-10] 30년 후 범죄 양상	127
[그림 4-11] 10년 후 범죄 양상 예측 별 범죄 예방과 감소 목적 달성도	128
[그림 4-12] 현재의 중요도	129

[그림 4-13] 10년 후 증요도	129
[그림 4-14] 거주지역규모별 노인 빈곤 증가 가능성 평가	138
[그림 4-15] 거주지역규모별 노인 자살 증가 가능성 평가	139
[그림 4-16] 거주지역규모별 노인 주거환경 개선 증가 가능성 평가	140
[그림 4-17] 거주지역규모별 자녀의 노인 부양 증가 가능성 평가	142
[그림 4-18] 자녀의 노인 부양	143
[그림 4-19] 노인 주거환경 개선	143
[그림 4-20]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형사정책	147
[그림 5-1] 범죄 발생 건수 및 범죄율 추세 1 (1967-2013)	151
[그림 5-2] 범죄 및 범죄율 예측 1 (1967-2045)	152
[그림 5-3] 범죄 발생 건수 및 범죄율 추세 2 (2000-2013)	153
[그림 5-4] 범죄 및 범죄율 예측 2 (2000-2045)	154
[그림 5-5]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이	155
[그림 5-6] 노인 범죄 및 범죄율 추세 (1967-2013)	156
[그림 5-7]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 비교 (1967-2013)	157
[그림 5-8] 노인 범죄율 예측 (2000-2045)	158
[그림 5-9] 1983년의 인구구조와 범죄자수의 분포	160
[그림 5-10] 1993년의 인구구조와 범죄자수의 분포	160
[그림 5-11] 2003년의 인구구조와 범죄자수의 분포	161
[그림 5-12] 2013년의 인구구조와 범죄자수의 분포	161
[그림 5-13] 연령별 범죄율(1983년, 1993년, 2003년, 2013년)	162
[그림 5-14]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미래의 범죄발생 예측	165
[그림 5-15] 노인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범죄발생 예측	168
[그림 5-16] 노인 범죄율이 감소할 경우 미래 범죄 예측	171

국문요약

형사정책분야 미래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미래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될 형사정책 이슈들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의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는 다양한 형사정책 이슈들에 대한 예측활동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인구학적 구조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는 미래의 범죄 양상의 변화나 범죄취약계층 변화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의 양상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경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가져온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의 저하', '내수 시장과 총수요 감소', '사회적 활력의 저하',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범죄피해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새로운 범죄 유발 계층으로서의 노인'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이슈를 도출하여 미래의 위협과 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양상

인구 고령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며 이는 식량 유통의 효율화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2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추세가 빠르다는 것은 사회가 고령화됨에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중간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이지만,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고령)이 넓어지는 역삼각형 항아리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생산 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2028년에 연평균 30만명씩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

전체 범죄자의 수는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감을 거듭하면서 다소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 범죄는 오히려 2000년 이후 증가 폭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거의 모든 범죄 유형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노인 범죄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시기 이후, 노인 범죄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노인 범죄 피해자의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2013년의 노인 피해자 수는 1995년의 노인 피해자 수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최근 수년간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매우 높는데, 자살률이 높은 많은 국가에서는 장년층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살률도 함께 증가하지만, 노년층의 자살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그 증가 폭도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의 범죄가 증가함에따라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수형자의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 재범률을 볼 때 51세부터 60세까지의 수형자의 증가로 향후 수형자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노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노인빈곤, 노인 건강 악화, 노인의 사회적

소외, 세대갈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2011년 기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이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크게 밀도는 수준(2012년 기준)이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한 상황이며, 사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지 않은 것 때문이며, 이렇게 연금을 통한 소득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인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노인 범죄와 커다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지니계수는 2008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65세 이상의 노인 지니계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상대적 빈곤률을 살펴봐도 동일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노인의 빈곤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며, 노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빈곤은 범죄의 증가와 함께 자살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노화 현상은 신체적 힘에 의한 범죄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노인들은 신체 기능의 저하는 건강 악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불안, 욕구불만, 흥미나 인내력 감소 등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더욱 취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신체적 힘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와 병행하는 심리적 변화는 범죄 유발요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인이 되면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고 가정에서의 결정권이 줄어들어 노인들의 불안감과 소외감이 증가하는 것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은 노인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

한국보다 앞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정책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만, 형사사법 절차는 형사정책 영역에서도 상당히 한정된 분야로서 특히 해외 사례에 있어 부득이 노인범죄 및 노인 피의자피고인 또는 수형자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일본에서는 노인범죄자에 있어 교정시설 입퇴소자에 대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출구지원을 시작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거슬러 수사재판단계에서 사회복지·의료 전문가가 개입하는 입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출구지원의 일환인 특별조정제도는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의 협력을 통해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가 노인범죄의 재범율을 낮추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는 형집행단계까지 복지적 지원이 확대되어 있다. 독일에는 노인 수형자를 전담하는 노인교도소와 노인수용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시설과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노인교도소인 징엔교도소에서는 노인수형자가 사회와 단절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비교적 긴 시간의 접견이 허용되고, 실내가 아닌 정원이나 화원 등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주립 또는 연방교도소 노인수형자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인수형자에 대한 선택적 탈구금화의 일환으로 조기석방이 제안되고 있으며, 미국의 15개 주와 콜롬비아에는 노인수형자를 조기석방할 수 있는 정책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령을 이유로 하는 조기석방의 허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서 일본의 입구지원 등을 참고하여 노인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형사정책에 대한 전망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가 우리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 양상을 진단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의견 및 예측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미래 우리 사회의 형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형사정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범죄예방과 감소가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의 목적이라 응답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이 목적에 대한 달성도는 점차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10년 후 미래의 우리나라 범죄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들보다 더 많았으며, 그 이유는 사회의 불안과 경기의 침체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중 일반인들이 10년 후에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개인주의화, 인간성 상실, 가족 유대감 약화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이벤트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이벤트나 구조적 이벤트보다는 정서적 이벤트의 증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개인주의화와 가족유대감 약화의 증가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은 유사하지만 이들 이벤트는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고, 10년 후 증가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한 이벤트는 경제양극화라는 구조적이고 부정적인 이벤트였다. 전문가들도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이벤트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이벤트들은 아노미 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등의 범죄학 이론들에서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측은 미래의 범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항목들이 미래의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6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살펴보면, 일반인들은 개인주의화와 인간성 상실이 미래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데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10년 후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한 이벤트들은 고용불안, 경제양극화였다.

일반국민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10년 후 가장 중요한 문제로 평가된 것은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중요시 될 것이라 평가되었다. 이처럼 10년 후 미래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범죄는 노인들이 가해자가 되는 범죄들 보다는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 평가된 것이다. 반면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범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질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중요도 점수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30년 후 미래의 중요한 문제는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가장 중요시 될 것이라는 것은 10년 후 미래의 평가와 동일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시 될 것이라 평가된 문제는 노인이 유발하는 교통사고와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교통사고였다.

전문가들 역시 10년 후 미래에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는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인이 유발하는 교통사고와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교통사고가 10년 후 미래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30년 후 미래에도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예측되었으며, 노인 수형자의 증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일반국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있어 노인은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며, 10년 후와 30년 후의 미래에 노인 범죄 피해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면, 10년 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벤트는 노인 빈곤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노인자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노인단독가구와 노인학대, 노인이혼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자녀의 노인부양, 노인전용교도소, 노인주거환경 개선,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

죄 관리체제 등의 이벤트는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0년 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들은 노인단독가구, 노인자살, 노인이혼, 노인 학대 등으로 10년 후 미래 예측과 다소 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차이점이었다.

전문가들은 10년 후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벤트로 노인단독가구를 지적하였으며, 노인 복지지출도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이혼,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이벤트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30년 후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들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복지지출,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이혼 등으로 10년 후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벤트와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국민들이 주로 부정적인 이벤트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전문가들은 복지지출이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국민들은 노인학대, 노인빈곤, 노인이혼, 노인 자살 등이 10년 후 노인 범죄의 증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30년 후 노인 범죄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은 노인학대, 노인빈곤, 노인단독가구, 노인이혼 등이었다. 이같은 이벤트들이 일반국민들에 의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미래 노인범죄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노인범죄의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은 노인 경제활동이 10년 후 노인 범죄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건강수준향상,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등의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예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후 미래의 노인범죄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 역시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 경제활동, 노인건강수준향상, 형사사법

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이벤트는 10년 후 미래의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문가들 역시 10년 후 노인 범죄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가 노인 경제활동이라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던 이벤트들은 노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나 사회 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정책적 이벤트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0년 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 중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노인 경제활동,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노인 복지 향상을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노인 복지 향상이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노인 범죄 예방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노인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노인전문 법률상담 제도, 노인수형자 관리대책 등에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

■ 미래의 범죄 발생 예측

공식통계를 통해 지난 1967년부터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2000년 이후에는 다소 증감폭은 있지만 그 이전 기간과 같은 두드러진 증가양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전체 범죄 및 범죄율이 2000년까지는 급증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범죄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하지만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범죄 발생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사회변화가 반영된 1967년

이후의 자료를 참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2000년대 이후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10년 후 또는 30년 후의 우리 사회의 범죄율은 점차로 감소하거나 최소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노인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체 사회의 범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 발생 예측

전체 범죄율이 1990년대까지 급증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 것과는 달리, 노인범죄율은 1990년대까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일정기간 동안에는 정체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에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노인 범죄율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10년 후인 2025년의 61세 이상의 노인 범죄율은 2434.2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30년 후인 2045년의 노인 범죄율은 3694.485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2045년의 노인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보다 높아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범죄의 발생보다는 노인 범죄의 발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와 범죄 발생의 최빈값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예측이 가능하다. 1983년 당시 범죄자의 최빈값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20대였으며, 1993년 당시 범죄자의 최빈값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30대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3년 당시 범죄자의 최빈값은 30대와 40대라 할 수 있으며, 2013년 범죄자의 최빈값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40대였으며, 50대 범죄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1983년의 20대와 1993년의 30대, 2003년의 40대, 2013년의 50대는 동일한 코호트(cohort) 집단이며, 대략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서 범죄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코호트에서는 범죄자 수 뿐 아니라, 범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1983년에는 20대의 범죄율과 3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으며, 1993년에는 30대의 범죄율이 매우 크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40대의 범죄율이 30대의 범죄율

보다 많아져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0대의 범죄율이 40대 다음으로 높은 연령집단이 된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인인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전체 인구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범죄율 또한 가장 높은 코호트가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는 의미이며, 결국 노인의 범죄와 범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미래의 노인 범죄 발생 양상 시나리오

■ 부정적인 요인들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시나리오

노인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범죄율에 근접할 것이며, 노인 범죄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 노인 빈곤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 범죄는 폭력범죄, 재산범죄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할 것이며, 교도소의 고령 수형자가 증가하여 교정예산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2000년 이후 전체 범죄율과 노인범죄율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범죄율은 노인 빈곤, 고령자 고용불안, 가족관계 악화, 노인의 사회적 소외, 노인 주거환경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상황들이 더욱 심각해 진다면 노인의 범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의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 추세가 유지될 경우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12.6%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42.5%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이 더욱 강화되어 노인 범죄율이 약 10% 증가한다면,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13.8%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46.8%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인의 빈곤의 심화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며, 더욱이 상대적 빈곤의 심화는 노인들을 범죄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노인 범죄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라 교도소 내의 고령 수형자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고령의 수형자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지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 수형자의 치료관리에 사용되는 교정 예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고령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의 생활은 물론이고, 그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에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 범죄자들은 출소 이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이 정체되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범죄자 수는 증가할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노인빈곤, 고령자 고용 불안, 가족관계 악화, 개인주의화,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 범죄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기본적인 범죄 유발 요인을 단기적으로 억제하여 범죄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노인 범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9.0%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18.6%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비율은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니지만 노인 인구의 절대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범죄 유발 요인은 피할 수 없지만, 문제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모습을 전망할 수 있다. 이같이 단기적으로 범죄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노인의 사회적 소외 및 상대적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역의 특성에 맞는 CPTED 전략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노인 범죄 및 노인 범죄 피해의 많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미래상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고용, 복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대책은 단기적인 증상만을 억제시키는 대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상이 필요하다.

■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 졌을 때의 시나리오

노인 범죄율이 감소하여 사회 전체의 범죄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사회보험, 연금을 통해 노인의 빈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노인들의 의료 복지가 실현되어 신체적인 질병 치료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지 않아, 노인들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 그리하여 노인의 범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노인 범죄율이 급증하기 직전인 1990년대 이전으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노인 범죄율이 1997년의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은 약 3.9%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은 약 7.9%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범죄율의 감소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노인들의 범죄율은 젊은 인구집단에 비해 전통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1997년 노인 범죄율 이하의 범죄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의 빈곤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질환을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노인 의료 복지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사회활동을 통해 고독감과 사회적 격리를 해소하여야 한다.

고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 단기적 형사정책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노인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는 시나리오와 같은 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단기적 형사정책과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강화
-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 노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입
- 지역 사회 경찰활동 강화
- 노인 대상의 지역 사회를 통한 범죄 예방 교육 실시
- 독거 노인 거주 시설의 취약성 보강
- 노인 범죄자 및 수형자 분류 기준 확립
- 노인수형자 전용 교정 프로그램 개발

■ 장기적 형사정책

노인 범죄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장기적 형사정책과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 복지 강화
-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구축
- 형사절차상 노인 보호 방안 강구
- 노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 노인 피해자 보호 및 노인 범죄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1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 노인교정시설 설치
-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개선
- 노인 수형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마련
- 노인수형자의 대한 대안적 처우 개선
- 노인 범죄자의 갇생 보호 확대, 개선
- 노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 연구

제1장

서론

박형민

제1절 형사정책분야 미래연구의 필요성

미래연구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한편,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위 한 연구를 말한다(최항섭, 2012). 이 연구는 이와같은 미래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될 형사정책 이슈들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의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사정책 이슈들에 대한 예측활동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함은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영역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들을 도출하여 이에 대응하려는 시도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반면, 형사정책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사정책 분야에서도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부정책 개발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형사정책은 우리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의 양상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사회인구학적 구조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는 미래의 범죄 양상의 변화나 범죄취약계층 변화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사회 변화의 주요 쟁점을 ‘급속한 인구고령화’, ‘다문화 사회의 확산’, ‘경제적 양극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규정하고 각 영역에 대한 추세와 변화를 예측하여 형사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총 3년에 걸쳐 주요 사회 변화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하며, 각 년차별 세부 주제는 1년차의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2년차의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3년차의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이다.

인구 고령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며 이는 식량 유통의 효율화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인구의 평균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아동 및 청장년층의 인구가 감소할 경우 그 사회의 인구 구성은 자연적으로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서용석 외, 2011).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인구 대비 65세가 넘는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2018년엔 노인인구 비중이 14%, 2026년엔 20%,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65세가 넘는 노인인구가 38.2%에 이르는 초 고령사회를 맞을 전망이다(박경돈 외, 2012).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경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가져온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의 저하', '내수 시장과 총수요 감소', '사회적 활력의 저하',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범죄피해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새로운 범죄 유발 계층으로서의 노인'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이슈를 도출하여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실제적 경험을 많이 축적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일반인들의 의견과 예측을 수용하여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 전문가, 형사정책 실무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인들

의 의견과 예측을 수용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변화를 전망하도록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형사정책을 수립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사방법들을 동원하여 추세와 변화 예측을 시도할 것인데, 먼저 기존의 미래 예측 보고서, 논문 등을 검토하여 이슈 선정에 참조하였으며, 노인 범죄 및 노인 범죄 피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고령화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상황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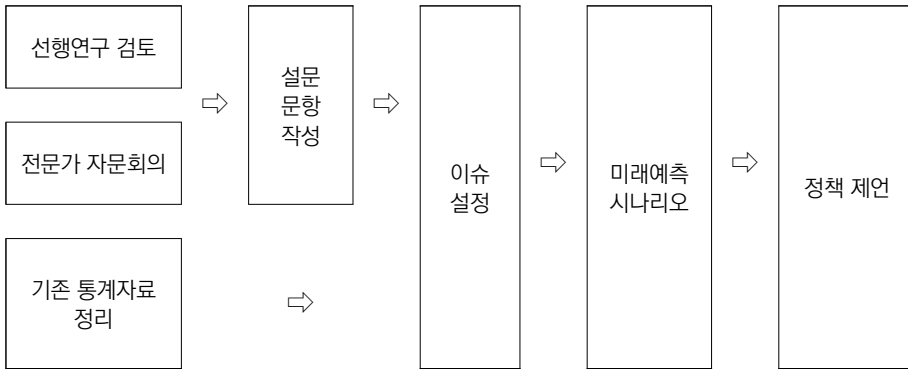
다음으로 형사정책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노인문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형사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면접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먼저 발송한 후 질문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피면접자의 전문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면접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같은 전문가 면접 조사는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이 일차적 목적이지만, 형사정책 전문가들이 고령화라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노인문제 전문가들이 형사정책이라는 영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의 이슈메이킹 역할을 함으로써, 참여적 연구라는 미래연구의 이차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선행연구, 전문가 면접,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도출된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와 미래 예측을 시도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미래의 형사정책의 모습을 보다 풍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각을 형성하였으며, 기초자료의 수집과 설문조사 이후 도출된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시나리오 기법(scenarios)을 활용하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미래예측과 더불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고, 구체적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자문회의의 도움을 받았다.

이 같은 연구 방법과 과정을 도식화 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1〉 연구 방법 및 과정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 ‘고령화와 범죄의 변화’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고령화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문제들과 이 문제들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과정을 겪은 일본을 중심으로 독일, 미국 등 해외의 노인 범죄의 현황과 이들 나라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4장 ‘형사정책에 대한 전망’은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설문에서는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의 형사정책의 성과와 주요 이벤트의 발생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제5장 ‘고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된 기초자료와 기존의 공식통계,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국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형사정책과 관련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언하였다.

제2장

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박형민 · 서주연

제2장

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제1절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양상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하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라 지칭한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0년의 노인인구 비율은 11.0%, 2014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2.7%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6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4).

이같은 고령화의 진행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은 1994년이 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고희채 · 방호경, 2007), 2010년 현재 일본의 전체 노인인구 비율은 23%에 달하고 있다(국제통계연감).

미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은 1942년이었으나 2015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2036년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경우 1929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고령사회가 된 것은 1976년이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은 19세기인 1864년이었으나 고령사회가 된 것은 1979년에 이르러서 였으며, 초고령사회는 2018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매우 이른 시기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은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국가 중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독일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은 1932년이었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은 1972년이었으며, 2009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탈리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은 1927년이었으나,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은 1988년이며, 2006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그 진행 속도가 유래없이 빠르다는 것에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한 시간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었고, 미국 73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된 일본의 경우도 24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사회로 진입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변화가 약 17년동안 일어나는 것이 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간 역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독일은 37년에 걸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였으며, 이탈리아는 18년, 일본은 12년에 걸쳐 변화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영국은 50년에 걸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프랑스는 39년, 미국은 2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표 2-1〉 주요 국가의 고령화 추세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7	2026	17	9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빠르다는 것은 사회가 고령화됨에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중간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이지만,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고령)이 넓어지는 역삼각형 항아리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현재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14.3%, 생산가능인구는 73.1%, 노인인구는 12.7%이지만, 2060년에는 20대 이하는 21.8%, 60대 이상은 47.4%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장래인구추계,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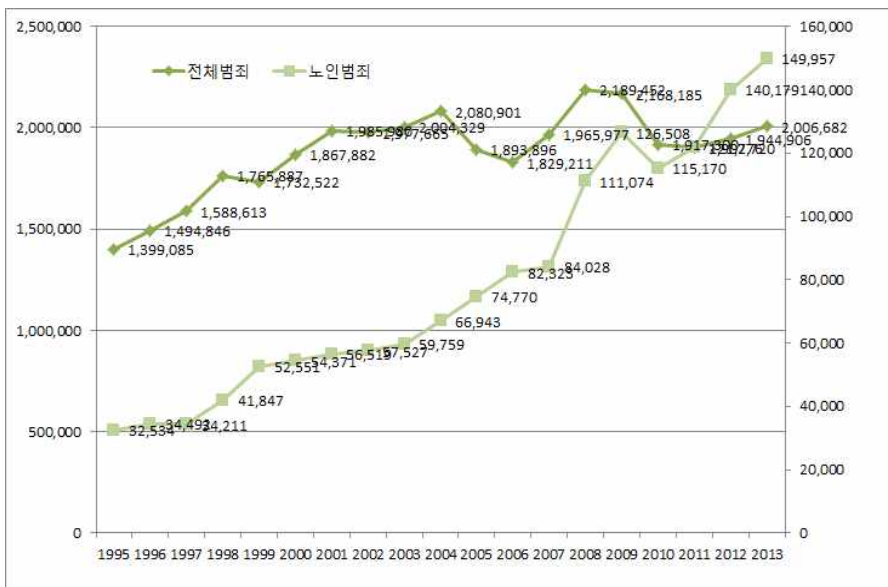
전체 인구 중 소년인구(0~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6년 43.9%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3년 20.0%, 2010년에 16.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30년에는 12.6%, 2060년에는 10.2%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54.8%에서 2000년 71.7%, 2010년 72.8%로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2016년의 72.9%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63.1%,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생산 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2028년에 연평균 30만명씩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인구는 2010년 56.8%로 큰 구성비를 차지하였으나, 2050년 45.2%, 2060년 48.9%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2.9%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8.3%, 2010년 11%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2028년 사이에 급증할 것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10, 2014).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1년 기준 48세~57세로 현재 경제활동 중인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6%로 약 7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력과 소비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황명진 외, 2011). 그런데 이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2020년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노인인구로 편입될 것이다. 이들이 은퇴를 함과 동시에 연금, 의료보험 등의 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되기 시작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황명진 외, 2011).

제2절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

1. 노인 범죄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 범죄자는 1995년 32,534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범죄자의 수는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감을 거듭하면서 다소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 범죄는 오히려 2000년 이후 증가 폭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범죄자의 증가는 전체적인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의 폭이 노인인구의 증가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림 2-1] 전체 범죄자 수의 분포

노인 범죄의 증가 폭이 두드러지는 범죄 유형은 성범죄로서 1990년에는 93명에 불과하던 노인 성범죄자의 수가 2000년대가 되면서 약 2.5배 증가하였고, 2013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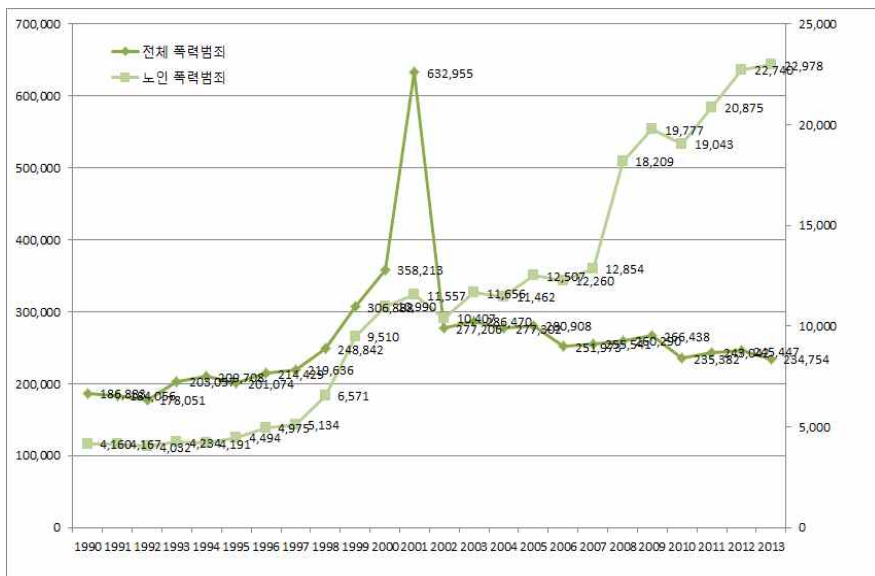
는 1,643명으로 1990년 대비 18배 가까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압수의 비율이 큰 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통계상 성범죄자의 증가는 범죄 자체의 증가라기 보다는 신고율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예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추행이 최근에 들어서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형사사법절차에 들어서게 되는 경향이 클 수 있다는 점도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성범죄의 경우 노인 성범죄자의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노인 성범죄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전체 성범죄의 증가추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가 의미있는 것은 20년 전에 비해서 성범죄로 수사 받는 노인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예전에는 범죄로 인식했던 아니건, 또는 신고가 되었던 아니건 간에 노인들이 성범죄로 수사받고 범죄자로 인식되는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한 수의 노인들이 성범죄로 수사받아 성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만큼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노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림 2-2] 성범죄 범죄자 수의 분포

성범죄 뿐 아니라 노인의 폭력 범죄 역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폭력 범죄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이 공식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폭력범죄의 증가는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하는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노인 폭력범죄의 증가 역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일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폭에 비해 노인 폭력범죄의 증가폭이 더욱 크다는 점은 앞서 전체 범죄에 대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폭력범죄 범죄자 수의 분포

장준오(2008)에 따르면, 전체 노인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사기범죄였는데, 1996~2006년 사이의 노인 사기범죄 증가율은 36.4%로서, 같은 시기 전체 사기범죄가 6.6%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범죄의 증가율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폭행은 전체 노인 범죄 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으로, 노인의 폭행은 10년 사이 연평균 113.8% 증가하여, 전체 노인 범죄 증가를 68.4%를 크게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폭행범죄는 남성 노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여성노인들의 폭행범죄의 비율은 사기나 절도에 비해 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상해 역시 노인 범죄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나 증가율에 있어서 폭행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절도는 전체 노인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지만, 10년 동안 연평균 227.6% 증가하여 노인형법범 중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절도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운전 또는 사고와 관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 노인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노인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인들의 자가운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도박, 강간, 살인, 방화 등도 비중은 적으나 평균 증가율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장준오, 2008).

이건호(2008)에서도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에서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의 증가율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1997년~2007년 사이에 전체 살인범죄자 수는 857명에서 1232명으로 1.4배 증가할 때, 노인 살인범죄자 수는 23명에서 90명으로 3.9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강도 범죄자 수는 6394명에서 5158명으로 약간 감소한 반면, 노인 강도 범죄자 수는 10명에서 73명으로 7.3배 증가하였고, 전체 강간 범죄자 수는 5353에서 6667명으로 1.25배 증가할 때, 노인 강간범죄자 수는 11명에서 254명으로 2.31배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절도 범죄자 수는 56,290명에서 79,015명으로 1.3배 증가할 때, 노인 절도 범죄자 수는 419명에서 2,755명으로 6.5배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기 및 횡령 범죄자 수는 210,020명에서 387,489명으로 1.8배 증가할 때, 노인 사기 및 횡령 범죄자 수는 3.21배 증가하였다고 분석한다(이건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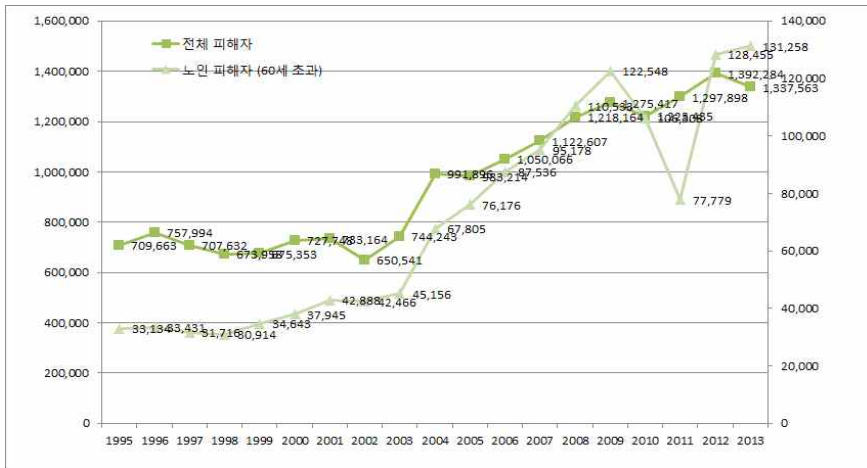
강은영 외(2013)에서도 2002~2011년까지의 노인범죄자의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 형법범의 범죄자는 2002년에 27,093명(2.7%)에서 2011년에는 61,614명(6.4%)로 증가하였고, 특히 71세 이상의 형법범이 2002년에 3,865명에서 2011년에 12,663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여, 전체 노인 형법범에서 71세 이상의 노인형법범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011년 공식통계에서 노인 형법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였으나, 비슷한 유형의 범죄인 폭행, 상해, 폭처법 위반을 모두 합하면 32.5%로 노인 형법범에서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실상 폭력범죄의 비중이 노인 범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중에서는 살인이 2002년 43명에서 2011년 84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고, 강도는 2002년 17명에서 2011년에 81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고, 방화는 2002년 30명에서 2011년 81명으로 2.7배 증가하였으며, 강간은 2002년 230명에서 2011년 991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노인 강력범죄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증가한 범죄자는 강간범죄자와 강도범죄였으며, 10년간의 노인 흉악범죄의 추이에서도 강간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증가하였다. 노인 범죄자의 수는 재산범죄자에서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사기는 2002년부터 2011년 10년간 2배가량 증가했으며, 절도는 약 6배 증가하였고, 2배 정도 범죄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 밖에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노인 범죄자는 2002년에는 7,469명에서 2011년에는 22,372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매년 증감이 있었으나 2002년 1,039명에서 2011년에 3,21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통 범죄역시 71세 이상 노인의 범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강은영 외, 2013)

이처럼 거의 모든 범죄 유형에서 노인범죄의 증가가 나타나며, 이러한 노인 범죄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시기 이후, 노인 범죄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최준, 2010). 노인 범죄는 다른 일반범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범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재범은 비교적 사소한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난다(김기현, 2011).

2. 노인 범죄 피해

공식통계를 통해 살펴본 노인 범죄 피해자의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13년의 노인 피해자 수는 1995년의 노인 피해자 수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 수의 증가는 노인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의 수의 증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노인 범죄 피해자의 증가는 다른 연령대 범죄 피해자의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노인 피해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림 2-4] 범죄 피해자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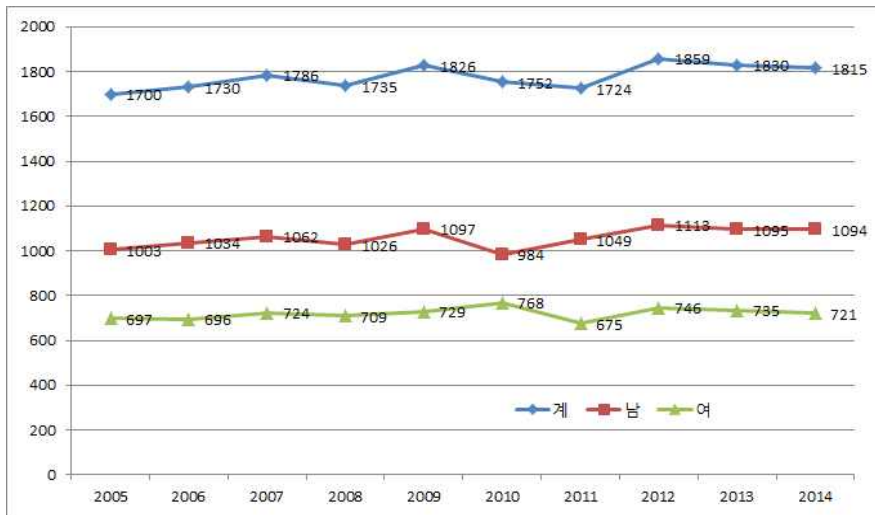
노인 피해자의 증가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장준오 외(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 범죄피해자는 1996년 33,431명에서 2006년에 87,536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8.7% 증가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여 같은 시기 전체 범죄 피해자의 연평균 증가율 4.7%보다 10배가량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장준오 외, 2009), 위의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그 시기가 전체 피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2006년 이후 전체 범죄 피해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장준오 외(2008)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노인 피해자의 증가보다 여성 노인 피해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즉, 여성 노인 피해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53.1%로 전체 범죄 피해자 증가율이나 노인피해자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2004년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노인 피해자의 경우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의 피해자가 63% 이상으로 다른 재산범죄피해(30%대)나 강력범죄 중 폭력범죄 피해(33~36%대)보다도 월등히 높았다(장준오 외, 2009). 또한 노인들의 범죄 피해 중 사기 범죄 피해와 절도 범죄 피해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는데, 2004년 이후 노인 대상 사기 피해 및 절도 피해는 199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장준오 외, 2009).

이건호(2008)의 연구에서도 2000년 이후 노인 피해자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특히 강도 범죄 피해의 경우 전체 강도 범죄 피해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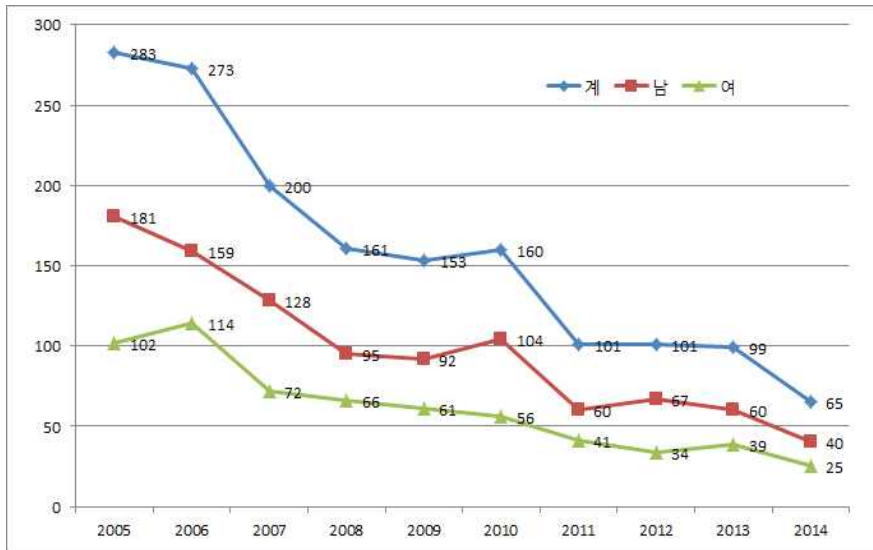
불구하고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전체 강도피해자 중 노인은 2.28%(5,692명 중 130명)에서 6.45%(4,838명 중 312명)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 밖에도 폭력 범죄 피해자 중 노인은 2.43%(338,045명 중 8199명)에서 5.47%(281,969명 중 15,358명)로 증가하였고, 강간 범죄 피해자 중 노인은 1.05%(6,651명 중 71명)에서 1.77%(8,755명 중 155명)로 증가였으며, 지능범죄(사기 및 횡령)의 피해자는 3.37%(209,364명 중 7,052명)에서 7.28%(258,705명 중 18,823명)로 증가하였다.

한편 교통 범죄 피해자 중 노인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노인의 특별법 범죄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와 도로교통법 피해였는데, 노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는 매년 평균 2.3% 감소하였으나, 도로교통법 범죄피해는 1999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였다(장준오외, 2008).

교통범죄 피해상황 가운데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지난 10년간 1/4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노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통계청, 2015).



[그림 2-5]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림 2-6]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 노인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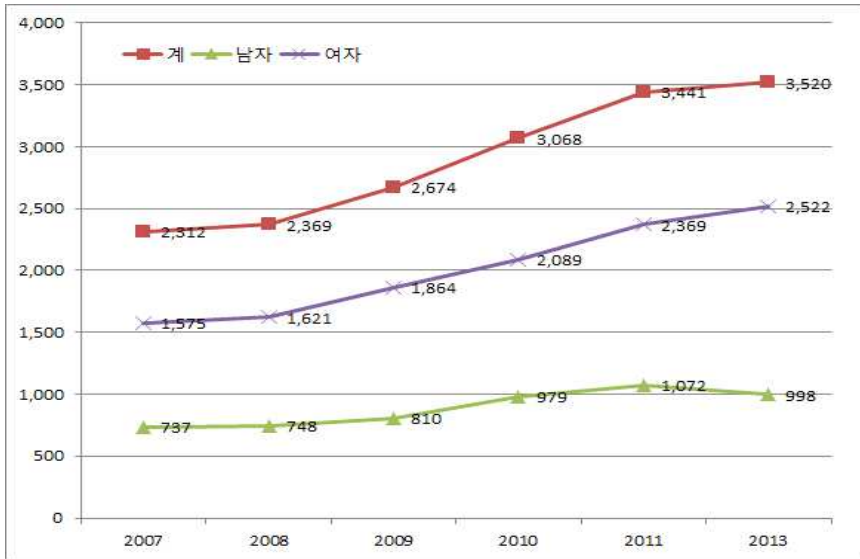
노인학대는 의존적인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친척 등의 부양자에게서 자행되는 언어적·신체적·정서적·심리적 상해와 경제적인 착취나 생활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지 않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 등으로 노인의 인격이 무시되는 행위를 말하며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 노인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자신에 대한 오용이나 의욕상실 방임 등으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이보영·박현식, 2010).

2007년 이후 학대 피해 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312명이었던 피해 노인의 수가 2013년에는 3,520명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 학대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들의 빈곤과 이로 인한 노인들을 부양하는 집단의 경제적 곤란이 노인 학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증가는 여성 노인 피해자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성 학대 피해 노인의 수는 2007년 1,575명이었다가 2013년에는 2,522명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는 거의 모든 연령대의 여성 노인 집단에게서 나타난다.

3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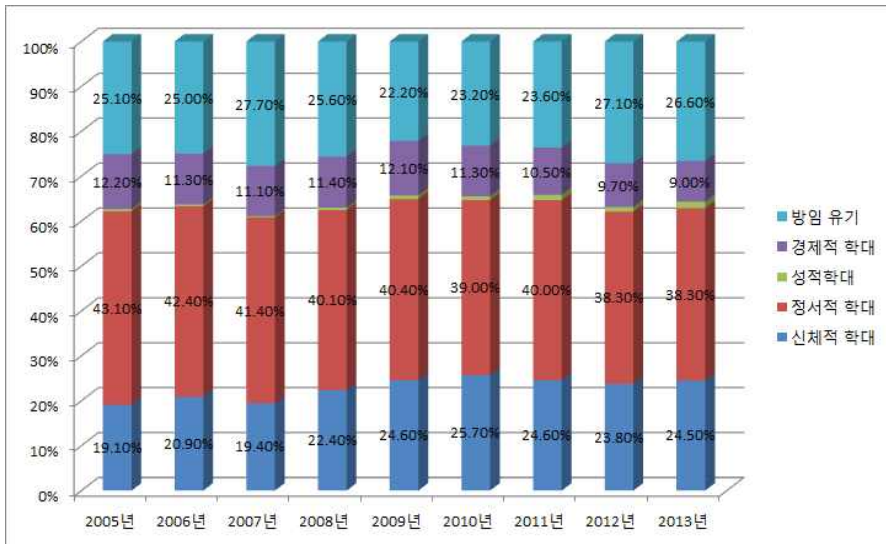
남성 학대 피해 노인의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성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비를 보였다.



[그림 2-7] 노인학대 피해 추이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심리적·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및 착취, 성적 학대, 방임 등이 있는데(이보영·박현식, 2010), 노인 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정서적 학대이지만, 점차로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신체적 학대의 증가로 인한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변화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점차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는 급증하고 있었다. 신체적 학대는 2000년대 중반에는 약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체 학대 중 25% 정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학대로서 전체 학대 중 약 10%를 차지하는 유형이며, 성적 학대는 전체적인 비율은 매우 낮으나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8] 노인 확대 유형

4. 노인 자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최근 수년간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4년의 경우 60~69세 노인의 자살률은 37.5%, 70~79세 노인의 자살률은 57.6%,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78.6% 등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매우 높은 자살률은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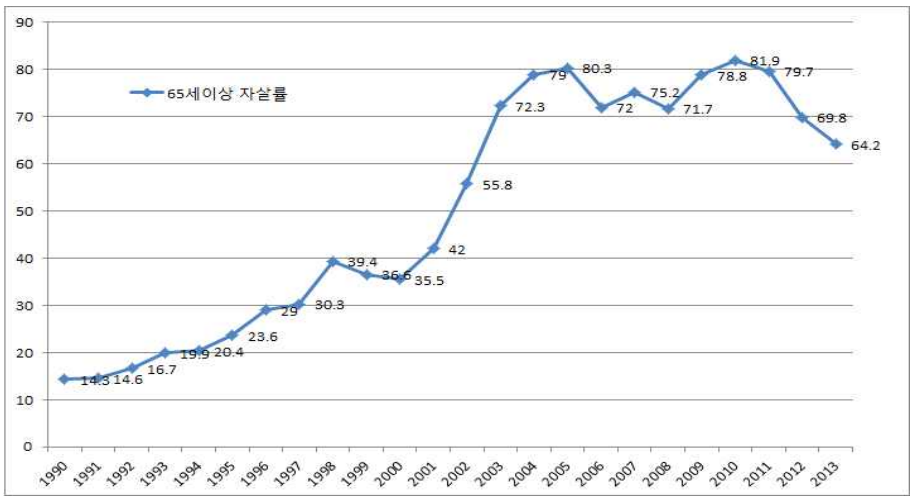
일본, 핀란드, 헝가리 등 자살률이 높은 많은 국가에서는 장년층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살률도 함께 증가하지만(권혁남, 2011), 노년층의 자살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그 증가 폭도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 2-2〉 연령별 자살률 추이, 2004년~2014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

연령 (세)	남녀전체				남				여				성비
	2004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증감률	2004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증감률	2004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증감률	
계	23.7	28.5	27.3	-4.5	32.4	39.8	38.4	-3.6	14.9	17.3	16.1	-6.5	2.38
1-9	0.0	-	0.0	-	0.0	-	0.1	-	-	-	-	-	-
10-19	3.7	4.9	4.5	-7.7	4.2	5.6	5.5	-2.7	3.2	4.1	3.4	-15.2	1.58
20-29	13.8	18.0	17.8	-1.0	16.7	20.9	21.8	4.2	10.8	14.8	13.4	-9.3	1.63
30-39	20.6	28.4	27.9	-1.5	27.2	36.4	36.6	0.5	13.7	20.0	18.9	-5.3	1.93
40-49	29.4	32.7	32.4	-1.1	43.1	47.2	46.6	-1.2	15.3	17.8	17.7	-0.5	2.63
50-59	37.9	38.1	36.4	-4.3	58.6	58.0	55.2	-4.8	17.4	18.0	17.4	-3.0	3.17
60-69	51.4	40.7	37.5	-7.9	84.4	64.6	59.8	-7.4	23.5	18.4	16.5	-10.2	3.62
70-79	81.6	66.9	57.6	-13.9	128.2	110.4	92.3	-16.4	54.0	35.4	32.1	-9.3	2.88
80 이상	125.3	94.7	78.6	-17.0	205.8	168.9	143.4	-15.1	92.2	63.9	51.1	-20.0	2.81

출처 : 2014년 사망원인 통계(통계청, 2015)



[그림 2-9] 65세 이상 자살률

5. 노인 수형자

강은영 외(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형자는 약 30,000명 내외인데, 이 중 20대는 2003년 32.3%에서 2012년 17.5%로 감소하였으며, 30대 수형자도 2003년

33%에서 2012년 25.1%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수형자의 비율은 점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형자는 2003년 24%에서 2012년 30.8%로 증가하였으며, 50대 수형자는 2003년 7.1%에서 2012년 19.8%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수형자는 2003년에는 1.0%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3.1%로 증가하여 3배 이상 많아졌으며, 특히 71세 이상의 노인 수형자는 2003년 0.2%에서 2012년 1.0%로 증가하여 65~70세 노인 수형자보다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교정시설의 수형자 연령은 고령화 되고 있으며, 노인 재범률을 볼 때 51세부터 60세까지의 수형자의 증가로 향후 수형자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강은영 외, 2013).

최준(2013)의 연구에서도 전체 수형자 대비 60세 이상 노인 수형자 비율은 2007년 4%에서 2011년 5.7%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수형자 비율이 전체 범죄자 대비 평균 수형자 비율보다 높으며, 노인범죄에 대한 자유형 선고와 집행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최준, 2013).

제3절 노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노인 빈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2011년 기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70~80%에 크게 밑도는 수준(2012년 기준)이다(오미애, 2013; 김복순, 2015).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한 상황이며, 사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연금을 통한 소득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인 소득과 경제활동에 관한 노동부(2007)의 자료에서도 노인들의 경우 연령에 따른 소득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50세 이후 소득수준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었다(노동부, 2007).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 비중(GDP 대비 전체 복지 지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7년 기준 약 7%로 아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공공복지 지출 중 노인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한데, 이 중 현금 지원(연금, 조기은퇴연금 등)은 1.07%, 서비스지원(거주 도움 및 기타 서비스)은 0.2%에 불과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1%이며, 가장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11% 대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복지지출이 5% 이하인 호주,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이재열 외, 2011).

노인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노인 범죄와 커다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노인빈곤율은 45.1%로 전체 연령 빈곤율 14.6%의 3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이들 국가들의 노인빈곤율 평균 13.5%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오미애, 201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6~75세에서 43.3%, 75세 이상에서 49.8%로 나타나, 고령자 집단에서 빈곤율이 더 높았으며, 여성 노인의 빈곤률은 47.2%로 남성 노인의 빈곤률 41.8%보다 더 높았다(이재열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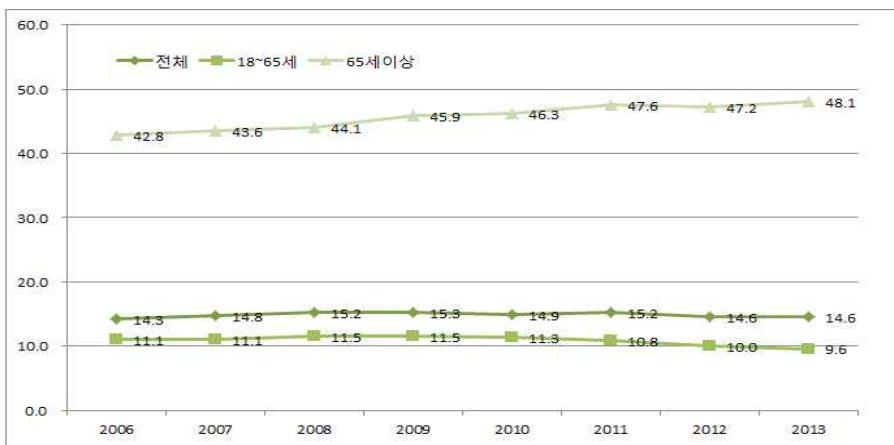


[그림 2-10] 지니계수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전체 지니계수가 2008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65세 이상의 노인 지니계수는 2013년에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그 전에는 급속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다. 2013년의 감소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소득 불평등은 향후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빈곤율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노동부, 2007).

또한 상대적 빈곤률을 살펴보면도 동일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전체 상대적 빈곤률이 200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변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노인 범죄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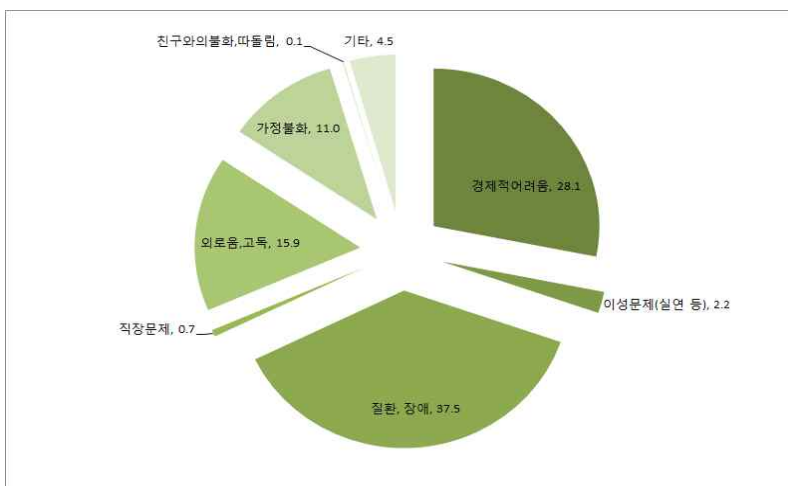
[그림 2-11] 상대적 빈곤률

소득상실과 빈곤의 문제는 노인 범죄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노동력의 노후화로 경제력을 상실하고 조기 퇴직 등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는 작은 이익에도 쉽게 동요하며 좌절감과 무력감 및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한동효, 2008). 이와같은 상황은 생계형 재산 범죄가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노인 부양비 상승과 노인 빈곤 심화로 생존을

위한 제 2, 3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최준, 2010). 또한 노인의 빈곤은 생계형 범죄 뿐 아니라 노인의 강력범죄가 연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노인의 빈곤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는데, 노인 부양에 따른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빈곤과 경제적 위기가 초래한 가족 구성원 간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없다면 노인 학대가 증가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이건호, 2008). 또한 빈곤한 노인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적 자원이 적은 사람의 개인적 환경이 범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구자숙 외, 2003).

한편 노인의 빈곤은 범죄의 증가와 함께 자살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질환과 장애 때문이라는 응답이었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런데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 큰 문제상황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살 충동을 느끼는 노인들의 절반 정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12] 2014년 노인들의 자살충동 이유

2. 건강 악화

신의철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 보통이하라는 응답이 80.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그런데 질병이 발생할 경우 64.7%가 지불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노화 현상은 신체적 힘에 의한 범죄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최준, 2010). 그러나 한편으로 노인들은 신체 기능의 저하는 건강 악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불안, 욕구불만, 흥미나 인내력 감소 등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더욱 취약해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신체적 힘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와 병행하는 심리적 변화는 범죄 유발요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한동효, 2008).

신체적 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의 증가가 예측되기도 하는데(2050년 213만명 예상), 치매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 등 건강보호 급여비의 증가, 시설 입소율 증가, 가족 부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강한 범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치매노인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도 사소한 절도나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노인들의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이유가 신체적 질환이라는 점을 환기해 본다면, 노인 자살도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전해숙 외, 2012).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의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형사사법 정책과 관련하여 더 큰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교정시설에서이다. 노인의 범죄가 증가하여 노인 수형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교정시설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교정 예산에서 의료비의 비중이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3. 사회적 소외

노인이 되면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고 가정에서의 결정권이 줄어들게 되

면, 노인들은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낄 기회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노인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한동효, 2008). 또한 신체적 능력의 약화 역시 노인들의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활동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인의 소외감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 장준오 외(2008)은 정년퇴직 등으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거나 감소됨에 따라 증대되는 사회적 불안과 위기감을 해소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도박 등의 행위를 하게 되어 노인 풍속범죄자가 증가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이다.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져서, 1인 가구 비중은 1980년 4.8%, 1995년 12.7%, 2005년 20.0%, 2010년 23.9%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의 2010년 1인 가구는 5년전보다 4%p 증가한 24.4%이며, 203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24.9%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신의철 외, 2011). 그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8.9%에서 2010년 25.7%로 증가하였는데, 노인 1인 가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이는 여성이 평균수명이 더 길고, 여성의 결혼연령이 남성보다 낮아서 여성이 노년이 되어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사는 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베이비부머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앞으로 노인 1인 가구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신의철 외, 2011).

김봉수(2012)가 분석한 노인 범죄의 범행 동기 중 가장 많은 것이 원한 및 분노(43.1%)였는데, 이는 노년기의 심리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의 심화와 관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심심풀이, 타인에 대한 의리나 동정심, 다른 사람에 빌려준 금전, 이유없음, 가정불화, 역할상실로 인한 무력감, 피해자와 사귀고 싶어서 등이 범행 동기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노인 범죄는 심리적 요인이 범행동기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것은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김봉수, 2012).

노인의 사회적 소외는 범죄 피해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현재 노인들은 퇴직 이후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 퇴직 이후 사회적인 지위, 가정 내 지위가 자녀들에게 의존적인 위치로 변화하면서 소외감, 좌절감을 겪게되고 이것이 가족 및 다른 구성원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가족들의 노인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이게 되고 노인 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이건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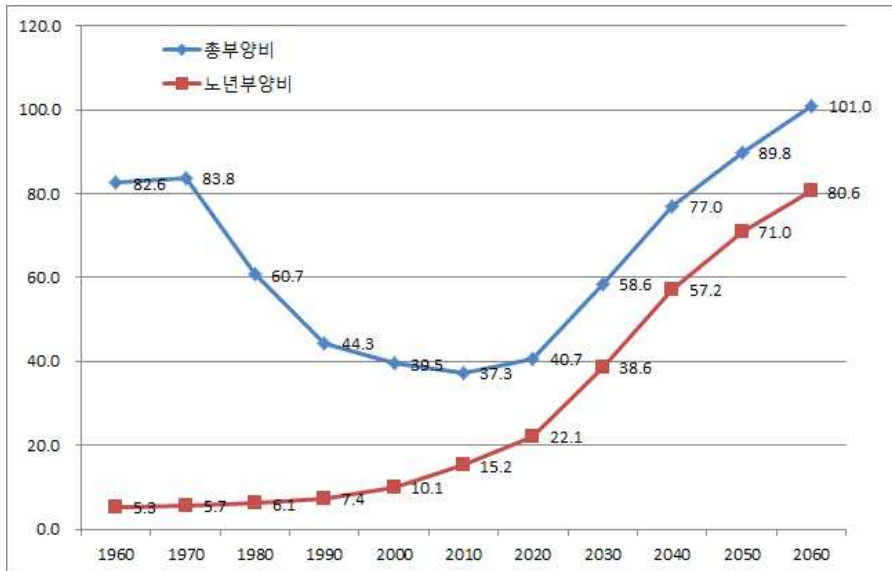
사회적 소외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인데, 사회적 배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삶의 기회와 사회적 제도의 참여 기회의 감소에 관한 것이며 개인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제약 조건을 의미한다(강현정 외, 2011). 결국 사회적 배제는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소비하는데 필요한 자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 혹은 그 영역에서의 권리의 박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강현정 외, 2011; 박현주 외, 2012).

4. 세대갈등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세대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백 명 당 부양 인구(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젊은 세대가 앞선 세대와 뒤따라오는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되면 생산을 담당하는 세대는 노인에게 대한 반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노인에게 대한 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부정적 시선을 받는 노인들 역시 젊은 세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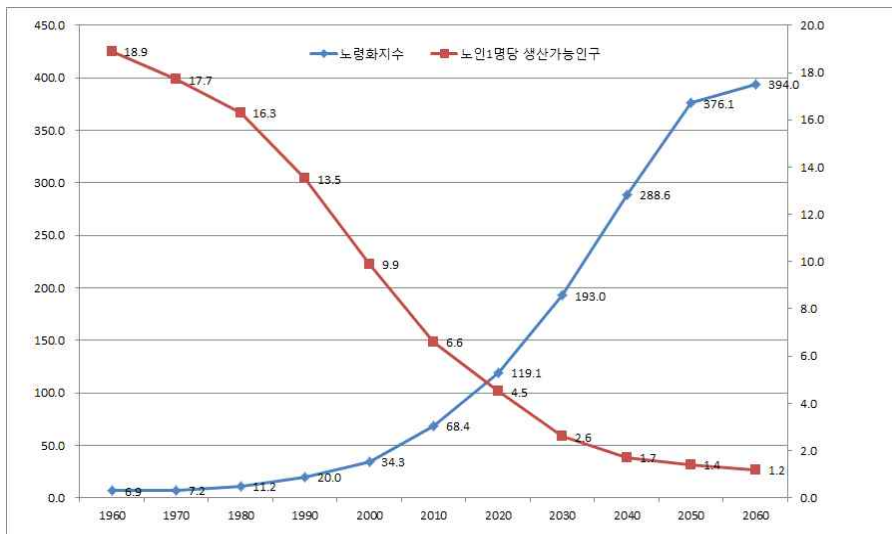
2014년 기준 총부양비는 36.9%였는데, 이 중 노년 부양비는 17.3%였다. 유소년부양비는 1966년의 82.8%를 정점으로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인데, 2000년 29.4%, 2010년 22.2%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에서 2000년대 10%, 2010년 1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2030년 38.6%, 2060년 80.6% 등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 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의 감소에 따라 현재까지는 감소하고 있었으나, 노년 부양비 비중이 커지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 즈음에는 총부양비는 10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4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 × 100

[그림 2-13] 노년 부양비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이상 인구

[그림 2-14] 노령화지수와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

이처럼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 공급이 감소되고,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 가능인구는 점차로 감소하여 노동공급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성 하락이 예상되며,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에서 2020년대 3.7%, 2040년대 1.4%로 하락할 전망이다(이재열 외, 2011).

그 결과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이 저해되며,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연금가입자 수는 2014년에 1,87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인데,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는 2010년 1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44년부터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65년에는 제도부양비가 93.8%로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노인의료비도 급증하여, 2030년에 24%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재열 외, 2011).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데, 2010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생산활동을 위한 최적 조건으로서 35~54세 인구 비중이 약 34%에 이르나, 2050년에는 약 22%로 감소할 전망이고, 이와 함께 소비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소비는 서비스보다 공산품을 구입하고 이는 재투자로 직접 연결되지만, 고령인구는 사회적 비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의 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도 세대 간 갈등의 확산을 전망할 수 있는 요소이다. 즉,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 자원의 세대 간 배분이 고령인구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고령인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치도 커지게 되고 강력한 정치적 이익집단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지점에서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는 시점에는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이재열 외, 2011).

5. 노인의 특성 변화

향후 노인의 사회적 특성은 지금까지의 노인들의 사회적 특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노인의 범죄 및 범죄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전의 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노인인구로 편입이 되면 노인의 특성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부(2007)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령자 상당수의 학력은 무학이거나 초졸 수준의 낮은 학력이지만, 2020년까지 고령자의 학력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고졸자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고졸자 비율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여성의 경우 50대 후반과 60대에서 고졸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졸자의 비율도 50대의 남성의 경우 대졸자 비율이 증가하는데, 2005년 기준 20% 정도 수준에서 2020년 기준 40%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들이 노인이 되는 2030년 이후에는 남성 노인의 상당부분은 대학 졸업자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2020년 50대 중 대졸자 비율이 3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이 노인이 되는 2030년 이후에는 약 1/3 이상의 여성 노인이 대학 졸업자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노동부, 2007).

이들 베이비 붐 세대는 교육수준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후 세대 노인층의 절반이 월소득 300만원 이하이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300만원 이하, 300~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이전 세대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했던 것과 달리 2차 및 3차 산업에 주로 종사하였으며, 사회·정치적 환경 측면에서 고도 성장기와 정치적 변혁기를 20~40대에 보냈다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신의철 외, 2011).

결국 이같은 고령인구의 특성 변화는 범죄 및 범죄 피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미래의 형사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

서 주 연

제3장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

제1절 개관

인구고령화는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범죄나 노인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간에도 노인범죄나 노인 범죄피해의 정도, 양상이 결코 같지 않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사회복지제도, 형사사법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앞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범죄의 특징이나 변화 추이 등이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한편, 일본에서 출구지원에 이어 입구지원의 시행에 계기가 된 후생노동성의 「범법·피의자가 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연구」에서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법제도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의하면 각국의 제도는 구체적으로 ① ‘범법·피의자’가 된 장애인·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가 존재하고 사법과 복지의 연계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 ② 경찰, 검찰단계에서 권리옹호를 위한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③ 경제학적 방법인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 경찰의 적절한 조기 개입과 다이버전을 통해 비용이 삭감되어 국가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등으로 구분되었다.¹⁾

노인범죄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각국의 형사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대응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 田島良昭, 「触法・被疑者となった高齢・障害者への支援の研究」, 厚生労働科学研究報告書, 2013, 10쪽; 자세히는 南高愛隣会, 厚生労働科学研究(09~11, http://www.airinkai.or.jp/hasshin/kenkyu/tsumi/index_h21.html) 참고.

즉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특별한 대응이 고려되는 요소로서 고령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 장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일정 연령을 넘은 노인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에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것은 형사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고령’이라는 특성이 정신 또는 신체적 기능 저하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거나, 오히려 고령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정신 또는 신체적 결함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장애가 있는 노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형사정책이 앞서 자리 잡아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양상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특징으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다 명백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정책이 주로 교정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작업, 교정 처우, 교육 등을 행하는데 그러한 작업 등에 노인수형자를 포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의료 처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노인 전용교도소나 노인 전용시설, 노인 대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수형자에 대응하고 있다. 출소 후에 거주할 귀주예정지를 결정하거나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도 그러한 대응의 일환이다. 한편으로는 교정시설 입소 이전 단계에서 구금형이 결정된 노인범죄자에 대해서 대체형으로서 보호관찰 및 자택, 공적 복지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하거나(이탈리아) 체포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형을 면제하는 대신 5단계 보호관찰처분제도에 근거하여 전용 또는 일반 복지시설에서 교정 교육이 실시되기도 한다(덴마크).²⁾

이탈리아나 덴마크와 같은 처우는 사회 내 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교정이나 형사사법의 목적에 대한 각국의 시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헌법상 형벌은 인도적이어야 하며 갱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이탈리아 헌법 제27조).³⁾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일본 이외의 국가로서 한국에 앞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형사사법절차, 특히 시설 내 처우를 중심으로 후술하겠다.

2) 田島良昭, 위의 보고서, 2013, 12쪽.

3) 浜井浩一, ‘法務と福祉の接点である更生保護に関する研究’, 厚生労働科学研究報告書, 2013, 59쪽.

제2절 일본

1. 일본의 노인범죄 현황

일본은 한국에 앞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에 경험한 국가이다.⁴⁾ 한국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4년 639만 명(12.7%)이며, 2024년 983만 명(19%), 2034년 1,432만 명(27.6%)에 이를 전망이다.⁵⁾ 일본은 2005년 이미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4년 현재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노인인구는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가 65세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2015년을 지나 2060년에는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39.9%, 즉 2.5명 중 1명이 노인인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⁶⁾

〈표 3-1〉 일본의 전체 인구 수 및 비율 추이

(단위: 만 명, %)

	인구 수				인구 비율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50	8,320	2,943	4,966	411	100.0	35.4	59.7	4.9
1960	9,342	2,807	6,000	535	100.0	30.0	64.2	5.7
1970	10,372	2,482	7,157	733	100.0	23.9	69.0	7.1
1980	11,706	2,752	7,888	1,065	100.0	23.5	67.4	9.1
1990	12,361	2,254	8,614	1,493	100.0	18.2	69.7	12.1
1995	12,557	2,003	8,726	1,828	100.0	16.0	69.5	14.6
2000	12,693	1,851	8,638	2,204	100.0	14.6	68.1	17.4
2005	12,777	1,759	8,442	2,576	100.0	13.8	66.1	20.2
2010	12,806	1,684	8,174	2,948	100.0	13.2	63.8	23.0
2011	12,780	1,671	8,134	2,975	100.0	13.1	63.7	23.3
2012	12,752	1,655	8,018	3,079	100.0	13.0	62.9	24.2
2013	12,730	1,639	7,901	3,190	100.0	12.9	62.1	25.1
2014	12,708	1,623	7,785	3,300	100.0	12.8	61.3	26.0

주: 인구통계의 '각 연도 10월 1일 현재인구(各年10月1日現在人口)'를 재구성.

출처: 総務省統計局, 인구통계 (<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0090001>), 2015. 9. 25. 최종방문.

4)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후기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5) 통계청, 2014 노인 통계(보도자료), 2014. 4쪽.

6) 内閣府, “平成26年版高齢社会白書”, 3쪽.

이러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일본에서는 노인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공식범죄통계집인 『범죄백서』에서는 2008년 ‘고령범죄자의 실태와 처우’를 특집으로 다루었고, 2009년부터 ‘노인범죄’와 관련된 통계를 일반 성인범죄와 별도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최근 10년간 일반형법범의 검거인원 추이를 보면, 전체 검거인원이 평균적으로 14,053명씩 감소하였고, 이는 65세 이상의 검거인원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검거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이상의 검거인원은 2011년까지 증가 경향에 있다가 2012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2〉 일반형법범의 연령별 검거인원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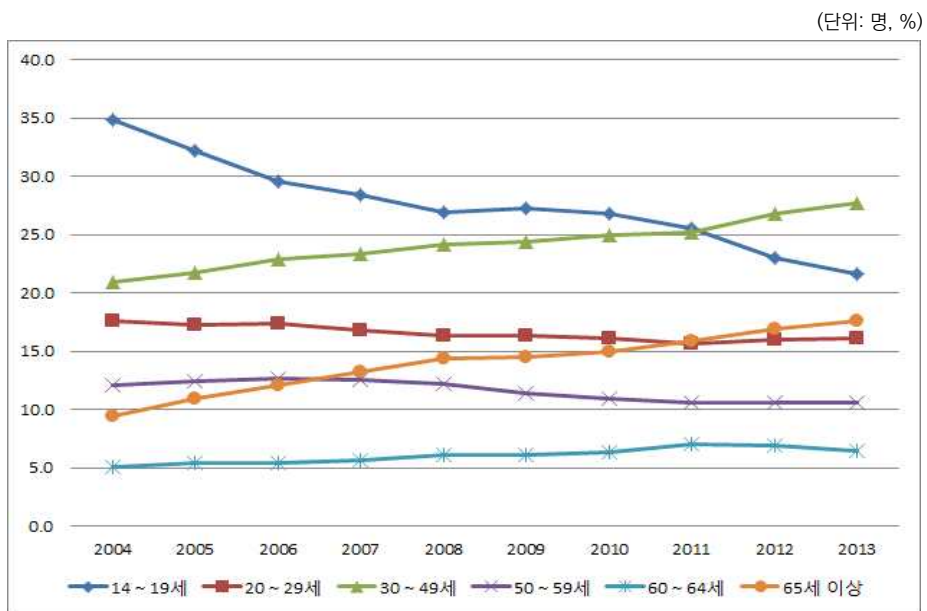
	연령별 검거인원							
	계	14~19세	20~29세	3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2004	389,297	135,818	68,697	81,347	47,011	19,722	15,376	21,326
2005	387,234	124,543	67,021	84,350	48,053	21,155	16,964	25,148
2006	384,630	113,570	66,746	88,176	48,657	20,830	17,756	28,895
2007	366,002	103,921	61,637	85,444	45,780	20,615	18,037	30,568
2008	340,100	91,520	55,455	82,343	41,368	20,609	17,631	31,174
2009	333,205	90,891	54,442	81,447	37,887	20,419	17,760	30,359
2010	322,956	86,448	52,125	80,443	35,186	20,592	17,171	30,991
2011	305,951	78,243	48,006	77,195	32,424	21,446	16,375	32,262
2012	287,386	66,020	45,889	76,928	30,250	19,740	15,679	32,880
2013	262,823	56,953	42,242	72,800	27,671	16,914	14,633	31,610
	연령별 검거인원 구성비							
	계	14~19세	20~29세	3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2004	100.0	34.9	17.6	20.9	12.1	5.1	3.9	5.5
2005	100.0	32.2	17.3	21.8	12.4	5.5	4.4	6.5
2006	100.0	29.5	17.4	22.9	12.7	5.4	4.6	7.5
2007	100.0	28.4	16.8	23.3	12.5	5.6	4.9	8.4
2008	100.0	26.9	16.3	24.2	12.2	6.1	5.2	9.2
2009	100.0	27.3	16.3	24.4	11.4	6.1	5.3	9.1
2010	100.0	26.8	16.1	24.9	10.9	6.4	5.3	9.6
2011	100.0	25.6	15.7	25.2	10.6	7.0	5.4	10.5
2012	100.0	23.0	16.0	26.8	10.5	6.9	5.5	11.4
2013	100.0	21.7	16.1	27.7	10.5	6.4	5.6	12.0

주: 경찰청 통계 및 경찰청 교통국 자료에 의한.

출처: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6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1/nfm/mokuji.html>), 2015. 9. 25. 최종방문.

그러나 총 검거인원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 적이 없다. 14~19세, 20~29세, 50~59세의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에 있고, 30~39세와 더불어 65세 이상의 검거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검거인원은 2004년 전체 검거인원의 9.4%였으나, 2013년 17.6%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를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보면, 특히 65~69세가 2004년 3.9%에서 2013년 5.6%, 70세 이상이 2004년 5.5%에서 2013년 12%를 차지하고 있다. 70세 이상이 전체 검거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총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5세 이상의 비율뿐만 아니라 70세 또는 80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진 데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⁷⁾



출처: 위의 <표>를 재구성함.

[그림 3-1] 연령별 검거인원 구성비 추이

7) 2013년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는 2,259만 명(18.8%), 75세 이상 인구는 1,560만 명(12.5%), 80세 이상 인구는 930만 명(7.6%)이다(総務省統計局, 인구통계(<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0090001>)).

한편, 65세 이상의 죄명별 검거인원을 보면 우선 일반형법범의 대부분이 절도에 해당하고 있다. 절도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가다 2013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73.7%로 여전히 높다. 절도 중에서도 비침입절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비침입절도 중에서도 상점 등에서 고객을 가장하여 물건을 훔치는 만비키(85.4%), 기타(10.7%),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해서 훔치는 바꿔치기 절도(2.9%) 순이다. 절도 외에는 폭행(6.6%), 상해(3.3%)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2014년판 『범죄백서』는 절도에 있어 특히 여성 노인의 대부분이 절도로 검거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⁸⁾ 즉 2013년 검거된 여성 노인 16,023명 중에 14,832명(83.5%)이 절도로 검거되었다. 남성 노인 30,220명 중에 19,228명(48.2%)가 절도로 검거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이후의 형집행 단계에서 여성 노인수형자의 양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다. 노인수형자(60세 이상) 중에 여성수형자는 21.5%이며, 이러한 노인 여성수형자 중에 82.2%가 절도로 수감되어 있다.⁹⁾

〈표 3-3〉 일반형법범의 죄명별 검거인원 추이

(단위: 명, %)

	2008		2009		2010	
	65세 이상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총수	48,805	100.0	48,119	100.0	48,162	100.0
살인	179	0.4	143	0.3	174	0.4
강도	103	0.2	116	0.2	107	0.2
상해	1,112	2.3	1,185	2.5	1,174	2.4
폭행	2,021	4.1	2,262	4.7	2,337	4.9
협박	196	0.4	209	0.4	202	0.4
절도	33,276	68.2	33,055	68.7	34,355	71.3
침입절도	468	1.4	430	1.3	476	1.4
차량절도	1,153	3.5	1,154	3.5	1,095	3.2
비침입절도	31,655	95.1	31,471	95.2	32,784	95.4

8)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6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1/nfm/n61_2_4_5_1_0.html), 2015. 9. 25. 최종방문.

9) 일본 법무성 제공 자료(2015. 9. 16. 기관 방문).

		2008		2009		2010	
		65세 이상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소매치기 (ひったくり)	14	0.0	22	0.1	16	0.0
	소매치기 (すり)	122	0.4	109	0.3	123	0.4
	바꿔치기절도 (置き)	510	1.6	607	1.9	653	2.0
	차안물품절도 (車上ねらい)	185	0.6	193	0.6	198	0.6
	만비키 (万引き)	27,015	85.3	27,019	85.9	27,362	83.5
	기타	3,809	12.0	3,521	11.2	4,432	13.5
사기		912	1.9	925	1.9	846	1.8
공갈		75	0.2	88	0.2	82	0.2
횡령		8,934	18.3	8,298	17.2	6,989	14.5
강간		20	0.0	20	0.0	15	0.0
강제추행		130	0.3	131	0.3	147	0.3
방화		65	0.1	49	0.1	77	0.2
장물취득등		446	0.9	325	0.7	307	0.6
기물파손		381	0.8	408	0.8	388	0.8
기타		955	2.0	905	1.9	962	2.0
		2011		2012		2013	
		65세 이상	구성비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구성비
총수		48,637	100.0	48,559	100.0	46,243	100.0
살인		148	0.3	148	0.3	156	0.3
강도		107	0.2	116	0.2	118	0.3
상해		1,251	2.6	1,479	3.0	1,546	3.3
폭행		2,574	5.3	3,017	6.2	3,048	6.6
협박		242	0.5	300	0.6	356	0.8
절도		35,429	72.8	35,659	73.4	34,060	73.7
	침입절도	503	1.4	502	1.4	568	1.7
	차량절도	964	2.7	901	2.5	742	2.2
	비침입절도	33,962	95.9	34,256	96.1	32,750	96.2
	소매치기 (ひったくり)	18	0.1	13	0.0	11	0.0
	소매치기 (すり)	122	0.4	122	0.4	114	0.3
	바꿔치기절도 (置き)	696	2.0	765	2.2	955	2.9

		2008		2009		2010	
		65세 이상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차안물품절도 (車上ねらい)	213	0.6	173	0.5	200	0.6
	만비키 (万引き)	28,066	82.6	28,673	83.7	27,953	85.4
	기타	4,847	14.3	4,510	13.2	3,517	10.7
	사기	798	1.6	911	1.9	857	1.9
	공갈	77	0.2	78	0.2	92	0.2
	횡령	6,062	12.5	4,734	9.7	3,882	8.4
	강간	19	0.0	21	0.0	20	0.0
	강제추행	154	0.3	184	0.4	192	0.4
	방화	83	0.2	74	0.2	67	0.1
	장물취득등	245	0.5	225	0.5	163	0.4
	기물파손	448	0.9	514	1.1	577	1.2
	기타	1,000	2.1	1,099	2.3	1,109	2.4

주: 경찰청 통계 및 경찰청 교통국 자료에 의함.

출처: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6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1/nfm/mokuji.html>); “平成25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0/nfm/mokuji.html>), 2015. 9. 25. 최종방문.

한편, 일본에서는 노인범죄자의 높은 재범율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 입소수형자의 수는 2008년까지 증가하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수형자는 2004년 4.3%에서 2013년 8.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 법무성에서는 29세 이하 수형자의 감소를 시작으로 모든 연령대의 수형자가 감소함으로써 교도소의 과잉수용 상황은 해소되었으나, 노인수형자의 증가로 인해 교도시설 내에서의 의료비 증대, 인력 부족, 출소자의 귀주예정지 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¹⁰⁾

이처럼 노인수형자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초범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노인범죄자의 재범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즉 입소시 65세 이상인 노인수형자가 출소 후 재범으로 인해 2회 이상 재입소하는 비율이 2013년 73.4%에 이른 것이다. 이는 전체 입소수형자 재범율(58.9%)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¹¹⁾

10) 일본 법무성 제공 자료(2015. 9. 16. 기관 방문).

〈표 3-4〉 노인수형자 입소횟수별 인원 추이

(단위: 명, %)

	총 입소수형자 (A)	65세 이상 입소수형자					
		입소횟수			계 (B)	비율 (B/A)	재범율 (b+c)/B
		1회(a)	2~5회(b)	6회 이상(c)			
2004	32,090	412	318	627	1,357	4.3	69.3
2005	32,789	448	432	717	1,597	4.2	69.6
2006	33,032	593	510	779	1,882	4.9	71.9
2007	30,450	561	525	798	1,884	5.7	68.5
2008	28,963	614	633	845	2,092	6.2	70.2
2009	28,293	567	704	829	2,100	7.2	70.7
2010	27,079	589	635	880	2,104	7.4	73.0
2011	25,499	612	629	787	2,028	7.8	72.0
2012	24,780	584	734	874	2,192	8.0	69.8
2013	22,755	605	754	869	2,228	8.8	73.4

주: 교정통계연보에 의함.

출처: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6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1/nfm/mokuji.html), 2015. 9. 25. 최종방문.

2. 일본의 노인범죄 대응

가. 수사·재판단계

1) 입구지원의 개요

‘입구지원’이란, 고령 또는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소 제기 전·후 등 형사사법절차 입구 단계에서 행하는 복지적 개입을 의미한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법기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갱생지원계획의 작성이나 지원 기관의 확보 등을 통해 미죄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입구지원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¹¹⁾ 2010년 나가사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최초로 그러한 입구지원을 시행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검찰청에서의 입구지원도 시작되었다. 2013년 4월 도쿄 지방검

11)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6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1/nfm/n61_2_4_5_2_2.html), 2015. 9. 25. 최종방문.

12) 浜田浩一, ‘高齢者・障がい者の犯罪をめぐる議論の変遷と課題: 厳罰から再犯防止、そして立ち直りへ’, 法律のひろば 67(12), 2014, 8쪽.

찰청이 사회복지지원실을, 같은 해 9월 센다이 지방검찰청이 형사정책추진실을 설치하여 입구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입구지원에 앞서 일본에서는 ‘출구지원’이 법제화되어 2009년 4월 특별조정제도가 시행되었다. 특별조정제도에 대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노인범죄 대응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나, 간단히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자 중에 고령 또는 장애가 있고 적당한 귀주예정지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보호관찰소가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석방 후의 신속한 복지적 지원을 도모하는 제도이다.¹³⁾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2011년 말 전국 47개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 완료되었고, 교정시설 입소 중의 상담 등을 통해 퇴소 후의 귀주예정지 확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출구지원은 이전에 거의 교류가 없던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재범 또는 누범 방지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¹⁵⁾

한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의 협력을 받아 「범법·피의자가 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교정시설에 이르기 전 단계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단계를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등 법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제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도소 전 단계에서 결점을 가진 장애인·노인에 대한 지원 체제가 미비한 상황이며,¹⁶⁾ 이로써 현재 장애인·노인은 장애인 고령이라는 ‘특성’에 대한 지원 없이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¹⁷⁾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¹⁸⁾

13) 魚谷瑞紀, ‘累犯高齢者はなぜ増え続けているのか-再犯防止には何が必要なのか’, セミ論文 2013, 早稲田大学, 2013, 10쪽.

14) 전국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http://zenteikyo.org/>) 참조.

15) 浜田浩一, 위의 논문, 2014, 7쪽.

16) 관련 연구에서 피의자 단계에서의 과제로 다음의 6개, ① 피의자가 고독한 상태에 놓이는 문제, ② 진술조서를 둘러싼 문제, ③ 밀실에서 조사를 둘러싼 문제, ④ 장애인이 수사관에 영합하기 쉬운 문제, ⑤ 묵비권을 둘러싼 문제, ⑥ 변호인 선임권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공판단계에서의 과제로 다음의 4개, ① 형사책임능력을 둘러싼 문제, ② 자백의 임의성·신용성을 둘러싼 문제, ③ 정상감정을 둘러싼 문제, ④ 수화통역제도의 정비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였다(자세히는 荒中, ‘弁護活動と福祉との連携に関する研究’, 厚生労働科学研究報告書, 2013, 참조).

17) 田島良昭, 위의 보고서, 12쪽.

18) 田島良昭, 위의 보고서, 13쪽.

하나, 경찰 단계, 검찰 단계의 장애인·노인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조사에서의 ‘진술 능력’, 재판에서의 ‘소송 능력’의 지원 체제 정비

1.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백 강요 또는 허위 자백 등에 의한 원죄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조사 단계에서의 전면 가시화(녹음·녹화)가 바람직하다.
2. 장애인·노인 조사에는 그 특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는 경찰·검사와의 통역적 역할을 수행하는 ‘입회인(보좌인)’을 동석시킨다.
3. 장애인·노인의 국선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의 변호보수에 특별한 가산 제도를 마련한다.
4. 수사기관(경찰관, 검사)이나 변호사, 재판관과 같은 사법관계자에 장애인의 특성이나 이해 등을 위한 연수 교육의 충실
5. 검찰청이나 재판소 등의 형사사법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전문직을 배치한다.

둘, 피고인의 ‘개선 갱생’이나 ‘재범방지’를 중시한 양형·형사정책으로의 전환

1. 범죄에 이른 배경과 갱생 지원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판결 전 조사제도’를 도입한다.
2. 피고인(장애인)을 상당 기간 동안 재판소의 관찰에 부쳐 한동안 피고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그 경과를 본 뒤에 최종 판결을 내리고, 소년 심판의 ‘시험 관찰’과 같은 중간적 처분을 도입·활용한다.

셋째,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법’과 ‘복지’가 연계한 형사정책의 필요성

1. 형사절차의 조기 단계에서 사법절차를 회피(다이버전)하는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형사 정책’이 요구된다.
2. 교정시설이 아니라 장애 특성에 맞추어 복지의 시점에서 전문적인 갱생을 지원하는 ‘사회 내 훈련사업소(가칭)’을 설치한다.
 - (1) ‘사회 내 훈련 사업소(가칭)’는 법무부와 후생노동성이 연계한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설치에 있어서는 동 사업소의 이용을 사회 내 처우로 자리매김하는 법적 정비를 실시한다.
 - (3) ① 권리 옹호의 관점, ② 효과적인 갱생 지원을 위해서 동 사업의 프로그램을 판정·검증하는 옴부즈맨적 역할을 갖는 기관이 필요하다.
3. 교정시설 퇴소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을 확대한다.
4. ‘피의자·피고인’의 지원기관으로서 갱생보호시설의 적극적 활용

위와 같은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계기로 형사사법의 입구 단계에서도 복지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출구지원과 달리 입구지원에서는 피의

자·피고인이 구류 또는 기소 중이거나 기존에 가족이나 지원기관이 전혀 없는 경우에 시간과 정보의 제약 속에서 지원을 검토·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¹⁹⁾ 또한, 입구지원은 아직 제도화되기 전의 단계에 있어 각 지역마다 지원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나 지원의 방식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전국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협의회와 사회복지법인이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 입구지원 활동과 도쿄 지방검찰청 및 센다이 지방검찰청의 입구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입구지원

전국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는 주로 출구지원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입·퇴소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²⁰⁾ 그중에서 나가사키 현이나 시마네 현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등 일부가 모델사업이나 상담지원 업무의 일환으로 입구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 입소 전, 수사·공판 단계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고려해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복지적 지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발생·확산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앞서 언급한 '범법·피의자가 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연구'였다.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 남고애린회(南高愛隣会)가 전국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협력을 얻어 2010년 7월부터 독자적으로 입구지원에 관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²¹⁾ 그 연속된 일련의 사업에서 '조사지원위원회'²²⁾가 입구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조사지원위원회는 정신과 의사, 갱생상담소·아동상담소의 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정신보건복지사, 전문가·지식인, 장애인상담지원전문위원, 임상심리사·작업

19) 魚谷瑞紀, 위의 논문, 12쪽; 京俊輔, '控訴審における罪に問われた障害者に対する「入口支援」の可能性-島根県で取り組んだB氏事例を通じて', 2015,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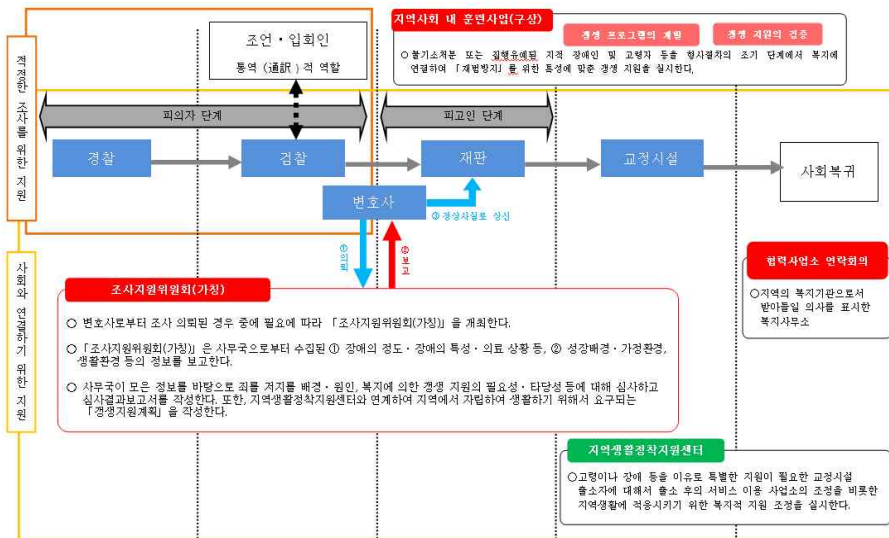
20)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출구지원은 크게 ①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교정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등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입소할 시설 등의 알선 또는 복지서비스 등의 신청을 지원하는 등의 '조정(コーディネート) 업무', ② 조정 업무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퇴소 후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본인의 처우와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조언 등을 하는 '후속(フォローアップ) 업무', ③ 교정시설에서 퇴소한 자 등의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에 대해 본인이나 그 관계자로부터의 상담에 따라 조언과 지원을 실시하는 '상담지원 업무'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업무는 그 지역의 자치체 복지부국, 복지사무소, 연금사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21) 全国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協議会, 入口支援(<http://zenteikyo.org/index.php?%E5%85%A5%E5%8F%A3%E6%94%AF%E6%8F%B4>); 南高愛隣会, 社会福祉推進事業(13) (http://www.airinkai.or.jp/hasshin/kenkyu/shakaifukushi/index_h25.html), 2015. 10.16. 최종방문.

22)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판정위원회',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장애인심사위원회'였으며,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조사지원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검사나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의뢰가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가 ① 범죄에 저지르거나 범죄를 추궁당하는 배경·요인 등과 그에 이르기까지 ② 장애의 정도·특성, 의료상황 등, ③ 성장배경·가정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복지에 의한 갇혀 지내의 필요성·타당성,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내 처우 또는 사회 내 처우 여부, 교정 처우에 있어 배려가 요구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갇혀 지내지원계획서를 작성한다.

조사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받은 변호인은 이를 검찰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지원을 받게 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받는 경우 교정시설에 제공하여 처우에 참고가 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의 목적은 기존의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복지적 관점에서의 객관적·전문적 의견을 받아들일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공판단계에서는 고령이나 장애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처분이나 양형 판단이 이루어지고, 교정시설에서는 분류시 또는 처우상 참고하거나 특별조정, 가석방 등의 판단에 참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全国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協議会, 入口支援(<http://zenteikyo.org/index.php?%E5%85%A5%E5%8F%A3%E6%94%AF%E6%8F%B4>), 2015. 10.16. 최종방문.

[그림 3-2] 입구지원의 개념도

조사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입구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중에 한 곳은 나가사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이다. 여기에서는 2010년부터 복지 전문가, 정신위생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복지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조정이나 실효성 있는 갱생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보고서가 정상증거로 활용되어 검사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통해서 복지기관에 인계되고 있다.²³⁾ 이처럼 조사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의 입구지원은 현재 나가사키 현, 시가 현, 미야기 현, 시마네 현, 와카야마 현에서 시행되고 있다.²⁴⁾

2013년 8월 NHK가 전국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²⁵⁾ 오사가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제외한 전국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에서 입구지원에 관여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전국에서 80건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은 재판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직원이 출석하여 갱생 계획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지역에서 갱생을 도모하는 사안이었으며, 체포 직후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검찰이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생활보호 신청을 돕거나 복지시설 등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도 20건 이상이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출구조사로도 자원이 부족하고, 입구지원은 도도부현과의 계약에 없는 업무로써 방침 등에 따라 입구 지원에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센터도 10곳 이상 존재하였다.²⁶⁾

현실적으로 조사지원위원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 등이 지원 대상자들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판단되어 변호인에 의해 증거 신청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증거 채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남고애린회는 조사결과보고서

23) 이를 '나가사키 모델 또는 신나가사키 모델'이라고 부르며 나가사키 모델을 재판단계에 중점을 둔 지원, 신나가사키 모델은 검찰단계에 중점을 둔 지원이라고 구분하기도 하나, 모든 연구에서 공통된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 모델 이외에는 변호사회가 사회복지사회가 연계하여 주도하는 '변호사·사회복지사 협력 모델' 등이 있다(松友了, '司法福祉分野における福祉支援とは何か', 三重県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 2015, 2쪽; 京俊輔, 위의 논문, 7쪽 등 참조).

24) 각 현의 상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南高愛隣会, 社会福祉推進事業(13), 各事業成果・課題概略書 (http://www.airinkai.or.jp/hasshin/kenkyu/shakaifukushi/index_h25.html), 2쪽 참고.

25) 이하 NHKニュース, 2013. 8. 18. 보도 (<http://zenteikyo.org/index.php?QBlog-20130819-1&mode=archives&date=201308>), 2015. 10. 25. 최종검색.

26) 浜田浩一, 위의 논문, 2014, 8쪽.

등이 형사재판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사지원위원회의 심사가 형사재판에서 '감정'과 같이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지원위원회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개최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²⁷⁾ 나아가 남고애린회는 사회복지추진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7월부터 입구지원에서 출구지원까지를 이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끊임없는 지원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죄를 추궁받는 노인·장애인에 대한 틈 없는 지원을 위한 제반 제도 구축 사업(罪に問われた高齢・障がい者等への切れ目ない支援のための諸制度の構築事業)」을 시행하고 있다.²⁸⁾

그러나 현재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위와 같은 시도에 대해서는 법무성·후생노동성이 예산 지원 등으로 일부 관여하고는 있으나, 프로젝트성 사업으로서 근거가 되는 법률은 찾을 수 없다. 연도마다 재검토를 통해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이후에 예산 삭감 또는 사업 중단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추궁 받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피고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입구단계에서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조사지원위원회 등 복지·의료 전문가로부터의 보고서나 조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입구지원이 법제화 내지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검찰청의 입구지원

(1) 도쿄 지방검찰청 사회복지지원실²⁹⁾

도쿄 지검에서는 교도소 출소자뿐만 아니라, 불기소가 예상되는 피의자나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출구지원과 같은 대책, 즉 입구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갇혀있을 때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특히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은 취업이 어려운

27) 南高愛隣会, 社会福祉推進事業(13), 各事業成果・課題概略書 (http://www.airinkai.or.jp/hasshin/kenkyu/shakaifukushi/index_h25.html), 3쪽.

28) 南高愛隣会, 社会福祉推進事業(13), 研究概要(http://www.airinkai.or.jp/hasshin/kenkyu/shakaifukushi/index_h25.html), 2015. 10. 25. 최종검색.

29) 渡邊真知子, '知的障害者・高齢者等の 刑事弁護と社会復帰支援', LIBRA 14(8), 東京弁護士会, 2014를 요약·정리.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갱생긴급보호에 따른 취업 지원이 어렵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도쿄 지검에서는, 석방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13년 1월 '사회복귀지원 검토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그 위원회에서 검토한 각종 시책을 실행하는 '사회복귀지원 준비실'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사회복귀지원실'을 출범하였다. 사회복귀지원실에는 사회복지 전문가 3명이 채용되었으며, 적어도 1명의 사회복지사가 상근하면서 수사·공판 담당 검사 등이 전문적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사회복귀지원실에서 다른 상담 건수는 사회복귀지원 준비실로 활동한 기간을 통산하여 총 514건이며, 그중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116건에 이르렀다(2014년 5월 말 기준).

〈표 3-5〉 도쿄 지검 사회복귀지원실 상담 건수

(단위: 명, %)

	노인 (노숙인 포함)	장애인 (노숙인 포함)	노인 및 장애인 (노숙인 포함)	기타 노숙인	기타 (외국인 등)
건수	98	100	18	274	24
비율	19.1	19.5	3.5	53.3	4.7

출처: 渡邊真知子, '知的障害者・高齢者等の 刑事弁護と社会復帰支援', LIBRA 14(8), 東京弁護士会, 2014, 9쪽.

구체적으로는 수사·공판 담당검사 등이 불기소 처분이 전망되는 피의자나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예상되는 피고인에 대해서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사회복귀지원실에 연락한다. 사회복귀지원실의 사회복지 전문가는 해당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 그 건강 상태 외에 귀주예정지나 가족 유무, 취업 여부와 의욕의 유무, 종전에 받은 지원과 그 지속 여부, 지원의 당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에 수사·공판 담당검사 등에 대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조언한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지원을 원활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복지사무소 등과 사전 연락을 조율하거나 피의자 본인과 면담하고, 예정된 지원 내용을 설명하거나 향후의 생활이나 지침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사회복귀지원실 직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 후에 복지사무소 등까지 동행하는 지원도 하고 있다.

(2) 센다이 지방검찰청 형사정책추진실³⁰⁾

센다이 지검은 2012년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추진사업의 시행청으로서 죄를 저지른 고령·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검토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형사부·공판부의 검찰사무관을 중심으로 2013년 5월 ‘죄를 범한 장애인·노인 등 대응추진위원회’를 세워 지원사업을 개시하였다. 같은 해 9월 ‘형사정책추진실’을 설치하여 그 지원 대상을 확충하고, 복지지원과 재범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센다이 지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상근직원으로 채용하고, 주로 담당검사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거나 직원에 대한 복지교육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센다이 지검은 검사가 지적장애인 등을 취조하는 경우 사회복지 상담사가 입회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정책추진실 등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에 대해 장애 정도에 따른 설명을 달리 하거나 그 가족들에 대해 재범방지에 대해 지도하기도 한다. 이에 형사정책추진실은 의사소통 능력이 불충분한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그 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담당검사에 대해 취조에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설명하거나 장애 특성을 배려한 취조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담당검사가 고령이나 장애에 따른 특성, 인지기능, 책임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사정책추진실의 복지지원과 형사처분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형사정책추진실은 자치체 등 복지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한다. 복지지원을 위한 사례회의가 대표적인데, 여기에는 해당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형사정책추진실이 자치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 정신장애자, 지적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원사업소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복지시설 등의 담당자가 출석하게 된다. 노인인 경우 개호서비스 적용 여부, 가사지원 이용 등을 주로 논의하며, 독거노인인 경우 자치체의 보건사, 민간위원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관찰 체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나아가 센다이 지검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키 사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와 갱생교육의 필요성을 다방면에서 검토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구형을 적극적

30) 目黒由幸・千田早苗, ‘仙台地検における入口支援：地域社会と協働する司法と福祉’, 法律のひろば 67(12), 2014를 요약·정리.

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기소된 경우 형사정책추진실은 수사단계에서 해당 피고인에 있어 보호관찰에 따른 갱생교육의 필요성 등을 정리하여 공판에 제출하는 서증이나 검찰 논고의 자료로 이용한다.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에는 보호관찰소나 경찰 범죄억지대책실 등과 연계하여 동향을 살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4) 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

일본에서는 「갱생보호법(平成19年6月15日法律第88号)」상 ‘갱생보호’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질병, 부상, 적절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등 사정에 따라 개선 갱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갱생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만기 석방자, 보호관찰에 회부되지 않은 집행유예자, 기소유예자,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 노역장 유치자, 소년원을 퇴소한 자 등에 대해서는 응급 구호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갱생긴급보호’도 실시하고 있다.³¹⁾ 그런데 이러한 갱생보호는 보호관찰 대상자나 교정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구금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석방 후에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성은 2013년 10월부터 고령 또는 장애의 특성에 따라 갱생긴급보호조치를 제대로 강구하기 위해 보호관찰소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갱생긴급보호의 사전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의 ‘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을 실시하였다.³²⁾ 이는 2013년 전국 7개 지역에서 보호관찰소가 해당 지방검찰청과 연계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센다이, 후쿠시마, 미토, 도야마, 히로시마, 다카마쓰, 구마모토), 2014년에는 13개 지역(삿포로, 쿠시로, 마에바시, 고후, 기후, 나고야, 고베, 나라 마쓰에, 도쿠시마, 사가, 오이타, 미야자키)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의 활동으로서 보호관찰소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기소유예에 의해 갱생긴급보호가 예상되는 경우 구금중인 피의자에 대해 석방 후 복지서비스

31) 法務省 保護局, 「更生保護」とは(http://www.moj.go.jp/hogo1/soumu/hogo_hogo01.html), 2015. 10. 20. 최종검색.

32) 이하 法務省, 「起訴猶予者に対する更生緊急保護を活用した新たな社会復帰支援策の拡充について」(http://www.moj.go.jp/hogo1/soumu/hogo02_00050.html), 2014. 5. 23. 보도, 2015. 10. 20. 최종검색.

수급 및 주거 확보를 위한 조정을 미리 실시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으로부터 갱생긴급보호 신청을 받고 사전조정을 감안하여 복지서비스 수급 등을 지원하며, 이후에도 후속지원으로서 갱생긴급보호기간(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담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한다. 법무성 보호국에서 밝힌 2013년 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의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인원 : 88명
- 지원 대상자 : 노숙인 57명, 지적장애 14명, 정신장애 7명, 장애인 3명, 알코올 중독 4명, 치매 3명(중복계상 있음)
- 지원 내용 : 거주지(갱생보호시설, 자립준비 홈 등)의 확보 66명, 취업 지원 8명, 생활보호수급조정 11명, 복지·개호 서비스 이용의 조정 17명 (중복 계상 있음)
- 후속 지원 : 63명

나. 교정단계

1) 출구지원의 개요

‘출구지원’이란, 교정시설 입소자 중에서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자립이 어렵거나 가족 등 귀주예정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교정시설을 퇴소하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지원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제도로써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연계하여 2009년 4월부터 특별조정제도가 있으며, 그 중심에 후생노동성이 ‘지역생활 정착촉진사업’(2011년까지는 ‘지역생활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정비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있다. 교정시설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소자를 교정시설 소재지 보호관찰소에 통지하고, 보호관찰소는 각 도도부현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특별조정 대상자에 대해 복지시설 입소,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조정한다.³³⁾

특별조정제도 외에도 출구지원에는 교정시설에서의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정 처우, 시범적인 운영이기는 하나 지역사회 내 훈련사업(나가사키 현, 시가 현, 이와테 현,

33)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4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59/nfm/n_59_2_7_2_2_2.html, 2015. 10.16. 최종방문).

토치기 현), 교정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갱생보호시설, 자립준비 홈(自立準備ホーム) 등에 의한 지원 등 다양한 대응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출구지원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재범 또는 누범 방지에 있으며, 특히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시발점은 200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2008(犯罪に強い社会の実現のための行動計画2008)」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교도소 출소자 등이 출소 후에 즉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도소 등의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한 상담지원 체제를 정비하는 대책과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도도부현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각 도도부현의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책이 제안되었다.³⁴⁾

나아가 2012년 7월 정부는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대책(再犯防止に向けた総合対策)」을 발표하면서 출구지원과 같은 대응이 재범방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내용으로서 노인 또는 장애인 중에 자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교도소 등 보호관찰소,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갱생보호시설, 복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 대상자의 조기 파악 및 신속한 조정을 통해 출소 후에 즉시 복지서비스에 연결하고 동시에 귀주예정지를 확보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³⁵⁾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1년 최고검찰청이 제정한 검찰 직원의 윤리 규정인 「검찰의 이념(檢察の理念)」에는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외에도 교정, 보호 그 밖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범죄의 방지와 죄를 범한 자의 갱생 등의 형사정책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제8조 참조). 출구지원과 관련한 일련의 대응을 통해 강조된 것은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에서 나아가 사회 속에서 범죄자의 갱생과 재기를 도모함으로써 사회 방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³⁶⁾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교정시설은 물론이고 지역 내 복지·의료 관계기관 등 사법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있는 것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34) 犯罪対策閣僚会議平成20年12月22日, 「犯罪に強い社会の実現のための行動計画2008」, 2008, 20쪽.

35) 犯罪対策閣僚会議平成24年7月20日, 「再犯防止に向けた総合対策」, 2012, 10쪽.

36) 浜田浩一, 위의 논문, 7쪽.

2) 교도소 내 노인수형자 처우

(1) 노인수형자 분류 및 처우 일반

수형자에 대한 처우 일반은 「형사시설 및 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刑事收容施設及び被收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平成17年5月25日法律第50号, 이하 ‘형사수용시설법’)」 등이 정하고 있다. 형사수용시설법상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65조 제1항이 “형사시설의 장은 형사시설의 노인, 임산부, 신체허약자, 기타 양호를 필요로 하는 피수용자에 대해서 그 양호를 필요로 하는 사정에 따라 부상과 질병자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수형자의 수용 분류는 「수형자의 집단편성에 관한 훈령에 관하여(受刑者の集団編成に関する訓令, 平成18年5月23日矯正訓令第3314号法務大臣訓令)」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노인수형자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표 3-6〉 일본 수형자의 속성별 수용 분류 기준

속성	부호
구류수형자	D
소년원예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16세 미만의 소년	Jt
정신상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 의료 업무를 주로 행하는 형사시설 등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M
신체상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 의료 업무를 주로 행하는 형사시설 등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P
여성	W
일본인과 다른 처우가 필요한 외국인	F
금고수형자	I
소년원예의 수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년	J
집행형기가 10년 이상인 자	L
가소성에 기대한 교정 처우를 중점적으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6세 미만의 성인	Y

출처: 「수형자의 집단편성에 관한 훈령에 관하여(受刑者の集団編成に関する訓令, 平成18年5月23日矯正訓令第3314号法務大臣訓令)」, 별표 2.

〈표 3-7〉 일본 수형자의 범죄경향별 수용 분류 기준

범죄경향의 정도	부호
범죄경향이 진행되지 않은 자	A
범죄경향이 진행되고 있는 자	B

출처: 「수형자의 집단편성에 관한 훈령에 관하여(受刑者の集団編成に関する訓令, 平成18年5月23日矯正訓令第3314号法務大臣訓令)」, 별표 3.

노인수형자 중에서도 정신상·신체상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 의료 업무를 주로 행하는 형사시설 등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M, P)인 경우 일반 형사시설이 아닌 의료교도소 등에 수용될 수 있다. 일본에는 하치오지 의료교도소, 오카자키 의료교도소, 오사카 의료교도소, 기타큐슈 의료교도소가 있으며, 의료교도소는 전국의 교정시설로부터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받아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³⁷⁾ 일반 형사시설에 수용된 자인 경우에도 의료상 등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호를 붙이고 이를 처우에 고려한다고 한다(「수형자의 집단편성에 관한 훈령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즉 정신치료를 위해서 의료 업무를 주로 행하는 형사시설 등에 수용될 필요는 없으나 정신의료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는 m, 신체치료를 위해서 의료 업무를 주로 행하는 형사시설 등에 수용될 필요는 없으나 신체의료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는 p, 목욕, 배설, 식사, 보행 등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동작에 지장이 있어 거실의 지정, 작업의 지정, 기타 처우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는 s로 표기한다. 따라서 노인수형자 중에 일반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내는 자들은 경우에 따라 m, p, s의 지표로 분류되어 처우상 배려 등을 받고 있다.³⁸⁾

보다 구체적인 노인수형자 처우를 살펴보기 위해 후추교도소의 노인수형자 대상 교정시설 및 처우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후추교도소는 범죄경향이 농후한(수형자의 수용 분류 기준상 B) 남성 수형자와 외국인 남성 수형자를 최대 2,668명까지 수용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교도소 중에 하나이다. B지표 수형자는 복역을 반복하고 있거나 폭력단 등 반사회적 집단에 관련되어 있거나 각성제 등의 약물사범을 반복하거나 알콜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 갱생과 원만한 사회복귀에 각종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⁹⁾

37) 하치오지 의료교도소 제공 자료(2015. 9. 15. 기관 방문).

38) 강은영·권수진·원혜욱·김상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79쪽.

39) 후추교도소 제공 자료(2015. 9. 14. 기관 방문).

〈표 3-8〉 후추교도소의 노인수형자 추이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수용인원	2,921	2,838	2,664	2,566	2,416
65세 이상 수형자	295	298	333	367	401
비율	10.1	10.5	12.5	14.3	16.6

출처: 후추교도소 제공 자료(2015. 9. 14. 기관 방문).

일본의 전체 교도소 수형인원과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후추교도소의 전체 수용인원은 점차 감소해왔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수형자 수는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전체 수용인원의 16.6%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수형자 중에서도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인 동작에 지장이 있는 자가 노인수형자의 약 47%를 차지하여 노인수형자의 거의 2명 중에 1명이 양호적 배려를 요한다고 한다(2013년 기준).⁴⁰⁾ 아래에서는 후추교도소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겠다.

(2) 교정시설

법률상 수형자는 교도작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신체·정신적 문제가 없는 노인수형자는 일반수형자와 마찬가지로 금속, 양재 등 생산 작업, 그리고 취사, 경리 등 개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수형자의 경우 고령에 의해 체력, 신체·인지 기능 저하, 장애, 질병 등이 있어 일반수형자와 같은 종류와 강도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후추교도소에서는 양호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수형자 등이 취업하는 공장(이하 ‘양호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후추교도소에는 6개의 양호 공장이 있으며, 일반 공장과 달리, 체력과 신체·정신적 부담이 적은 작업, 예를 들어 수건을 자루에 채워 넣거나 사용을 마친 옷걸이에서 스티커를 떼어내는 등의 단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호공장 안에는 거동이 불편한 수형자를 위해 공장 바닥에 다다미를 깔고, 앉은 채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공간도 있다. 이러한 양호공장에서 일하는 노인수형자 대부분은 일반수형자처럼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일과를

40) 齊藤哲也, 위의 논문, 29쪽.

조정하고 있다.⁴¹⁾

(3) 교정·교화 프로그램

후추형무소에서는 노인을 포함하여 정신질환 등에 시달리고 집단생활이 어려운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이들을 집단 활동에 적응 시키고, 정서 안정, 책임감 및 의욕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룹을 편성하여 하루에 일정 시간 야외에서 제초작업이나 원예, 청소작업 등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취업지원 직원이 개별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응력이나 직업 의욕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그밖에 사회복귀를 대비해서 복지관계자인 외부 강사가 강의를 통해 도덕 교육, 텃센이나 팸셀 계산 등 교과 교육, 대인 교류 장면을 상정한 자기표현력 향상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⁴²⁾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노인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무성은 고령 또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출소 후 사회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수형자에 대해서 출소 후 필요에 따라 복지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자립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처우 프로그램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⁴³⁾

- 뇌기능 유지 트레이닝
- 건강관리, 체력유지, 영양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상 필요한 지식 부여
- 사회복귀 등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 대인관계 자세 지도

(4) 사회복귀지원지도

후추형무소는 2013년부터 교육(일반개선지도)의 일환으로 노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귀지원지도를 시작하였다. 양호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수형자 중에서

41) 후추교도소 제공 자료(2015. 9. 14. 기관 방문); 齊藤哲也, 위의 논문, 29~30쪽.

42) 이상 齊藤哲也, 위의 논문, 30~31쪽.

43) 일본 법무성 제공 자료(2015. 9. 16. 기관 방문).

10명 정도를 하나의 그룹으로 편성하고 일주일에 2회 정도 2개월에 걸쳐 복지, 노동, 건강관리, 살아갈 보람 등에 대해서 교육부 직원이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교단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롤 플레이를 실시하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발언을 이끌어 내거나 수형자끼리 대화를 나누어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활동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체력 저하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건강 체조를 지도하는 것도 있다. 또한, 이 지도는 대체로 그룹지도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출소 전에 지도자가 수강자 한 사람씩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지도 사항을 확인하고, 자립을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⁴⁴⁾

3. 특별조정제도

가. 제도의 개요

2006년 법무성이 실시한 특별조사 등에 의하면, 교도소 출소자 등 중에는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출소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는 상황에 놓인 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법무성이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특별조정’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특별조정이란, 교정시설 피수용자 중에 고령 또는 장애를 가지며, 적당한 귀주예정지가 없는 자에 대해서 출소 후 신속하게 적절한 간호,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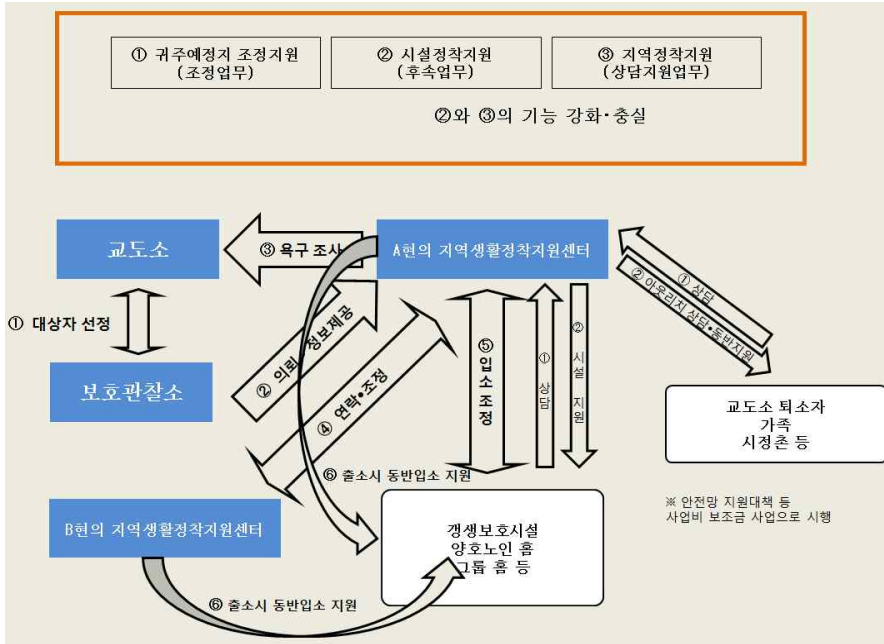
이러한 대응의 중심에는 후생노동성의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2011년까지는 ‘지역생활정착지원사업’)이 있다.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에 의해 정비가 진행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2011년 말 전국 47개 모든 도도부현에 설치 완료되었고, 교정시설 입소 중의 상담 등을 통해 퇴소 후의 귀주예정지 확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⁴⁶⁾ 2012년부터는 ① 입소 중에 귀주예정지를 조정하는 조정(コーディネート) 업무에 중점을 두던 사업에서 교정시설 퇴소 후에 ② 사회복지시설 입소 후의

44) 이상 일본 법무성 제공 자료(2015. 9. 16. 기관 방문); 齊藤哲也, 위의 논문, 31쪽.

45) 강은영 외, 위의 보고서, 210쪽.

46) 전국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http://zenteikyo.org/>) 참조.

정착을 위한 후속(フォローアップ) 업무 및 ③ 퇴소 후의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일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②와 ③ 업무를 강화·확충하였다.



출처: 法務性交政局, 地域生活定着促進事業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kyouseishisetsu/index.html), 2015. 10.16. 최종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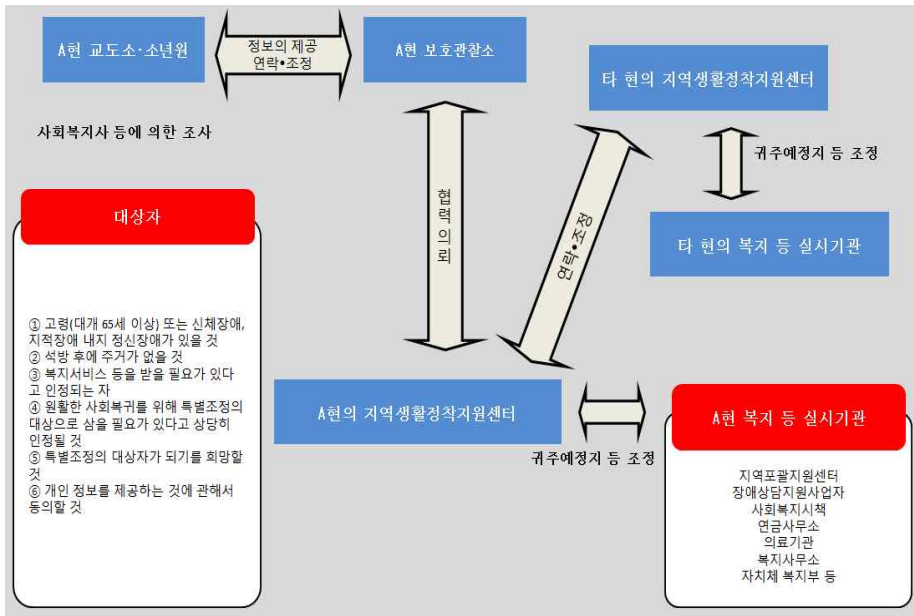
[그림 3-3] 지역생활촉진사업

나. 제도의 내용

특별조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령 또는 장애로 특히 자립이 곤란한 교정시설 수용중인 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보호, 생활환경 조정 등에 대하여」 제2조).

- ① 고령(대개 65세 이상) 또는 신체장애, 지적장애 내지 정신장애가 있을 것
- ② 석방 후에 주거가 없을 것
- ③ 고령 또는 신체장애, 지적장애 내지 정신장애에 의해 석방된 후에 건전한 생활태도를 보유하고 자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의 위생 복지에 관한 기관, 기타 기관에 의한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별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상당히 인정될 것
- ⑤ 특별조정의 대상자가 되기를 희망할 것
- ⑥ 특별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공의 위생 복지에 관한 기관, 기타 기관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 동의할 것



출처: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4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59/nfm/images/full/h7-2-2-07.jpg>), 2015. 10.16. 최종방문.

[그림 3-4] 특별조정제도

특별조정의 절차로는 먼저 교정시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피수용자를 교정시설 소재지의 보호관찰소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에서 면접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황을 확인하여 특별조정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보호관찰소는 적절한 각종 복지서비스(장애인 수첩의 발급,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등)를 얻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 소재지 도도부현의 지역생활 정착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한다. 협조를 요청 받은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귀주예정지 등의 조정을 실시하고, 교정시설 출소 후에 복지시설 입소가 예정된 경우에도 수용시설 등의 사정에 따라 즉시 입소할 수 없는 경우 지정갱생보호시설 등에서 일시

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계속한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후생노동성에 의해 각 도도부현마다 1개소씩(홋카이도는 2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의 직영에 의한 경우와 민간법인·단체에 업무가 위탁되어 수탁자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등 6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①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교정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등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입소할 시설 등의 알선 또는 복지서비스 등의 신청을 지원하는 등의 '조정(コーディネート)업무', ② 조정업무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퇴소 후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본인의 처우와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조언 등을 하는 '후속(フォローアップ)업무', ③ 교정시설에서 퇴소한 자 등의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에 대해 본인이나 그 관계자로부터의 상담에 따라 조언과 지원을 실시하는 '상담지원 업무' 등이 주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는 그 지역의 자치체 복지부국, 복지사무소, 연금사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⁴⁷⁾

한편, 특별조정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나 의료·복지서비스에 연결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귀주예정지 확보 등을 위해서 각 교도소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조정도 존재한다.⁴⁸⁾ 그러나 특별조정에서는 출소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에 특별조정 대상자를 인계하지만, 여기에서는 보호담당 형무관과 복지전문관 등이 입소 예정 시설까지 대상자와 동반하는 등 특별조정과 독자조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별조정을 비롯하여 이러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일선교도소에 사회복지사 등 복지전문가 근무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 등은 주로 특별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각 교도소의 독자조정과 그밖에 출소 전 수형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설명 및 상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7)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지침(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の事業及び運営に関する指針, 平成21年5月27日付社援総発第0527001号)」 등 참조.

48) 齊藤哲也, 위의 논문, 33쪽.

〈표 3-9〉 사회복지사 배치 상황 및 특별조정 대상자 수

(단위: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회복지사 배치 교도소 수	62	67	67	67	67	69
사회복지사 수	70	75	75	92	92	94

출처: 일본 법무성 제공 자료(2015. 9. 16. 기관 방문).

다만, 특별조정이 아니더라도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협력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출소일이 가까워서도 병세에 시달리거나 출소 후에 당분간 치료를 할 병원에 입원을 조정하는 때에 일정한 정도까지 병세가 회복되면 요양병원에 이전하거나 퇴원하거나 하는 때에 이전이나 퇴원에 필요한 절차가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상담지원 업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⁴⁹⁾ 따라서 특별조정이나 각 형사시설의 출구지원에 있어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가지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제도의 현황

2014년판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3년 특별조정이 종결된 인원은 637명이며, 이는 노인 299명, 지적장애인 234명, 정신장애인 176명, 신체장애인 104명(중복계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별조정의 결과 복지시설 등으로 연결된 인원은 419명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장애인 입소시설 92명, 민간주택 74명, 의료기관 56명, 보호시설 50명, 개호보협시설 32명 등에 입소하게 되었다.⁵⁰⁾ 특별조정을 비롯하여 교정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후생노동성의 자료로부터 살펴볼 수 있었다.⁵¹⁾

먼저 조정업무, 후속업무, 상담지원 업무를 통해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자는 2011년 2,471명에서 2014년 4,237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조정업무에 의해 교정시설 퇴소 후에 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언, 상담 등을 하는 후속업무의 지원을 받은 자가 2011년(722명)과 2014년(1,640명) 사이에

49) 齊藤哲也, 위의 논문, 34쪽.

50)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6年版犯罪白書”

(http://hakusy01.moj.go.jp/jp/61/nfm/n61_2_2_5_1_2.html) 2015. 10.16. 최종방문.

51) 厚生労働省, 矯正施設退所者の地域生活定着支援, 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の支援状況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050459.pdf>), 2015. 10.25. 최종검색.

2배 이상이 되었다. 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지원인 상담지원 업무도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1.7배 정도가 되었다.

〈표 3-10〉 조정업무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조정을 실시한 자	1,041	1,240	1,234	1,385
교정시설 퇴소 후 시설에 거주하는 자	500	689	628	743
거주 지역에서 받아들일 조정을 진행 중인 자	418	415	490	529
'복지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 및 질병 악화 등에 의해 지원을 거절한자	123	136	116	113

〈표 3-11〉 후속업무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교정시설 퇴소 후 후속업무를 실시한 자	722	1,081	1,430	1,640
지원이 종료된 자(지역에 정착한 자)	181	296	429	484
지원이 계속 중인 자	541	785	1,001	1,156

〈표 3-12〉 상담지원 업무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상담지원을 실시한 자	708	926	1,098	1,212
지원이 종료된 자	294	428	578	604
지원이 계속 중인 자	414	498	520	608

출처: 厚生労働省, 矯正施設退所者の地域生活定着支援, 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の支援状況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050459.pdf>), 2015. 10.25. 최종검색.

교정시설 퇴소 후에 시설에 거주하는 자들은 주로 갹생보호시설이나 자립준비 홈에 거주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이들은 갹생보호시설, 자립준비 홈(27.3%), 자택, 아파트, 공영주택 등(16.8%), 그룹 홈, 케어 홈(11.3%), 무료소액숙박시설, 간이숙박시설(7.5%), 장애인지원시설(7.3%), 병원(7.3%), 구호시설(7%), 기타(5.8%)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로노인 홈(3.2%)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 주택(1.9%) 등 비교적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표 3-13〉 교정시설 퇴소 후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시설 현황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갱생보호시설, 자립준비 홈	143	215	194	202
자택, 아파트, 공영주택 등	108	121	92	125
장애인지원시설(구법 시설 포함)	53	52	42	54
그룹 홈, 케어 홈	35	51	53	84
병원	33	67	70	54
구호시설	27	42	32	52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 주택	22	10	9	14
양호노인 홈	14	22	21	24
무료소액숙박시설, 간이숙박시설	16	29	31	56
유료노인 홈	9	19	20	29
특별양호노인 홈	7	4	7	6
기타	33	57	57	43
계	500	689	628	743

이들을 대상으로 연령·장애별로 나누어 자세히 보면, 65세 이상에서는 경도의 치매나 장애가 의심되는 자가 압도적으로 높다(66.3%).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자의 수는 비슷하다. 반면, 65세 미만에서는 지적장애(43%)와 정신장애(32.8%)를 가진 자가 대부분이고,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동시에 가진 자가 다른 혼합된 장애를 가진 자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는 교정시설을 퇴소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지기 쉬운 문제는 경도의 치매나 장애이며, 이러한 특성이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 등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현재로서는 대체로 노인과 장애인이 구분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복지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수형자가 급증할 경우 장애인과는 구분되는 어떠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4〉 교정시설 퇴소 후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연령·장애별 현황(2014년)

(단위: 명)

	계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체 +지적	신체 +정신	지적 +정신	신체 +지적 +정신	기타
65세 이상	359	35	39	34	5	5	3	0	238
65세 미만	384	40	165	126	11	7	27	1	7
계	743	75	204	160	16	12	30	1	245

주: 기타에는 경도의 치매나 장애가 의심되는 자 등이 포함됨.

출처: 厚生労働省, 矯正施設退所者の地域生活定着支援, 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の支援状況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050459.pdf>), 2015. 10.25. 최종검색.

제3절 일본 이외의 국가

1. 독일

가. 독일의 노인범죄 현황

독일에서의 노인범죄는 통상 60세 이상의 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증가한 기대수명을 반영하기 위해 그 기준을 65세로 설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⁵²⁾ 교도소에서는 그 안에서 가속화되는 노화를 이유로 55세 또는 62세부터 노인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 60세 이상인 자가 행한 범죄를 노인범죄라고 하고 있으며, 독일의 은퇴 연령이 대체로 67세이므로 더 낮은 연령을 노인범죄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⁵³⁾ 여기에서는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노인범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52) Von Thomas Gesterkamp, 'Graue Kriminalität-Senioren als Straftäter', Deutsche polizei, 2013, 7쪽.

53) Maik Krüger, 'Soziale Beziehungen und spezielles Übergangsmanagement bei älterenlteren Gefangenen', 2010, 7쪽.

〈표 3-15〉 연령별 검거인원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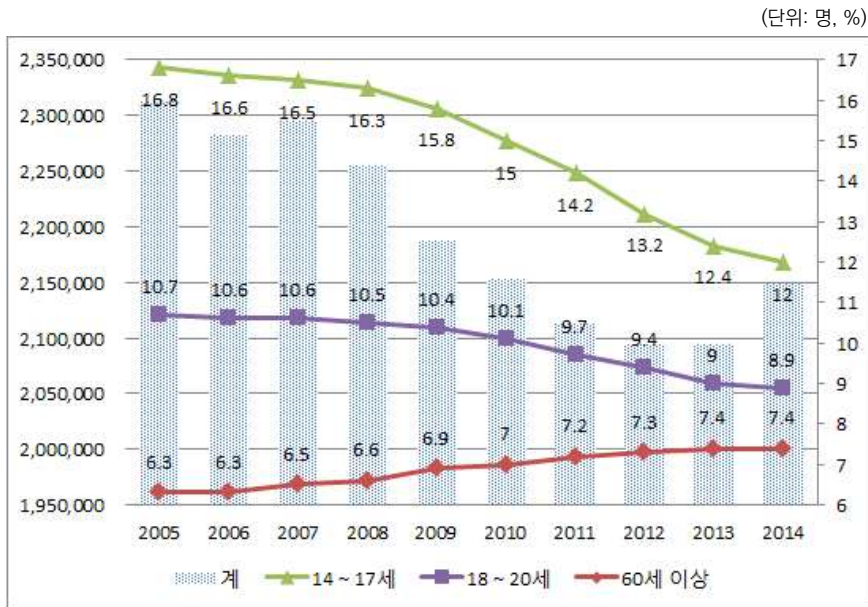
	연령별 검거인원							
	계	14~17세	18~20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5	2,313,136	387,574	247,450	547,769	443,061	355,864	186,243	145,175
2006	2,283,127	378,934	241,824	539,405	427,489	359,820	191,923	143,732
2007	2,294,883	379,459	242,878	537,248	417,738	368,499	199,427	149,634
2008	2,255,693	367,160	237,190	532,364	405,455	366,784	198,598	148,142
2009	2,187,217	345,329	227,847	518,970	387,102	358,301	199,459	150,209
2010	2,152,803	323,503	216,764	519,706	386,258	352,957	202,697	150,918
2011	2,112,843	300,336	204,491	517,067	385,006	348,380	204,994	152,569
2012	2,094,123	275,706	196,255	526,524	392,469	342,754	208,125	152,290
2013	2,094,160	259,480	188,670	532,594	406,260	338,995	213,475	154,686
2014	2,149,504	258,647	192,289	552,499	429,651	337,437	220,604	158,377
	연령별 검거인원 구성비							
	계	14~17세	18~20세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5	100.0	16.8	10.7	23.7	19.2	15.4	8.1	6.3
2006	100.0	16.6	10.6	23.6	18.7	15.8	8.4	6.3
2007	100.0	16.5	10.6	23.4	18.2	16.1	8.7	6.5
2008	100.0	16.3	10.5	23.6	18.0	16.3	8.8	6.6
2009	100.0	15.8	10.4	23.7	17.7	16.4	9.1	6.9
2010	100.0	15.0	10.1	24.1	17.9	16.4	9.4	7.0
2011	100.0	14.2	9.7	24.5	18.2	16.5	9.7	7.2
2012	100.0	13.2	9.4	25.1	18.7	16.4	9.9	7.3
2013	100.0	12.4	9.0	25.4	19.4	16.2	10.2	7.4
2014	100.0	12.0	8.9	25.7	20.0	15.7	10.3	7.4

출처: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Bundeskriminalamt, 각 연도

(http://www.bka.de/DE/Publikationen/PolizeilicheKriminalstatistik/pks__node.html?__nnn=true), 2015. 11. 5. 최종검색.

독일의 연령별 검거인원 추이를 보면, 전체범죄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대체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노인범죄의 경우 2006년(1,443명 감소), 2008년(1,492명 감소), 2012년(279명 감소) 다소 감소하였던 때를 제외하고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이에 비해 소년(14~17세)이나 청년(18~20세)의 범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범죄에서 노인범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범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추이는 다른 연령대

와 달리 감소한 적이 없으며, 이는 50~59세 연령대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소년(14~17세)이나 청년(18~20세)의 경우 0.1~0.8%에 걸쳐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출처: 위의 <표>를 재구성함.

[그림 3-5] 연령별 검거인원 구성비 추이

그러나 이와 같이 60세 이상 노인의 검거인원 및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노인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4년 독일의 60세 이상 인구는 22,166,928명으로 이는 전체인구 81,197,537명의 27.3%이다.⁵⁴⁾ 이 중에 범죄를 저지른 노인은 0.7%이며,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27.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전체범죄에서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7.4%에 불과한 것이다(2014년 기준).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에서 60세 이상 검거인원은 전체 검거인원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죄명별 검거인원 및 구성비를 보면, 노인범죄 특유의 범죄유형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노인은 15%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산죄

54)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nach Altersgruppen'(Deutschland(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Bevoelkerung/Bevoelkerungsstand/Tabellen/_Irb-ev01.html?cms_gtp=151914_list%253D1&https=1), 2015. 11. 4. 최종방문.

의 경우만 16.4%를 차지하고 있다. 파산죄에 이어 과실치사(14.7%), 방화죄 및 화재위협야기죄(14.5%), 배임죄(14%), 비공격적 절도죄(10.5%) 순이다. 다만 이 연방범죄국의 범죄통계에는 교통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인은 주로 감각운동 능력의 감소로 인해 교통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뺑소니, 음주운전, 과실치상 등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⁵⁵⁾

〈표 3-16〉 죄명별 60세 이상 검거인원(2014년)

(단위: 명, %)

죄명	계	60세 이상	비율
생명에 관한 죄	3,684	312	8.5
모살(형법 제211조)	829	51	6.2
고살 및 촉탁에 의한 살해(형법 제212, 213, 216조)	1,893	128	6.8
과실치사(형법 제222조, 교통사고 관련 제외)	883	130	14.7
낙태(형법 제218, 218b, 218c, 219a, 219b조)	93	4	4.3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죄	33,101	2,223	6.7
폭력적 성범죄나 의존관계를 이용하는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죄(형법 제174, 174a, 174b, 177, 178조)	10,196	513	5.0
기타 성적 남용(형법 제176, 176a, 176b, 179, 182, 183, 183a조)	14,574	1,205	8.3
성적 총동의 이용(형법 제180, 180a, 180b, 181, 181a, 184, 184a, 184b, 184c, 184d, 184e, 184f조)	9,331	545	5.8
강 · 절도죄 및 인격적 자유에 관한 죄	594,771	37,104	6.2
강도, 강도적 공갈 및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죄(형법 제249~252, 255, 316a조)	29,435	315	1.1
신체 상해(형법 제223~227, 229, 230조)	447,886	24,700	5.5
인격적 자유에 관한 죄(형법 제232~233a, 234, 235, 236, 237, 238~239b, 240, 241, 316c조)	164,300	13,533	8.2
비공격적 상황에서의 절도(형법 제242, 247, 248a~c조)	394,826	41,408	10.5
공격적 상황에서의 절도(형법 제243~244a조)	100,451	1,999	2.0
재산죄 및 위조죄	574,236	29,947	5.2
사기(형법 제263, 263a, 264, 264a, 265, 265a, 265b조)	470,732	21,620	4.6
배임(형법 제266, 266a, 266b조)	16,044	2,251	14.0
횡령(형법 제246, 247, 248a조)	58,847	3,705	6.3
문서위조(형법 제267~271, 273~279, 281조)	47,536	2,531	5.3
통화 및 유로수표 위조(형법 제146~149, 151, 152, 152a조)	2,878	197	6.8
파산(형법 제283, 283a~d조)	4,833	795	16.4

55) Maik Krüger, 위의 논문, 2010, 7쪽.

8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죄명	계	60세 이상	비율
기타 범죄	512,988	45,835	8.9
공갈(형법 253조항)	5,768	253	4.4
공무방해 및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는 죄(형법 제111, 113, 114, 120, 121, 123~127, 129, 130~134, 136, 138, 140, 145, 145a, 145c, 145d조)	107,767	7,653	7.1
범죄비호(직무상 범죄 제외) 및 장물취득(형법 제257, 258, 259~261조)	30,402	1,705	5.6
방화 및 화재위험야기(형법 제306~306d, 306f조)	10,329	1,497	14.5
경쟁, 부패 및 직무상 범죄(형법 제258a, 298~300, 331~353d, 355, 357조)	5,306	467	8.8
사행행위(형법 제284, 285, 287~293, 297조)	5,488	487	8.9
기타 형법에 해당되는 범죄(교통범죄 제외)	379,339	35,194	9.3

출처: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Bundeskriminalamt, 각 연도
http://www.bka.de/DE/Publikationen/PolizeilicheKriminalstatistik/pks__node.html?__nnn=true, 2015. 11. 5. 최종검색.

독일의 연령별 수형인원 추이도 대체로 검거인원 추이 및 양상과 다르지 않다. 다른 연령대의 수형자와 비교하여 노인수형자의 수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노인수형자의 수와 마찬가지로 그 수와 전체수형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60세 이상 수형자는 1,767명(2.8%)이었으나, 2014년 2,109명(3.9%)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전체수형자와 소년·청년(14~20세)의 경우 2006년을 제외하고 계속 감소해왔으며, 21~39세, 40~49세 연령대의 수형자도 2007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수형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69세, 70세 이상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60~64세 노인수형자의 증감에 비해 다소 두드러진다.

〈표 3-17〉 연령별 수형인원 추이

(단위: 명, %)

	연령별 수형인원							
	계	14~20세	21~39세	40~49세	50~59세	60~65세	65~69세	70세 이상
2005	63,183	4,383	40,369	12,070	4,594	1,078	470	219
2006	64,137	4,256	40,555	12,571	4,970	1,053	548	184
2007	64,273	4,346	40,131	12,718	5,160	1,078	604	236
2008	61,900	4,041	38,182	12,598	5,189	1,053	596	241
2009	61,387	3,996	37,783	12,381	5,184	1,108	650	285
2010	60,157	3,937	36,908	12,091	5,178	1,103	607	333
2011	59,563	3,697	36,491	12,028	5,268	1,146	566	367
2012	57,607	3,497	35,289	11,443	5,295	1,130	580	373
2013	56,149	3,266	34,475	10,971	5,314	1,165	582	376
2014	54,007	2,841	33,234	10,432	5,391	1,128	578	403
	연령별 수형인원 구성비							
	계	14~20세	21~39세	40~49세	50~59세	60~65세	65~69세	70세 이상
2005	100.0	6.9	63.9	19.1	7.3	1.7	0.7	0.3
2006	100.0	6.6	63.2	19.6	7.7	1.6	0.9	0.3
2007	100.0	6.8	62.4	19.8	8.0	1.7	0.9	0.4
2008	100.0	6.5	61.7	20.4	8.4	1.7	1.0	0.4
2009	100.0	6.5	61.5	20.2	8.4	1.8	1.1	0.5
2010	100.0	6.5	61.4	20.1	8.6	1.8	1.0	0.6
2011	100.0	6.2	61.3	20.2	8.8	1.9	1.0	0.6
2012	100.0	6.1	61.3	19.9	9.2	2.0	1.0	0.6
2013	100.0	5.8	61.4	19.5	9.5	2.1	1.0	0.7
2014	100.0	5.3	61.5	19.3	10.0	2.1	1.1	0.7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mographische und kriminologische Merkmale der Strafgefangenen zum Stichtag 31.3 (https://www.destatis.de/GPStatistik/receive/DESerie_serie_00000108). 2015. 11. 5. 최종검색.

나. 독일의 노인범죄 대응

1) 수사·재판단계에서의 대응⁵⁶⁾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에 사법부, 검찰청,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있으며, 각 주가 독자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및 바이에른(Bayern)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를 운용하고 있다. 고령자에 의한 범죄 중에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가

56)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0年版 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55/nfm/n_55_2_7_5_2_2.html)의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뮌헨(München) 지방검찰청에서는 절도에 대해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대략적인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① 피해액이 10~15유로 이하일 것, ② 전과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노인범죄자에 대해서는 ①의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액이 100유로 이하인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형사소송법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정하고 있다(동법 제153조a).⁵⁷⁾ 이는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피의자에게 부과사항 또는 준수사항을 과하여 공소제기를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피의자가 그것을 이행한 때에 기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도 노인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뮌헨 지방검찰청에서는 일반적으로 ① 피해액이 100유로 이하일 것, ② 전과가 없을 것을 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노인범죄자에 대해서는 ①의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액이 200 내지 300유로 이하일 것으로 하고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노인에 대해 양형상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 피해액이 1,000유로 이하의 사안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나, 60세 이상이 저지른 절도에 있어서는 피해액이 5,000유로 정도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7) 독일 형사소송법 제153조a(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때의 절차중지) ①경죄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판개시를 관할하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잠정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형사소추에 대한 공적 이익을 배제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책임의 중대성에 반하지 않는 한 피의자에게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으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고려대상이 된다.

1. 범죄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보상을 위한 일정 급부 제공
2. 공익시설 또는 국고에 대한 일정액 지불
3. 기타 공익을 위한 급부 제공
4. 일정한 액수의 부양의무 이행
5. 피해자와의 화해(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노력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6. 도로교통법 제2조b, 제2항 또는 제4조 제8항 제4문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세미나 참여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는 피의자에게 제2문 1호 내지 3호 및 6호의 경우 최고 6개월, 제2문 4호의 경우 최고 1년의 기간을 부여한다. 검사는 이들 준수사항과 지시사항 부과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또 피의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의자가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를 더 이상 경죄로서 소추할 수 없다. 피의자가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상환되지 않는다. 제2문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3조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2) 교정단계에서의 대응

독일에도 형집행 관련법에 특별히 노인을 위한 규정은 없다. 노인수형자는 대부분 일반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가 노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기관에 수감될 수 있다.⁵⁸⁾ 독일의 노인범죄자와 노인수형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수는 적지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년(14~17세)이나 청년(18~20세)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독일에서는 노인범죄의 증가뿐 아니라 노인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수형자를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 설립 및 노인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⁵⁹⁾

(1) 징엔(Singen) 노인교도소

징엔 노인교도소는 독일의 유일한 노인 전용교도소이다. 1970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징엔 지방법원(Amtsgericht) 관할 하에 설립하였으며, 콘스탄츠(Konstanz) 교도소에 속하는 지소이나 1976년부터 그 외부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전용교도소가 설립된 것은 노인수형자가 다른 연령대의 수형자와 함께 일반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가족, 친구와 단절되거나 건강의 악화, 질병의 발병 등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고,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노역에 종사하는 것이 교정·교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⁶⁰⁾

징엔 노인교도소는 형 선고시 6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15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교도소의 적정 수용인원은 54명이나 최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2013년 기준 노인수형자 50명이 수감되어 있다.⁶¹⁾ 이중에 85세가 최고령이고 62세가 최연소이다.⁶²⁾ 독일에서 65세 이상인 노인수형자에게는 노역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작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단순 노동이나 조립

58) Magistra Pamela Geissler, 'Alterskriminalität Tatverdächtige, Verurteilte und Inhaftierte ab dem 60 Lebensjahr in Österreich', Universität Wien, 2013, 156쪽.

59) 원혜옥,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39쪽.

60) 강은영 외, 위의 보고서, 255쪽.

61) 강은영 외, 위의 보고서, 256쪽.

62) Die Welt, 'Ist das Senioren-Gefängnis nur ein "Knast light"?', 2014. 6. 26. 보도 (<http://www.welt.de/vermischtes/article129491769/Ist-das-Senioren-Gefangnis-nur-ein-Knast-light.html>), 2015. 10. 30. 최종검색.

작업을 중심으로 노역을 할 수 있다.⁶³⁾

노인의 연령과 필요를 고려하여 가능한 만큼 활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무엇보다도 교도소 외부와의 접촉 및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지원의 하나로 매달 6시간의 방문이 허락되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가족, 친구 등을 만날 수 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가족 등이 참여하여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수형자의 방은 항상 열려 있으며, 연못이 있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샤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을 수 있다.⁶⁴⁾

독일의 노인수형자는 일반수형자에 비해 가석방을 허가받기 용이하며, 수형자의 출소 사유에 있어 3분의 2가 가석방, 3분의 1이 만기석방이다. 이들의 귀주예정지는 3분의 2가 입소 전에 거주하던 장소와 가족(아내, 자녀)의 주소이고 3분의 1이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입소 전의 경유시설 등이다.⁶⁵⁾

(2) 슈발름슈타트-치겐하인(Schwalmstadt Ziegenhain) 노인수용시설⁶⁶⁾

헤센(Hessen) 주 슈발름슈타트-치겐하인(Schwalmstadt Ziegenhain) 교도소에서는 55세 이상의 수용자를 위한 시설로서 특별사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노화의 준비를 위한 ‘표적 집단에 적합한 프로그램(zielgruppenspezifisches behandlung programm)’을 마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헬덴크라이스(feldenkraiss) 요법, 체스, 볼 게임(boule game) 등과 같은 휴식활동과 운동 등이 있다. 수형자는 교도소 건물 외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며, 출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요리, 영양, 의사소통, 갈등 해결, 영어 강의, 정보 제공 행사 등이 그것이다. 자원봉사자가 일상생활에 대한 문의에 응해주고 있다. 직원들은 노인을 상대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63)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0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55/nfm/n_55_2_7_5_2_2.html), 2015. 11. 5. 최종검색.

64) 이상 Magistra Pamela Geissler, 위의 논문, 161~162쪽을 요약·정리.

65)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0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55/nfm/n_55_2_7_5_2_2.html), 2015. 11. 5. 최종검색.

66) Magistra Pamela Geissler, 위의 논문, 163쪽을 요약·정리.

(3) 데트몰트(Detmold) 노인수용시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데트몰트 교도소에서도 특별사동의 형태로 노인 전용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원칙적으로 62세 이상을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60세 이상에 대해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일반수형자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용이 허용된다.⁶⁷⁾ 이 시설에서도 65세 이상인 노인수형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노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나, 노인수형자가 원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활동에 대해 통상 1달에 100 유로의 임금이 지급된다.⁶⁸⁾ 2013년 기준 22명을 수용하고 있고 42명을 더 수용하기 위한 시설 확충을 주 정부에 건의해둔 상황이다.⁶⁹⁾

2. 미국

가. 미국의 노인범죄 현황

독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노인범죄를 정하는 기준 연령은 명확하지 않다. 전국 교정협회(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NICIC)는 노인수형자를 5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미국 교정협회(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ACA)는 노인수형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적 손상의 수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⁷⁰⁾ 또한 각 주별로 고령을 이유로 석방될 수 있는 정책에서 그 기준 연령을 45~65세 사이로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에서도 연령은 최소한의 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만성적인 질병, 노화 등으로 인해 수형생활이 적합하지 않거나 장기적인 검진이나 관리가 필요한 상태 등 다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67) 강은영 외, 위의 보고서, 263~264쪽.

68) 강은영 외, 위의 보고서, 267쪽.

69) RP Online, 'Wenn Senioren im Gefängnis sitzen', 2013. 11. 13. 보도 (<http://www.rp-online.de/nrw/wenn-senioren-im-gefaengnis-sitzen-aid-1.3813084>), 2015. 11. 5. 최종검색.

70) Ronald H. Aday · Jennifer J. Krabill, 'Older and Geriatric Offenders: Critical Issues for the 21st Century', Special Needs Offender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SAGE Publications, 2012, 206~207쪽.

〈표 3-18〉 연령별 검거인원 추이

(단위: 명, %)

	연령별 검거인원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5	10,369,819	2,551,699	3,442,110	2,071,375	1,631,309	534,906	75,165	63,255
2006	10,472,432	2,616,631	3,495,904	2,013,470	1,630,560	573,859	78,114	63,894
2007	10,698,310	2,678,117	3,580,847	2,020,109	1,643,367	624,940	86,194	64,736
2008	10,709,361	2,671,329	3,595,407	1,991,416	1,612,361	673,602	95,312	69,934
2009	10,741,157	2,572,186	3,667,873	2,021,009	1,584,670	709,853	103,601	81,965
2010	10,223,558	2,256,388	3,564,507	1,987,251	1,507,179	724,100	108,665	75,468
2011	9,537,673	2,002,463	3,340,794	1,891,018	1,398,205	719,461	111,119	74,613
2012	9,446,660	1,824,023	3,353,490	1,941,196	1,371,750	755,671	118,772	81,758
2013	9,069,992	1,581,259	3,252,513	1,966,946	1,303,359	758,836	122,664	84,415
2014	8,790,627	1,441,564	3,135,794	1,984,108	1,244,757	765,782	129,286	89,336
	연령별 검거인원 구성비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5	100.0	24.6	33.2	20.0	15.7	5.2	0.7	0.6
2006	100.0	25.0	33.4	19.2	15.6	5.5	0.7	0.6
2007	100.0	25.0	33.5	18.9	15.4	5.8	0.8	0.6
2008	100.0	24.9	33.6	18.6	15.1	6.3	0.9	0.7
2009	100.0	23.9	34.1	18.8	14.8	6.6	1.0	0.8
2010	100.0	22.1	34.9	19.4	14.7	7.1	1.1	0.7
2011	100.0	21.0	35.0	19.8	14.7	7.5	1.2	0.8
2012	100.0	19.3	35.5	20.5	14.5	8.0	1.3	0.9
2013	100.0	17.4	35.9	21.7	14.4	8.4	1.4	0.9
2014	100.0	16.4	35.7	22.6	14.2	8.7	1.5	1.0

출처: FBI, Uniform Crime Reports: UCR

(https://www.fbi.gov/about-us/cjis/ucr/crime-in-the-u.s), 각 연도, 2015. 10. 30. 최종방문.

또한, 미국은 독일과 같이 연방제 국가로서 노인범죄나 노인수형자에 대해 각 주별로 달리 대응하고 있다. 유일한 전국 범죄통계인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s: UCR)를 보면, 검거인원의 마지막 구간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총 검거인원에서 65세 이상은 한국, 일본과 달리 2005년 63,255명(0.6%)에서 2014년 89,336명(1.0%)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사이에 증감이 있다. 반면, 50대와 60~64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20세 미만과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60대 이상'으로 구간을 설정해보면, 2005년 138,420명

(1.3%)에서 2014년 218,622명(2.5%)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50대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0.3~0.5%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노인범죄 빈도가 한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60대로 진입하는 노인인구의 증가가 노인범죄의 규모 및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견한다.

죄명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50대에서는 기타범죄(765,782명), 음주운전(238,018명), 마약사범(79,151명), 절도(74,036명), 기타폭행(74,036명), 만취행위(73,956명), 무질서행위(52,252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에서는 기타범죄(218,622명)가 압도적으로 많고, 음주운전(67,272명), 기타폭행(37,835명), 절도(21,784명), 마약사범(15,397명), 만취행위(13,569명)가 뒤를 이었다. 연방수사국의 범죄보고서는 폭력범죄(Violent crimes)를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가중폭행으로, 재산범죄(Property crimes)를 침입강·절도, 절도, 자동차 절도, 방화로 정의하고 있는데, 50세 이상의 범죄는 이에 거의 해당하지 않으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3-19〉 죄명별 50세 이상 검거인원(2014년)

(단위: 명, %)

	죄명별 검거인원				
	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계	8,790,627	482,692	283,090	129,286	89,336
고의적 살인(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8,267	292	213	103	100
강간(Rape)	16,473	849	491	266	288
강도(Robbery)	74,432	1,675	760	239	128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	293,005	17,038	9,812	4,448	3,730
침입강·절도(Burglary)	187,474	6,641	3,196	1,158	567
절도(Larceny-theft)	978,033	47,157	26,879	11,940	8,735
자동차 절도(Motor vehicle theft)	53,744	1,533	661	229	116
방화(Arson)	7,357	332	240	114	100
기타 폭행(Other assaults)	859,214	47,717	26,239	12,087	9,697
날조·위조(Forgery and counterfeiting)	44,609	2,064	1,085	390	227
사기(Fraud)	110,355	6,209	3,459	1,762	1,321

	죄명별 검거인원				
	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횡령(Embezzlement)	12,772	558	285	155	92
장물구입:수령·소지(Stolen property; buying, receiving, possessing)	70,170	2,308	1,087	391	215
기물파괴(Vandalism)	155,893	5,395	2,797	1,280	1,061
무기휴대: 소지 등(Weapons; carrying, possessing, etc.)	110,367	3,719	2,276	1,116	992
매음, 상업적 매춘(Prostitution and commercialized vice)	37,222	1,855	1,031	435	387
성범죄(강간, 매음 제외, Sex offenses; except rape and prostitution)	43,422	2,980	2,105	1,299	1,593
마약사범(Drug abuse violations)	1,223,505	51,625	27,526	10,591	4,806
도박(Gambling)	4,373	246	197	121	140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Offenses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	79,556	4,437	2,074	816	526
음주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872,184	62,585	41,328	21,550	16,285
주류법 위반(Liquor laws)	249,970	11,365	7,689	3,650	1,961
만취행위(Drunkenness)	328,466	32,305	19,947	8,970	4,599
무질서행위(Disorderly conduct)	341,979	19,410	11,771	5,367	3,871
부랑행위(Vagrancy)	21,810	2,504	1,757	917	408
기타 범죄(All other offenses; except traffic)	2,563,166	149,852	88,166	39,888	27,384
범죄행위의심(Suspicion)	1,068	41	19	4	7
청소년야간배회(Curfew and loitering law violations)	41,741	-	-	-	-
계	100.0	5.5	3.2	1.5	1.0
고의적 살인(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100.0	3.5	2.6	1.2	1.2
강간(Rape)	100.0	5.2	3.0	1.6	1.7
강도(Robbery)	100.0	2.3	1.0	0.3	0.2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	100.0	5.8	3.3	1.5	1.3
침입강·절도(Burglary)	100.0	3.5	1.7	0.6	0.3
절도(Larceny-theft)	100.0	4.8	2.7	1.2	0.9
자동차 절도(Motor vehicle theft)	100.0	2.9	1.2	0.4	0.2
방화(Arson)	100.0	4.5	3.3	1.5	1.4

	죄명별 검거인원				
	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기타 폭행(Other assaults)	100.0	5.6	3.1	1.4	1.1
날조·위조(Forgery and counterfeiting)	100.0	4.6	2.4	0.9	0.5
사기(Fraud)	100.0	5.6	3.1	1.6	1.2
횡령(Embezzlement)	100.0	4.4	2.2	1.2	0.7
장물구입·수령·소지(Stolen property; buying, receiving, possessing)	100.0	3.3	1.5	0.6	0.3
기물파괴(Vandalism)	100.0	3.5	1.8	0.8	0.7
무기휴대: 소지 등(Weapons; carrying, possessing, etc.)	100.0	3.4	2.1	1.0	0.9
매음, 상업적 매춘(Prostitution and commercialized vice)	100.0	5.0	2.8	1.2	1.0
성범죄(강간, 매음 제외, Sex offenses; except rape and prostitution)	100.0	6.9	4.8	3.0	3.7
마약사범(Drug abuse violations)	100.0	4.2	2.2	0.9	0.4
도박(Gambling)	100.0	5.6	4.5	2.8	3.2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Offenses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	100.0	5.6	2.6	1.0	0.7
음주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100.0	7.2	4.7	2.5	1.9
주류법 위반(Liquor laws)	100.0	4.5	3.1	1.5	0.8
만취행위(Drunkenness)	100.0	9.8	6.1	2.7	1.4
무질서행위(Disorderly conduct)	100.0	5.7	3.4	1.6	1.1
부랑행위(Vagrancy)	100.0	11.5	8.1	4.2	1.9
기타 범죄(All other offenses; except traffic)	100.0	5.8	3.4	1.6	1.1
범죄행위의심(Suspicion)	100.0	3.8	1.8	0.4	0.7
청소년야간배회(Curfew and loitering law violations)	100.0	-	-	-	-

출처: FBI, Uniform Crime Reports: UCR

(<https://www.fbi.gov/about-us/cjis/ucr/crime-in-the-u.s>), 2014, 2015. 10. 30. 최종방문.

그러나 죄명별 검거인원 구성비를 보면, 50대가 전체 검거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랑행위(19.5%), 만취행위(15.9%), 음주운전(11.9%), 성범죄(11.7%), 도박(10.1%) 등 순으로 높다. 60세 이상의 경우 성범죄(6.7%), 부랑행위(6.1%), 도박(6%), 음주운전(4.3%), 만취행위(4.1%) 순이었다. 이를 '50세 이상'으로 보면, 부랑행위(25.6%), 만취행위(20%), 성범죄(18.4%), 음주운전(16.3%), 도박(16.1%) 등이 전체 검거인원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령별로 다른 범죄예 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미국 연방교도소 및 주립교도소의 수형인원 추이를 보면, 먼저 전체 수형인원은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다소 감소하였다. 45세 미만의 수형인원은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에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전체 수형인원이 1,900명 증가하였으나, 4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3,100명(18~19세)에서 33,900명(35~39세)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45~54세의 수형인원은 68,700명, 55세 이상의 수형인원은 45,800명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로이다. 45세 미만의 수형인원이 전체 수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2003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45~54세 수형인원과 55세 이상의 수형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20〉 연령별 수형인원 추이(2007년~2011년)

(단위: 명, %)

	연령별 수형인원								
	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4세	55세 이상
2003	1,409,280	26,300	219,400	245,300	238,200	228,200	197,900	190,800	60,300
2004	1,433,800	24,600	222,800	253,000	236,100	230,100	199,400	196,200	69,900
2005	1,461,100	27,500	230,600	260,100	241,600	226,600	201,700	203,600	66,500
2006	1,502,200	23,100	209,000	261,100	244,900	233,100	215,500	232,900	80,200
2007	1,532,800	24,700	219,500	262,000	255,600	245,900	219,800	225,900	76,600
2008	1,540,100	24,800	219,900	262,400	256,600	247,500	220,400	227,800	77,800
2009	1,548,700	24,800	220,500	262,500	258,500	249,100	221,800	229,700	79,100
2010	1,550,600	21,700	184,100	253,000	253,100	215,200	197,500	298,400	124,900
2011	1,537,415	22,500	190,000	252,100	254,800	212,300	193,200	288,200	12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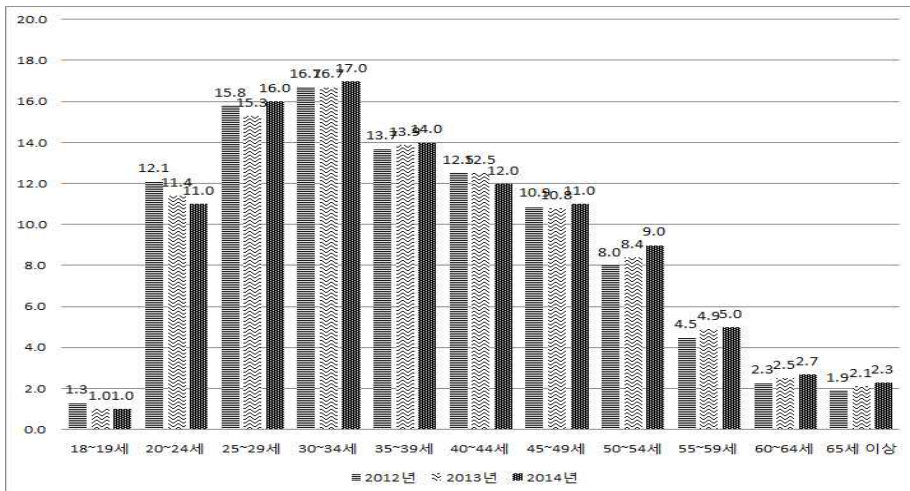
	연령별 수형인원 구성비								
	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4세	55세 이상
2003	100.0	1.9	15.6	17.4	16.9	16.2	14.0	13.5	4.3
2004	100.0	1.7	15.5	17.6	16.5	16.0	13.9	13.7	4.9
2005	100.0	1.9	15.8	17.8	16.5	15.5	13.8	13.9	4.6
2006	100.0	1.5	13.9	17.4	16.3	15.5	14.3	15.5	5.3
2007	100.0	1.6	14.3	17.1	16.7	16.0	14.3	14.7	5.0
2008	100.0	1.6	14.3	17.0	16.7	16.1	14.3	14.8	5.1
2009	100.0	1.6	14.2	16.9	16.7	16.1	14.3	14.8	5.1
2010	100.0	1.4	11.9	16.3	16.3	13.9	12.7	19.2	8.1
2011	100.0	1.5	12.4	16.4	16.6	13.8	12.6	18.7	7.9

주: Prisoners in 2006까지는 '55세 이상'이 마지막 구간이며, Prisoners in 2007부터는 '65세 이상'이 마지막 구간임. Prisoners in 2012부터는 연령별 수형인원에서 인원수가 아닌 그 비율만 제시하고 있음.

출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risoners in 2003~2011(<http://www.bjs.gov/index.cfm?ty=bse&sid=40>), 2015. 10. 30. 최종방문.

특히 전체 수형인원에서 55세 이상의 수형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 2003년 4.3%였으나 2014년 10%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45~54세 이상의 수형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인데, 2003년 13.5%에서 2014년 20%로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령별 검거인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55세 미만의 범죄인구가 노인범죄의 규모와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림 3-6]에서 보듯 최근 3년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이 전체 수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다른 연령대와 달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50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비율은 2030년 전체수형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⁷¹⁾ 현재 미국에서는 이처럼 증가하는 노인수형자 인구가 교정시설과 형사사법기관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후술하기로 한다.

(단위: 명, %)



출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risoners in 2012~2014

(http://www.bjs.gov/index.cfm?ty=pbse&sid=40), 2015. 10. 30. 최종방문.

[그림 3-6] 연령별 수형인원 추이(2012년~2014년)

71) Rikard · Rosenberg, 2007; Williams et al., 2006; Ronald H. Aday · Jennifer J. Krabill, 2012, 위의 책, 205~206쪽 재인용.

나. 미국의 노인범죄 대응

1) 수사·재판단계에서의 대응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범죄통계에서 전체 검거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5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3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의 검거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미만의 범죄율은 200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50대 검거인원은 2005년 534,906명(5.2%)에서 765,782명(8.7%), 60대 이상 검거인원은 2005년 138,420명(1.3%)에서 2014년 218,622명(2.5%)으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50대 검거인원은 전체 검거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사이에 매년 0.3~0.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범죄율이 현재로서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이들이 본격적으로 55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편입되는 시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범죄현장을 최초로 접하는 수사기관이며, 미국에서 경찰은 범죄의 심각성,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그리고 범죄자가 지는 책임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경찰을 대하는 노인피의자의 경우 범행을 진술 또는 부인하는 것이 성인피의자에 비해 고령에 따른 신체·정신적인 기능 저하로 인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수의 경찰서만이 노인범죄자의 그러한 행동과 동기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⁷²⁾

다음으로 재판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노인범죄자가 겪는 절차는 성인피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범죄자가 고령 또는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원의 통상적 내지 징벌적인 절차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Ronald H. Aday와 Jennifer J. Krabill가 정리한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대응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노인피고인의 경우 벌금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보다 젊은 범죄자에 비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⁷³⁾ 노인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일반 성인범죄자

72) Ronald H. Aday · Jennifer J. Krabill, Aging Offend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arquette Elder's Advisor, 7(2), 2006, 238쪽.

73) Gary Feinberg & M. David McGriff, Defendant's Advanced Age as a Prepotent Status in Criminal Case Disposition and Sanction, in OLDER OFFENDERS: CURRENT TRENDS 87, 87-119 (Sol Chaneles & Cathleen Burnett eds., 1989) (Ronald H. Aday ·

에 비해 유죄판결이나 더 심각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⁷⁴⁾

그러나 노인범죄자에 대한 기소나 양형 경향과 더불어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재판 과정에 있어 그들이 일반 성인범죄자에게 보장되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노인범죄자에게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노인범죄자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체력 저하, 집중력 또는 기억력의 감퇴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법원에서는 시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노인피고인에게 눈부심 없는 조명, 큰 활자 서류, 그리고 돋보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청력에 이상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하는 모든 관계자를 가까이 위치시키기도 한다.⁷⁵⁾

2) 교정단계에서의 대응

(1) 교정시설

앞서 미국의 범죄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세 이상의 노인수형자의 수나 수형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등 전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나, 형사정책적으로는 징역형의 비율이 높고 그 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⁷⁶⁾ 그러한 강경한 대응은 1970년대 뉴욕 주의 록펠러 마약법(Rockefeller Drug Laws), 1980년대 삼진법(three-strikes law) 등 범죄에 대한 일련의 ‘강경화(tough on crime)’ 정책으로 인한 결과였다.⁷⁷⁾ 또한, 1990년대 양형에 있어서도 양형진실조사(Truth in sentencing: TIS)⁷⁸⁾를 시행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가석방이나 조기

Jennifer J. Krabill, 2006, 위의 논문, 242쪽, 재인용).

74) RONALD H. ADAY, AGING PRISONERS: CRISIS IN AMERICAN CORRECTIONS 9~11(2003); D. J. Bachand, The Elderly Offender: An Exploratory Study with Implications for Continuing Education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1984)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on file with author) (Ronald H. Aday · Jennifer J. Krabill, 2006, 위의 논문, 242쪽, 재인용).

75) William E. Adams, Elders in the Courtroom, in ELDERS,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87, 97 (Max B. Rothman et al. eds., 2000) (Ronald H. Aday · Jennifer J. Krabill, 2006, 위의 논문, 244쪽, 재인용).

76) Magistra Pamela Geissler, 위의 논문, 158쪽.

77) The Osborne Association, ‘The High Costs of Low Risk: The Crisis of America’s Aging Prison Population’, 2014, 5쪽.

78) 양형진실조사(TIS)는 1990년대 양형개혁운동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서 그 일차적 목표는 가석방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판사가 부과하는 양형을 실제 교도소에서 복역

석방의 기회가 거의 제한되었고, 많은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노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가하는 노인수형자에 대한 교정기관과 교정시설의 예산 및 인력 부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⁷⁹⁾ 올해 미국 법무부는 연방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s: BOP)이 관리하고 있는 교정시설에 있어 50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체계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50세 이상 수용자는 2009년 24,857명에서 2013년 30,962명으로 25% 정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50세 이상 수용자에 대해 약 88,100달러(전체 예산의 약 19%)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일반수용자(평균 22,676달러)에 비해 노인수용자(평균 24,538달러)에게 더 많이 지출된 예산의 원인은 주로 건강관리, 의약품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러한 노인수용자에 대해 교도시설 내에서 의학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도관, 교도직원의 역량과 교육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교도시설 외부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동성이 제한된 노인수용자는 낮은 높이의 침대, 엘리베이터나 낮은 턱의 계단 등의 시설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교정시설은 많지 않았다.⁸⁰⁾

(2) 교정 · 교화 프로그램

최근 미국의 교정시설과 교정기관에서는 노인수형자에 대해 전체 수용인구의 절반 이하를 구성하는 초범 또는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수감된 집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습범 또는 연쇄범은 이미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며, 이들의 범죄는 대개 초기에 저지른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그러한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실질적인 재범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연구된 초범인 노인수형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⁸¹⁾

해야 하는 형량에 더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박미숙, '미국 각 주의 양형인자 분석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년, 99쪽).

79) U.S. Department of Justice, "The Impact of and Aging Inmate Population on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2015;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At America's Expense: The Mass Incarceration of the Elderly", 2012; Human Right Watch(HRW), "Old Behind Bars: The Aging Priso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2; Tina Chiu, "It's About Time: Aging Prisoners, Increasing Costs, and Geriatric Release", New York: Vera Institute of Justice, 2010 등 참고.

80) 이상 U.S. Department of Justice, 위의 보고서 참조.

81) Ronald H. Aday · Jennifer J. Krabill, 2012, 위의 책, 207~208쪽.

- 대개 늦은 나이의 수감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 교도소라는 충격/어려움으로부터 고통 받는다.
- 가족 구성원에 대해 저지른 폭력범죄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외부의 가족, 친구, 삶의 손실에 대한 회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성범죄/살인사건 때문에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특히 취약한 수형자의 경우 늦은 나이의 수감과 관련되어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
- 자신의 방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더 큰 사회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있다.
-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채로 수감된 수형자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자살 충동을 경험할 수 있다.
- 외부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여 종종 감옥의 건강관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노인수형자에 대한 신체적 질환 또는 기능 저하와 관련된 의료적 처우 외에도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수형자에 대한 교도작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거나 연령 등을 이유로 배제되는 노인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목적으로 하는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동의 종류와 범위는 주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여러 주에서 노인수형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⁸²⁾ 각 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되거나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2007년 기준).⁸³⁾

82) Lemieux, Dyeson, & Castiglione, 2002; Anno et al., 2004 (Ronald H. Aday · Jennifer J. Krabill, 2012, 위의 책, 216쪽, 재인용).

83) 이하 The Osborne Association, 위의 보고서, 2014, 6~7쪽.

- 오하이오 호킹 교정시설은 Aging 8이라는 지역 에이전시와의 공동작업으로 만성 질병 자기 관리와 당뇨 자기 관리 프로그램을 시설 내에서 시행하였다. 6주간 동료의 도움을 받는 이 프로그램들은 스텐포드 대학에서 경험에 의한 연구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중이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뉴저지와 오클라호마에서 시행되어 왔다.
- 네바다에서 지원자에 대해 시행되는 'True Grit' 프로그램은 노인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필요와 웰빙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1일 단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활동과 서비스는 물리치료와 오락, 그룹 그리고 개인 상담, 개를 이용한 치료, 음악 그룹, 성가대, 영화관, 신문, 그리고 섬세한 터치의 운동을 통한 골관절염의 발생을 늦추도록 설계된 물품 등이 이용된다. True Grit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방문하는 의사와 노인수형자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약물을 감소시켜 왔으며, 사회적 지원과 건강한 삶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 버지니아의 디어필드 교정센터는 노인수형자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동료 튜터링, 원예학, 그리고 시력이 퇴화한 노인수형자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 캘리포니아 Men's Colony에 수감된 노인수형자는 'Gold Coats'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알츠하이머 전문가 집단에 의해 훈련된 노인수형자가 치매를 앓는 동료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돌보아주며 그들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보고한다.
- 양골라 주립 교도소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교도소 직원과 자원한 수형자를 국가적으로 인증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시킴으로써 교도소 내에서 죽어가는 노인수형자를 돌보도록 한다. 뉴올랜드의 교도소와 연계된 지역 대학 병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호스피스 서비스가 추가 비용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개 주에서 최소한 75명 죄수들에게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뉴욕의 피시킬 교정시설에 위치한 단체는 인지적 기능이 손상된 치매 또는 노인수형자에게 전문적인 보조원을 붙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수형자에게

93,000달러 정도가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수형자에게 필요한 41,000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이다. 이를 Regional Medical Unit이 지불하고 있다.

덧붙여 앞서 언급한 연방교정국(BOP)의 노인수형자 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법무부는 연방교정국이 교정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인간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⁸⁴⁾

1. 국가적인 이용 지침과 수형자 동반 프로그램의 목적을 개발한다.
2. 특히 노인수형자 수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설에 사회 복지사를 추가로 두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한다.
3. 모든 직원들에게 노화 징후를 식별하고 노인수형자와 대화하는 훈련을 제공한다.
4. 많은 수의 노인수형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설 내 모든 기반시설과 접근성을 재평가한다.
5. 이러한 기관들에 노인수형자가 높게 집중되는 것에 대해 다른 단위, 기관, 구조 등을 만드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다.
6. 노인수형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7. 노인수형자의 수감 이후 의료 보호 및 은퇴 요구를 다루는 석방 준비 과정 섹션을 개발한다.
8. 연령 요구사항을 낮추고 최소 10년 제형 요구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적합한 노인 수형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시혜적인 방면 정책의 개정을 고려한다.

(3) 조기석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미국에서는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교정기관과 교정시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15개 주와 콜롬비아에서는 노인수형자를 조기석방할 수 있는 정책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택적 탈구금화(selective decarceration)의 일환이라고 한다.⁸⁵⁾ 각 주는 재량에 따라 조기석방이 가능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 이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주 정부의 노인수형자 수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범 위험이 경미한 노인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84) U.S. Department of Justice, 위의 보고서, 2015, 53~54쪽.

85) 자세한 내용은 강은영 외, 위의 보고서, 247쪽~251쪽 참고.

복귀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⁸⁶⁾ 한편, 연방교정국(BOP)에서는 연방교도소를 대상으로 노인수형자의 조기석방을 도모하는 ‘Smart on Crime’ 프로그램을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수형자라는 기준과 그 밖에 엄격하고 제한적인 요건이 적용되어 2014년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조기석방된 노인수형자는 2명에 불과하였다.⁸⁷⁾

각 주에서 노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석방 정책은 아래 <표 3-21>과 같다. 대부분 최소 연령을 60~65세로 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 주가 45세로 전미 최연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 기준에 더하여 조기석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만성적 또는 장기적인 질병, 노화와 관련된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교정시설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치료와 관리를 요한다. 오리건 주, 워싱턴 주 등은 연령 기준 없이 영구적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교도소 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신체·정신적 기능의 이상을 기준으로 조기석방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표 3-21> 주별 노인수형자 조기석방 정책

	법령	최소 연령	요건
앨라배마 (AL)	Ala. Code §§ 14-14-1 to 14-14-7	55	55세 이상 수형자 중 장기적 중병을 앓는 자,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거나 고령으로 인한 장기적 병을 가진 자
콜로라도 (CO)	Colo. Rev. Stat. §§ 17-1-102; 17-22.5-403.5	65	65세 이상 수형자 중 스스로를 케어할 수 없는 자, 사회에 위협적이지 않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특정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코네티컷 (CT)	Conn. Gen. Stat. § 54-131k	-	고령 혹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사회에 위협적이지 않으며 형의 절반 이상 수감된 자
컬럼비아 (DC)	D.C. Code § 24-465	65	수감 이후 질병을 얻은 65세 이상의 수형자
루이지애나 (LA)	La. Rev. Stat. Ann. § 15:574.4(A)(2)	45	45세 이상의 수형자 중 최소 30년 이상의 형을 받고 20년은 수감된 자
메릴랜드 (MD)	Md. Code Ann., Crim. Law § 14-101(g)	65	폭력범죄로 최소 15년 이상 형을 채운 65세 이상 수형자
미주리 (MO)	Mo. Rev. Stat. § 217.250	-	요양원(long-term nursing home)에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수형자

86) Tina Chiu, 위의 보고서, 7쪽.

87) U.S. Department of Justice, 위의 보고서, 45쪽.

	법령	최소 연령	요건
뉴욕 (NC)	N.C. Gen. Stat. §§ 15A-1369 to -1369.5	65	65세 이상의 수형자 중 장기적 질병 혹은 노화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사회에 위협적이지 않은 자
뉴멕시코 (NM)	N.Mex. Stat. § 31-21-25.1	65	장기적인 질환 혹은 연령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사회에 위협적이지 않은 자
오클라호마 (OK)	Okla. St. Tit. 57, § 332.7	60	1998년 7월 1일 전에 감옥에 들어온 65세 이상의 수형자 중 50%이상의 형을 채운 자
오리건 (OR)	Ore. Rev. Stat. § 144.122(1)(c)	-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는 등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노인수형자
텍사스 (TX)	Tex. Gov't. Code § 508.146	-	노인,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신지체를 가진 개인,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개인, 그리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가 갖추어진 자
버지니아 (VA)	Va. Code Ann. § 53.1-40.01	60/ 65	60세 이상의 수형자 중 10년 이상 수감되거나 65세 이상의 수형자 중 5년 이상 수감된 자
워싱턴 (WA)	Wash. Rev. Code § 9.94A.728	-	심각한 질병이 있어 지출이 큰 건강 검진이 필요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건강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석방
위스콘신 (WI)	Wis. Stat. § 302.1135	60/ 65	60세 이상의 수형자 중 10년 이상 수감되거나 65세 이상의 수형자 중 5년 이상 수감된 자, 신청서를 통해 추후 감시가 가능한 자
와이오밍 (WY)	Wyo. Stat. Ann. § 7-13-424	-	고령으로 인해 손상된 신체 혹은 정신적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으며 교도소 관련 시설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건강 모니터링을 요하는 자

출처: Tina Chiu, It's About Time: Aging Prisoners, Increasing Costs, and Geriatric Release, New York: Vera Institute of Justice, 2010, 7쪽.

주에 따라서는 형의 절반이나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이상을 복역한 이후에 조기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메릴랜드 주의 경우 각종 범죄 중에서도 조기석방될 수 있는 범죄를 폭력범죄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석방된 노인 수형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콜로라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3명을 석방하였으며, 오리건 주는 1년에 2명 이상을 석방하지 않고 있으며, 미주리 주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236명의 수형자를 조기석방하였으나 환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중에 노인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하다.⁸⁸⁾

88) Tina Chiu, 위의 보고서, 6쪽.

결론적으로 연방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에서도 조기석방의 대상이 되는 노인수형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앞서 예견된 바와 같이 전체 노인수형자의 수의 증가는 고스란히 정부와 교정시설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필연적으로 이들 중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입소하는 수형자가 많을 것이고, 교도소에서 노화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조기석방 논의가 다소 성급해보일 수 있다.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을 가진 수형자라 하더라도 형기를 마치지 않고 석방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방된다 하더라도 귀주예정지가 없거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교도소와 사회복지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석방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조기석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⁸⁹⁾

제4절 시사점

1.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

이제까지 각국의 공식범죄통계와 관련 제도를 통해 노인범죄에 대한 각국의 형사정책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노인범죄율이나 노인범죄의 양상,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가역적인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하는 노인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연령대의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노인범죄에 있어 그 범죄의 원인은 주로 은퇴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변화, 심리·정서적 문제, 빈곤 등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형사사법과 복지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복지 혜택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기본적 인권, 신속·공정한 절차 및 형벌권의 집행 등의 보장은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

89) 강은영 외, 위의 보고서, 250쪽.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인식은 형사사법과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에서는 노인범죄에 있어 교정시설 입·퇴소자에 대해 사회복지비를 지원하는 출구지원을 시작으로 형사사법절차를 거슬러 수사단계에서 사회복지·의료 전문가가 개입하는 입구지원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출구지원과 입구지원은 노인범죄의 높은 재범율을 낮추고자 하는 재범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배려이기보다 범죄예방과 사회방위 대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지원에는 단순히 수사기관이나 교도소, 보호관찰소, 그리고 법무성 등 형사사법기관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출구지원의 하나인 특별조정제도는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의 협력을 통해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도도부현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그 지역의 자치체 복지부, 의료기관 등 복지 관련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한 유대를 통해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귀주예정지를 알선하고, 제공받을 복지서비스를 적합하게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지비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조정을 비롯하여 교도소 내에서 행해지는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 사회복지지원 등에 있어 교정·교화라는 목적 외에도 노인수형자의 육체적 능력 증진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69개 교도소에 94명의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특별조정, 독자조정, 사회복지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2014년 기준). 교도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에도 전문 부서의 설치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활용하고 있다. 2013년 설치된 도쿄 지검의 사회복지지원실, 센다이 지검의 형사정책추진실이 그것이다. 사회복지지원실이나 형사정책추진실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는 검사 또는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교육, 고령 또는 장애를 가진 피의자·피고인을 조사하는 담당검사가 요청하는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도 일본의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의 협력과 유사한 형태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가 그것이다.⁹⁰⁾ 이 제도는 사회취약계층 특별

90)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5, 359쪽.

보호대책의 일환으로서 교정시설 출소와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재범 또는 노숙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연계하여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⁹¹⁾ 그러나 이 제도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갱생보호제도와 더불어 일본의 출구지원과 같은 포괄적인 복지적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다.

2. 복지적 지원의 확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위와 같은 복지적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도관, 검사, 법관 등이 형사사법 전문가이기는 하나, 고령 또는 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그에 적합한 처우를 행할 수 있는 복지·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복지 관련기관과의 연계나 사회복지 전문가의 활용이 확대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갱생긴급보호, 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갱생긴급보호는 갱생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만기 석방자, 보호관찰에 회부되지 않은 집행유예자, 기소유예자,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 노역장 유치자 등에 대해 의료·복지기관의 응급 구호 등과 같은 조치이다. 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에 구금중인 피의자가 석방 후에 적절한 주거나 직업이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검찰이 사전에 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갱생긴급보호의 사전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집행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구금으로도 복지기관이나 복지서비스의 수급이 중단되어 곤란한 노숙인,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있다는 점에서 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과 같은 복지적 지원의 확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의 복지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집행단계에서의 복지적 지원도 중요하다. 노인수형자 중에는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거나 성인수형자와 같은 수준의 교도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노인 전용교도소를 설립하거나 교도소 내에 노인수형자를 위한 특별사동을 설치하고 있다. 징엔 노인교도소 및 슈발름슈타트-치겐하인 교도소와 데트몰트 교도소의 노인수용시설이 그것이다.

91) 보건복지부, '교도소 출소자 등에 대하여도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보도자료)', 2002.

독일의 노인교도소나 노인수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수형자를 수감하고 있으며, 단순 노역에 임하게 하거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엔 노인교도소에서는 노인수형자가 사회와 단절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비교적 긴 시간의 접견이 허용되고, 방이 아닌 정원이나 화원 등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우는 어디까지나 성인수형자와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이 노인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지 단순히 시혜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에는 독일과 같은 노인 전용교도소는 없지만, 각 주의 교정시설 중에는 구조화된 노인수형자 전문 프로그램을 갖춘 곳이 있다. 미국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노인수형자는 대체로 교도소 수감으로 인한 충격, 죄책감,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노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 프로그램은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True Grit’ 프로그램은 물리치료, 오락, 상담, 음악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인수형자에게 사용되는 약물을 감소시켰다고 한다.

교도소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치매를 앓거나 사망을 앞둔 수형자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다. ‘Gold Coats’ 프로그램은 훈련을 받은 동료수형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수형자를 돌보면서 그 변화를 인지·보고하도록 한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의 의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교도소 직원과 자원한 수형자에게 호스피스 교육을 함으로써 사망을 앞둔 수형자를 돌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형자에게 교도소 내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동료수형자를 돌보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책임감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도움이 절실한 수형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동료수형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국이나 일본에는 노인 전용교도소는 없으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정 프로그램도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노인수형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성인수형자를 기준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거나 출소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인수형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보다는 정서안정이나 여가증진을 통해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노인수형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전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출소 후 개인의 신체활동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과 가내수공업 형태나 여가활동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교도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⁹²⁾

다만, 한국에서는 교도소 내에 ‘노인전용수용동’이나 ‘고령자 거실’을 마련하여 노인수형자를 배려하고 있다. 2014년 서울 남부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에 ‘노인전용수용동’을 마련하여 노인수형자를 분리수용하였으며,⁹³⁾ 노인전용수용동이 없는 교도소에는 ‘고령자 거실’이 설치되어 있다. 노인수형자가 다른 연령대의 수형자와 혼합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다 젊은 수형자로부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전용시설에 분리수용되어 본인의 교정·교화에 집중하고, 또래와 자연스럽게 교류 또는 의지하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노인 전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든 교도소에 노인전용수용동이나 고령자 거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입실이 가능한 연령이나 정원, 고령자 거실에서의 작업 시행 여부 등 각 교도소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⁹⁴⁾

3.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

최근 미국에서는 노인수형자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50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비율은 2030년 전체수형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러한 노인수형자에 대한 비용은 일반수형자의 2~3배로 추산되고 있다. 노인수형자에 대한 비용은 주로 건강관리, 의약품비인데, 이는 노인수형자가 형벌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노인수형자에 대한 선택적 탈구금화의 일환으로 조기석방이 제안되고 있다. 미국의 15개 주와 콜롬비아에서는 노인수형자를 조기석방할 수 있는 정책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교정국(BOP)에서는 연방교도소를 대상으로 노인수형자의 조기석방을 도모하는 ‘Smart on Crime’ 프로그램을 추진한바 있다.

92) 법무연수원, “2008 범죄백서”, 2008, 506쪽.

93) 중앙일보, ‘온돌·좌변기·혈압계… 교도소 노인 전용방 등장’, 2014. 12. 2. 보도 (http://ap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16578352), 2015. 11. 11. 최종검색; 서울 남부교도소 제공 자료, 2015. 6. 19. 기관 방문.

94) 법무연수원, 위의 책, 504쪽.

그러나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을 가진 수형자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기석방을 허용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조기석방된다 하더라도 귀주예정지가 없거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교도소와 사회복지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조기석방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조기석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⁹⁵⁾

한편 형집행단계에서 거슬러 올라가 수사·재판단계를 보면,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에는 노인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실무상 노인 또는 노인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등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훈방과 관련하여 그 요건 중에 하나로 ‘고령자(60세 이상)’이 규정되어 있다. 경찰업무편람 “즉결심판 청구사무(3-2)”에 따르면, 훈방대상자로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순찰지구대장은 훈방부에 등재하고 엄중후회 후 즉시 방면하고 있다. 훈방대상자는 ① 고령자(60세 이상), 미성년자(초범), ② 정신박약자, 보행불구자, 질병자, ③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④ 공무방해 또는 상습성이 없는 자, 고의성이 없는 자, ⑤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⁹⁶⁾ 다만, 이와 같은 경찰훈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⁹⁷⁾

또한, 검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⁹⁸⁾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

95) 강은영 외, 위의 보고서, 250쪽.

96) 김태명, ‘경찰단계에서의 사건종결 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3(2), 경찰대학교, 2013년, 125쪽; 윤동호·김은경,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6쪽; 김태명,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사법처분 도입에 대한 연구’, 경찰청,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년, 76쪽.

97) 자세히는 이승현, ‘경찰 다이버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7(4), 2010; 조국,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경찰법연구 1(1), 한국경찰법학회, 2003 등 참조.

9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갇생보호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4.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범죄예방활동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지 않는 경우 보호관찰소에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법무부훈령 제875호)」이 정하고 있다. 동 훈령에 의하면 선도처분은 피의자, 피의자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도위탁 1급, 선도위탁 2급, 그리고 상담·교육·봉사활동 등에 해당하는 처분이 부과된다(제4조 제1항). 선도위탁 1·2급의 처분은 재범가능성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동조 제3항), 상담·교육·봉사활동 등의 처분은 피의자의 범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과되거나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피의자에게는 상담·교육·봉사활동 등의 처분만이 부과될 수 있다(동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나 실무의 운용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피의자·피고인에 대해 특별한 인도적 배려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있어 노인범죄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성인범죄자와 달리 신속·공정한 절차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형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성인수형자와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노인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형사정책에 대한 전망

박 형 민

제4장

형사정책에 대한 전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가 우리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양상을 진단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의견 및 예측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미래 우리 사회의 형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일반국민에 대한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성·연령·지역별 제곱근비례할당 방법으로 총 1,200명을 표집하여 대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형사정책 및 사회정책 관련 학계·실무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총 3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에 대한 조사는 면접, 이메일, 팩스, 온라인 등의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관련 학제별·영역별 할당이 완료 될 때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체 조사는 2015년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과 입력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1〉 조사 설계

	일반국민	전문가
조사대상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형사정책 및 사회정책 관련 학계·실무계 전문가
조사방법	대인 면접조사	면접/이메일/팩스/온라인 병행조사
조사규모	1,200명	300명
표집방법	성·연령·지역별 제곱근비례할당 (모집단 : 통계청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기준)	관련 학제별/영역별 할당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83 Point	-
자료처리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검증 - 입력 - 분석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기초분석 테이블 작성	
조사기간	2015년 9월 9일 ~ 10월 8일	

2.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형사정책 목적에 관한 내용, 현재와 미래의 범죄에 관한 내용, 고령화 사회의 변화에 관한 내용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조사내용 및 응답항목은 전문가 및 실무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표 4-2〉 조사 내용

부 문	조사 내용
형사정책 목적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형사정책의 현재/10년 후/30년 후 달성도
현재와 미래의 범죄	10년 후/30년 후 우리나라 범죄 증가 예상 및 이유 현재와 미래의 이슈별 중요성 주요 이벤트의 증가 가능성 주요 이벤트의 범죄 발생 영향도 주요 이벤트의 범죄 예방 영향도
고령화 사회	노인 관련 범죄의 10년 후/30년 후 중요도 노인관련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 노인관련 주요 이벤트의 범죄 발생 영향도 노인관련 주요 이벤트의 범죄 예방 영향도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지역, 지역 형태, 학력, 직업, 소득

3.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일반 국민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50.7%, 여성이 49.3%로 분포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6.4%, 30대 16.8%, 40대 20.0%, 50대 20.3%, 60대 이상 26.6%로 분포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1.8%, 인천/경기 20.8%, 대전/충청 16.0%, 광주/전라 14.6%, 대구/경북 11.6%, 부산/울산/경남 17.3%, 강원/제주 7.8%였다. 이러한 분포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한 제곱근비례할당을 통해 표집된 결과이다.

표집된 응답자들을 거주지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44.3%였으며,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40.7%, 읍면지역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15.0%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55.3%, 2년제 대졸 16.3%, 4년제 대졸 이상 28.4%를 나타내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농업/임업/어업 5.3%, 자영업 14.9%, 판매/서비스업 14.0%, 기능숙련공/일반작업직 10.4%, 사무/관리/전문직 23.4%, 가정주부 21.8%, 학생 6.8%, 무직/기타 3.4%의 분포를 보였으며, 소득별로는 199만원 이하 16.3%, 200~299만원 22.0%, 300~399만원 18.0%, 400만원 이상 14.3%, 소득 없음 29.4%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4-3〉 일반인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1200	100.0
성별	남자	608	50.7
	여자	592	49.3
연령	20대	197	16.4
	30대	201	16.8
	40대	240	20.0
	50대	243	20.3
	60대 이상	319	26.6
지역	서울	142	11.8
	인천/경기	250	20.8
	대전/충청	192	16.0
	광주/전라	175	14.6
	대구/경북	139	11.6
	부산/울산/경남	208	17.3
	강원/제주	94	7.8

		사례수	%
거주지규모	대도시	532	44.3
	중소도시	488	40.7
	읍면지역	180	15.0
학력	고졸이하	664	55.3
	2년제 대졸	195	16.3
	4년제 대졸 이상	341	28.4
직업	농업/임업/어업	64	5.3
	자영업	179	14.9
	판매/서비스업	168	14.0
	기능숙련공/일반작업직	125	10.4
	사무/관리/전문직	281	23.4
	가정주부	261	21.8
	학생	81	6.8
	무직/기타	41	3.4
소득	199만원 이하	196	16.3
	200~299만원	264	22.0
	300~399만원	216	18.0
	400만원 이상	171	14.3
	소득 없음	353	29.4

전문가집단은 조사설계 단계에서 실무계 150명과 학계 150명으로 할당을 하여 표집하였다. 실무계의 업무 영역은 경찰 30명, 검사 20명, 판사 20명, 변호사 30명, 복지실무 공무원 20명, 복지실무가 30명으로 할당하였고, 학계는 전공영역별로 법학 40명, 경찰행정학 30명, 사회학 40명, 사회복지학 40명으로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이렇게 해서 표집된 전문가집단의 성별은 남성이 70.7%를 차지하였고, 여성이 29.3%를 차지하였다. 전문가집단의 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6.0%, 30대 29.0%, 40대 38.7%, 50대 24.0%, 60대 이상 2.3%으로 분포하였다.

〈표 4-4〉 전문가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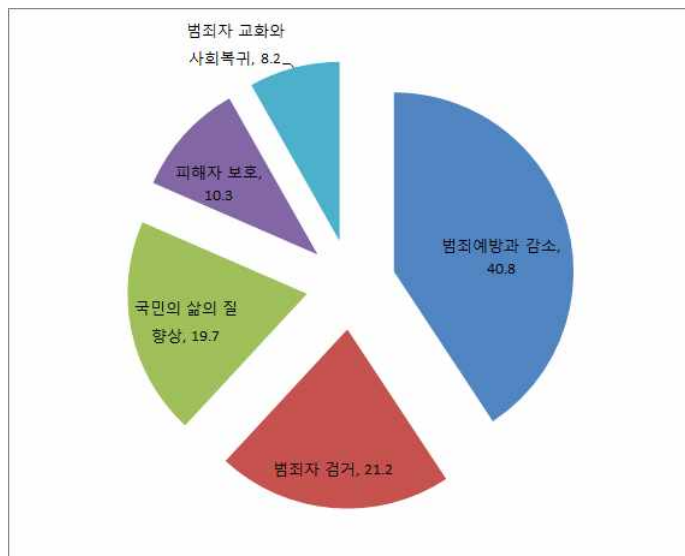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300	100.0
성별	남자	212	70.7
	여자	88	29.3
연령	20대	18	6.0
	30대	87	29.0
	40대	116	38.7
	50대	72	24.0
	60대 이상	7	2.3
전문가 구분	실무계	150	50.0
	학계	150	50.0
직업	경찰	30	10.0
	검사	20	6.7
	판사	20	6.7
	변호사	30	10.0
	복지실무 공무원	20	6.7
	복지실무가	30	10.0
	교수	150	50.0
전공분야	법학	40	26.7
	경찰행정학	30	20.0
	사회학	40	26.7
	사회복지학	40	26.7

제2절 형사정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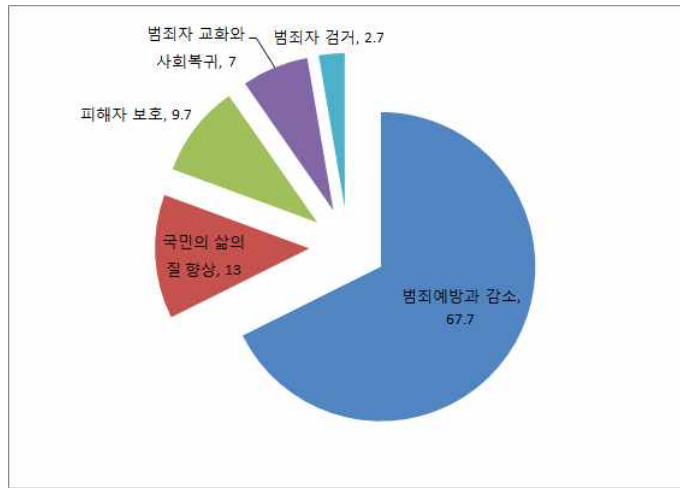
1.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형사정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범죄예방과 감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범죄자 검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1.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9.7%,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3%,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 역시 범죄예방과 감소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7.7%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보다 전문가들이 범죄의 예방과 감소에 대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0%,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7%,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0%, 범죄자 검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범죄자 검거라는 목적의 중요성을 주어진 항목 중에서는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보다는 삶의 질 향상이나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4-1]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림 4-2]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2. 형사정책의 목적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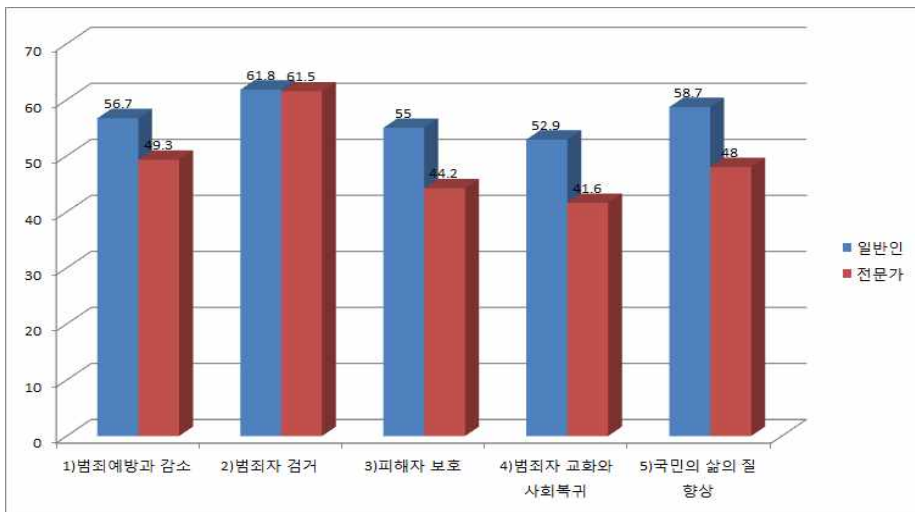
일반국민들과 전문가 공히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목적이 현재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각 범죄예방과 감소라는 목적의 현재 달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달성도는 평균 56.7%(표준편차 16.865)였으나, 전문가들은 평균 49.3%(표준편차 19.650)정도만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형사정책의 목적은 범죄자 검거로서 일반인들은 평균 61.8%(표준편차 16.808)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평균 61.45%(표준편차 18.049)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평균 58.7%(표준편차 17.358)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평균 48.0%(표준편차 20.486)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평균 55.0%(표준편차 19.349)를 달성했다고 생각했고 전문가들은 평균 44.2%(표준편차 19.501)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였다.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평균 52.9%(표준편차 18.735)를 달성했다고 생각했고, 전문가들은 평균 41.6%(표준편차 19.937)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였다.

일반인들 중 성별이나 연령은 현재 형사정책 목적의 달성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거주 지역의 규모는 범죄 예방과 감소(대도시 58.70%, 중소도시 55.10%, 읍면지역 55.03%, $F=6.887$, $p<.01$), 범죄자 검거(대도시 63.23%, 중소도시 60.65%, 읍면지역 60.78%, $F=3.408$, $p<.05$), 피해자 보호(대도시 53.50%, 중소도시 55.53%, 읍면지역 57.92%, $F=3.848$, $p<.05$),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대도시 50.75%, 중소도시 54.06%, 읍면지역 55.97%, $F=6.925$, $p<.01$)의 항목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범죄 예방과 감소와 범죄자 검거 항목은 대도시 거주자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피해자 보호 항목과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항목에서는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현재의 평균 달성도가 높았다.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실무계 전문가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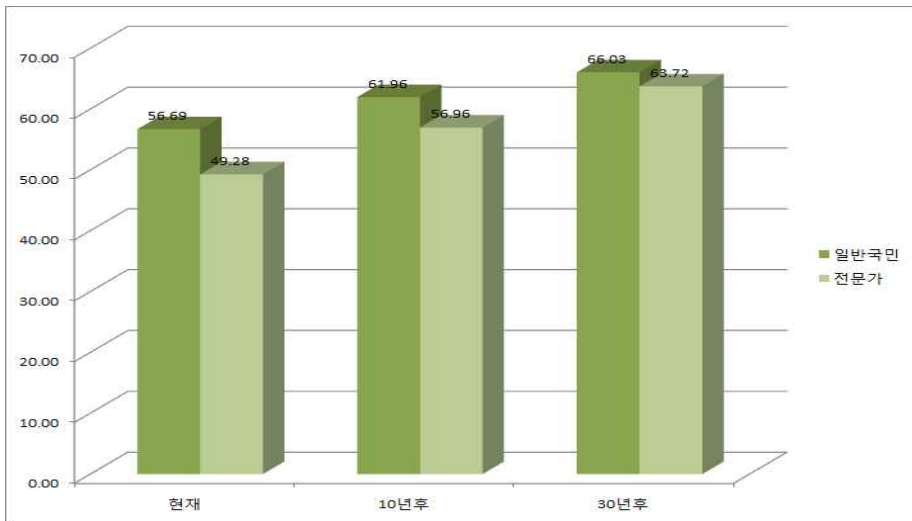
[그림 4-3] 형사정책 목적의 현재 달성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형사정책의 목적들이 10년 후에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든 형사정책의 목적들의 달성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범죄예방과 감소라는 목적을 현재

56.7%달성했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들은 10년 후 62.0%(표준편차 17.38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고, 30년 후에는 66.0%(표준편차 18.09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현재와 비교하여 9.37.7%p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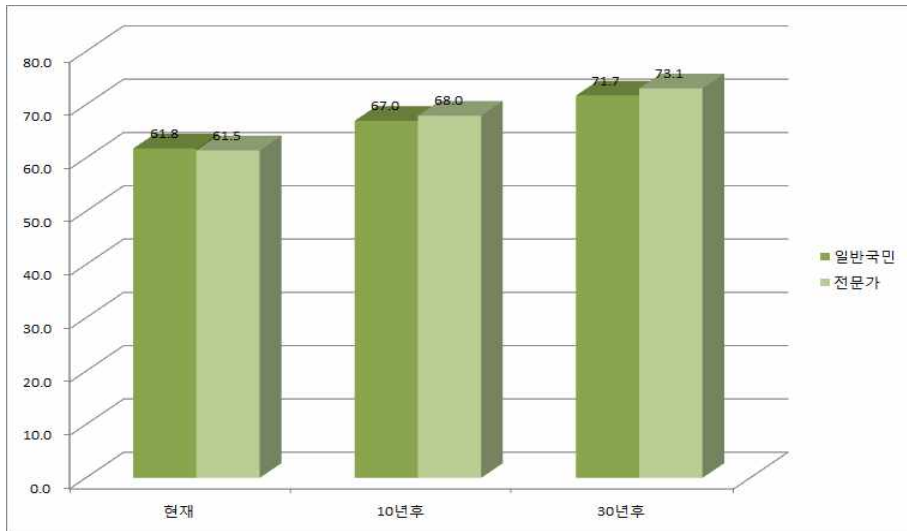
전문가들도 이러한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범죄예방과 감소라는 목적을 현재 49.3%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 역시 10년 후에는 57.0%(표준편차 19.969)를 달성할 수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7.7%p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30년 후에는 63.7%(표준편차 21.61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현재 대비 14.4%p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림 4-4] 달성도-범죄예방과 감소

일반국민들이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 범죄자 검거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현재 61.8%라 생각하였으나, 10년 후에는 67.0%(표준편차 16.48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고, 30년 후에는 71.7%(표준편차 16.21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다른 항목들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은 달성도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가들 역시 범죄자 검거라는 목적의 달성도를 높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달성도를 평균 61.5%라고 생각하였던 전문가들은 10년 후에는 평균 68.0%(표준편차 17.688)의 달성도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30년 후에는 평균

73.1%(표준편차 19.07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범죄자 검거의 달성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낮게 평가한 바 있으나, 10년 후와 30년 후의 달성도는 일반인들보다 높게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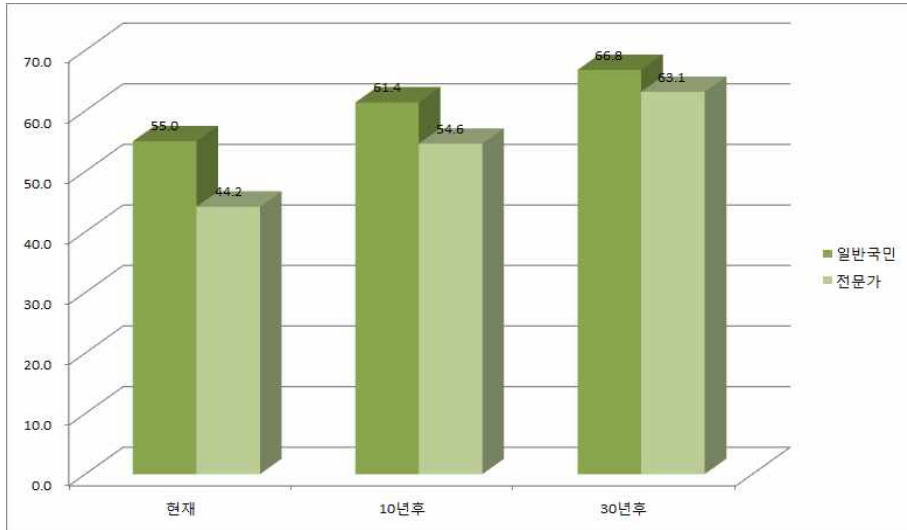


[그림 4-5] 달성도_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10년 후에는 평균 61.4%(표준편차 17.919)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30년 후에는 66.8%(표준편차 17.339)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의 30년 후 예측 달성도는 현재 평가한 달성도에 비해 11.8%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은 현재 평균 44.2%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10년 후에는 평균 54.6%(표준편차 19.530)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여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30년 후에는 평균 63.1%(표준편차 21.315)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여 현재 대비 18.9%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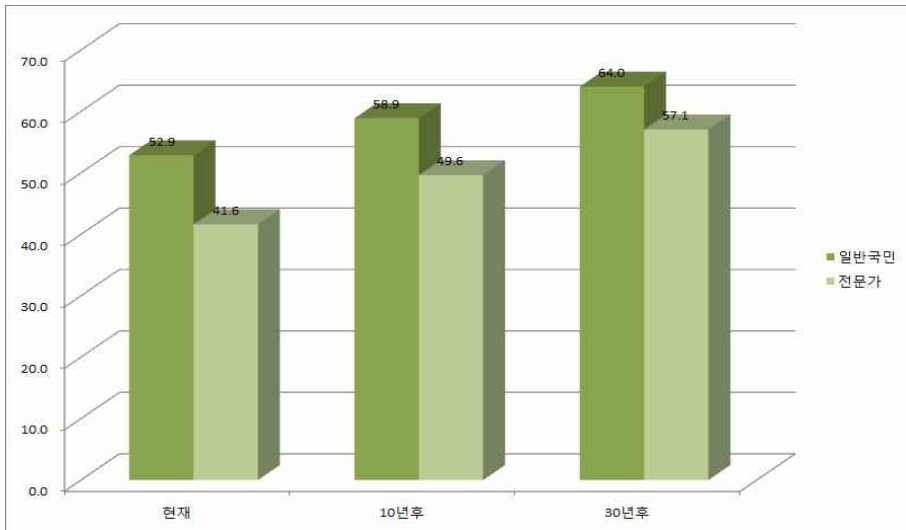
이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미래에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며, 피해자 보호 영역은 향후에 형사정책의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6] 달성도_피해자 보호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10년 후에 평균 58.9%(표준편차 18.083)의 달성도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30년 후에는 평균 64.0%(표준편차 18.45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의 30년 후 예측 달성도는 현재 평가한 달성도에 비해 11.5% 상승하였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은 10년 후 평균 49.6%(표준편차 20.77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30년 후에는 평균 57.1%(표준편차 22.34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30년 후의 예측 달성도는 현재 평가한 달성도에 비해 15.5% 상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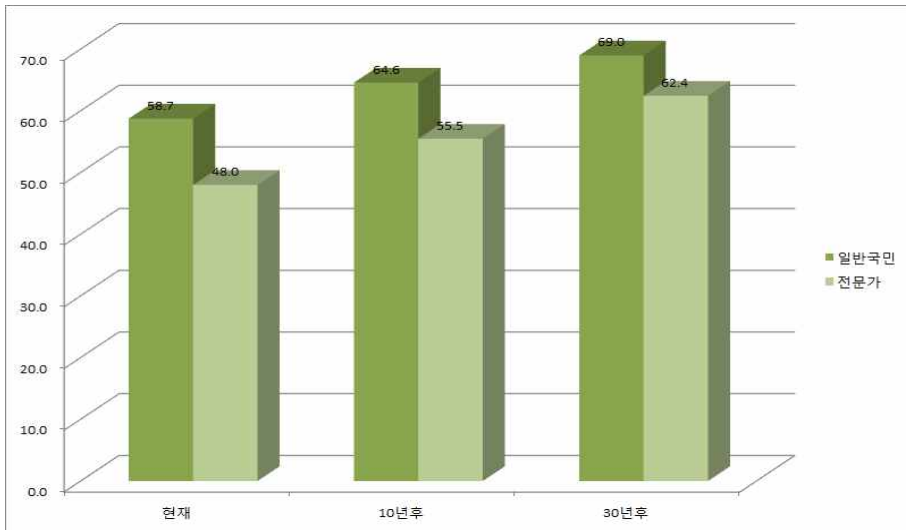


[그림 4-7] 달성도_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현재 58.7%의 달성도를 보인다고 평가했고, 10년 후에는 평균 64.6%(표준편차 16.907)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평가했으며, 30년 후에는 평균 69.0%(표준편차 17.10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여, 현재의 달성도에 비해 30년 후에는 10.2%가 높은 달성도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이 10년 후 평균 55.5%(표준편차 20.579)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으며, 30년 후에는 평균 62.4%(표준편차 22.15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30년 후에는 현재의 달성도에 비해 14.5% 더 높은 달성도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일반국민들과 전문가 집단 공히 전체적으로 형사정책의 모든 영역의 달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리라 예측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 평가한 형사정책 목적 달성도는 일반국민에 비해 절대 점수는 다소 낮았지만,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와 30년 후의 달성도 상승률은 더 높았다.



[그림 4-8] 달성도_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3절 현재와 미래의 범죄

1. 미래 범죄 양상

10년 후 미래의 우리나라 범죄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들보다 더 많았는데, 전문가들의 경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3.7%로 나타났는데, 10년 후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17.7%)보다 3.5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일반국민들도 10년 후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58.9%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들(25.3%)보다 2.3배 이상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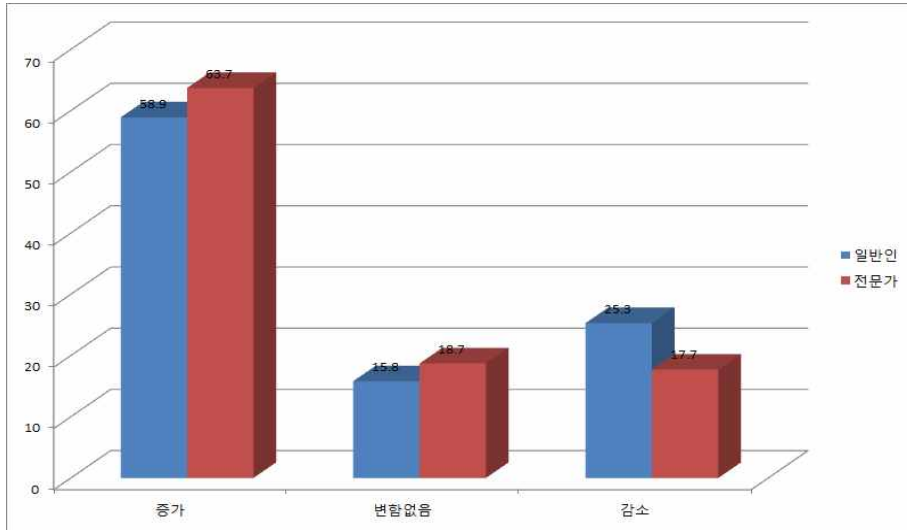
30년 후 미래의 범죄 양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55.3%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으며, 25.3%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19.3%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반국민들의 경우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들이 47.3%,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들이 35.7%, 변함없을 것이라 예측한 사람들이 17.0%를 나타내고 있었다. 30년 후 미래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들은 10년 후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다소 적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들

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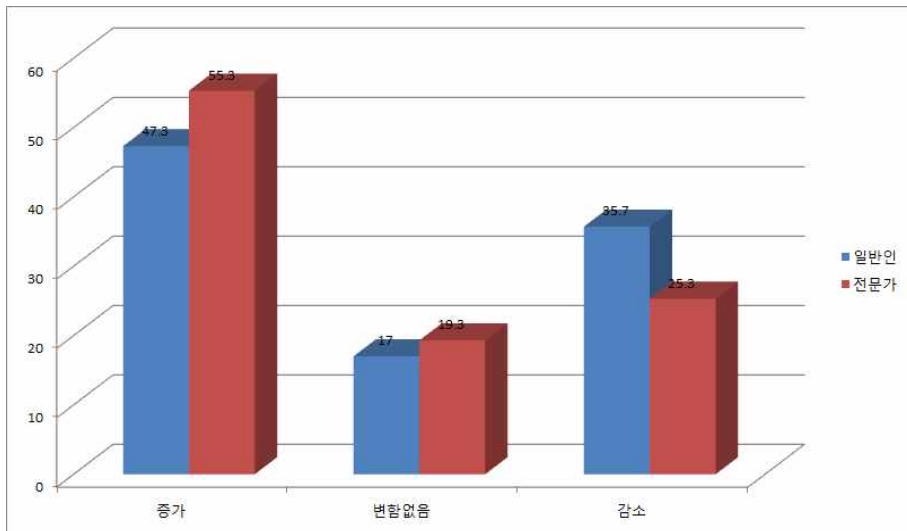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들을 개방형 문항으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국민들은 10년 후 사회의 불안과 경기의 침체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고령화, 외국인 증가 등으로 인한 범죄증가를 지적하거나 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다양한 범죄의 발생을 지적한 사람들도 있었다. 전문가들 역시 빈부격차의 심화와 경기 침체를 지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30년 후에 우리나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격차를 지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개인의 이기주의가 심화되거나 신뢰와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미래의 범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일반국민들은 사회구조나 범죄 유형이 10년 후에도 별다른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전문가들은 수사 기법과 지능적 범죄가 동시에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미래의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들 살펴보면, 일반국민들은 과학수사의 발전을 감소 요인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전문가들 역시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 검거가 용이해 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가 범죄 감소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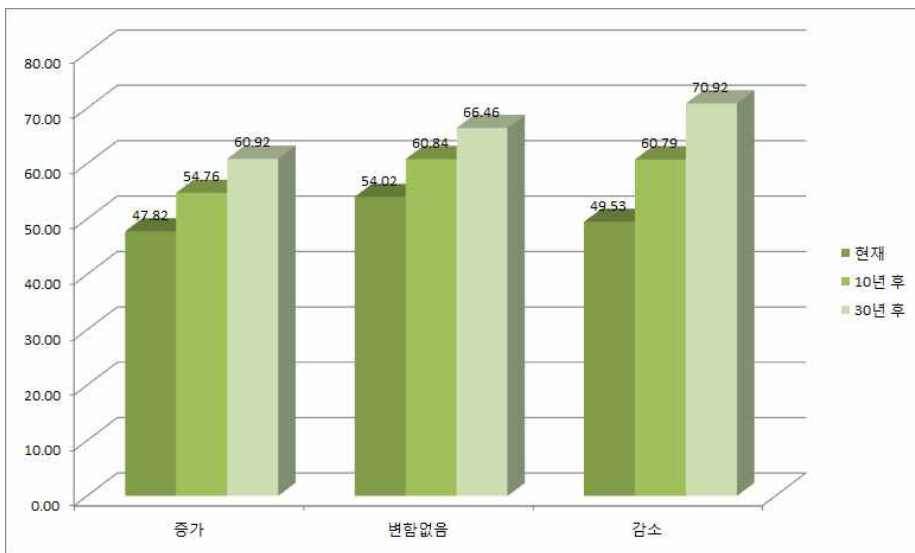
[그림 4-9] 10년 후 범죄 양상



[그림 4-10] 30년 후 범죄 양상

이처럼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은 10년 후 미래에 대한 예측과 30년 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미래의 범죄 양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은 앞서

형사정책의 목적 중 범죄 예방과 감소라는 항목의 달성도가 증가한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년 후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들이 범죄 예방과 감소라는 형사정책의 목적 달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10년 후 범죄가 증가하거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범죄 예방과 감소라는 형사정책의 목적 달성도의 평균은 일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11] 10년 후 범죄 양상 예측 별 범죄 예방과 감소 목적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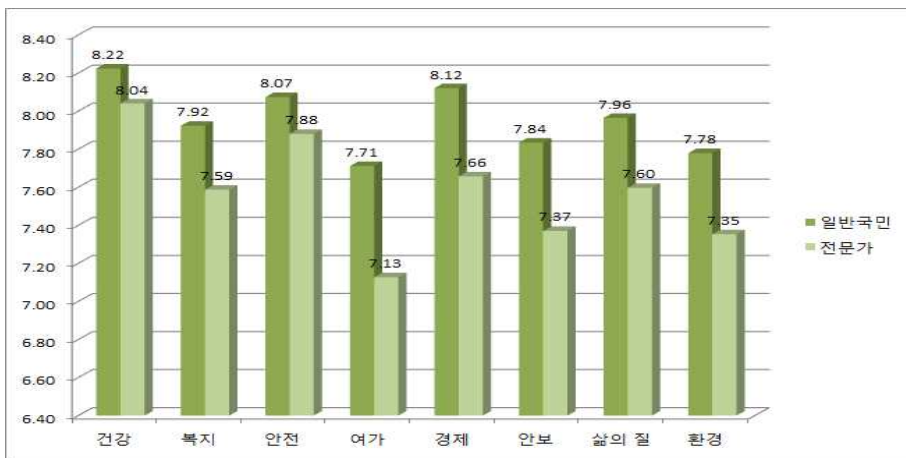
2. 미래 이슈의 중요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중 형사정책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항목별 중요도를 측정해 보았는데, 각각의 항목은 9점척도로 측정하였고, 설문지에 응답한 변수값을 역코딩해서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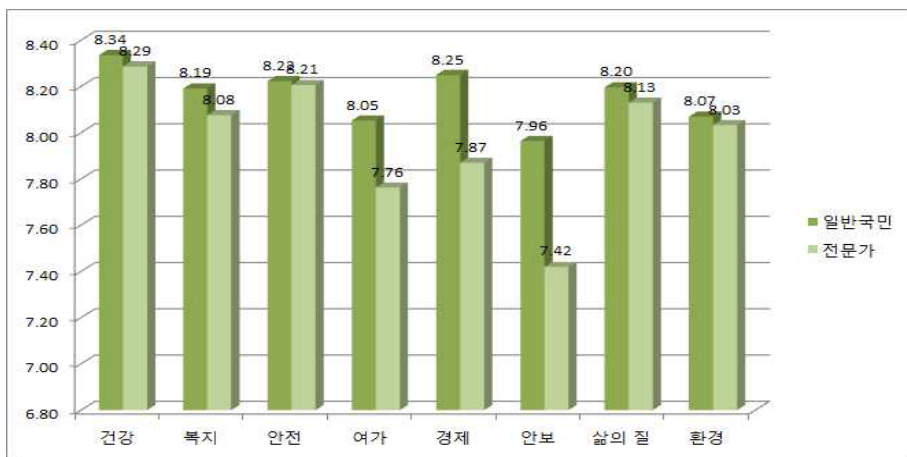
각 항목별 현재의 중요성 점수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의 중요성 점수가 높았다. 형사정책과 관련이 있는 안전과 삶의 질은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중요성 점수가 높았다. 전문가들 역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동일하지만, 형사정책과 관련이 있는 안전

이 두 번째로 높은 중요성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경제가 세 번째였고, 삶의 질은 네 번째로 중요성 점수가 높았다.

일반국민들이 예측하는 10년 후 미래의 중요성 역시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건강, 경제, 안전, 삶의 질의 순으로 중요성 점수가 나타난 것은 동일하였고, 단지 복지와 여가의 중요성 점수 순위가 상승하고 안보의 중요성 점수가 하락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이 평가하였고, 10년 후에는 삶의 질과 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림 4-12] 현재의 중요도



[그림 4-13] 10년 후 중요도

3. 이벤트 증가 가능성

다음으로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이벤트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의 증가 가능성을 질문하였는데, 역시 각각의 항목은 9점척도로 측정하였고, 설문지에 응답한 변수값을 역코딩해서 가능성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해 보았다.

여러 가지 이벤트 중 일반인들이 10년 후에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개인주의화였는데, 일반 국민들 중 개인주의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⑦+⑧+⑨) 63.5%였으며,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④+⑤+⑥)은 32.7%,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①+②+③) 3.8%였다.

일반국민들이 10년 후 증가할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인간성 상실(증가 56.4%, 변화없음 41.3%, 감소 2.3%)이었으며, 세 번째로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가족 유대감 약화(증가 54.6%, 변화없음 42.8%, 감소 2.7%)였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증가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이벤트나 구조적 이벤트보다는 정서적 이벤트의 증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 신뢰 증진(증가 38.8%, 변화없음 49.2%, 감소 12.1%)과 같은 정서적이면서 긍정적인 이벤트의 증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평가한 30년 후의 변화 역시 정서적이면서 부정적인 이벤트의 증가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순위 역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역시 개인주의화(증가 74.7%, 변화없음 24.3%, 감소 1.0%)와 가족유대감 약화(증가 68.7%, 변화없음 29.3%, 감소 2.0%)의 10년 후 증가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은 유사하지만 이들 이벤트는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고, 10년 후 증가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한 이벤트는 경제양극화(증가 73.0%, 변화없음 26.7%, 감소 0.3%)라는 구조적이고 부정적인 이벤트였다. 전문가들도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이벤트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고용확대(증가 17.3%, 변화없음 56.0%, 감소 26.7%)라는 이벤트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증가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상호신뢰증진(증가 15.0%, 변화없음 62.0%, 감소 23.0%)이라는 이벤트와 불균형격차 해소라는 이벤트(증가 16.7%, 변화없음 63.0%, 감소 20.3%) 역시 증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30년 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화(증가 74.7%, 변화없음 24.3%, 감소 1.0%), 경제양극화(증가 73.0%, 변화없음 26.7%, 감소 0.3%), 가족유대감 약화(증가 68.7%, 변화없음 29.3%, 감소 2.0%) 등의 이벤트의 증가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발생가능성이 낮은 이벤트는 10년 후 미래와 동일하게 예측되었다.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이벤트들은 아노미 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등의 범죄학 이론들에서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측은 미래의 범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 이벤트들의 미래 증가 가능성

	10년 후 증가가능성				30년 후 증가가능성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안보 불안정	6.09	11	5.63	17	6.02	15	5.21	20
고용불안	6.45	6	6.70	6	6.38	10	6.80	8
세대갈등	6.55	4	6.81	4	6.56	5	6.95	6
경제 양극화	6.48	5	7.14	1	6.53	7	7.26	2
자원고갈	6.36	8	6.60	7	6.58	4	7.05	4
산업구조 양극화	6.26	9	6.74	5	6.44	9	6.96	5
식품안전	5.98	14	5.89	14	6.14	13	5.99	14
자살	6.39	7	6.48	10	6.56	6	6.68	9
환경오염	6.26	10	6.48	9	6.49	8	6.64	10
저성장	6.04	12	6.41	11	6.20	12	6.63	11
정보격차	5.89	15	6.20	12	6.10	14	6.31	13
인간성 상실	6.58	2	6.52	8	6.67	2	6.86	7
가족 유대감 약화	6.56	3	6.84	3	6.62	3	7.13	3
개인주의화	6.72	1	7.07	2	6.78	1	7.39	1
소득증가	5.77	16	5.65	16	5.96	16	5.73	16
불균형 격차 해소	5.72	18	4.95	21	5.84	21	4.99	21
자원봉사 활성화	5.59	21	5.66	15	5.78	22	5.90	15
주거안정	5.74	17	5.34	20	5.90	18	5.54	19
교육수준 향상	6.03	13	6.19	13	6.24	11	6.34	12
환경문제 극복	5.67	19	5.42	18	5.90	19	5.67	17
고용확대	5.54	22	4.82	23	5.86	20	4.92	23
상호신뢰 증진	5.52	23	4.85	22	5.76	23	4.95	22
정치민주화	5.63	20	5.36	19	5.93	17	5.62	18

4. 이벤트가 범죄 발생과 예방에 끼치는 영향

동일한 이벤트 항목들이 미래의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들은 10년 후 미래의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로 개인주의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 후 증가 가능성도 가장 높았던 이벤트였다. 아울러 인간성 상실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지적되었으며, 고용불안과 가족 유대감 약화도 10년 후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처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미래의 범죄 증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10년 후 미래의 범죄 증가의 가능성 역시 높다고 예측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30년 후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력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일반국민들이 30년 후 미래의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 이벤트는 인간성 상실, 개인주의화, 가족 유대감 약화, 경제 양극화 등이었으며, 이들 역시 30년 후 미래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이벤트들이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10년 후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한 이벤트들은 고용불안, 경제양극화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적되었고, 인간성 상실과 가족유대감 약화, 개인주의화 등의 이벤트들이 10년 후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들 이벤트들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서 10년 후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이 30년 후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한 이벤트들은 인간성 상실, 경제양극화, 고용불안, 가족 유대감 약화 등이었다.

〈표 4-6〉 이벤트들이 미래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

대분류	10년 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				30년 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안보 불안정	6.06	9	5.92	10	6.26	10	5.86	13
고용불안	6.33	3	7.13	1	6.43	5	7.13	3
세대갈등	6.29	6	6.41	6	6.40	6	6.54	6
경제 양극화	6.31	5	7.06	2	6.43	4	7.27	2
자원고갈	6.05	10	6.00	9	6.26	9	6.18	9

대분류	10년 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				30년 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산업구조 양극화	6.11	8	6.38	7	6.32	7	6.53	7
식품안전	5.83	13	5.53	20	6.04	13	5.61	20
자살	6.15	7	5.75	14	6.30	8	5.82	15
환경오염	5.87	12	5.63	17	6.05	12	5.89	12
저성장	6.04	11	6.27	8	6.14	11	6.37	8
정보격차	5.81	14	5.83	12	5.96	14	5.97	10
인간성 상실	6.35	2	7.05	3	6.57	1	7.28	1
가족 유대감 약화	6.32	4	6.87	4	6.44	3	7.01	4
개인주의화	6.39	1	6.65	5	6.53	2	6.81	5
소득증가	5.71	15	5.58	18	5.83	16	5.67	18
불균형 격차 해소	5.67	17	5.83	11	5.73	20	5.91	11
자원봉사 활성화	5.43	23	5.18	22	5.59	23	5.27	22
주거안정	5.58	19	5.67	15	5.80	17	5.76	16
교육수준 향상	5.67	16	5.56	19	5.85	15	5.65	19
환경문제 극복	5.49	22	5.14	23	5.70	22	5.27	23
고용확대	5.59	18	5.76	13	5.75	19	5.86	14
상호신뢰 증진	5.55	20	5.66	16	5.75	18	5.74	17
정치민주화	5.50	21	5.21	21	5.73	21	5.32	21

각각의 이벤트들이 미래의 범죄 예방 또는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국민들은 고용확대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 10년 후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으며, 주거안정, 소득증가, 상호신뢰증진 등의 이벤트들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30년 후 미래의 범죄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 역시 주거안정, 고용확대, 교육수준 향상, 상호 신뢰 증진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10년 후 미래의 범죄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은 고용확대, 상호신뢰 증진, 경제양극화, 주거안정 등이었는데, 경제 양극화를 제외하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0년 후 미래의 범죄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역시 고용확대, 상호신뢰증진, 불균형격차 해소, 경제양극화 등이었다.

그런데 미래의 범죄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한 이벤트들은 대부분 10년 후와 30년 후 미래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된 것들로서 이와 같은 전망은 미래의 범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들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7〉 이벤트들이 미래 범죄 예방에 끼치는 영향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안보 불안정	5.27	22	5.41	18	5.38	16	5.53	18
고용불안	5.38	12	5.98	7	5.43	14	6.09	7
세대갈등	5.30	18	5.59	14	5.38	18	5.67	15
경제 양극화	5.30	19	6.13	3	5.35	23	6.20	4
자원고갈	5.30	20	5.34	20	5.36	21	5.43	20
산업구조 양극화	5.41	10	5.60	13	5.44	11	5.72	13
식품안전	5.35	14	5.20	22	5.40	15	5.34	22
자살	5.38	13	5.27	21	5.38	17	5.35	21
환경오염	5.25	23	5.11	23	5.35	22	5.22	23
저성장	5.33	15	5.54	16	5.43	13	5.61	16
정보격차	5.27	21	5.41	19	5.36	20	5.46	19
인간성 상실	5.33	16	6.04	6	5.45	10	6.15	6
가족 유대감 약화	5.31	17	5.94	8	5.37	19	6.02	8
개인주의화	5.40	11	5.74	11	5.44	12	5.79	11
소득증가	5.72	3	5.79	10	5.70	8	5.93	10
불균형 격차 해소	5.65	6	6.11	5	5.78	5	6.21	3
자원봉사 활성화	5.56	8	5.70	12	5.74	6	5.78	12
주거안정	5.75	2	6.12	4	5.93	1	6.19	5
교육수준 향상	5.67	5	5.86	9	5.85	3	5.97	9
환경문제 극복	5.53	9	5.49	17	5.68	9	5.57	17
고용확대	5.76	1	6.29	1	5.87	2	6.42	1
상호신뢰 증진	5.69	4	6.28	2	5.79	4	6.40	2
정치민주화	5.57	7	5.55	15	5.72	7	5.69	14

제4절 고령화와 노인범죄

1. 고령사회와 관련한 문제의 중요도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상황을 간략히 제시한 후 고령사회와 관련한 문제의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일반국민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10년 후 가장 중요한 문제로 평가된 것은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중요시 될 것이라 평가되었다. 이처럼 10년 후 미래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범죄는 노인들이 가해자가 되는 범죄들 보다는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 평가된 것이다. 반면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범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질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중요도 점수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30년 후 미래의 중요한 문제는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가장 중요시 될 것이라는 것은 10년 후 미래의 평가와 동일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시 될 것이라 평가된 문제는 노인이 유발하는 교통사고와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교통사고였다.

전문가들 역시 10년 후 미래에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는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인이 유발하는 교통사고와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교통사고가 10년 후 미래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30년 후 미래에도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예측되었으며, 노인 수행자의 증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일반국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있어 노인은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며, 10년 후와 30년 후의 미래에 노인 범죄 피해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4-8〉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문제

	10년 후				30년 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3.50	7	3.60	6	3.62	7	3.92	5
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3.40	8	3.43	8	3.52	8	3.65	7
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3.26	9	3.01	9	3.36	9	3.18	9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3.66	1	3.87	1	3.71	1	4.03	1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3.61	3	3.52	7	3.68	5	3.58	8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3.66	2	3.65	5	3.69	4	3.72	6
노인 수형자 증가	3.51	6	3.75	4	3.62	6	3.98	2
노인 교통사고 발생	3.60	4	3.86	2	3.70	2	3.97	3
노인 교통사고 피해	3.57	5	3.83	3	3.70	3	3.93	4

2.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면, 10년 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벤트는 노인 빈곤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노인자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노인단독가구와 노인학대, 노인이혼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자녀의 노인부양, 노인전용교도소, 노인주거환경 개선,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등의 이벤트는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0년 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들은 노인단독가구, 노인자살, 노인이혼, 노인 학대 등으로 10년 후 미래 예측과 다소 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차이점이었다.

전문가들은 10년 후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벤트로 노인단독가구를 지적하였으며, 노인 복지지출도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로 지적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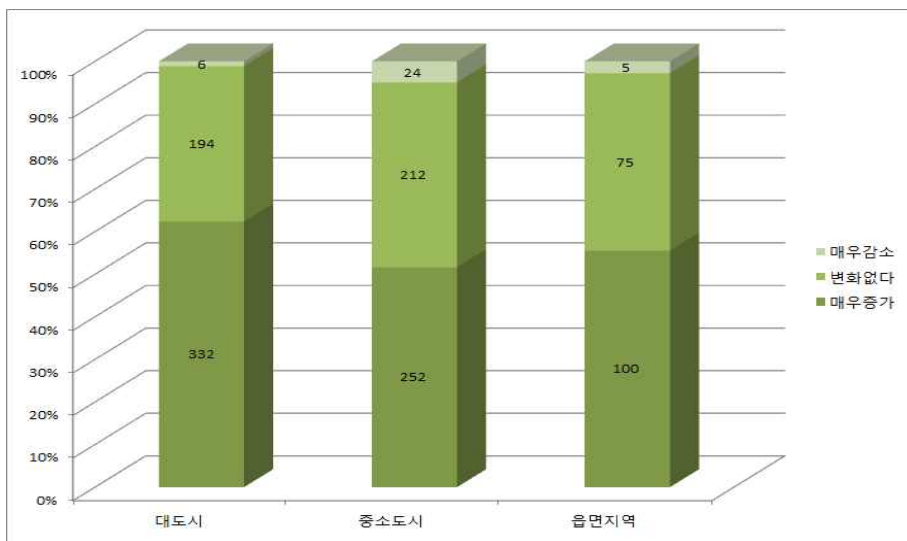
었다. 그리고 노인이혼,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이벤트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30년 후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들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복지지출,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이혼 등으로 10년 후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벤트와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국민들이 주로 부정적인 이벤트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전문가들은 복지지출이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벤트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4-9〉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

	10년 후 발생 가능성				30년 후 발생 가능성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노인 경제활동	6.44	6	6.75	10	6.54	7	7.20	6
노인빈곤	6.59	1	6.87	7	6.55	6	7.06	13
노인복지지출	6.39	7	7.02	2	6.45	10	7.48	2
노인자살	6.54	2	6.90	5	6.66	2	7.19	7
자녀의 노인부양	5.15	20	4.42	20	5.30	20	4.26	20
노인학력수준	6.26	11	6.63	15	6.48	9	7.04	14
노인이혼	6.49	5	6.96	3	6.65	3	7.33	4
노인전용교도소	5.88	19	6.15	18	6.19	18	6.58	17
노인단독가구	6.53	3	7.26	1	6.69	1	7.73	1
건강불평등	6.14	14	6.73	11	6.31	17	7.12	11
노인학대	6.51	4	6.76	9	6.60	4	6.95	16
사회공공지출	6.22	13	6.84	8	6.38	11	7.29	5
노인주거환경개선	5.97	18	6.11	19	6.17	19	6.57	18
노인박탈감	6.31	8	6.89	6	6.36	14	7.12	10
범죄두려움	6.26	10	6.19	17	6.34	16	6.35	19
노인 보호 법제	6.07	16	6.57	16	6.36	15	6.98	15
노인건강수준향상	6.24	12	6.64	13	6.48	8	7.15	9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6.31	9	6.91	4	6.58	5	7.36	3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6.05	17	6.63	14	6.36	13	7.09	12
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	6.09	15	6.68	12	6.38	12	7.18	8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 중 일반국민들이 10년 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것은 노인 빈곤이었는데, 9점척도로 측정되었던 일반국민들의 응답을 증가(①+②+③), 변화없음(④+⑤+⑥), 감소(⑦+⑧+⑨)로 3등분하여 살펴보면, 노인 빈곤이라는 이벤트의 10년 후 발생 가능성 판단에 있어 일반국민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의 평가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이 노인 빈곤의 증가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chi^2=21.027$, $p<.001$).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 중 노인 빈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62.4%,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36.5%였던 것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55.6%,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41.7%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43.4%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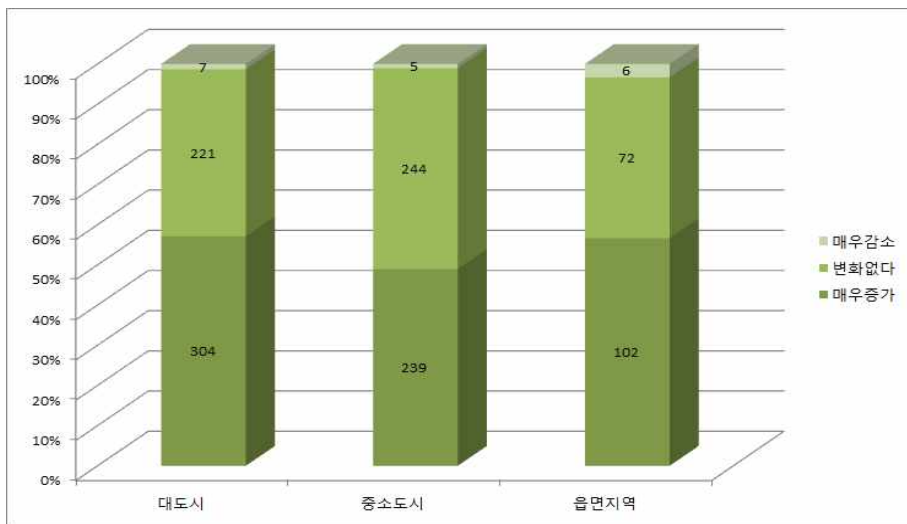


[그림 4-14] 거주지역규모별 노인 빈곤 증가 가능성 평가

일반국민들이 10년 후 증가가능성이 두번째로 높다고 평가한 노인자살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도 성별과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chi^2 = 13.520$, $p < .01$).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은 노인자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이 57.1%,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이 41.5%였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은 노인자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이 56.7%, 노인자살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이 40.0%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 중 노인자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49.0%로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50.0%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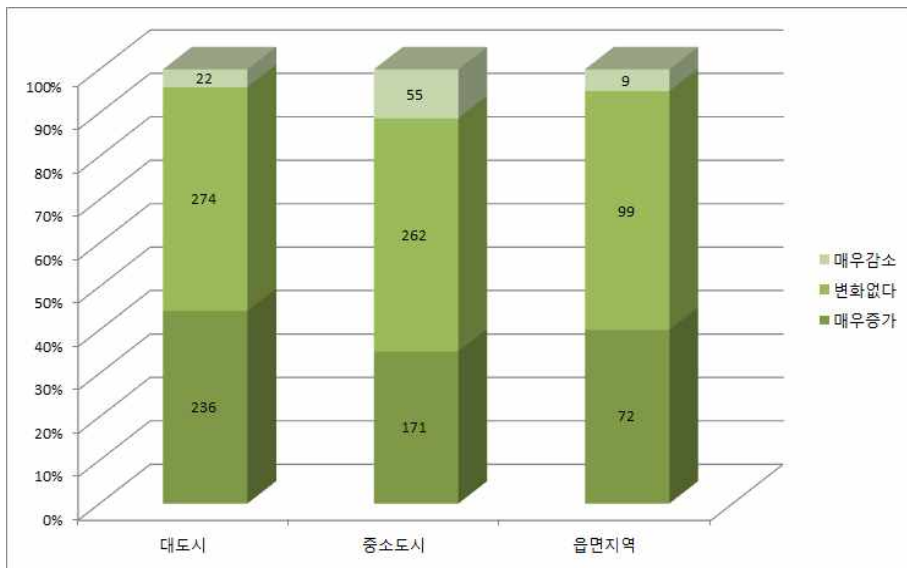
[그림 4-15] 거주지역규모별 노인 자살 증가 가능성 평가

한편 고령화와 관련한 이벤트 중 가장 발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이벤트는 노인주거환경개선이었는데, 노인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벤트의 10년 후 발생 가능성 평가에서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평가에는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25.410$, $p < .001$).

노인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한 집단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중 노인주거환경 개선이 10년 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35.0% 정도에 그쳤으나, 노인주거환경 개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53.7%를 나타냈고, 노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벤트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사람들, 즉 10년 후 노인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11.3%나 존재하고 있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 중 노인주거환경 개선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40.0% 정도였으며, 노인주거환경 개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55.0%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 중 44.4%의 사람들이 노인주거환경 개선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51.5%의 사람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처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노인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벤트가 10년 후 증가할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노인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벤트가 증가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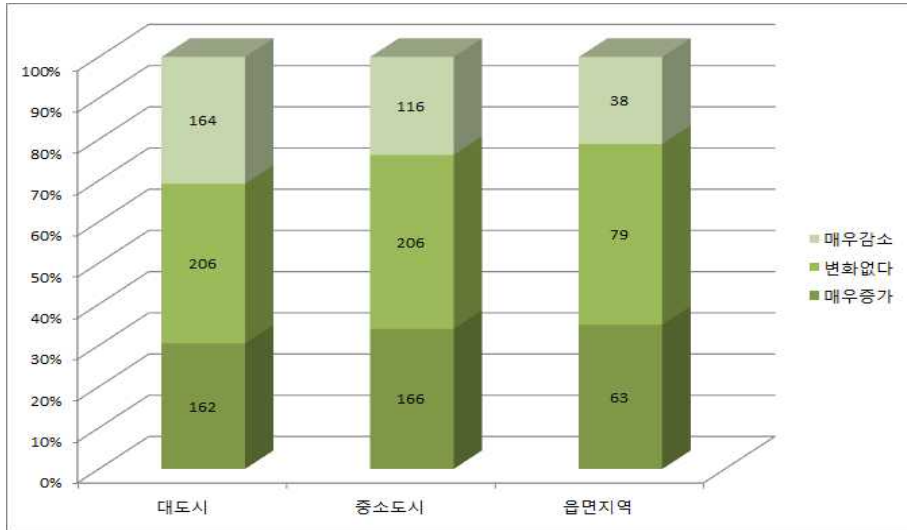
[그림 4-16] 거주지역규모별 노인 주거환경 개선 증가 가능성 평가

고령화와 관련한 이벤트 중 자녀의 노인부양이라는 이벤트도 10년 후 발생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항목이었는데, 이 역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평가에는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chi^2=9.691$, $p<.05$).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30.5%가 10년 후 자녀의 노인부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38.7%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30.8%는 자녀의 노인 부양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이처럼 10년 후 자녀의 노인 부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의 비율과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의 비율이 거의 같았다. 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0년 후 자녀의 노인부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34.0%,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42.2%,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23.8%였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10년 후 자녀의 노인부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35.0%,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43.9%,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21.1%였다.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이 10년 후 자녀의 노인부양이라는 이벤트가 증가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노인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증가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지역이 중소도시 지역과 읍면지역이라는 점을 환기해 보면, 고령화와 관련된 이벤트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미래예측에 지역특성이라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주거환경개선 등 시설개선에 자원을 투여할 여력이 있는 대도시 거주 국민들은 미래의 주거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 국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미래에 자녀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을 다소 기대하고 있으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자녀들의 노인부양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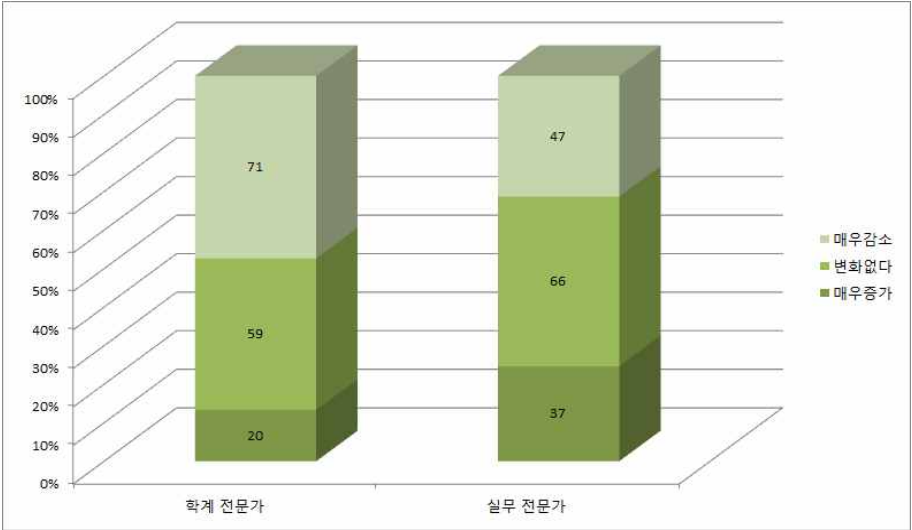
[그림 4-17] 거주지역규모별 자녀의 노인 부양 증가 가능성 평가

전문가 집단에 의해 10년 후 발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이벤트는 전문가 집단의 노인 복지지출과 노인 단독가구였는데, 이에 대한 학계 전문가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평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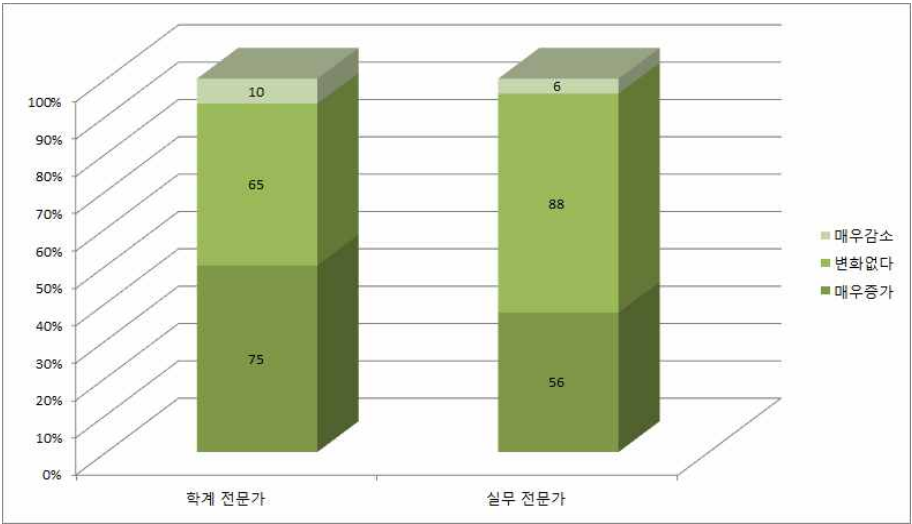
그러나 10년 후 발생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이벤트인 자녀의 노인 부양($\chi^2=10.344$, $p < .01$)과 노인 주거환경 개선($\chi^2=7.213$, $p < .05$)이라는 이벤트는 학계 전문가와 실무계 전문가의 평가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10년 후 자녀의 노인 부양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들 중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이 13.3%,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39.3%였으나, 10년 후 자녀의 노인 부양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47.3%에 달했다. 그러나 실무 전문가들 중 24.7%가 10년 후 자녀의 노인 부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44.0%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31.3%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노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의 50.0%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43.3%는 변화 없을 것으로, 6.7%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실무 전문가들은 37.3%,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 실무 전문가가는 58.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실무 전문가는 4.0%를 나타내었다.



[그림 4-18] 자녀의 노인 부양



[그림 4-19] 노인 주거환경 개선

3.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증가와 예방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국민들은 노인학대, 노인빈곤, 노인이혼, 노인 자살 등이 10년 후 노인 범죄의

증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30년 후 노인 범죄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은 노인학대, 노인빈곤, 노인단독가구, 노인이혼 등이었다. 이같은 이벤트들이 일반국민들에 의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미래 노인범죄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4-10〉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가 노인 범죄 증가에 미치는 영향

	10년 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				30년 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노인 경제활동	5.63	13	6.14	7	5.94	10	6.37	5
노인빈곤	6.26	2	7.05	1	6.47	2	7.19	1
노인복지지출	5.64	10	5.79	14	5.78	13	6.01	11
노인자살	6.04	4	6.16	6	6.25	5	6.32	7
자녀의 노인부양	5.46	19	5.63	18	5.75	16	5.84	15
노인학력수준	5.76	9	5.59	19	5.96	9	5.71	18
노인이혼	6.06	3	6.20	5	6.26	4	6.35	6
노인전용교도소	5.64	12	5.54	20	5.90	11	5.68	20
노인단독가구	6.02	5	6.45	4	6.26	3	6.69	4
건강불평등	5.81	8	6.08	8	6.04	7	6.25	8
노인학대	6.30	1	6.78	2	6.55	1	6.96	2
사회공공지출	5.47	18	5.89	10	5.64	19	6.04	9
노인주거환경개선	5.41	20	5.64	17	5.56	20	5.69	19
노인박탈감	6.01	6	6.74	3	6.17	6	6.88	3
범죄두려움	5.82	7	5.92	9	6.00	8	6.04	10
노인 보호 법제	5.58	14	5.87	11	5.76	15	6.01	12
노인건강수준향상	5.57	15	5.65	16	5.81	12	5.76	17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5.64	11	5.68	15	5.78	14	5.78	16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5.52	17	5.81	13	5.67	18	5.92	14
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5.56	16	5.82	12	5.69	17	5.95	13

노인범죄의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은 노인 경제활동이 10년 후 노인 범죄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건강수준향상,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등의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예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후 미래의 노인범죄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 역시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 경제활동, 노인건강수준향상,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이벤트는 10년 후 미래의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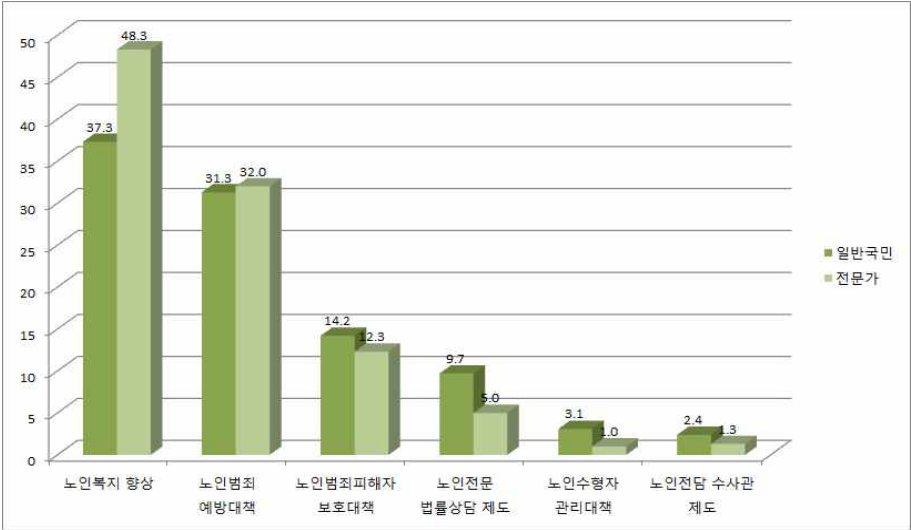
전문가들 역시 10년 후 노인 범죄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가 노인 경제활동이라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던 이벤트들은 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나 사회 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정책적 이벤트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0년 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 중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 노인 경제활동,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가 노인 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노인 경제활동	5.94	1	6.49	1	6.06	2	6.61	3
노인빈곤	5.46	17	6.03	9	5.50	17	6.08	9
노인복지지출	5.74	6	6.35	5	5.82	7	6.48	5
노인자살	5.57	13	5.51	17	5.56	15	5.57	16
자녀의 노인부양	5.55	15	5.72	14	5.53	16	5.86	13
노인학력수준	5.61	11	5.74	12	5.66	13	5.87	12
노인이혼	5.66	10	5.51	16	5.70	11	5.55	18
노인전용교도소	5.43	18	5.41	19	5.47	18	5.54	19
노인단독가구	5.56	14	5.47	18	5.59	14	5.57	17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평균 (역코딩)	순위
건강불평등	5.53	16	5.39	20	5.66	12	5.48	20
노인학대	5.27	20	5.67	15	5.41	19	5.74	15
사회공공지출	5.72	8	6.24	7	5.84	6	6.43	7
노인주거환경개선	5.78	5	6.11	8	5.79	9	6.31	8
노인박탈감	5.34	19	5.72	14	5.38	20	5.83	14
범죄두려움	5.59	12	5.78	11	5.71	10	5.90	11
노인 보호 법제	5.69	9	6.31	6	5.81	8	6.46	6
노인건강수준향상	5.83	3	5.90	10	5.94	3	6.05	10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5.93	2	6.35	4	6.07	1	6.56	4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5.79	4	6.44	3	5.91	4	6.66	1
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5.73	7	6.45	2	5.87	5	6.64	2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노인 복지 향상을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으로 응답하였다(일반국민 37.3%, 전문가 48.3%).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노인 복지 향상이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노인 범죄 예방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일반국민 31.3%, 전문가 32.0%), 노인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반국민의 14.2%, 전문가의 12.3%였다. 그 밖에 노인전문 법률상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반국민의 9.7%, 전문가의 5.0% 였으며, 노인수형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반국민의 3.1%, 전문가의 1.0%, 노인전담 수사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반국민의 2.4%, 전문가의 1.3%였다.



[그림 4-20]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형사정책

제5장

고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

박 형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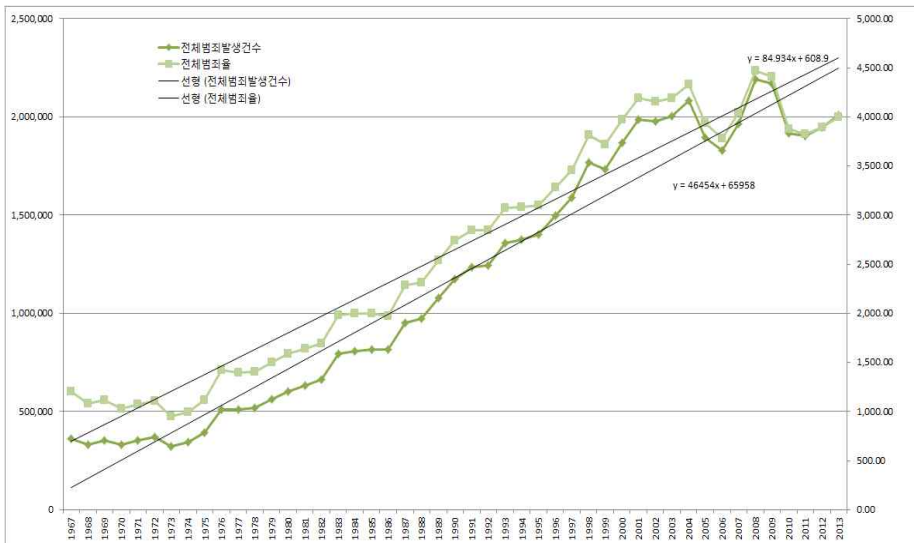
제5장

고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

제1절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

1. 미래의 범죄 발생 예측

공식통계를 통해 지난 1967년부터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는 범죄 발생 건수 뿐 아니라 범죄율(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역시 크게 증가해 온 것이다.



[그림 5-1] 범죄 발생 건수 및 범죄율 추세 1 (1967~2013)

공식통계상에 나타나는 범죄발생 건수 및 범죄율의 변화가 선형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세식이 도출된다.

$$y_1 = 46454x_1 + 65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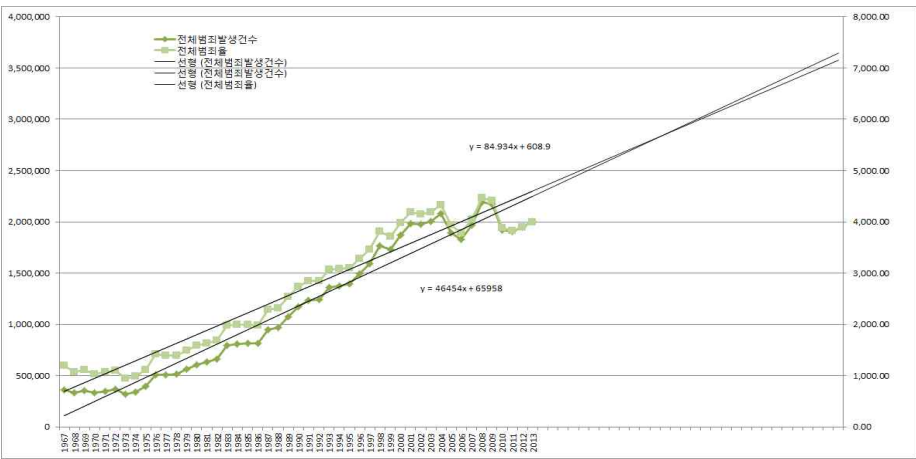
$$y_2 = 84.934x_1 + 608.9$$

y_1 : 전체 범죄 발생 건수

y_2 : 전체 범죄율

x_1 : (년도 - 1967)⁹⁹⁾

즉, 1967년부터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46,454건 증가해 왔으며, 범죄율은 평균 84.934씩 증가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 가정하면, 10년 후인 2025년에는 2,760,290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율은 5535.072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30년 후인 2045년에는 3,689,370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율은 7233.752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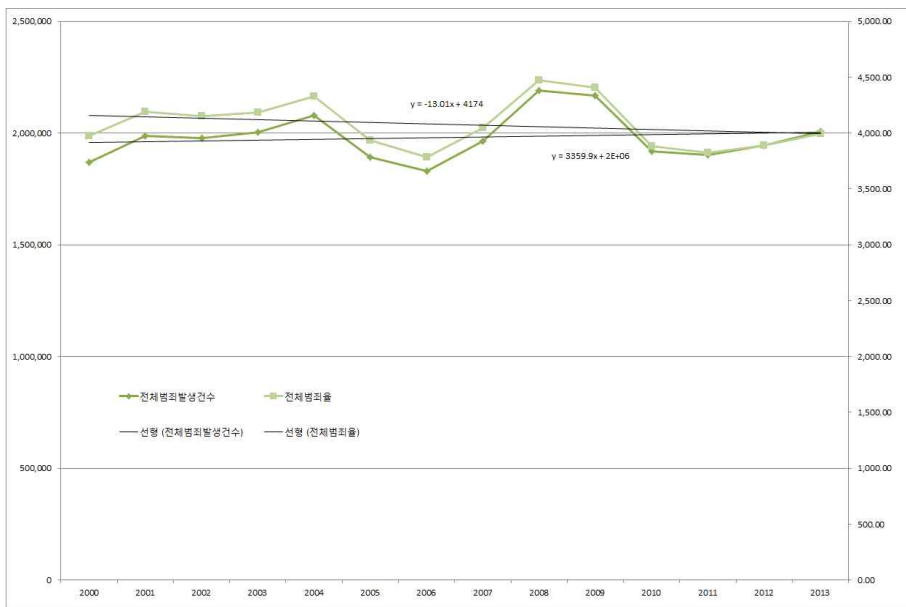


[그림 5-2] 범죄 및 범죄율 예측 1 (1967 ~ 2045)

99) 이 추세식에서 절편은 추세선의 시작연도인 1967년의 범죄발생 건수 및 범죄율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년도의 범죄발생 및 범죄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당년도에서 출발년도인 1967을 뺀 수를 x 에 대입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우리사회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우리사회의 경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범죄 발생 추세곡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전체 범죄 및 범죄율이 2000년까지는 급증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다소 증감폭은 있지만 그 이전 기간과 같은 두드러진 증가양상을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발생 추세 곡선을 2000년 이후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3] 범죄 발생 건수 및 범죄율 추세 2 (200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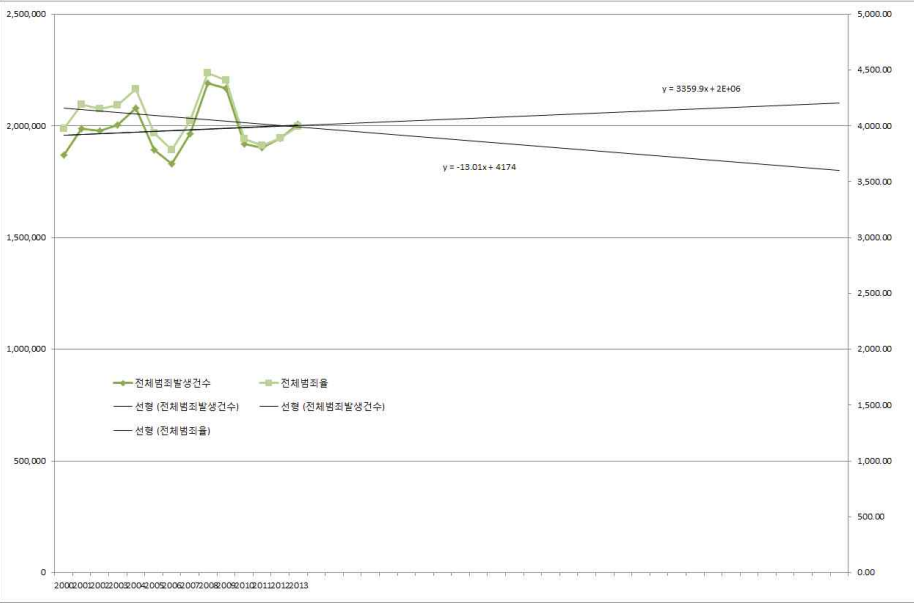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2000년 이후의 범죄발생 추세의 변화를 선형이라 가정하면, 범죄 발생건수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추세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3 = 3359.9x_2 + 2E+06$$

$$y_4 = -13.01x_2 + 4174$$

y_3 : 2000년 이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y_4 : 2000년 이후 전체 범죄율
 x_2 : (년도 -2000)

따라서 2000년 이후 범죄 발생 추세에 따라 10년 후인 2025년의 범죄율은 3848.75로 예측할 수 있으며, 30년 후인 2045년의 범죄율은 3588.55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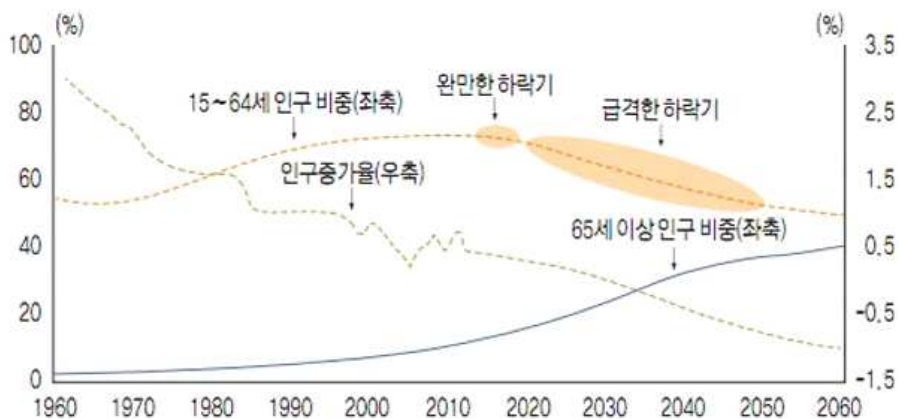
[그림 5-4] 범죄 및 범죄율 예측 2 (2000~2045)

여기에서 우리사회의 범죄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서 1967년부터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범죄발생 양상이 달라지는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동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존향도현상으로 표현되는 농어촌인구의 대도시 이주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노미이론은

이와 같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해체이론 역시 도시 거주환경의 부정적인 변화가 범죄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범죄 및 범죄율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000년대 이후의 우리 사회는 농어촌인구의 도시이주보다는 지역 내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악화되기보다는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정착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구조 역시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질서가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구조의 측면을 살펴보면, 1990년대 까지는 경제활동 인구인 15~64세까지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는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2022.12)

출처 : 한국은행,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안전간 관계(2012.11)에서 재인용

[그림 5-5]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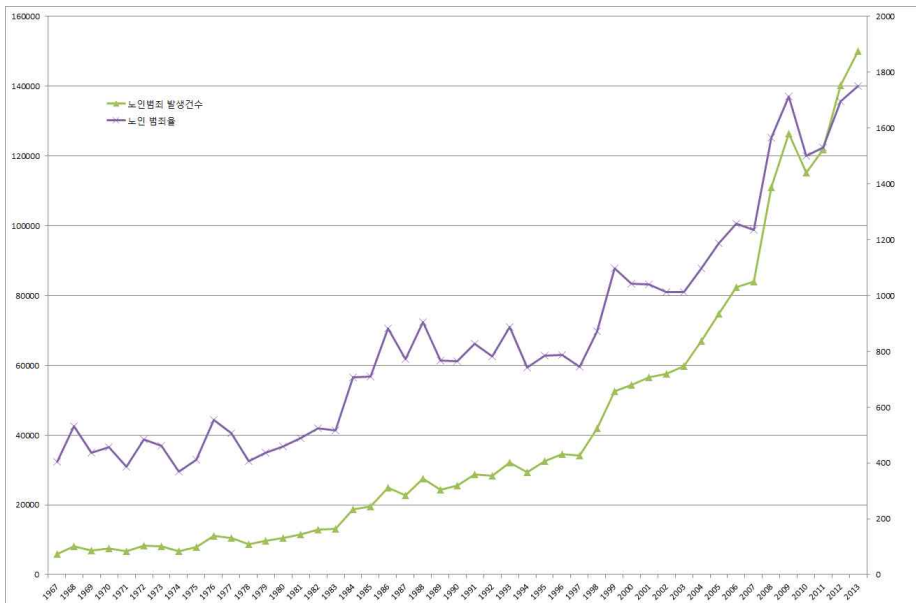
따라서 미래의 범죄 발생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사회변화가 반영된 1967년 이후의 자료를 참조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2000년대 이후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고령화라는

인구구조를 염두에 둘 때, 2000년대 이후의 자료만을 참조해야 하는 타당성이 더욱 인정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10년 후 또는 30년 후의 우리 사회의 범죄율은 점차로 감소하거나 최소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노인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체 사회의 범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2.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 발생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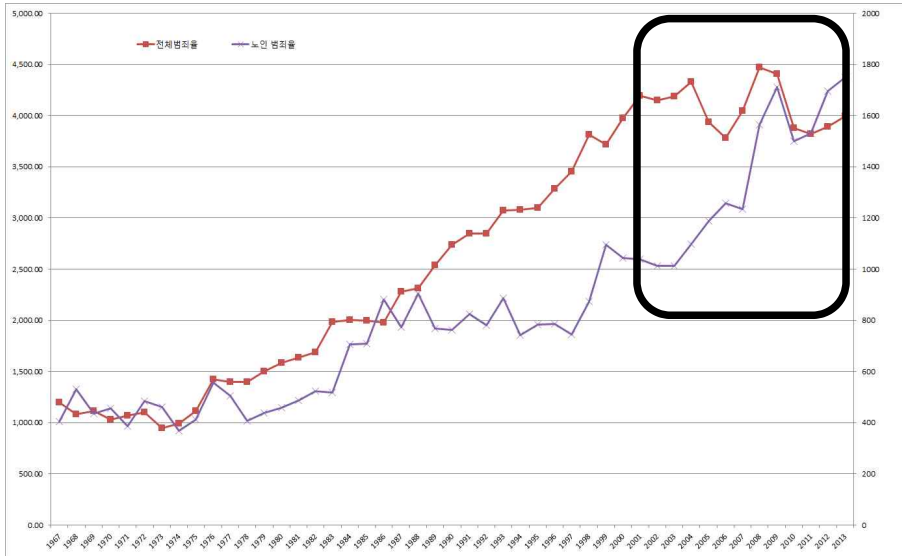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노인의 범죄율인 전체 범죄율에 비해 낮다는 점은 고령화 현상은 전체 범죄발생 및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노인 범죄율만을 살펴보면 전체 범죄와는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



[그림 5-6] 노인 범죄 및 범죄율 추세 (1967~2013)

전체 범죄율이 1990년대까지 급증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 것과는 달리, 노인범죄율¹⁰⁰⁾은 1990년대까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체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에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을 비교하여 살펴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7]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 비교 (1967~2013)

위 그림의 박스 안의 모습이 2000년대 이후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을 나타낸 것이며, 2000년대 이후의 범죄율을 근거로 미래의 범죄율 변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y_5 = 26.403x_1 + 206.9$$

$$y_6 = 63.013x_2 + 8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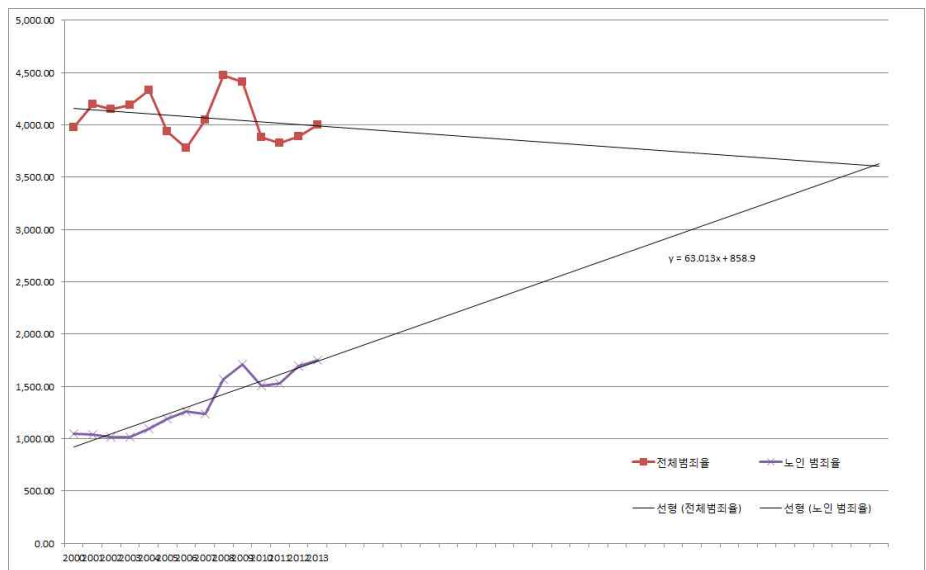
y_5 : 1967년 이후 노인범죄율

y_6 : 2000년 이후 노인범죄율

100) 노인범죄발생 건수는 피의자 연령이 61세 이상으로 집계하였으나, 범죄율 계산을 위한 노인 인구의 수는 60세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노인범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범죄율은 대략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x_1 : (년도 - 1967)

x_2 : (년도 - 2000)



[그림 5-8] 노인 범죄율 예측 (2000~2045)

즉, 노인 범죄율은 1967년 부터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면 매년 26.403씩 증가하는데 반해, 2000년 이후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면 증가폭이 더욱 커져서 매년 63.01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전체 범죄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미래의 노인범죄 발생 양상을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2000년 이후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이후의 노인 범죄율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10년 후인 2010년의 61세 이상의 노인 범죄율은 2434.2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30년 후인 2030년의 노인 범죄율은 3694.485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전체 범죄율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30년의 노인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보다 높아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 범죄의 발생보다는 노인 범죄의 발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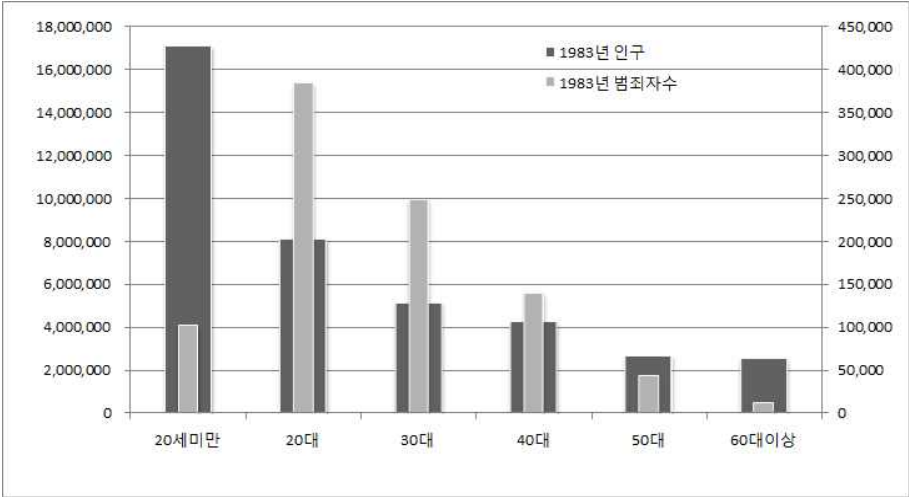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와 범죄 발생의 최빈값을 살펴보아도 이와 유사한 예측이 가능하다.

먼저 1983년의 인구구조는 20세 미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인구 비중이 높았다. 1983년의 범죄자 분포를 보면, 20대가 최빈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인구 비중보다 높은 비중으로 범죄자가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30대와 40대 순으로 범죄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인구집단에서는 20대와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비중보다 높은 비중으로 범죄자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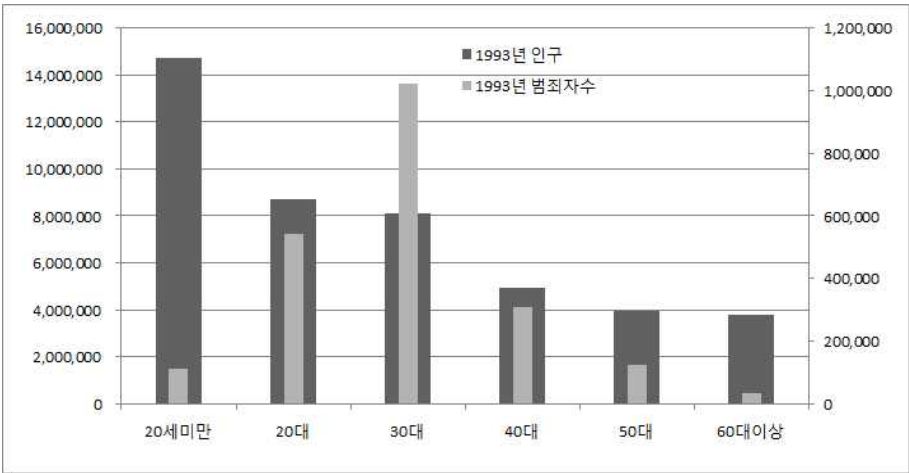
1993년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983년과 마찬가지로 20대 미만이 가장 많고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3년에 비해 30대와 40대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93년의 범죄자 분포는 30대에서 최빈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일하게 전체 인구비중보다 높은 비중의 범죄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2003년의 인구구조는 전체 인구 중 20대 미만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집단이 30대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20대와 40대 인구집단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과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003년의 인구구조에서는 전체 인구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때의 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30대에서 최빈값이 나타나고 있으며, 40대 범죄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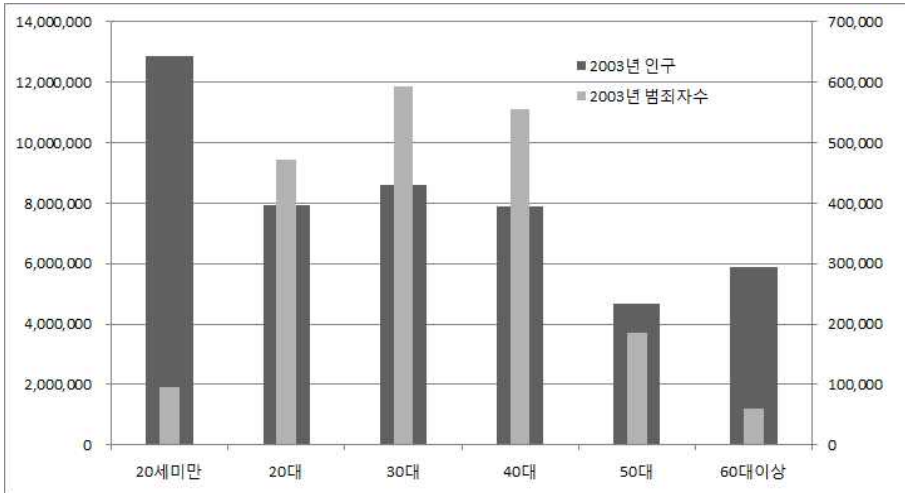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3년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집단은 40대이며, 30대와 50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60대 이상의 연령집단의 비율이 4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가 진행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의 범죄자 분포에서도 40대에서 최빈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30대와 50대 범죄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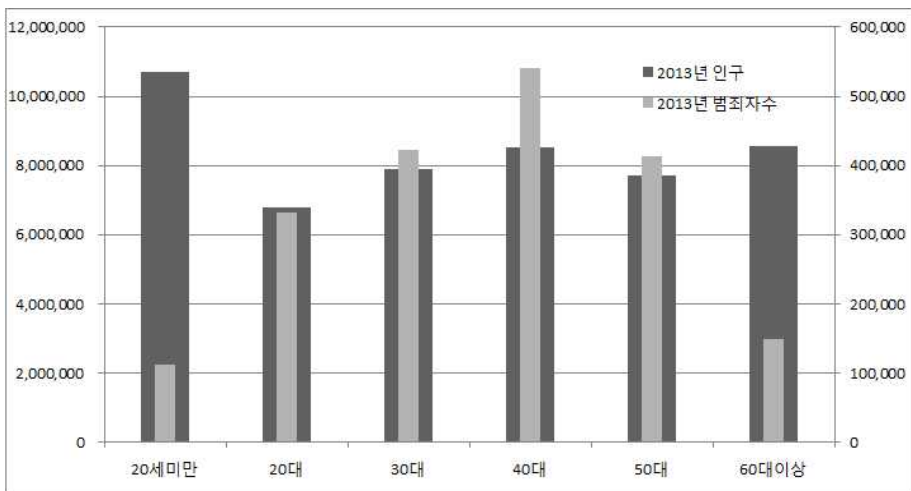
[그림 5-9] 1983년의 인구구조와 범죄자수의 분포



[그림 5-10] 1993년의 인구구조와 범죄자수의 분포



[그림 5-11] 2003년의 인구구조와 범죄자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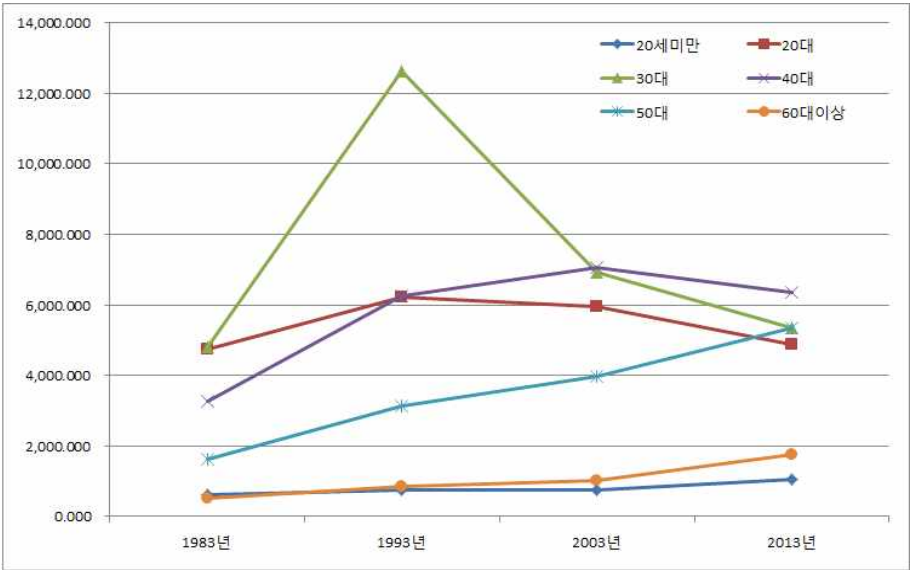


[그림 5-12] 2013년의 인구구조와 범죄자수의 분포

1983년 당시 범죄자의 최빈값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20대였으며, 1993년 당시 범죄자의 최빈값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30대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3년 당시 범죄자의 최빈값은 30대와 40대라 할 수 있으며, 2013년 범죄자의 최빈값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40대였으며, 50대 범죄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1983년의 20대와 1993년의 30대, 2003년의 40대, 2013년의 50대는 동일한 코호트(cohort)

집단이며, 대략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서 범죄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코호트에서는 범죄자 수 뿐 아니라, 범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1983년에는 20대의 범죄율과 3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으며, 1993년에는 30대의 범죄율이 매우 크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40대의 범죄율이 30대의 범죄율 보다 많아져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0대의 범죄율이 40대 다음으로 높은 연령집단이 된 것이다.



[그림 5-13] 연령별 범죄율(1983년, 1993년, 2003년, 2013년)

〈표 5-1〉 연령별 범죄율(1983년, 1993년, 2003년, 2013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983년	602.650	4,741.355	4,824.556	3,250.516	1,623.844	517.898
1993년	754.214	6,209.142	12,643.963	6,259.382	3,116.920	850.273
2003년	747.623	5,935.349	6,907.840	7,044.378	3,962.422	1,012.216
2013년	1,053.585	4,891.175	5,349.801	6,340.695	5,359.057	1,749.386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인인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전체 인구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범죄율 또한 가장 높은 코호트가 노인 인구가 편입된다는 의미이며, 결국 노인의 범죄와 범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제2절 미래의 범죄 발생 양상 시나리오

1. 부정적인 요인들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시나리오

노인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범죄율에 근접할 것이며, 노인 범죄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 노인 빈곤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 범죄는 폭력범죄, 재산범죄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할 것이며, 교도소의 고령 수형자가 증가하여 교정예산에 부담을 줄 것이다.

우리는 앞서 2000년 이후 범죄 발생 추세에 따라 10년 후인 2025년의 범죄율은 3848.75로 예측하였으며, 30년 후인 2045년의 범죄율은 3588.55로 예측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50년의 범죄율을 예측하면 3523.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0년 이후의 노인 범죄율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10년 후인 2025년의 노인 범죄율은 2434.2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30년 후인 2045년의 노인 범죄율은 3694.485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2050년 노인 범죄율은 4009.55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율은 인구집단간 혹은 다른 문화간 범죄양상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나 일반인들의 실생활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범죄 발생 건수일 것이다. 위에서 예측한 범죄율과 통계청의 추계인구(부표 참조)를 통해 전체 범죄발생 건수와 노인 범죄 발생 건수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0\text{년후 전체 범죄자 수}) &= (10\text{년 후 인구}) * (10\text{년 후 전체 범죄율}) / 100,000 \\
 &= 51,972,363 * 3848.75 / 100,000 \\
 &= 2,000,286.321
 \end{aligned}$$

$$\begin{aligned}
 (10\text{년후 노인 범죄자 수}) &= (10\text{년 후 노인 인구}) * (10\text{년 후 노인 범죄율}) / 100,000 \\
 &= 10,331,075 * 2434.225 / 100,000 \\
 &= 251,481.6104
 \end{aligned}$$

$$\begin{aligned}
 (35\text{년후 전체 범죄자 수}) &= (35\text{년 후 인구}) * (35\text{년 후 전체 범죄율}) / 100,000 \\
 &= 48,121,275 * 3523.5 / 100,000 \\
 &= 1,695,553.125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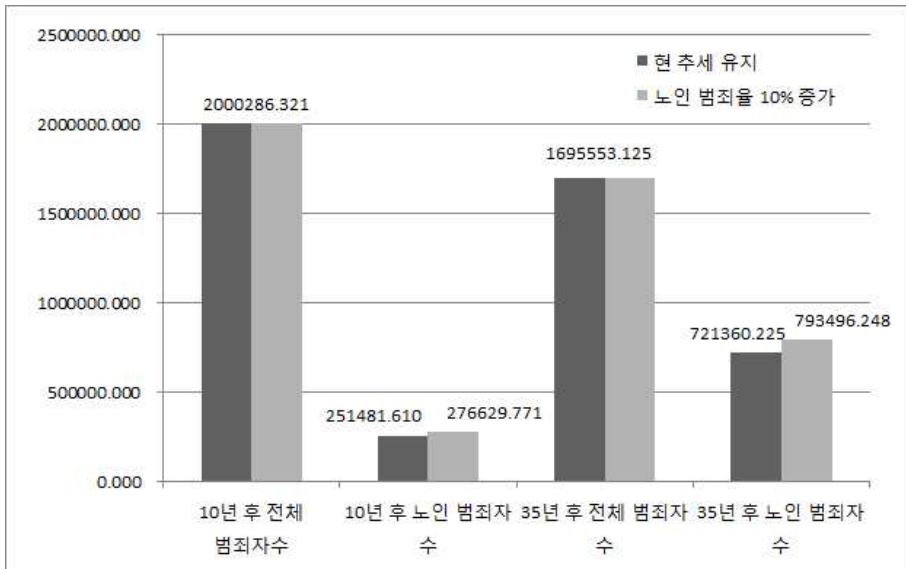
$$\begin{aligned}
 (35\text{년후 노인 범죄자 수}) &= (35\text{년 후 노인 인구}) * (35\text{년 후 노인 범죄율}) / 100,000 \\
 &= 17,991,052 * 4009.55 / 100,000 \\
 &= 721,360.225
 \end{aligned}$$

이같은 결과는 2000년 이후 전체 범죄율과 노인범죄율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범죄율은 노인 빈곤, 고령자 고용불안, 가족관계 악화, 노인의 사회적 소외, 노인 주거환경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상황들이 더욱 심각해 진다면 노인의 범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노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이 강화되어 노인 범죄율이 약 10% 증가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노인 범죄자 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0\text{년후 노인 범죄자 수}2) &= (10\text{년 후 노인 인구}) * (10\text{년 후 노인 범죄율} * 1.1) / 100,000 \\
 &= 10,331,075 * 2434.225 * 1.1 / 100,000 \\
 &= 276629.7715
 \end{aligned}$$

$$\begin{aligned}
 (35\text{년후 노인 범죄자 수}2) &= (35\text{년 후 노인 인구}) * (35\text{년 후 노인 범죄율} * 1.1) / 100,000 \\
 &= 17,991,052 * 4009.55 * 1.1 / 100,000 \\
 &= 793496.248
 \end{aligned}$$



[그림 5-14]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미래의 범죄발생 예측

이 시나리오에 따라 현재의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 추세가 유지될 경우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12.6%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42.5%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이 더욱 강화되어 노인 범죄율이 약 10% 증가한다면,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13.8%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46.8%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나리오가 가정하고 있는 문제상황은 노인빈곤, 고령자 고용 불안, 가족관계 악화, 노인의 사회적 소외 심화,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스트레스의 증가,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노인 주거환경 악화 등이며, 이로 인한 노인들의 전반적인 범죄율의 증가를 상정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의 범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이미 현실화 되어 있거나 심화되는 추세이며, 일반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설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변화들이 미래에도 유지되거나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인의 빈곤의 심화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며, 더욱이 상대적 빈곤의 심화는 노인들을 범죄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한때 산업의 역군으로서 근대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으나, 경제적 능력과 함께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빈곤한 노인들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고 혼자 살게 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정서적 유대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같은 스트레스는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어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범죄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은 주로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간혹 젊은이들과의 세대갈등이 표출되어 폭력범죄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빈곤의 문제는 폭력범죄 뿐 아니라 재산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는데, 생계를 위한 절도범죄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사소한 생활용품 절도도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빈곤이 문제가 되면서 사소한 물건에 대한 절도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빈곤은 사기 등과 같은 다른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유인이 될 수도 있으며, 도박 등의 풍속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도 있다.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은 성매매와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때 주로 피해자가 되는 대상은 노인들이 쉽게 유인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다. 그리고 일상화된 범죄는 상습화되고 진화하여 강력범죄나 대규모 사기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범죄의 유발요인들은 자살을 발생시키는 문제상황과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들이 완화되지 않은 한 노인 범죄와 함께 노인 자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인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노인 범죄뿐 아니라 노인 범죄 피해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지방도시나 읍면지역의 빈곤한 노인들의 거주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설문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거주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았다. 열악한 거주지는 침입절도나 침입강도의 주된 표적이 되어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으며, 노인들은 이러한 침입범죄에 대한 대처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크고 잦은 피해에 노출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노인들간의 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노인들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도 증가할 수 있는 범죄 피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 피해나, 노인들의 교통범죄 피해, 부양 갈등이 야기하는 노인학대 등이다.

노인 범죄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라 교도소 내의 고령 수형자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고령의 수형자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지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 수형자의 치료관리에 사용되는 교정 예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령수형자의 치료관리 예산의 증가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미 겪고 있는 문제들이며,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고령 수형자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예산의 부담으로 인해 고령 수형자의 치료관리가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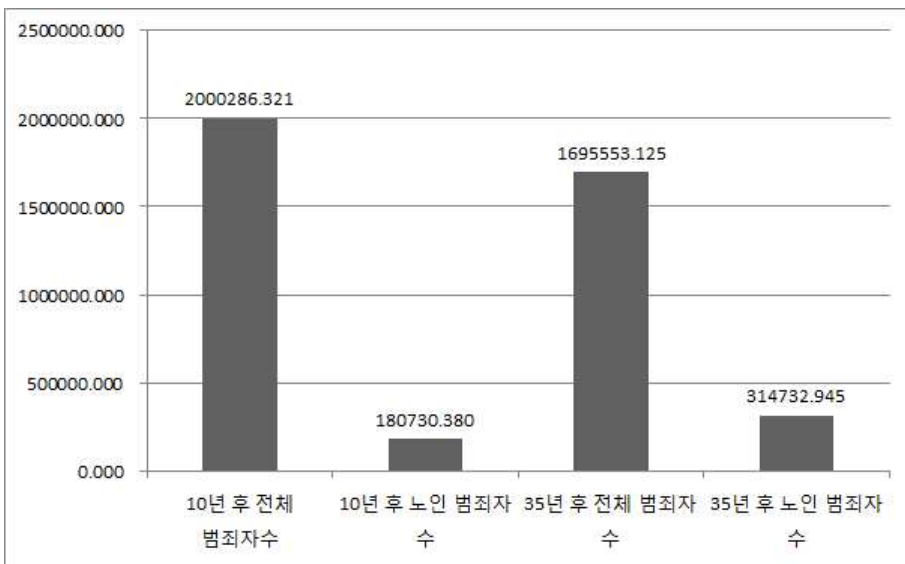
고령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의 생활은 물론이고, 그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에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 범죄자들은 출소 이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2.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이 정체되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범죄자 수는 증가할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노인빈곤, 고령자 고용 불안, 가족관계 악화, 개인주의화,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 범죄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기본적인 범죄 유발 요인을 단기적으로 억제하여 범죄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범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2013년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begin{aligned}
 (10\text{년후 노인 범죄자 수}) &= (10\text{년 후 노인 인구}) \times (2013\text{년 노인 범죄율}) / 100,000 \\
 &= 10,331,075 \times 1749.386 / 100,000 \\
 &= 180730.380 \\
 (35\text{년후 노인 범죄자 수}) &= (35\text{년 후 노인 인구}) \times (2013\text{년 노인 범죄율}) / 100,000 \\
 &= 17,991,052 \times 1749.386 / 100,000 \\
 &= 314732.945
 \end{aligned}$$



[그림 5-15] 노인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범죄발생 예측

이 시나리오에 따라 노인 범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9.0%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18.6%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비율은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니지만 노인 인구의 절대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단기적으로 범죄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노인의 사회적 소외 및 상대적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역의 특성에 맞는 CPTED 전략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범죄 유발 요인은 피할 수 없지만, 문제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모습을 전망할 수 있다. 즉, 노인의 빈곤의 문제와 빈곤한 노인들이 홀로 살게 되는 현상 자체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상황이지만,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정서적 안정을 느끼며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화는 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혼자 살지만 함께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으며, 젊은이들이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노인의 범죄는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미래에는 복지지출과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혹은 NGO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노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노인 정책에 형사사법기관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는 사업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수행하거나 NGO에서 수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형사사법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협력은 그 사업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들과 지역주민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기반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에는 노인 범죄자의 재범방지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다. 노인의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범죄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절도 범죄 등의 노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범죄가 상습화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나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수형자가 증가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고령 출소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사회 복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밀착된 경찰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노인들의 경우 경찰 활동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범죄 피해 두려움이 높아지는데, 경찰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노인들의 범죄 피해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노인들

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김상균, 2001; 장준오, 2008).

또한 빈곤노인의 주거환경을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경찰관들의 취약 지역 순찰 및 지역 특성에 맞는 CPTED 전략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인들의 범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노인 범죄 및 노인 범죄 피해의 많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미래상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고용, 복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대책은 단기적인 증상만을 억제시키는 대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상이 필요하다.

3.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 졌을 때의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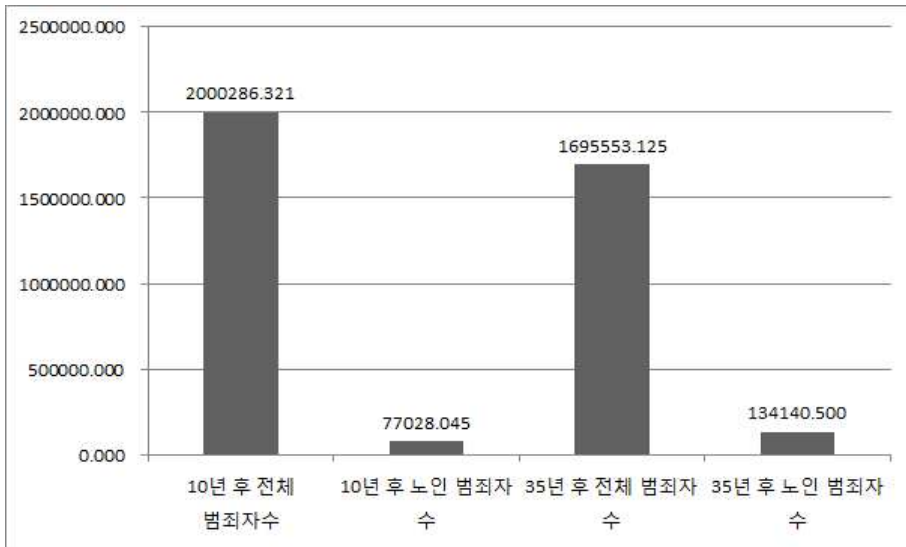
노인 범죄율이 감소하여 사회 전체의 범죄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사회보험, 연금을 통해 노인의 빈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노인들의 의료 복지가 실현되어 신체적인 질병 치료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지 않아, 노인들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최선의 형사정책은 최선의 사회정책이라는 형사정책의 격언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모두 고령화 시대에 궁극적인 형사정책의 실현은 노인 복지의 향상으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노인의 범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되어 노인 범죄율이 급증하기 직전인 1990년대 이전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begin{aligned}
 (10\text{년후 노인 범죄자 수}) &= (10\text{년 후 노인 인구}) \times (1997\text{년 노인 범죄율}) / 100,000 \\
 &= 10,331,075 * 745.595644 / 100,000 \\
 &= 77028.045
 \end{aligned}$$

$$\begin{aligned}
 (35\text{년후 노인 범죄자 수}) &= (35\text{년 후 노인 인구}) \times (1997\text{년 노인 범죄율}) / 100,000 \\
 &= 17,991,052 * 745.595644 / 100,000 \\
 &= 134140.500
 \end{aligned}$$



[그림 5-16] 노인 범죄율이 감소할 경우 미래 범죄 예측

이 시나리오에 따라 노인 범죄율이 1997년의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은 약 3.9%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은 약 7.9%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비율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10년 후인 2025년에는 약 19.9%, 35년 후인 2050년에는 약 37.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노인 범죄의 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죄율의 감소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노인들의 범죄율은 젊은 인구집단에 비해 전통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1997년 노인 범죄율 이하의 범죄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의 빈곤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특히 노인 빈곤의 문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

고 있었는데, 노인 복지를 통한 빈곤의 감소는 재산범죄 및 위조 범죄 감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폭력범죄와 강력범죄의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다(김봉수, 2012). 일반 국민들은 노인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범죄의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질환을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노인 의료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문조사는 노인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 노인 경제활동도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경제활동을 통해 노인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노인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경제활동보다는 연금을 통해 해결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의미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해 고독감과 사회적 격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하여 보람을 느낄 때 사회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역할의 회복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이 되었을 때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면 사회의 각 부분에서 노인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면, 형사사법기관은 노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역시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은 노인들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노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법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법 준수 의식을 함양하여 범죄로부터 멀어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역할을 복원할 수 있다면 다른 사회관계 역시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1. 단기적 형사정책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노인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는 시나리오와 같은 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단기적 형사정책과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강화

고독 해결 및 대화 부족을 해결하는 수준의 노인 대상 상담 및 지원을 벗어나 범죄성의 완화나 반사회성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 노인의 범죄 관련 정보나 경력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사 및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의 학력, 직업, 가족상황, 경제력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무료 교육프로그램이 나, 지자체 교육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교육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지역 사회 기업 역시 노인 대상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한편, 종교기관에서도 노인의 사회활동 및 대인 관계 조직을 위한 종교 행사 운영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부는 은퇴 후 자신의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범죄적 환경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질 수 있으며, 또한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모자랄 경우에 범죄의 기회에 노출될 수 있다(박숙완, 2013). 이처럼 노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 찾음으로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은퇴 후 계속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노인 교실이나 노인

복지 회관의 보급 확대, 대학의 평생 교육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박숙완, 2013).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서비스 대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노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입

노인이 되기 전 범죄를 저지르고 노인인구로 편입되어 재범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노인이 되어서 범죄로 진입하더라도 범죄가 상습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 지역 사회 경찰활동 강화

이웃감시활동을 통한 범죄피해 확률 감소 및 노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역 행사에 노인들을 참여시키고 지역 사회 내 노인들의 역할을 마련하여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 노인 대상의 지역 사회를 통한 범죄 예방 교육 실시

구청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 및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범죄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SAFE Project(Senior Against a Fearful Environment)를 실시하여 노인을 활용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장준오, 2009).

바. 독거 노인 거주 시설의 취약성 보강

독거 노인 거주 시설에 방범창 설치, 출입문 보강, 범죄 신고 벨 설치 등을 통해 취약한 노인 거주지를 보강하고, 노인들에 대해 방법에 대한 상세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김상균, 2001).

사. 노인 범죄자 및 수형자 분류 기준 확립

노인의 건강상태와 죄질 및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하여, 치료의 대상, 복지의 대상, 교정의 대상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아. 노인수형자 전용 교정 프로그램 개발

노인수형자의 연령과 학습능력,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이들의 교정과 사회복귀에 적합한 교정프로그램(직업교육, 여가 활용 교과과정 등)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연령, 죄질, 건강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채우할 수 있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장기적 형사정책

가. 노인 복지 강화

사회보험을 통한 연금의 확대와 노인 의료 복지 강화하여, 노인 빈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빈곤의 문제는 재산범죄는 물론이고 다양한 폭력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복지 지출 중 노인복지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며, 서비스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고령일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므로 보건복지지출을 증가시켜 노인 빈곤율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고, 복지시설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구축

노인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범죄 특성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

가를 양성하여 노인 범죄의 증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범죄 대응전문 인력으로서 ‘노인범죄예방 전문가’ 및 ‘노인교정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단체의 지원을 통해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형사절차상 노인 보호 방안 강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신과 의사나 노인전문상담사 등을 참여시켜 노인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피해자를 대할 때에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특례 규정을 바탕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노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라. 노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법률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피해자 구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형사 절차상의 법률 서비스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노인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 노인 피해자 보호 및 노인 범죄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고령자법 혹은 노인법을 제정하여, 노인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양형 기준, 분류의 기준, ‘노인보호처분’의 종류와 요건, 교정처우프로그램 적용 기준, 노인전용교정시설의 설치 조건 등을 정하여 노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노인 범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바. 노인교정시설 설치

현재 노인 전용 교정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인데, 노인복지시설과 결합된 민영 교정시설이나 지역사회교정시설 형태의 노인 전용 교정시설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년교정시설을 노인범죄 관련 시설로 전환하거나, 동시에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전문교정시설에서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 의료 시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게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경태, 2009).

사.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개선

노인범죄자 및 수형자의 연령 기준 통일 및 연령 구분 세분화, 노인수형자 집단의 특성별 세분화 혹은 유형화, 노인 범죄자의 노인수형자 관련 통계 체계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강은영 외, 2014). 또한 다양한 방식의 노인수형자 분리 수용체계 도입과 노인수형자를 위한 시설 및 설비적 배려 강화가 필요하다(강은영 외, 2014).

아. 노인 수형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마련

노인수형자 교정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단계를 노인에게 맞도록 조정하여 노인 수형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강은영, 2013; 장규원·윤현석, 2011).

또한 노인범죄자의 수용지역이 가족의 거주지와 근접하도록 하고, 가족의 협력이 수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무적 접견과 접견장소 및 시간에 대한 예외적 인정, 접견 당사자 선정에 대한 노인 수형자의 의사반영 및 상대방의 의무적 수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 노인수형자의 대한 대안적 처우 개선

노인들의 경우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복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노인수형자의 가석방을 활성화해야 하고, 가석방 제도에 더하여 온정적 가석방과 가택 구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강은영 외, 2014). 이는 교정 비용 절감 및 노인수형자가 겪을 수 있는 가족관계 단절, 사회생활단절 등의 문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강은영 외, 2014).

차. 노인 범죄자의 갱생 보호 확대,개선

현재 출소자 갱생보호를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노인출소자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의탁 혹은 생계 곤란 노인 출소자는 민간갱생보호시설만 입소가 가능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노인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생계 및 의료 지원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 갱생보호법인과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민간조직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 범죄자가 출소하여도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강은영 외, 2014).

카. 노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 연구

장기적으로 노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노인범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 정책 및 노인 수형자 정책, 노인 피해자 보호 정책 등이 수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맺음말

박 형 민

제6장

맺음말

미래연구의 의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할 수 있다. 형사정책에 있어서의 미래 연구 역시 미래의 형사정책적 변수들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이에 대비한다는 미래연구의 목적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노인의 범죄 및 범죄 피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살펴 보았으며, 자료에 기반하여 노인 범죄 및 노인 범죄 피해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고령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선정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범죄 발생 추세를 통해 미래의 범죄 발생 양상을 예측하였다. 최근의 범죄 발생 양상은 전체 범죄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노인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우리 미래에서 노인 범죄의 문제는 형사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심각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노인 범죄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어진 변수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확연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미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라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고령화라는 비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 우리는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으나, 그 비에 맞는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라는 비가 가랑비인지, 태풍인지를 예측하여, 어떤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축대 방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여러 가지 변수가 다양하게 작용하여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범죄율의 변화가 선형적이라 가정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적인 변화는 가설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으며, 어떤 변수가 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를 결정하는 변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실천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변수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 연구가 '정확한' 예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연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미래연구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연구의 목적을 예측을 통한 '미래 대비'라고 한다면, 이같은 상황은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일 수 있다. 미래의 여러 변수가 가변적이라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역적인 추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예측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가역적인 정책 또는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실천의 여하에 따라 고령화라는 비는 태풍이 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지만, 소나기 정도로 대비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래연구의 가능성이자 매력이다. 미래 연구 자체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개입인 것이다.

우리는 시나리오를 통해 세 가지 미래상을 예측하였다.

부정적인 변화들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되어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그 피해가

극대화 되는 미래가 될 것인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노력들이 수행되어 그 피해를 어느정도 회피할 수 있는 미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상황 자체에 개입하여 그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미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일 노인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 전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위기가 아니라,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형사정책의 내용은 사실상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우리 선택과 실천을 돕기 위해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근 외, “노인법제연구: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 삼우사, 2009.
- 강성호 외, 주요국의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본 사적연금 대응과 시사점, 해외보협동향, 보험연구원, 2013.
- 강은영 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강현정,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한국콘텐츠학회, 2011.
- 고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57,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고희채 외,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2007.
-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보도자료), 2014.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2012.
- 구자숙 외,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5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야 작업반,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 참고자료), 2012.
- 국제미래학회,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두남, 2014.
- 권기헌,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에 관한 방법론 서설”, 법문사, 2008.
- 권혁남, 고령화 시대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생명윤리 12(2),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 기획재정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 주요국의 복지현황 조사, 2012.
- 김경태,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3, 한국교정학회, 2009.

- 김경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 김고은·김호기,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실태와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정책포커스 20, 2011.
- 김기현, 고령화시대의 노인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2, 한국교정학회, 2011.
- 김기환, 우리나라 생명표 사망확률 추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35(3), 한국인구학회, 2012.
- 김복순,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를 국제비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5.
- 김봉수, 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법학논총 32(1),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김상균, 노인의 범죄피해특성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3, 한국경호경비학회, 2000.
- 김상원·김은주, 일본과 한국의 노인범죄 추세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2008.
- 김성언,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쟁점과 경험적 탐색, 형사정책연구 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 김성태 외, 미래사회 정책수립을 위한 미래예측방법론에 대한 고찰: 해외 미래예측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6.
- 김연수·김도우, 범죄안전 지표개발에 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 김태명, 경찰단계에서의 사건종결 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3(2), 경찰대학교, 2013.
- 김태명,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사법처분 도입에 대한 연구, 경찰청, 2010년.
- 김태현, 한국고령화 진행과정의 중장기 예측, 노동부, 2007.
- 김현곤·이혜정 외, 성공적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 방법론(FROM),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 남기철, 한국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쟁점, 참여연대, 2011.
- 남상철·신연희, 여성노인의 빈곤과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법태도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4, 한국교정학회, 2004.

- 노상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법적 과제, 강원법학 1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2004.
- 노재철,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13.
- 노재철, 노인의 자립과 사회참가 등 사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2012.
- 노재철,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13(1), 2013.
- 림성사, 고령화 사회와 법: 「高領社會における高領投資者の保護」に對するコメント,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심포지엄 특집, 아세아여성법학 17, 아세아여성법학 연구소, 2014.
- 박경돈 외,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성과와 과제: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발전방 향 모색, 고용노동부, 2012
- 박경하 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 박광준·안홍순 외,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1999.
- 박병원, 미래연구 방법론: 미래예측,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Future Horizon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 박숙완, 노인 범죄의 원인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 박영규, 고령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42, 한국교정학회, 2009.
- 박용근, 독일과 일본의 노인복지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 35,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박정원·장창수, 북한의 노인복지 법제 분석: '년로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6(3),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박정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click 경제교육, KDI, 2015.
- 박종연, 노인보건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 박지현, 기초연금 도입, 중장기 지방재원마련이 시급하다, KILF REPORT, 2014.
- 박현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1, 한국법학원, 2013.
- 박현주·정순돌,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영국고령화패널 (ELSA)분석, 한국노년학 32(4), 한국노년학회, 2012.

-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법제처, 노인수발보험법안 심사결과 및 해설, 2006.
- 법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2015.
-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14.
- 보건복지부, 2015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2015.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 계획, 2013.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2013.
-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5.
- 보건복지부, 교도소 출소자 등에 대하여도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보도자료), 2002.
- 서용석, 해외 미래예측 동향과 시사점, 국토 353, 국토연구원, 2011.
- 서용석 외, 미래 환경 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2011.
- 석진홍·박우성,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4(3), 한국노동연구원, 2014.
- 성승제, 고령화 사회와 법: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토론편, 아세아 여성법학연구소 심포지엄 특집, 아세아여성법학 17,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4.
- 손미정,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한국법학원, 2010.
- 송종국, 미래연구 방법론: 미래연구방법론(Foresight)의 활용, Future Horizon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 송창용·박보경, 고령화 시대의 이슈와 정책과제, 직업능력개발원, 2011.
- 신동균,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전망, 경제연구 26(1),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5.
- 신동균, 제1주제: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5.
- 신의철·박종연·이은환·차승현·김현아, 저출산·고령화와 삶의 질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심포지엄 특집, 아세아여성법학 17, 2014.
- 안세환 외, 일본 초고령사회의 산업구조 변화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 산업구조 예측, 산업경제연구 25(3),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 안수현, 고령화 사회와 법: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투자자의 보호-실무의 관행 개선을 제안하며,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심포지엄 특집, 아세아여성법학 17,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4.
- 양장미, 미래연구 포커스: 영국의 예측조사 프로세스 및 방법론, Future Horizon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 원혜옥,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 유순덕 · 이민수 · 신선영, 미래예측 방법론,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 윤기종,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사회보장법학 2(2),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윤동호 · 김은경,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윤성수, 장기미래예측과 시나리오 방법론, 한국관계비수회지 45, 2010.
- 이건중 · 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4.
- 이건호,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범죄피해와 노인학대, 한국의료법학지 16(2),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08.
- 이미숙,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5, 한국보건사회학회, 2009.
- 이보형 · 박현식, 노인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법학연구 40, 한국법학회, 2010.
- 이삼식 · 방하남, 인구고령화와 인구대책,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자료, 2004.
- 이상립,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35(2), 한국인구학회, 2012.
- 이세준, 통합적 미래연구 방법론의 탐색 및 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 이세준 · 이윤준 · 홍정임, 통합적 미래연구 방법론의 탐색 및 적용, 정책연구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 이숙경 · 홍정민, 노인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측정도구 개발: 노인 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5(2), 2011.
- 이승헌, 경찰 다이버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7(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인영 외, “현대사회와 노인법제”, 삼우사, 2012.
- 이재열 · 남은영 · 전해정 · 석재은, 저출산 고령화와 삶의 질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이정석, 경남의 취업구조 고령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128, 경남 발전연구원, 2007.
- 이지은, 고령화 사회와 법: 고령자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연구-최근 규제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심포지엄 특집, 아세아여성법학 17, 아세아 여성법학연구소, 2014.
- 이희성,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6,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 임현, “미래예측 방법론”,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 2009.
- 장규원·윤현석, 노인수용자의 재통합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0, 한국교정학회, 2011.
- 장두순, 老人長期療養保障制度에 대한 比較法的 研究, 노동법논총 16,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 장봉석,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제도적 정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한국법학원, 2012.
- 장종인, 미래연구 방법론: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나리오 방법론, 정보통신정책 1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장준오 외,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 장준오,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장창수, 통일 이후 남북간 노인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통일문제연구 26(2), 통일연구원, 2014.
- 재정경제부, 인구고령화 과정에서의 공공지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7.
- 전광석,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사회보장법학 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전해숙, 노인 인지문제 개선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고령자패널데이터(KLoSA)를 이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전해숙,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 의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의 연령차: 고령화 사회의 의료서비스에 주는 함의, 보건사회연구 3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정성호,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한국인구학 36(2), 한국인구학회, 2013.

- 정우진,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중·장기 예측,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
- 정재호, 미래예측 방법론: 이론과 실제, 나라경제, 2006.
- 정진호·김정한 외,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 체계 혁신,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정현명, 한국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0,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조국,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경찰법연구 1(1), 한국경찰법학회, 2003.
- 조성혜, 독일의 노인 관련 법제,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08.
- 지은정 외, 노인일자리아업 지원체계 개편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장법학 2(2),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 차홍봉, 저출산·고령화의 전망과 노인에 관한 사회복지법제도의 과제: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림법학 FORUM 18, 2007.
- 채현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양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18(2), 2010.
- 최준,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8, 한국교정학회, 2013.
- 최향섭·강홍렬·장종인·음수연,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최향섭·김문조·이명진·김희연, 미래예측방법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최향섭·음수연·전미경,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카와모리케이지, 고령화 사회와 법: 고령화 사회와 보험,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심포지엄 특집, 아세아여성법학 17,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4.
-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 프랑스의 노인복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4.
-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와 노인복지법제의 체제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2004.
-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 한국법제연구원, 독일의 노인복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4.
- 한국법제연구원,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4.
- 한국소비자원(편), 노인 요양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1.
- 한동효,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12(2), 한국

지방정부학회, 2008.

한동효, 고령화사회의 노인범죄 유형별 추이와 범죄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홍운선, 고령화 사회와 법: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에 대한 토론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심포지엄 특집, 아세아여성법학 17,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4.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2),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황명진,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추계, 한국인구학 34(2), 한국인구학회, 2011.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At America' s Expense: The Mass Incarceration of the Elderly, 2012.

Colombo, F. et al,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2011.

Human Right Watch(HRW), Old Behind Bars: The Aging Priso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2.

Magistra Pamela Geissler, Alterskriminalität Tatverdächtige, Verurteilte und Inhaftierte ab dem 60 Lebensjahr in Österreich, Universität Wien, 2013.

Maik Krüger, Soziale Beziehungen und spezielles Übergangsmanagement bei älterenlteren Gefangenen, 2010.

OECD, Ageing and the Public Service-Human Resource Challenges, 2007.

OECD, Ageing in Cities, 2015.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2013.

Ronald H. Aday · Jennifer J. Krabill, Aging Offend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arquette Elder's Advisor, 7(2), 2006.

Ronald H. Aday · Jennifer J. Krabill, Older and Geriatric Offenders: Critical Issues for the 21st Century, Special Needs Offender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SAGE Publications, 2012.

- The Osborne Association, The High Costs of Low Risk: The Crisis of America's Aging Prison Population, 2014.
- Tina Chiu, It's About Time: Aging Prisoners, Increasing Costs, and Geriatric Release, New York: Vera Institute of Justice, 2010.
- U.S. Department of Justice, The Impact of and Aging Inmate Population on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2015.
- Von Thomas Gesterkamp, Graue Kriminalität-Senioren als Straftäter, Deutsche polizei, 2013.
- 京俊輔, 控訴審における罪に問われた障害者に対する「入口支援」の可能性-島根県で取り組んだB氏事例を通じて, 2015.
- 南高愛隣会, 社会福祉推進事業(13), 各事業成果・課題概略書, 2013.
- 内閣府, 平成26年版高齢社会白書, 2014.
- 渡邊真知子, 知的障害者・高齢者等の 刑事弁護と社会復帰支援, LIBRA 14(8), 東京弁護士会, 2014.
- 目黒由幸・千田早苗, 仙台地検における入口支援: 地域社会と協働する司法と福祉, 法律のひろば 67(12), 2014.
- 犯罪対策閣僚会議(平成20年12月22日), 犯罪に強い社会の実現のための行動計画2008, 2008.
- 犯罪対策閣僚会議(平成24年7月20日), 再犯防止に向けた総合対策, 2012.
-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0年版犯罪白書, 2008.
-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1年版犯罪白書, 2009.
-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2年版犯罪白書, 2010.
-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3年版犯罪白書, 2011.
-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4年版犯罪白書 2012.
-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5年版犯罪白書, 2013.
-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6年版犯罪白書, 2014.
- 浜田浩一, 高齢者・障がい者の犯罪をめぐる議論の変遷と課題: 厳罰から再犯防止,そして立ち直りへ, 法律のひろば 67(12), 2014.

- 浜井浩一, 法務と福祉の接点である更生保護に関する研究, 厚生労働科学研究報告書, 2013.
- 松友了, 司法福祉分野における福祉支援とは何か, 三重県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 2015.
- 魚谷瑞紀, 累犯高齢者はなぜ増え続けているのか-再犯防止には何が必要なのか, ゼミ論文 2013, 早稲田大学, 2013.
- 田島良昭, 触法・被疑者となった高齢・障害者への支援の研究, 厚生労働科学研究報告書, 2013.
- 斉藤哲也, 刑務所における高齢者・障害者の処遇及び福祉的支援の現状, 法律のひろば 67(12), 2014.
- 荒中, 弁護活動と福祉との連携に関する研究, 厚生労働科学研究報告書, 2013.

Abstract

Criminal Justice Policy and Future Strategy for Social Change : Criminal Justice Policy with Population Aging

Bark, Hyung Min* · Seo Joo-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constitutes a part of the KIC research on the future of criminal policy, is to predict the changes of criminal policy issues in the future to be caused by the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and use the findings to propose strategies for national policies. We need to predict various issues related with criminal policies to understand the changes to come and assess and analyze their impact. Social changes, such as changes in the socio-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economic structure affect the crime patterns and which groups are vulnerable to crimes. To establish effective criminal policies, therefore, we need to base those policies on the diagnosis of the patterns of change which affect our lives and safety.

Aging of societies is now a world-wide phenomenon, spurred by the increased efficiency of food distribution and the 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ies, which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average lifespan. The speed of aging in South Korea far exceeds that of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Such swift aging points to the inevitable insufficiency of preparation against the issues and impact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Fellow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nior Researcher

that will emerge as the society ages further.

A significant social phenomenon associated with aging is the increase of aged criminals. This is largely due to the increase of poverty, physical deterioration, and social alienation among the aged population, as well as the conflict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evious researches,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findings from surveys on citizens in general and experts suggests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The first scenario presupposes that the negative changes described above are reinforced or maintained in the Korean society. Under this scenario, more aged citizens fall into poverty, their employment become more unstable, family relations break down, the aged groups are further alienated from the society and suffer from feeling of deprivation and stress, the number of aged citizens living alone increases, and their living environment deteriorates. This leads to the increase of violence crimes and property crimes, habitual offenders, suicide and criminal victims, and fear of crime among aged citizens. The increase of aged offenders may result in the shortage of the correction budget.

Under the second scenario, the structural issues that cause crimes - poverty, unstable employment, family breakdown, individualization and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 among the aged population - still persist. However, the basic factors causing crimes are inhibited in the short term through efforts to intervene in the process where the said issues lead to other secondary issues. In other words, this scenario presents the possibility of making up for structural weaknesses by achieving short-term suppression of factors causing crimes through local silver welfare programs designed to reduce social alienation,

feeling of deprivation and stress among aged citizens, preventive programs against repeated offenses, and CPTED strategies tailored to each region.

The third scenario describes a situation where the poverty issue among aged citizens is fundamentally resolved through social insurance and pension programs and aged citizens enjoy the benefit of medical welfare. This scenario predicts a situation where the root causes of crimes among aged citizens have been overcome.

To avoid the worst case scenario such as the first one, we need to come up with what we can do with the given budget, and predict the issues which the increase of aged population may possibly bring, to reflect those findings into the policies. The following is a suggestion of short-term criminal policies and strategies to achieve such goal.

- Reinforce the role of social welfare institutes
- Develop programs for aged citizens at local institutions
- Adopt programs to prevent repeated offenses among aged citizens
- Strengthen police activities in local communities
- Provide crime prevention education to aged citizens through local communities
-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aged citizens living alone
- Establish the criteria for categorizing aged offenders and inmates
- Develop correctional specialized programs for aged inmates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following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situation described in the third scenario.

- Enhance the welfare for aged citizens

- Build a system to control crimes by aged citizens at criminal judicial agencies
- Come up with measure to protect aged citizens during criminal proceedings
- Provide legal services for aged citizens
- Enact an Act designed to protect aged victims and aged criminals
- Build correctional facilities for aged criminals
- Improve the treatment of aged inmates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 Develop correctional specialized programs for aged inmates
- Improve alternative treatment of aged inmates
- Enhance and improve rehabilitation and protection for aged criminals
- Carry out systematic researches on aged crimes

[부록 1] 고령화 관련 통계표

〈부록 1-1〉 인구 추이

(단위: 명, %)

	총인구						
		0 ~ 14세	구성비	15 ~ 64세	구성비	65세이상	구성비
1960	25,012,374	10,587,583	42.3	13,698,341	54.8	726,450	2.9
1970	32,240,827	13,709,367	42.5	17,540,152	54.4	991,308	3.1
1980	38,123,775	12,950,775	34.0	23,716,967	62.2	1,456,033	3.8
1990	42,869,283	10,973,592	25.6	29,700,607	69.3	2,195,084	5.1
1991	43,295,704	10,858,720	25.1	30,170,543	69.7	2,266,441	5.2
1992	43,747,962	10,791,426	24.7	30,610,680	70.0	2,345,856	5.4
1993	44,194,628	10,734,528	24.3	31,023,107	70.2	2,436,993	5.5
1994	44,641,540	10,653,446	23.9	31,445,602	70.4	2,542,492	5.7
1995	45,092,991	10,536,828	23.4	31,899,511	70.7	2,656,652	5.9
1996	45,524,681	10,403,277	22.9	32,326,522	71.0	2,794,882	6.1
1997	45,953,580	10,233,102	22.3	32,791,167	71.4	2,929,311	6.4
1998	46,286,503	10,091,517	21.8	33,125,933	71.6	3,069,053	6.6
1999	46,616,677	9,972,894	21.4	33,420,207	71.7	3,223,576	6.9
2000	47,008,111	9,911,229	21.1	33,701,986	71.7	3,394,896	7.2
2001	47,357,362	9,853,736	20.8	33,925,256	71.6	3,578,370	7.6
2002	47,622,179	9,747,322	20.5	34,102,782	71.6	3,772,075	7.9
2003	47,859,311	9,605,790	20.1	34,285,403	71.6	3,968,118	8.3
2004	48,039,415	9,445,934	19.7	34,427,507	71.7	4,165,974	8.7
2005	48,138,077	9,241,187	19.2	34,530,248	71.7	4,366,642	9.1
2006	48,371,946	8,988,826	18.6	34,790,753	71.9	4,592,367	9.5
2007	48,597,652	8,724,607	18.0	35,045,531	72.1	4,827,514	9.9
2008	48,948,698	8,488,729	17.3	35,407,814	72.3	5,052,155	10.3
2009	49,182,038	8,232,065	16.7	35,694,138	72.6	5,255,835	10.7
2010	49,410,366	7,975,374	16.1	35,982,502	72.8	5,452,490	11.0
2011	49,779,440	7,770,912	15.6	36,352,538	73.0	5,655,990	11.4

200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총인구	0 ~ 14세	구성비	15 ~ 64세	구성비	65세이상	구성비
2012	50,004,441	7,559,063	15.1	36,555,703	73.1	5,889,675	11.8
2013	50,219,669	7,370,118	14.7	36,711,849	73.1	6,137,702	12.2
2014	50,423,955	7,198,984	14.3	36,839,412	73.1	6,385,559	12.7
2015	50,617,045	7,039,594	13.9	36,953,331	73.0	6,624,120	13.1
2016	50,801,405	6,899,128	13.6	37,038,777	72.9	6,863,500	13.5
2017	50,976,519	6,840,263	13.4	37,017,552	72.6	7,118,704	14.0
2018	51,140,690	6,813,961	13.3	36,930,760	72.2	7,395,969	14.5
2019	51,293,706	6,784,902	13.2	36,793,261	71.7	7,715,543	15.0
2020	51,435,495	6,788,432	13.2	36,562,967	71.1	8,084,096	15.7
2021	51,566,389	6,799,216	13.2	36,282,132	70.4	8,485,041	16.5
2022	51,685,514	6,787,638	13.1	35,986,517	69.6	8,911,359	17.2
2023	51,791,168	6,747,636	13.0	35,683,405	68.9	9,360,127	18.1
2024	51,887,579	6,741,003	13.0	35,312,685	68.1	9,833,891	19.0
2025	51,972,363	6,739,459	13.0	34,901,829	67.2	10,331,075	19.9
2026	52,042,140	6,695,923	12.9	34,506,279	66.3	10,839,938	20.8
2027	52,094,114	6,672,702	12.8	34,081,429	65.4	11,339,983	21.8
2028	52,131,374	6,645,229	12.7	33,673,208	64.6	11,812,937	22.7
2029	52,154,305	6,612,967	12.7	33,280,668	63.8	12,260,670	23.5
2030	52,160,065	6,575,330	12.6	32,893,289	63.1	12,691,446	24.3
2040	51,091,352	5,717,528	11.2	28,872,500	56.5	16,501,324	32.3
2050	48,121,275	4,783,197	9.9	25,347,026	52.7	17,991,052	37.4
2060	43,959,375	4,472,656	10.2	21,865,175	49.7	17,621,544	40.1

〈부록 1-2〉 성별 고령인구 추이

(단위: 명, %, 여자 100명당 명)

	남자인구	65세이상	구성비 ³⁾	여자인구	65세이상	구성비	성비 ²⁾
1960	12,550,691	288,795	2.3	12,461,683	437,655	3.5	66.0
1970	16,308,607	408,117	2.5	15,932,220	583,191	3.7	70.0
1980	19,235,736	544,568	2.8	18,888,039	911,465	4.8	59.7
1990	21,568,181	821,857	3.8	21,301,102	1,373,227	6.4	59.8
2000	23,666,769	1,299,786	5.5	23,341,342	2,095,110	9.0	62.0
2001	23,843,136	1,382,713	5.8	23,514,226	2,195,657	9.3	63.0
2002	23,970,035	1,470,459	6.1	23,652,144	2,301,616	9.7	63.9
2003	24,089,703	1,559,346	6.5	23,769,608	2,408,772	10.1	64.7
2004	24,165,488	1,644,713	6.8	23,873,927	2,521,261	10.6	65.2
2005	24,190,906	1,733,661	7.2	23,947,171	2,632,981	11.0	65.8
2006	24,302,796	1,836,952	7.6	24,069,150	2,755,415	11.4	66.7
2007	24,410,110	1,943,642	8.0	24,187,542	2,883,872	11.9	67.4
2008	24,576,155	2,045,141	8.3	24,372,543	3,007,014	12.3	68.0
2009	24,664,502	2,137,025	8.7	24,517,536	3,118,810	12.7	68.5
2010	24,757,776	2,227,162	9.0	24,652,590	3,225,328	13.1	69.1
2011	24,942,339	2,320,716	9.3	24,837,101	3,335,274	13.4	69.6
2012	25,039,557	2,428,114	9.7	24,964,884	3,461,561	13.9	70.1
2013	25,132,612	2,543,104	10.1	25,087,057	3,594,598	14.3	70.7
2014	25,219,810	2,658,058	10.5	25,204,145	3,727,501	14.8	71.3
2015	25,302,520	2,767,163	10.9	25,314,525	3,856,957	15.2	71.7
2016	25,380,152	2,875,558	11.3	25,421,253	3,987,942	15.7	72.1
2017	25,453,692	2,993,820	11.8	25,522,827	4,124,884	16.2	72.6
2018	25,522,991	3,124,863	12.2	25,617,699	4,271,106	16.7	73.2
2019	25,586,648	3,275,574	12.8	25,707,058	4,439,969	17.3	73.8
2020	25,645,177	3,451,237	13.5	25,790,318	4,632,859	18.0	74.5
2021	25,699,004	3,645,554	14.2	25,867,385	4,839,487	18.7	75.3
2022	25,747,263	3,853,263	15.0	25,938,251	5,058,096	19.5	76.2
2023	25,789,079	4,071,729	15.8	26,002,089	5,288,398	20.3	77.0
2024	25,826,191	4,301,416	16.7	26,061,388	5,532,475	21.2	77.7
2025	25,858,131	4,540,923	17.6	26,114,232	5,790,152	22.2	78.4
2026	25,882,236	4,783,741	18.5	26,159,904	6,056,197	23.2	79.0
2027	25,898,059	5,023,225	19.4	26,196,055	6,316,758	24.1	79.5
2028	25,906,612	5,252,495	20.3	26,224,762	6,560,442	25.0	80.1
2029	25,908,662	5,471,643	21.1	26,245,643	6,789,027	25.9	80.6
2030	25,901,365	5,681,822	21.9	26,258,700	7,009,624	26.7	81.1
2040	25,264,681	7,460,388	29.5	25,826,671	9,040,936	35.0	82.5
2050	23,736,382	8,150,525	34.3	24,384,893	9,840,527	40.4	82.8
2060	21,766,652	8,196,548	37.7	22,192,723	9,424,996	42.5	87.0

2) 성비 = (65세이상 남자인구/65세이상 여자인구) × 100

3) 구성비 = (65세 이상 남자(여자) 인구/총 남자(여자) 인구) × 100

〈부록 1-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⁴⁾	노령화지수 ⁵⁾	노인1명당 생산 가능인구 ⁶⁾
1960	82.6	5.3	6.9	18.9
1970	83.8	5.7	7.2	17.7
1980	60.7	6.1	11.2	16.3
1990	44.3	7.4	20.0	13.5
1991	43.5	7.5	20.9	13.3
1992	42.9	7.7	21.7	13.0
1993	42.5	7.9	22.7	12.7
1994	42.0	8.1	23.9	12.4
1995	41.4	8.3	25.2	12.0
1996	40.8	8.6	26.9	11.6
1997	40.1	8.9	28.6	11.2
1998	39.7	9.3	30.4	10.8
1999	39.5	9.6	32.3	10.4
2000	39.5	10.1	34.3	9.9
2001	39.6	10.5	36.3	9.5
2002	39.6	11.1	38.7	9.0
2003	39.6	11.6	41.3	8.6
2004	39.5	12.1	44.1	8.3
2005	39.4	12.6	47.3	7.9
2006	39.0	13.2	51.1	7.6
2007	38.7	13.8	55.3	7.3
2008	38.2	14.3	59.5	7.0
2009	37.8	14.7	63.9	6.8
2010	37.3	15.2	68.4	6.6
2011	36.9	15.6	72.8	6.4
2012	36.8	16.1	77.9	6.2
2013	36.8	16.7	83.3	6.0
2014	36.9	17.3	88.7	5.8
2015	37.0	17.9	94.1	5.6
2016	37.2	18.5	99.5	5.4
2017	37.7	19.2	104.1	5.2
2018	38.5	20.0	108.5	5.0
2019	39.4	21.0	113.7	4.8
2020	40.7	22.1	119.1	4.5
2021	42.1	23.4	124.8	4.3
2022	43.6	24.8	131.3	4.0
2023	45.1	26.2	138.7	3.8
2024	46.9	27.8	145.9	3.6
2025	48.9	29.6	153.3	3.4
2026	50.8	31.4	161.9	3.2
2027	52.9	33.3	169.9	3.0
2028	54.8	35.1	177.8	2.9
2029	56.7	36.8	185.4	2.7
2030	58.6	38.6	193.0	2.6
2040	77.0	57.2	288.6	1.7
2050	89.8	71.0	376.1	1.4
2060	101.0	80.6	394.0	1.2

〈부록 1-4〉 고령가구 추이

(단위: 가구, %)

	총가구	고령 가구 ⁷⁾	구성비 ⁹⁾	부부가구	고령가구 유형				
					구성비	부부+자녀 가구	구성비	1인 가구 ⁸⁾	구성비
2000	14,507,010	1,733,525	11.9	572,911	3.9	183,868	1.3	543,522	3.7
2001	14,843,989	1,878,596	12.7	624,250	4.2	199,482	1.3	589,415	4.0
2002	15,170,029	2,016,847	13.3	673,421	4.4	212,901	1.4	635,033	4.2
2003	15,465,163	2,155,227	13.9	722,808	4.7	225,631	1.5	681,389	4.4
2004	15,720,436	2,292,741	14.6	771,828	4.9	237,208	1.5	728,748	4.6
2005	15,971,010	2,432,247	15.2	821,596	5.1	248,553	1.6	776,996	4.9
2006	16,289,194	2,565,266	15.7	866,808	5.3	260,161	1.6	830,122	5.1
2007	16,542,700	2,707,980	16.4	914,847	5.5	272,601	1.6	887,118	5.4
2008	16,791,160	2,843,182	16.9	959,873	5.7	283,126	1.7	943,666	5.6
2009	17,052,164	2,966,681	17.4	1,000,336	5.9	290,728	1.7	999,194	5.9
2010	17,359,333	3,086,573	17.8	1,038,110	6.0	296,894	1.7	1,055,650	6.1
2011	17,687,001	3,239,307	18.3	1,085,837	6.1	304,938	1.7	1,124,099	6.4
2012	17,950,675	3,388,412	18.9	1,134,188	6.3	314,977	1.8	1,186,831	6.6
2013	18,206,328	3,546,108	19.5	1,184,618	6.5	326,983	1.8	1,252,012	6.9
2014	18,457,628	3,702,704	20.1	1,233,715	6.7	339,993	1.8	1,316,504	7.1
2015	18,705,004	3,851,742	20.6	1,279,521	6.8	352,347	1.9	1,379,066	7.4
2016	18,948,342	4,000,044	21.1	1,324,769	7.0	363,880	1.9	1,442,544	7.6
2017	19,187,307	4,157,185	21.7	1,372,994	7.2	375,898	2.0	1,509,513	7.9
2018	19,421,482	4,327,662	22.3	1,426,222	7.3	390,115	2.0	1,579,475	8.1
2019	19,650,361	4,522,429	23.0	1,488,516	7.6	409,208	2.1	1,654,033	8.4
2020	19,878,399	4,772,184	24.0	1,568,951	7.9	436,550	2.2	1,744,830	8.8
2021	20,106,424	5,021,939	25.0	1,649,184	8.2	463,966	2.3	1,835,878	9.1
2022	20,334,462	5,271,694	25.9	1,729,206	8.5	491,453	2.4	1,927,170	9.5
2023	20,547,981	5,556,934	27.0	1,821,466	8.9	522,211	2.5	2,030,917	9.9
2024	20,748,480	5,857,628	28.2	1,921,386	9.3	554,280	2.7	2,137,922	10.3
2025	20,937,339	6,172,120	29.5	2,028,393	9.7	587,381	2.8	2,247,735	10.7
2026	21,114,056	6,493,914	30.8	2,138,044	10.1	620,288	2.9	2,361,071	11.2
2027	21,276,888	6,811,566	32.0	2,245,051	10.6	650,930	3.1	2,476,345	11.6
2028	21,430,559	7,116,059	33.2	2,346,365	10.9	677,786	3.2	2,590,898	12.1
2029	21,578,087	7,407,658	34.3	2,441,996	11.3	700,470	3.2	2,705,214	12.5
2030	21,716,589	7,689,934	35.4	2,533,306	11.7	719,483	3.3	2,820,212	13.0
2031	21,844,121	7,958,374	36.4	2,618,292	12.0	734,940	3.4	2,934,320	13.4
2032	21,964,653	8,216,092	37.4	2,696,701	12.3	747,858	3.4	3,049,211	13.9
2033	22,074,526	8,478,693	38.4	2,773,305	12.6	761,539	3.4	3,168,901	14.4
2034	22,173,035	8,751,186	39.5	2,848,561	12.8	776,474	3.5	3,296,270	14.9
2035	22,260,603	9,024,633	40.5	2,918,863	13.1	790,870	3.6	3,429,621	15.4

4)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100

5)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6)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이상 인구

7)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8) 총 가구 중 고령가구 유형별 구성비

〈부록 1-5〉 고령자 자살에 의한 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이상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1990	14.3	22.9	9.2	14.4	13.2	12.7	18.2
1991	14.6	23.5	9.3	13.2	15.3	16.5	14.8
1992	16.7	27.3	10.5	16.7	18.0	16.0	15.0
1993	19.9	32.9	12.3	17.8	18.8	22.8	23.6
1994	20.4	32.9	13.2	16.9	20.6	22.0	26.7
1995	23.6	37.6	15.5	19.2	24.6	27.3	28.5
1996	29.0	47.8	18.3	23.0	29.4	32.7	39.4
1997	30.3	50.5	18.7	22.6	30.1	40.1	38.6
1998	39.4	64.9	24.6	33.3	36.1	47.4	50.8
1999	36.6	61.4	22.0	29.9	36.7	41.9	47.3
2000	35.5	55.6	23.6	25.9	34.4	45.5	51.0
2001	42.0	66.1	27.5	32.4	39.2	51.3	62.2
2002	55.8	83.7	38.7	36.0	52.5	71.9	96.2
2003	72.3	113.1	46.8	56.7	58.8	92.7	114.2
2004	79.0	122.3	51.5	58.2	74.7	92.6	125.3
2005	80.3	128.6	49.3	62.5	74.5	88.8	126.7
2006	72.0	111.4	46.3	53.5	68.0	83.4	112.7
2007	75.2	117.6	47.2	54.5	70.9	90.9	117.3
2008	71.7	112.0	44.7	54.5	66.8	80.3	112.9
2009	78.8	120.1	50.8	57.0	71.0	91.6	127.7
2010	81.9	128.5	50.1	60.0	76.1	94.7	123.3
2011	79.7	128.6	46.1	54.0	76.5	96.1	116.9
2012	69.8	107.7	43.5	45.8	67.4	81.5	104.5
2013	64.2	102.3	37.3	42.2	59.5	77.7	94.7

9)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부록 1-6〉 빈곤율

	전 체	근로연령인구 (18~65세)	고령인구 (65세이상)
	〈 지니계수 〉		
2006	0.306	0.295	0.390
2007	0.312	0.299	0.397
2008	0.314	0.300	0.403
2009	0.314	0.300	0.404
2010	0.310	0.297	0.411
2011	0.311	0.294	0.420
2012	0.307	0.287	0.433
2013	0.302	0.280	0.420
	〈 상대적 빈곤율(단위 : %) 〉		
2006	14.3	11.1	42.8
2007	14.8	11.1	43.6
2008	15.2	11.5	44.1
2009	15.3	11.5	45.9
2010	14.9	11.3	46.3
2011	15.2	10.8	47.6
2012	14.6	10.0	47.2
2013	14.6	9.6	48.1

주 : 전국가구(1인 및 농가포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부록 1-7〉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단위: 명, %)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			
		남 자	여 자		구성비 ¹⁰⁾	남 자	여 자
2001	1,345,526	567,025	778,501	334,272	24.8	87,213	247,059
2002	1,275,625	533,167	742,458	329,251	25.8	82,747	246,504
2003	1,292,690	541,233	751,457	340,527	26.3	85,605	254,922
2004	1,337,714	562,074	775,640	352,348	26.3	88,862	263,486
2005	1,425,684	604,255	821,429	367,658	25.8	93,995	273,663
2006	1,449,832	616,521	833,311	373,595	25.8	96,529	277,066
2007	1,463,140	622,400	840,740	386,157	26.4	101,228	284,929
2008	1,444,010	617,015	826,995	382,050	26.5	100,772	281,278
2009	1,482,719	638,061	844,658	387,847	26.2	104,014	283,833
2010	1,458,198	626,798	831,400	391,214	26.8	106,723	284,491
2011	1,379,865	594,955	784,910	378,411	27.4	104,901	273,510
2012	1,300,499	562,115	738,384	376,098	28.9	107,156	268,942
2013	1,258,582	547,324	711,258	376,112	29.9	110,189	265,923

10) 65세이상 수급자/총수급자×100

〈부록 1-8〉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율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2005	15세이상	62.0	59.7	74.6	71.6	50.1	48.4
	55세이상	44.7	43.8	59.0	57.5	33.1	32.8
	65세이상	30.0	29.8	41.2	40.8	22.4	22.4
2006	15세이상	61.9	59.7	74.1	71.3	50.3	48.8
	55세이상	45.0	44.2	59.3	57.9	33.4	33.1
	65세이상	30.5	30.3	42.0	41.5	22.7	22.6
2007	15세이상	61.8	59.8	74.0	71.3	50.2	48.9
	55세이상	46.0	45.2	60.7	59.5	34.0	33.7
	65세이상	31.3	31.1	42.8	42.5	23.3	23.3
2008	15세이상	61.5	59.5	73.5	70.9	50.0	48.7
	55세이상	45.5	44.8	59.9	58.6	33.8	33.6
	65세이상	30.6	30.3	41.8	41.4	22.9	22.8
2009	15세이상	60.8	58.6	73.1	70.1	49.2	47.7
	55세이상	45.3	44.4	60.0	58.5	33.3	32.9
	65세이상	30.1	29.7	41.5	40.8	22.2	22.1
2010	15세이상	61.0	58.7	73.0	70.1	49.4	47.8
	55세이상	45.5	44.3	60.3	58.4	33.4	32.7
	65세이상	29.4	28.7	40.6	39.5	21.7	21.2
2011	15세이상	61.1	59.1	73.1	70.5	49.7	48.1
	55세이상	46.2	45.1	61.0	59.3	34.0	33.4
	65세이상	29.5	28.9	40.6	39.6	21.8	21.4
2012	15세이상	61.3	59.4	73.3	70.8	49.9	48.4
	55세이상	47.3	46.1	61.8	60.1	35.2	34.6
	65세이상	30.7	30.1	41.6	40.7	23.0	22.6
2013	15세이상	61.5	59.5	73.2	70.8	50.2	48.8
	55세이상	48.1	47.2	62.7	61.2	36.1	35.6
	65세이상	31.4	30.9	42.6	41.9	23.4	23.1

〈부록 1-9〉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0	58.5	10.3	60.1	72.5	76.4	66.5	53.0	29.4
2001	59.0	10.1	60.2	72.7	76.6	66.8	53.7	29.9
2002	60.0	9.4	61.3	73.0	77.4	68.2	55.0	30.5
2003	59.3	8.6	60.2	72.6	76.9	67.6	51.8	28.6
2004	59.8	8.4	61.1	72.6	77.3	67.8	52.7	29.6
2005	59.7	8.0	61.2	72.3	77.1	68.1	53.4	29.8
2006	59.7	6.7	60.2	73.2	77.7	68.5	54.5	30.3
2007	59.8	6.6	60.0	72.9	78.3	69.7	55.0	31.1
2008	59.5	5.9	59.1	72.9	78.4	70.6	54.1	30.3
2009	58.6	5.4	58.2	71.3	77.7	70.3	53.8	29.7
2010	58.7	6.1	58.2	72.0	77.8	70.9	53.7	28.7
2011	59.1	6.8	58.5	72.2	78.4	71.6	55.1	28.9
2012	59.4	7.0	58.1	72.7	78.3	72.2	56.1	30.1
2013	59.5	6.9	56.8	73.2	78.4	73.1	57.2	30.9

〈부록 1-10〉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¹¹⁾

(단위: %)

65세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 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의 경로 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시설 부족	기타	어려움 없음 ¹²⁾
〈2009〉											
전 국	60.5	7.3	15.1	70.7	19.2	1.0	6.9	4.9	12.6	1.2	-
성 별											
남 자	59.9	9.9	18.4	67.2	14.8	1.2	9.9	2.8	13.7	1.3	-
여 자	60.9	5.6	12.8	73.2	22.2	0.9	4.8	6.3	11.9	1.1	-
연령 별											
65~69세	61.5	11.2	17.5	67.3	14.6	1.0	8.9	4.6	13.4	0.8	-
70~79세	60.5	5.8	14.1	71.6	19.7	1.1	6.0	4.8	12.5	1.5	-
80세 이상	57.6	2.5	12.1	76.4	29.5	-	4.7	6.0	11.2	0.9	-
〈2011〉											
전 국	56.6	7.9	15.0	66.7	14.9	1.2	8.8	5.2	11.2	1.1	-
성 별											
남 자	55.4	11.5	17.0	62.1	11.1	1.1	11.5	3.1	14.5	1.2	-
여 자	57.5	5.4	13.7	70.0	17.6	1.3	6.8	6.6	9.0	1.1	-
연 령 별											
65~69세	57.6	14.2	14.9	61.3	11.1	0.9	11.3	3.8	12.5	0.9	-
70~79세	56.6	5.7	16.8	68.0	13.7	0.9	7.6	4.9	11.3	1.3	-
80세 이상	55.1	2.7	10.6	73.0	24.8	2.6	7.2	8.1	8.9	1.1	-
〈2013〉											
전 국	53.0	6.5	13.3	65.2	14.1	1.3	7.2	4.1	10.1	0.3	8.5
성 별											
남 자	50.6	9.5	15.9	60.2	10.5	1.6	8.9	2.9	11.2	0.1	10.7
여 자	54.7	4.4	11.5	68.7	16.7	1.1	6.0	4.9	9.3	0.5	7.0
연 령 별											
65~69세	52.8	9.7	15.7	58.8	10.7	1.4	9.2	2.9	10.1	0.3	11.2
70~79세	53.5	5.9	12.9	66.9	13.3	1.0	6.6	4.2	10.2	0.3	8.0
80세 이상	52.1	2.5	10.1	71.9	23.6	2.0	5.2	5.8	9.7	0.3	5.2

11) 복수응답

12) 2013 신규응답

〈부록 1-11〉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

연령별	2006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이성문제 (실연 등)	질한, 장애	작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진학문제	친구와의 불화, 따돌림	기타	없다
계	10.3	48.2	2.7	8.2	6	12	15.4	5	0.8	1.7	89.7
15-19세	10.1	6.2	2.2	1.4	1	10.1	15.5	56.1	6	1.6	89.9
20-29세	8.1	32.5	7.6	3.5	18.6	18.4	11	4.4	1	3	91.9
30-39세	10.5	53	3.6	4.4	6.6	10.6	19.2	-	0.4	2.2	89.5
40-49세	12.7	62.4	1.4	4.7	4.5	9	17.2	-	0.1	0.6	87.3
50-59세	11.6	58.6	1.2	11	3.8	9.4	14.5	-	0.3	1.2	88.4
60세이상	8.3	41.1	0.5	26.5	0.9	17.7	11.2	-	0.2	1.9	91.7
65세이상	7.8	33.8	0.5	33.1	0.3	19.7	10.7	-		2	92.2
	2008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이성문제 (실연 등)	질한, 장애	작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진학문제	친구와의 불화, 따돌림	기타	없다
계	7.2	36.2	2.8	12.8	7.1	14.4	15.6	6.8	1.4	3	92.8
15-19세	10.4	8.8	2	3.5	1.7	13.6	10.1	51	6.6	2.9	89.6
20-29세	6.4	23.9	6.2	6	22.9	19.4	11.8	4.3	1.4	4	93.6
30-39세	6.9	39.3	3.2	5	9.7	17.6	20.6	0.3	1.4	2.9	93.1
40-49세	7.7	49.7	3.3	7.8	4.8	12.9	19.2	0.1	0.2	1.8	92.3
50-59세	6.3	49.9	0.8	16.8	2.9	8.9	17.3	0.2	0.3	2.9	93.7
60세이상	7.1	33.9	0.9	37.1	0.6	13.2	10.6	-	-	3.7	92.9
65세이상	7.6	29.3	0.8	40.8	0.5	14.2	10.4	-	-	4	92.4
연령별	2010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이성문제 (실연 등)	질한, 장애	작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진학문제	친구와의 불화, 따돌림	기타	없다
계	7.2	36.2	2.8	12.8	7.1	14.4	15.6	6.8	1.4	3	92.8
15-19세	10.4	8.8	2	3.5	1.7	13.6	10.1	51	6.6	2.9	89.6
20-29세	6.4	23.9	6.2	6	22.9	19.4	11.8	4.3	1.4	4	93.6
30-39세	6.9	39.3	3.2	5	9.7	17.6	20.6	0.3	1.4	2.9	93.1
40-49세	7.7	49.7	3.3	7.8	4.8	12.9	19.2	0.1	0.2	1.8	92.3
50-59세	6.3	49.9	0.8	16.8	2.9	8.9	17.3	0.2	0.3	2.9	93.7
60세이상	7.1	33.9	0.9	37.1	0.6	13.2	10.6	-	-	3.7	92.9
65세이상	7.6	29.3	0.8	40.8	0.5	14.2	10.4	-	-	4	92.4

210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연령별	2012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이성문제 (실연 등)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진학문제	친구와의 불화, 떠돌림	기타	없다
계	9.1	39.5	4.2	12.1	7.1	13	13.6	6.3	1.4	2.9	90.9
15-19세	12.1	16.7	1.4	2	0.4	12.5	16.9	39.2	7.1	3.7	87.9
20-29세	9.3	28.7	5.4	8.7	21.4	17	7.9	4.2	1	5.9	90.7
30-39세	9.1	42.6	5.6	6.1	8.9	15	17.6	0.3	0.5	3.3	90.9
40-49세	9	51.5	4.3	8.8	5.1	11.1	16.9	0.1	0.5	1.6	91
50-59세	9.3	52.6	3.9	12.3	5.3	11	13.5	-	0.2	1.3	90.7
60세이상	7.1	37.4	4.2	36.2	1.7	11.7	6.9	-	0	1.8	92.9
65세이상	6.6	35.1	4.8	39.8	1	12.9	4.3	-	0	2.1	93.4
연령별	2014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이성문제 (실연 등)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진학문제	친구와의 불화, 떠돌림	기타	없다
계	6.8	37.4	5.4	11.1	7.8	12.7	14.0	5.6	1.6	4.5	93.2
15-19세	8.0	19.5	5.1	2.1	0.8	9.8	10.5	39.3	7.8	5.2	92.0
20-29세	7.7	22.3	8.6	7.0	19.8	17.6	10.9	5.2	1.7	6.7	92.3
30-39세	7.6	47.2	4.6	5.1	12.1	11.9	12.7	0.2	1.0	5.1	92.4
40-49세	6.1	45.6	5.6	7.2	6.4	11.5	20.9	-	0.3	2.3	93.9
50-59세	7.0	46.7	6.0	12.9	4.2	10.6	14.6	-	0.6	4.4	93.0
60세이상	5.2	34.2	2.0	32.0	0.5	14.8	13.0	-	0.1	3.5	94.8
65세이상	5.2	28.1	2.2	37.5	0.7	15.9	11.0	-	0.1	4.5	94.8

[부록 2]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ID						
----	--	--	--	--	--	--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될 형사정책 이슈들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의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형사정책 분야 정책연구기관으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의 결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제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지켜 보호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답이나 오답이 없는 조사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2015년 9월

☐ 주관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사책임자 : 박행민 박사

☐ 조사기관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 담당연구원 : 배우리 대리(전화 : 02-6244-0782/fax : 02-6242-0700)
☐ 조사연구원 : 최은주 탐장(전화 : 02-3142-0382/fax : 02-358-6238)

I 형사정책 목적 관련

1. 귀하는 형사정책의 여러가지 목적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범죄예방과 감소
- ② 범죄자 검거
- ③ 피해자 보호
- ④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 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귀하는 형사정책의 목적이 현재, 10년 후, 30년 후에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달성을 100%라 할 때, 각각의 기준의 달성도(달성 가능성)를 평가해 주십시오.

형사정책의 목적		현재 달성도	10년 후 (2025년) 달성도	30년 후 (2045년) 달성도
1)	범죄예방과 감소	%	%	%
2)	범죄자 검거	%	%	%
3)	피해자 보호	%	%	%
4)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	%	%
5)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

II 현재와 미래의 범죄 관련

문항	우리나라 범죄증가예상	매우 증가할 것이다	다소 증가할 것이다	변함없을 것이다	다소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3	귀하는 10년 후 우리나라의 범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1	문3과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그렇다면 30년 후 우리나라의 범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1	문4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만일 **현재 살고 계신 동네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시는지 적절한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상황	전혀 두려워지 않다	별로 두려워지 않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려워다
1)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이.....	①	②	③	④
2)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다니는 것이.....	①	②	③	④
3)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이.....	①	②	③	④
4)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	①	②	③	④
5)	집 근처에서 소매치기 또는 낚치기를 당할까.....	①	②	③	④
6)	집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까.....	①	②	③	④
7)	집 근처에서 금전갈취나 협박을 당할까.....	①	②	③	④
8)	집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할까.....	①	②	③	④

6.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현재 살고 계신 동네에서 아래의 범죄피해를 직접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피해내용	예	아니오
1)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든 적 있다.	①	②
2)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 강도가 든 적이 있다.	①	②
3)	집 밖에서 소매치기/날치기/들치기 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4)	집 주변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	①	②
5)	집 근처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6)	집 근처에서 돈이나 귀중품을 갈취당한 적이 있다.	①	②
7)	집 근처에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7. 귀하는 다음에 제시한 이슈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현재(2015년)			10년 후(2025년)		
	매우 중요함	보통이다	전혀 중요지 않음	매우 중요함	보통이다	전혀 중요지 않음
1)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복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여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경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인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삶의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항 번호	8. 귀하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9. 만일 다음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면, 미래의 범죄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만일 다음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면, 미래의 범죄 예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2025년)		30년 후(2045년)			10년 후(2025년)		30년 후(2045년)			10년 후(2025년)		30년 후(2045년)														
	매우 증가	변화 없다	매우 감소	매우 증가	변화 없다	매우 감소	매우 큰 영향	변화 없다	기위 영향 없음	매우 큰 영향	변화 없다	기위 영향 없음	매우 큰 영향	변화 없다	기위 영향 없음												
1)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3)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4)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5)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6)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7)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8)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1)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계속)

III 고령화사회 관련

한국은 2000년에 노인인구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노인인구 14%로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 20.8%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3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 귀하는 고령사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중요시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10년 후(2025년)			30년 후(2045년)		
	매우 높다	보통이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보통이다	매우 낮다
1) 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노인 수형자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노인 교통사고 발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노인 교통사고 피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기서 성인은 노인이 아닌 성년을 의미함)

15. 귀하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위해 준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행사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노인범죄 예방대책

② 노인범죄피해자 보호대책

③ 노인전문 법률상담 제도

④ 노인수형자 관리대책

⑤ 노인복지 향상

⑥ 노인전담 수사관 제도

⑦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음

IV

응답자 특성 관련 사항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SQ3.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SQ4.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SQ5.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2년제 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석사 졸업 ⑤ 대학원 박사 졸업

SQ6.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농업, 임업, 어업 (가족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 (소규모 장사 및 가족봉사자, 개인택시 운전사 등)
③ 판매·서비스업 (점원, 세일즈맨, 보험외판원 등)
④ 기능·숙련공 (운전기사, 선박·목공, 요리사, 생산직 근로자 등)
⑤ 일반직업직 (토목관계 현장직업, 청소원, 경비원 등)
⑥ 사무·기술직 (일반 기업의 사무직, 기술직, 교사, 항해사 등)
⑦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민간기업체 부장이상, 학교 교장 등)

- ⑧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종교가)
- ⑨ 가정주부 (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 (구체적으로:)

SQ7.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급 이외의 보너스,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 ⑤ 400~599만원 ⑥ 600~999만원 ⑦ 1000만원 이상 ⑧ 소득 없음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자	이름	면접원		이름	
	전화번호	() - () - ()		지역	

[부록 3]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요약

1. 일반인 조사 결과

<부록 3-1> Q1.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사례수	범죄예방과 감소	범죄자 검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피해자 보호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전 체		(1200)	40.8	21.2	19.7	10.3	8.2
성별	남자	(608)	43.1	20.4	17.8	9.5	9.2
	여자	(592)	38.3	22.0	21.6	11.0	7.1
연령	20대	(197)	45.2	17.8	21.3	9.1	6.6
	30대	(201)	37.8	22.4	20.9	8.5	10.4
	40대	(240)	43.3	17.9	19.6	11.7	7.5
	50대	(243)	37.9	25.1	19.3	9.1	8.6
	60대 이상	(319)	40.1	21.9	18.2	11.9	7.8

<부록 3-2> Q2_1. 형사정책 목적-현재달성도(평균 : %)

		사례수	범죄 예방과 감소	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 체		(1200)	56.7	61.8	55.0	52.9	58.7
성별	남자	(608)	56.5	62.1	55.8	52.5	58.4
	여자	(592)	56.9	61.5	54.2	53.3	59.1
연령	20대	(197)	56.5	61.5	54.3	52.7	59.4
	30대	(201)	56.5	62.5	54.8	52.4	58.6
	40대	(240)	56.7	60.8	54.7	52.0	57.7
	50대	(243)	57.3	62.4	54.8	53.0	58.2
	60대 이상	(319)	56.5	61.9	55.9	53.8	59.7

〈부록 3-3〉 Q2_2. 형사정책목적-10년후 달성도(평균:%)

		사례수	범죄 예방과 감소	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 체		(1200)	62.0	67.0	61.4	58.9	64.6
성별	남자	(608)	61.9	67.4	62.1	58.8	64.6
	여자	(592)	62.0	66.6	60.6	59.0	64.6
연령	20대	(197)	62.0	67.0	61.1	58.6	65.2
	30대	(201)	60.8	67.6	61.1	58.8	64.6
	40대	(240)	62.1	65.9	60.7	57.9	63.6
	50대	(243)	61.7	66.8	61.2	59.1	63.8
	60대 이상	(319)	62.8	67.7	62.3	59.7	65.5

〈부록 3-4〉 Q2_3. 형사정책목적-30년후 달성도(평균:%)

		사례수	범죄 예방과 감소	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 체		(1200)	66.0	71.7	66.8	64.0	69.0
성별	남자	(608)	65.9	72.0	67.4	63.9	69.0
	여자	(592)	66.2	71.5	66.2	64.2	69.0
연령	20대	(197)	66.2	71.4	66.0	63.7	69.1
	30대	(201)	65.7	73.2	67.7	64.1	69.1
	40대	(240)	65.8	70.3	66.2	63.3	67.2
	50대	(243)	65.7	72.0	67.2	64.7	69.5
	60대 이상	(319)	66.6	72.0	66.9	64.2	69.8

〈부록 3-5〉 Q3. 10년후 우리나라 범죄 정도 예측(R)

		사례수	증가 (④+⑤)	변함 없음	감소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8.9	15.8	25.3	3.4	60.6
성별	남자	(608)	56.3	15.1	28.6	3.4	59.5
	여자	(592)	61.7	16.4	22.0	3.5	61.8
연령	20대	(197)	56.3	14.7	28.9	3.4	59.4
	30대	(201)	59.2	13.4	27.4	3.4	60.3
	40대	(240)	53.8	18.8	27.5	3.4	58.9
	50대	(243)	60.9	17.3	21.8	3.5	62.2
	60대 이상	(319)	62.7	14.4	22.9	3.5	61.7

〈부록 3-6〉 Q4. 30년후 우리나라 범죄 정도 예측(R)

		사례수	증가 (④+⑤)	변함 없음	감소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7.3	17.0	35.7	3.2	54.2
성별	남자	(608)	46.9	16.4	36.7	3.2	53.8
	여자	(592)	47.8	17.6	34.6	3.2	54.6
연령	20대	(197)	41.6	18.3	40.1	3.1	52.5
	30대	(201)	50.2	11.9	37.8	3.2	54.4
	40대	(240)	43.8	20.8	35.4	3.1	52.1
	50대	(243)	47.3	18.1	34.6	3.2	54.3
	60대 이상	(319)	51.7	15.7	32.6	3.3	56.5

〈부록 3-7〉 Q9_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0.8	54.2	5.0	6.1	63.3
성별	남자	(608)	41.4	53.8	4.8	6.1	63.6
	여자	(592)	40.2	54.6	5.2	6.0	63.0
연령	20대	(197)	41.6	53.3	5.1	6.1	64.0
	30대	(201)	40.3	55.7	4.0	6.1	63.4
	40대	(240)	39.6	53.3	7.1	6.0	62.2
	50대	(243)	44.0	51.4	4.5	6.2	64.9
	60대 이상	(319)	39.2	56.4	4.4	6.0	62.3

〈부록 3-8〉 Q9_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9.4	46.9	3.7	6.3	66.6
성별	남자	(608)	51.5	44.6	3.9	6.4	67.1
	여자	(592)	47.3	49.3	3.4	6.3	66.2
연령	20대	(197)	54.8	41.6	3.6	6.5	68.3
	30대	(201)	50.2	46.8	3.0	6.3	66.5
	40대	(240)	48.3	47.5	4.2	6.3	66.6
	50대	(243)	46.9	50.2	2.9	6.3	66.6
	60대 이상	(319)	48.3	47.3	4.4	6.3	65.8

〈부록 3-9〉 Q9_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9.4	45.8	4.8	6.3	66.2
성별	남자	(608)	49.7	45.6	4.8	6.3	66.6
	여자	(592)	49.2	46.1	4.7	6.3	65.8
연령	20대	(197)	52.8	43.7	3.6	6.4	67.5
	30대	(201)	48.8	45.8	5.5	6.3	66.0
	40대	(240)	50.8	44.6	4.6	6.3	65.8
	50대	(243)	44.4	51.0	4.5	6.2	65.3
	60대 이상	(319)	50.5	44.2	5.3	6.3	66.4

〈부록 3-10〉 Q9_4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8.3	48.0	3.8	6.3	66.4
성별	남자	(608)	48.8	47.5	3.6	6.3	66.6
	여자	(592)	47.6	48.5	3.9	6.3	66.2
연령	20대	(197)	55.3	42.1	2.5	6.5	69.2
	30대	(201)	50.2	46.8	3.0	6.3	66.7
	40대	(240)	47.5	47.1	5.4	6.3	65.7
	50대	(243)	45.3	50.6	4.1	6.2	65.6
	60대 이상	(319)	45.5	51.1	3.4	6.3	65.7

〈부록 3-11〉 Q9_5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9.9	54.6	5.5	6.1	63.1
성별	남자	(608)	40.3	54.1	5.6	6.1	63.4
	여자	(592)	39.5	55.1	5.4	6.0	62.8
연령	20대	(197)	44.2	50.8	5.1	6.2	64.7
	30대	(201)	40.3	56.2	3.5	6.1	63.6
	40대	(240)	43.8	47.5	8.8	6.0	62.3
	50대	(243)	35.4	61.3	3.3	6.0	62.9
	60대 이상	(319)	37.6	56.1	6.3	6.0	62.6

〈부록 3-12〉 Q9_6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2.9	52.2	4.9	6.1	63.9
성별	남자	(608)	44.1	51.8	4.1	6.1	64.2
	여자	(592)	41.7	52.5	5.7	6.1	63.7
연령	20대	(197)	45.2	49.7	5.1	6.2	64.9
	30대	(201)	45.3	52.2	2.5	6.2	65.3
	40대	(240)	42.5	50.8	6.7	6.0	62.4
	50대	(243)	44.4	51.9	3.7	6.2	64.6
	60대 이상	(319)	39.2	54.9	6.0	6.0	63.0

〈부록 3-13〉 Q9_7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7.6	55.2	7.3	5.8	60.4
성별	남자	(608)	37.3	55.8	6.9	5.9	60.6
	여자	(592)	37.8	54.6	7.6	5.8	60.1
연령	20대	(197)	35.0	58.4	6.6	5.8	59.4
	30대	(201)	43.8	49.8	6.5	6.0	62.7
	40대	(240)	37.9	53.8	8.3	5.7	59.2
	50대	(243)	35.0	58.4	6.6	5.8	60.2
	60대 이상	(319)	37.0	55.2	7.8	5.8	60.4

〈부록 3-14〉 Q9_8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5.8	47.8	6.5	6.2	64.4
성별	남자	(608)	48.4	44.1	7.6	6.2	64.9
	여자	(592)	43.1	51.5	5.4	6.1	64.0
연령	20대	(197)	48.2	46.2	5.6	6.3	66.7
	30대	(201)	43.3	49.8	7.0	6.1	63.9
	40대	(240)	47.1	45.8	7.1	6.1	63.3
	50대	(243)	44.0	51.0	4.9	6.2	64.7
	60대 이상	(319)	46.1	46.4	7.5	6.1	64.1

〈부록 3-15〉 Q9_9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3	53.3	8.4	5.9	60.9
성별	남자	(608)	39.5	52.6	7.9	5.9	61.4
	여자	(592)	37.2	53.9	9.0	5.8	60.4
연령	20대	(197)	36.0	56.3	7.6	5.9	61.2
	30대	(201)	38.8	54.7	6.5	5.9	61.5
	40대	(240)	37.9	50.8	11.3	5.8	59.9
	50대	(243)	41.2	52.3	6.6	6.0	62.2
	60대 이상	(319)	37.6	53.0	9.4	5.8	60.1

〈부록 3-16〉 Q9_10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저성장(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2.9	50.3	6.8	6.0	63.0
성별	남자	(608)	46.1	48.0	5.9	6.1	64.3
	여자	(592)	39.7	52.5	7.8	5.9	61.7
연령	20대	(197)	41.6	49.2	9.1	6.0	62.9
	30대	(201)	46.3	47.8	6.0	6.1	63.5
	40대	(240)	43.8	48.8	7.5	6.0	63.0
	50대	(243)	42.8	50.2	7.0	6.1	63.2
	60대 이상	(319)	41.1	53.6	5.3	6.0	62.6

〈부록 3-17〉 Q9_1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0	53.1	8.9	5.8	60.2
성별	남자	(608)	39.6	50.3	10.0	5.8	60.2
	여자	(592)	36.3	55.9	7.8	5.8	60.1
연령	20대	(197)	37.6	52.3	10.2	5.8	60.2
	30대	(201)	36.8	54.7	8.5	5.8	60.0
	40대	(240)	39.6	49.2	11.3	5.8	59.8
	50대	(243)	39.1	53.5	7.4	5.9	61.1
	60대 이상	(319)	37.0	55.2	7.8	5.8	59.7

〈부록 3-18〉 Q9_1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0.6	45.6	3.8	6.3	66.9
성별	남자	(608)	51.6	44.2	4.1	6.4	67.2
	여자	(592)	49.5	47.0	3.5	6.3	66.5
연령	20대	(197)	49.2	46.2	4.6	6.4	67.3
	30대	(201)	54.2	41.3	4.5	6.4	67.0
	40대	(240)	54.6	42.9	2.5	6.4	67.9
	50대	(243)	46.1	50.6	3.3	6.3	66.3
	60대 이상	(319)	49.5	46.1	4.4	6.3	66.2

〈부록 3-19〉 Q9_1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9.2	47.3	3.6	6.3	66.6
성별	남자	(608)	49.3	47.2	3.5	6.3	66.6
	여자	(592)	49.0	47.3	3.7	6.3	66.5
연령	20대	(197)	49.7	47.2	3.0	6.4	67.6
	30대	(201)	53.2	41.8	5.0	6.3	66.5
	40대	(240)	45.8	50.8	3.3	6.3	65.9
	50대	(243)	48.6	48.1	3.3	6.3	66.7
	60대 이상	(319)	49.2	47.3	3.4	6.3	66.3

〈부록 3-20〉 Q9_14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1.5	45.0	3.5	6.4	67.3
성별	남자	(608)	51.2	45.4	3.5	6.4	66.9
	여자	(592)	51.9	44.6	3.5	6.4	67.8
연령	20대	(197)	52.3	45.2	2.5	6.5	68.3
	30대	(201)	51.7	44.3	4.0	6.4	67.7
	40대	(240)	52.1	45.0	2.9	6.4	67.2
	50대	(243)	46.9	49.0	4.1	6.3	66.1
	60대 이상	(319)	53.9	42.3	3.8	6.4	67.6

〈부록 3-21〉 Q9_15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9	57.4	9.7	5.7	58.8
성별	남자	(608)	33.2	57.6	9.2	5.7	58.8
	여자	(592)	32.6	57.3	10.1	5.7	58.8
연령	20대	(197)	34.0	51.8	14.2	5.6	57.4
	30대	(201)	34.3	58.2	7.5	5.7	59.1
	40대	(240)	34.2	55.8	10.0	5.7	58.8
	50대	(243)	32.5	59.7	7.8	5.8	59.8
	60대 이상	(319)	30.7	59.9	9.4	5.7	58.9

〈부록 3-22〉 Q9_16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5	56.9	10.6	5.7	58.3
성별	남자	(608)	31.7	58.9	9.4	5.7	58.5
	여자	(592)	33.3	54.9	11.8	5.7	58.2
연령	20대	(197)	33.0	54.3	12.7	5.7	58.2
	30대	(201)	36.8	54.7	8.5	5.8	59.6
	40대	(240)	30.4	57.9	11.7	5.6	57.8
	50대	(243)	33.3	56.8	9.9	5.7	58.4
	60대 이상	(319)	30.4	59.2	10.3	5.6	58.0

〈부록 3-23〉 Q9_17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7.1	59.2	13.8	5.4	55.3
성별	남자	(608)	26.8	61.2	12.0	5.4	55.5
	여자	(592)	27.4	57.1	15.5	5.4	55.1
연령	20대	(197)	26.4	58.4	15.2	5.4	55.0
	30대	(201)	30.3	57.7	11.9	5.5	56.2
	40대	(240)	26.3	57.1	16.7	5.4	54.6
	50대	(243)	23.5	65.4	11.1	5.4	55.5
	60대 이상	(319)	28.8	57.4	13.8	5.4	55.4

〈부록 3-24〉 Q9_18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3	60.8	9.9	5.6	57.2
성별	남자	(608)	28.8	62.5	8.7	5.6	57.4
	여자	(592)	29.9	59.0	11.1	5.6	57.0
연령	20대	(197)	31.0	58.9	10.2	5.6	57.2
	30대	(201)	33.3	58.2	8.5	5.6	58.0
	40대	(240)	29.6	59.6	10.8	5.6	57.0
	50대	(243)	27.6	61.7	10.7	5.6	57.0
	60대 이상	(319)	27.0	63.6	9.4	5.6	56.9

〈부록 3-25〉 Q9_19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1.4	59.8	8.8	5.7	58.4
성별	남자	(608)	31.9	59.9	8.2	5.7	58.5
	여자	(592)	30.9	59.6	9.5	5.7	58.3
연령	20대	(197)	33.0	57.4	9.6	5.7	58.3
	30대	(201)	33.3	59.7	7.0	5.8	59.6
	40대	(240)	30.0	60.8	9.2	5.6	57.8
	50대	(243)	33.3	60.5	6.2	5.8	59.9
	60대 이상	(319)	28.8	59.9	11.3	5.6	57.0

〈부록 3-26〉 Q9_20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8.3	62.1	9.6	5.5	56.2
성별	남자	(608)	28.6	61.7	9.7	5.5	56.3
	여자	(592)	28.0	62.5	9.5	5.5	56.1
연령	20대	(197)	26.4	66.5	7.1	5.5	56.2
	30대	(201)	29.4	65.2	5.5	5.6	57.8
	40대	(240)	28.3	60.4	11.3	5.4	55.4
	50대	(243)	29.6	60.5	9.9	5.5	56.4
	60대 이상	(319)	27.9	59.9	12.2	5.4	55.6

〈부록 3-27〉 Q9_2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0	56.5	11.5	5.6	57.4
성별	남자	(608)	31.9	56.6	11.5	5.6	57.2
	여자	(592)	32.1	56.4	11.5	5.6	57.6
연령	20대	(197)	32.0	56.3	11.7	5.6	57.0
	30대	(201)	34.3	55.2	10.4	5.7	58.3
	40대	(240)	30.4	56.3	13.3	5.5	55.8
	50대	(243)	29.2	60.5	10.3	5.6	57.3
	60대 이상	(319)	33.9	54.5	11.6	5.7	58.2

〈부록 3-28〉 Q9_2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8	58.7	11.6	5.5	56.8
성별	남자	(608)	31.1	56.1	12.8	5.5	56.4
	여자	(592)	28.4	61.3	10.3	5.6	57.3
연령	20대	(197)	31.0	53.3	15.7	5.5	56.1
	30대	(201)	34.3	56.7	9.0	5.7	58.9
	40대	(240)	27.5	62.5	10.0	5.5	55.7
	50대	(243)	26.3	61.7	11.9	5.5	56.4
	60대 이상	(319)	30.4	58.0	11.6	5.6	57.2

〈부록 3-29〉 Q9_2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8.6	60.5	10.9	5.5	56.3
성별	남자	(608)	29.1	58.6	12.3	5.5	55.8
	여자	(592)	28.0	62.5	9.5	5.5	56.8
연령	20대	(197)	27.9	57.4	14.7	5.4	54.7
	30대	(201)	28.9	60.7	10.4	5.5	56.8
	40대	(240)	28.8	62.1	9.2	5.5	56.3
	50대	(243)	28.0	63.4	8.6	5.5	56.5
	60대 이상	(319)	29.2	58.9	11.9	5.5	56.7

〈부록 3-30〉 Q9_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9.8	44.6	5.6	6.3	65.8
성별	남자	(608)	50.2	44.9	4.9	6.3	66.4
	여자	(592)	49.5	44.3	6.3	6.2	65.1
연령	20대	(197)	49.2	46.2	4.6	6.3	66.3
	30대	(201)	49.8	43.3	7.0	6.2	65.4
	40대	(240)	51.7	42.5	5.8	6.3	65.6
	50대	(243)	48.1	45.7	6.2	6.2	65.6
	60대 이상	(319)	50.2	45.1	4.7	6.3	65.8

〈부록 3-31〉 Q9_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3.8	41.8	4.3	6.4	67.8
성별	남자	(608)	55.1	41.3	3.6	6.5	68.7
	여자	(592)	52.5	42.4	5.1	6.4	66.9
연령	20대	(197)	55.8	41.1	3.0	6.6	69.7
	30대	(201)	57.7	37.3	5.0	6.5	68.6
	40대	(240)	54.2	42.9	2.9	6.5	68.6
	50대	(243)	50.2	42.8	7.0	6.3	65.8
	60대 이상	(319)	52.7	43.6	3.8	6.4	67.0

〈부록 3-32〉 Q9_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3.3	42.2	4.6	6.4	67.5
성별	남자	(608)	55.3	41.1	3.6	6.5	68.5
	여자	(592)	51.2	43.2	5.6	6.3	66.5
연령	20대	(197)	52.3	43.7	4.1	6.4	67.3
	30대	(201)	56.7	38.8	4.5	6.4	67.6
	40대	(240)	55.4	40.8	3.8	6.5	68.6
	50대	(243)	49.0	44.0	7.0	6.3	65.9
	60대 이상	(319)	53.3	42.9	3.8	6.4	67.9

23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부록 3-33〉 Q9_4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3.6	41.2	5.3	6.4	67.9
성별	남자	(608)	54.3	42.4	3.3	6.5	68.7
	여자	(592)	52.9	39.9	7.3	6.4	67.0
연령	20대	(197)	58.9	36.5	4.6	6.6	69.9
	30대	(201)	56.2	39.3	4.5	6.6	69.5
	40대	(240)	52.9	42.5	4.6	6.5	68.3
	50대	(243)	49.8	43.6	6.6	6.3	65.7
	60대 이상	(319)	52.0	42.3	5.6	6.4	66.9

〈부록 3-34〉 Q9_5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0.6	42.6	6.8	6.3	65.8
성별	남자	(608)	51.2	41.9	6.9	6.3	66.1
	여자	(592)	50.0	43.2	6.8	6.2	65.4
연령	20대	(197)	49.7	46.7	3.6	6.3	66.8
	30대	(201)	54.7	40.8	4.5	6.4	67.5
	40대	(240)	47.5	42.9	9.6	6.1	64.1
	50대	(243)	49.4	40.7	9.9	6.2	64.8
	60대 이상	(319)	51.7	42.3	6.0	6.3	66.1

〈부록 3-35〉 Q9_6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1.2	43.3	5.6	6.3	66.5
성별	남자	(608)	51.0	44.6	4.4	6.4	67.0
	여자	(592)	51.4	41.9	6.8	6.3	66.0
연령	20대	(197)	55.8	41.1	3.0	6.5	69.1
	30대	(201)	54.7	40.3	5.0	6.4	67.9
	40대	(240)	47.9	45.8	6.3	6.2	65.3
	50대	(243)	48.6	45.3	6.2	6.2	65.6
	60대 이상	(319)	50.5	42.9	6.6	6.2	65.5

〈부록 3-36〉 Q9_7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5.1	47.0	7.9	6.0	63.0
성별	남자	(608)	45.6	46.7	7.7	6.1	63.3
	여자	(592)	44.6	47.3	8.1	6.0	62.7
연령	20대	(197)	42.1	49.7	8.1	6.0	61.9
	30대	(201)	51.2	41.8	7.0	6.2	65.6
	40대	(240)	42.1	49.6	8.3	6.0	62.0
	50대	(243)	44.0	46.5	9.5	5.9	61.2
	60대 이상	(319)	46.1	47.0	6.9	6.1	64.1

〈부록 3-37〉 9_8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살(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9.8	44.6	5.7	6.3	66.3
성별	남자	(608)	49.7	45.4	4.9	6.4	67.0
	여자	(592)	49.8	43.8	6.4	6.2	65.6
연령	20대	(197)	51.3	44.7	4.1	6.4	67.8
	30대	(201)	52.7	42.3	5.0	6.4	67.1
	40대	(240)	45.4	48.8	5.8	6.2	64.9
	50대	(243)	49.8	42.8	7.4	6.3	66.0
	60대 이상	(319)	50.2	44.2	5.6	6.3	66.1

〈부록 3-38〉 9_9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6.5	43.7	9.8	6.0	63.1
성별	남자	(608)	48.5	41.9	9.5	6.1	64.1
	여자	(592)	44.4	45.4	10.1	6.0	62.0
연령	20대	(197)	45.7	47.2	7.1	6.1	63.8
	30대	(201)	47.3	46.3	6.5	6.2	64.9
	40대	(240)	44.2	45.0	10.8	6.0	62.7
	50대	(243)	42.8	43.6	13.6	5.9	61.2
	60대 이상	(319)	51.1	38.9	10.0	6.1	63.2

〈부록 3-39〉 9_10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저성장(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7.3	44.2	8.5	6.1	64.3
성별	남자	(608)	49.2	43.1	7.7	6.2	65.6
	여자	(592)	45.4	45.3	9.3	6.0	63.0
연령	20대	(197)	50.3	43.1	6.6	6.3	65.8
	30대	(201)	49.8	42.3	8.0	6.2	65.3
	40대	(240)	45.4	45.4	9.2	6.2	64.7
	50대	(243)	44.9	44.0	11.1	6.0	62.1
	60대 이상	(319)	47.3	45.1	7.5	6.1	64.1

〈부록 3-40〉 9_1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3.2	46.3	10.6	6.0	62.0
성별	남자	(608)	45.1	43.6	11.3	6.0	62.5
	여자	(592)	41.2	49.0	9.8	5.9	61.5
연령	20대	(197)	44.2	46.2	9.6	6.0	62.7
	30대	(201)	47.8	43.3	9.0	6.1	63.7
	40대	(240)	44.2	45.0	10.8	6.0	62.7
	50대	(243)	37.0	50.2	12.8	5.8	60.4
	60대 이상	(319)	43.6	46.1	10.3	5.9	61.2

〈부록 3-41〉 9_1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8.4	37.8	3.8	6.6	69.6
성별	남자	(608)	58.4	37.5	4.1	6.6	70.0
	여자	(592)	58.4	38.0	3.5	6.5	69.2
연령	20대	(197)	58.4	39.1	2.5	6.8	71.9
	30대	(201)	55.7	40.3	4.0	6.5	68.5
	40대	(240)	59.6	35.8	4.6	6.6	69.9
	50대	(243)	58.0	37.4	4.5	6.4	68.0
	60대 이상	(319)	59.6	37.0	3.4	6.6	70.1

〈부록 3-42〉 9_1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5.1	40.3	4.7	6.4	68.0
성별	남자	(608)	55.1	39.6	5.3	6.5	68.4
	여자	(592)	55.1	40.9	4.1	6.4	67.6
연령	20대	(197)	56.9	40.1	3.0	6.6	69.9
	30대	(201)	57.2	36.8	6.0	6.4	68.0
	40대	(240)	54.6	40.8	4.6	6.4	67.4
	50대	(243)	52.7	42.0	5.3	6.3	66.7
	60대 이상	(319)	54.9	40.8	4.4	6.5	68.2

〈부록 3-43〉 9_14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6.8	38.9	4.3	6.5	69.1
성별	남자	(608)	56.6	39.3	4.1	6.5	69.1
	여자	(592)	56.9	38.5	4.6	6.5	69.2
연령	20대	(197)	57.4	41.1	1.5	6.7	71.4
	30대	(201)	56.2	38.8	5.0	6.5	68.3
	40대	(240)	55.4	41.3	3.3	6.5	68.3
	50대	(243)	54.7	38.3	7.0	6.5	68.3
	60대 이상	(319)	59.2	36.4	4.4	6.6	69.5

〈부록 3-44〉 9_15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9.7	48.8	11.5	5.8	60.4
성별	남자	(608)	40.6	46.7	12.7	5.9	60.8
	여자	(592)	38.7	51.0	10.3	5.8	60.0
연령	20대	(197)	40.6	48.2	11.2	5.9	60.9
	30대	(201)	36.3	52.2	11.4	5.8	59.7
	40대	(240)	38.3	49.2	12.5	5.8	59.9
	50대	(243)	38.3	50.2	11.5	5.8	59.7
	60대 이상	(319)	43.3	45.8	11.0	5.9	61.4

〈부록 3-45〉 Q9_16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0	52.3	11.7	5.7	59.1
성별	남자	(608)	37.0	51.6	11.3	5.8	59.5
	여자	(592)	35.0	53.0	12.0	5.7	58.7
연령	20대	(197)	36.0	49.7	14.2	5.6	57.9
	30대	(201)	38.3	50.2	11.4	5.8	59.5
	40대	(240)	34.6	55.4	10.0	5.8	60.4
	50대	(243)	35.8	53.1	11.1	5.7	59.1
	60대 이상	(319)	35.7	52.4	11.9	5.7	58.8

〈부록 3-46〉 Q9_17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3.3	54.0	12.7	5.6	57.4
성별	남자	(608)	33.9	53.9	12.2	5.6	57.7
	여자	(592)	32.8	54.1	13.2	5.6	57.1
연령	20대	(197)	32.5	53.8	13.7	5.6	57.0
	30대	(201)	33.8	55.7	10.4	5.6	57.8
	40대	(240)	34.6	53.8	11.7	5.6	57.7
	50대	(243)	32.9	52.7	14.4	5.5	56.2
	60대 이상	(319)	32.9	54.2	12.9	5.6	58.1

〈부록 3-47〉 Q9_18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7.8	51.7	10.5	5.8	60.0
성별	남자	(608)	38.2	53.0	8.9	5.8	60.6
	여자	(592)	37.5	50.3	12.2	5.8	59.4
연령	20대	(197)	37.1	53.3	9.6	5.8	60.4
	30대	(201)	41.3	49.3	9.5	5.9	60.8
	40대	(240)	35.4	52.9	11.7	5.8	59.7
	50대	(243)	37.4	49.0	13.6	5.7	58.2
	60대 이상	(319)	38.2	53.3	8.5	5.9	60.9

〈부록 3-48〉 Q9_19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9.4	51.8	8.8	5.9	60.6
성별	남자	(608)	40.3	52.3	7.4	5.9	60.9
	여자	(592)	38.5	51.4	10.1	5.8	60.3
연령	20대	(197)	37.6	55.8	6.6	5.9	61.2
	30대	(201)	41.3	53.2	5.5	5.9	61.6
	40대	(240)	40.8	50.8	8.3	5.9	61.2
	50대	(243)	41.6	46.5	11.9	5.8	60.4
	60대 이상	(319)	36.7	53.3	10.0	5.7	59.3

〈부록 3-49〉 Q9_20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9	53.9	11.2	5.7	58.8
성별	남자	(608)	37.0	51.0	12.0	5.7	59.4
	여자	(592)	32.8	56.9	10.3	5.7	58.2
연령	20대	(197)	32.0	57.9	10.2	5.7	58.2
	30대	(201)	37.8	52.2	10.0	5.8	59.6
	40대	(240)	37.1	50.8	12.1	5.7	59.2
	50대	(243)	34.2	53.9	11.9	5.7	58.2
	60대 이상	(319)	33.9	54.9	11.3	5.7	58.8

〈부록 3-50〉 Q9_2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3	49.8	11.9	5.8	59.4
성별	남자	(608)	37.7	49.5	12.8	5.7	59.0
	여자	(592)	39.0	50.0	11.0	5.8	59.9
연령	20대	(197)	39.1	48.7	12.2	5.8	60.4
	30대	(201)	37.3	48.8	13.9	5.7	58.2
	40대	(240)	38.3	50.4	11.3	5.8	59.7
	50대	(243)	32.5	56.0	11.5	5.6	57.9
	60대 이상	(319)	42.9	45.8	11.3	5.8	60.4

〈부록 3-51〉 Q9_2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1	49.8	12.2	5.8	59.4
성별	남자	(608)	38.5	49.0	12.5	5.7	59.3
	여자	(592)	37.7	50.5	11.8	5.8	59.6
연령	20대	(197)	39.6	45.7	14.7	5.8	59.6
	30대	(201)	41.3	48.3	10.4	5.9	61.5
	40대	(240)	37.1	51.7	11.3	5.7	58.9
	50대	(243)	33.7	51.4	14.8	5.5	56.7
	60대 이상	(319)	39.2	50.5	10.3	5.8	60.5

〈부록 3-52〉 Q9_2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8	50.8	12.4	5.7	59.1
성별	남자	(608)	38.3	48.7	13.0	5.7	59.0
	여자	(592)	35.3	52.9	11.8	5.7	59.2
연령	20대	(197)	33.0	53.3	13.7	5.7	58.4
	30대	(201)	37.8	47.8	14.4	5.8	59.8
	40대	(240)	37.9	52.9	9.2	5.8	59.9
	50대	(243)	35.8	49.8	14.4	5.6	57.7
	60대 이상	(319)	38.6	50.2	11.3	5.8	59.6

〈부록 3-53〉 Q10_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6.0	54.8	19.3	5.3	53.3
성별	남자	(608)	27.5	52.3	20.2	5.3	53.5
	여자	(592)	24.5	57.3	18.2	5.3	53.1
연령	20대	(197)	22.8	51.8	25.4	5.0	50.2
	30대	(201)	29.9	49.3	20.9	5.3	53.7
	40대	(240)	23.3	59.6	17.1	5.3	53.1
	50대	(243)	25.9	56.4	17.7	5.3	54.2
	60대 이상	(319)	27.6	55.2	17.2	5.4	54.6

〈부록 3-54〉 Q10_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1.2	48.9	19.9	5.4	54.7
성별	남자	(608)	31.3	47.9	20.9	5.4	54.8
	여자	(592)	31.1	50.0	18.9	5.4	54.7
연령	20대	(197)	27.4	45.2	27.4	5.0	49.8
	30대	(201)	32.3	47.3	20.4	5.4	55.0
	40대	(240)	30.8	48.3	20.8	5.4	54.9
	50대	(243)	30.5	51.9	17.7	5.5	56.1
	60대 이상	(319)	33.5	50.5	16.0	5.5	56.4

〈부록 3-55〉 10_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0.8	49.8	19.4	5.3	53.7
성별	남자	(608)	31.3	48.4	20.4	5.3	53.7
	여자	(592)	30.4	51.2	18.4	5.3	53.7
연령	20대	(197)	25.4	48.2	26.4	5.0	49.6
	30대	(201)	31.8	50.2	17.9	5.3	54.4
	40대	(240)	29.2	50.8	20.0	5.2	52.7
	50대	(243)	31.3	50.6	18.1	5.4	54.9
	60대 이상	(319)	34.5	48.9	16.6	5.5	55.8

〈부록 3-56〉 10_4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7	49.7	20.7	5.3	53.7
성별	남자	(608)	30.1	49.5	20.4	5.3	53.9
	여자	(592)	29.2	49.8	20.9	5.3	53.5
연령	20대	(197)	26.4	44.7	28.9	5.0	50.1
	30대	(201)	27.9	49.8	22.4	5.2	52.1
	40대	(240)	30.0	49.6	20.4	5.3	53.4
	50대	(243)	31.7	51.0	17.3	5.5	55.8
	60대 이상	(319)	31.0	51.7	17.2	5.5	55.6

〈부록 3-57〉 Q10_5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7.8	54.2	18.0	5.3	53.7
성별	남자	(608)	28.1	52.8	19.1	5.3	54.1
	여자	(592)	27.5	55.6	16.9	5.3	53.3
연령	20대	(197)	22.8	55.3	21.8	5.1	50.6
	30대	(201)	28.4	53.7	17.9	5.3	53.9
	40대	(240)	27.9	50.4	21.7	5.2	51.9
	50대	(243)	28.4	57.2	14.4	5.5	55.7
	60대 이상	(319)	30.1	54.2	15.7	5.4	55.3

〈부록 3-58〉 Q10_6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0.8	51.9	17.3	5.4	55.1
성별	남자	(608)	31.6	51.5	16.9	5.5	55.8
	여자	(592)	29.9	52.4	17.7	5.4	54.4
연령	20대	(197)	28.9	46.7	24.4	5.1	51.6
	30대	(201)	30.3	54.7	14.9	5.5	56.2
	40대	(240)	27.5	52.5	20.0	5.2	52.8
	50대	(243)	32.9	52.7	14.4	5.6	57.1
	60대 이상	(319)	32.9	52.4	14.7	5.6	56.9

〈부록 3-59〉 Q10_7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7.7	56.4	15.9	5.4	54.4
성별	남자	(608)	28.6	56.3	15.1	5.4	54.9
	여자	(592)	26.7	56.6	16.7	5.3	53.9
연령	20대	(197)	22.8	59.4	17.8	5.2	52.4
	30대	(201)	26.4	59.7	13.9	5.4	55.1
	40대	(240)	28.8	51.7	19.6	5.3	53.4
	50대	(243)	28.4	57.6	14.0	5.4	54.7
	60대 이상	(319)	30.1	55.2	14.7	5.5	55.6

〈부록 3-60〉 Q10_8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살(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8	54.3	15.8	5.4	54.7
성별	남자	(608)	30.4	54.8	14.8	5.4	55.3
	여자	(592)	29.2	53.9	16.9	5.3	54.1
연령	20대	(197)	26.4	53.8	19.8	5.2	52.2
	30대	(201)	31.8	53.2	14.9	5.4	54.8
	40대	(240)	29.2	52.9	17.9	5.3	53.6
	50대	(243)	29.2	57.6	13.2	5.5	56.3
	60대 이상	(319)	31.7	53.9	14.4	5.5	55.9

〈부록 3-61〉 Q10_9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6.8	56.6	16.7	5.3	53.2
성별	남자	(608)	27.6	56.9	15.5	5.3	54.3
	여자	(592)	25.8	56.3	17.9	5.2	52.0
연령	20대	(197)	20.3	59.4	20.3	5.0	49.5
	30대	(201)	30.3	56.2	13.4	5.4	55.3
	40대	(240)	25.8	52.9	21.3	5.1	50.8
	50대	(243)	27.6	58.4	14.0	5.4	55.1
	60대 이상	(319)	28.5	56.4	15.0	5.4	54.4

〈부록 3-62〉 Q10_10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저성장(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8.3	55.4	16.3	5.3	54.1
성별	남자	(608)	29.1	53.8	17.1	5.3	54.3
	여자	(592)	27.5	57.1	15.4	5.3	53.9
연령	20대	(197)	23.4	53.8	22.8	5.0	50.4
	30대	(201)	27.9	57.7	14.4	5.4	54.7
	40대	(240)	25.4	57.9	16.7	5.2	53.0
	50대	(243)	30.0	56.4	13.6	5.4	55.6
	60대 이상	(319)	32.6	52.4	15.0	5.5	55.9

〈부록 3-63〉 Q10_1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6.8	56.0	17.3	5.3	53.4
성별	남자	(608)	28.6	54.1	17.3	5.3	54.0
	여자	(592)	24.8	57.9	17.2	5.2	52.9
연령	20대	(197)	21.8	56.9	21.3	5.0	50.5
	30대	(201)	25.9	59.7	14.4	5.3	53.7
	40대	(240)	27.1	55.0	17.9	5.2	52.9
	50대	(243)	27.2	56.0	16.9	5.3	53.6
	60대 이상	(319)	29.8	53.9	16.3	5.4	55.3

〈부록 3-64〉 Q10_1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1.4	47.9	20.7	5.3	54.1
성별	남자	(608)	31.1	48.7	20.2	5.3	54.1
	여자	(592)	31.8	47.1	21.1	5.3	54.1
연령	20대	(197)	27.9	45.7	26.4	5.2	52.0
	30대	(201)	32.3	46.3	21.4	5.3	53.9
	40대	(240)	29.6	52.1	18.3	5.3	54.1
	50대	(243)	33.7	47.3	18.9	5.4	55.3
	60대 이상	(319)	32.6	47.6	19.7	5.4	54.5

〈부록 3-65〉 Q10_1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9	49.5	20.6	5.3	53.9
성별	남자	(608)	28.9	50.3	20.7	5.3	53.7
	여자	(592)	30.9	48.6	20.4	5.3	54.1
연령	20대	(197)	26.4	47.7	25.9	5.0	50.4
	30대	(201)	33.3	47.3	19.4	5.5	56.2
	40대	(240)	26.3	53.3	20.4	5.2	52.4
	50대	(243)	31.3	48.6	20.2	5.4	54.9
	60대 이상	(319)	31.7	49.8	18.5	5.4	54.8

〈부록 3-66〉 Q10_14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8	48.8	18.4	5.4	55.0
성별	남자	(608)	32.6	49.3	18.1	5.4	54.5
	여자	(592)	33.1	48.1	18.8	5.4	55.4
연령	20대	(197)	30.5	46.2	23.4	5.2	52.9
	30대	(201)	35.3	44.8	19.9	5.5	55.8
	40대	(240)	29.6	52.9	17.5	5.3	54.0
	50대	(243)	30.5	51.9	17.7	5.4	55.0
	60대 이상	(319)	37.0	47.3	15.7	5.5	56.5

〈부록 3-67〉 Q10_15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3.2	58.5	8.3	5.7	59.0
성별	남자	(608)	34.0	58.2	7.7	5.8	59.5
	여자	(592)	32.3	58.8	9.0	5.7	58.4
연령	20대	(197)	34.0	54.8	11.2	5.6	57.7
	30대	(201)	31.8	59.7	8.5	5.8	59.6
	40대	(240)	31.7	62.1	6.3	5.7	59.3
	50대	(243)	32.5	58.4	9.1	5.7	58.7
	60대 이상	(319)	35.1	57.4	7.5	5.7	59.4

〈부록 3-68〉 Q10_16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1	57.8	10.1	5.6	58.1
성별	남자	(608)	33.1	56.4	10.5	5.6	58.1
	여자	(592)	31.1	59.3	9.6	5.6	58.1
연령	20대	(197)	31.5	53.8	14.7	5.5	56.2
	30대	(201)	35.8	53.2	10.9	5.7	58.9
	40대	(240)	30.4	62.1	7.5	5.6	57.7
	50대	(243)	30.5	62.1	7.4	5.7	59.1
	60대 이상	(319)	32.6	56.7	10.7	5.7	58.2

〈부록 3-69〉 Q10_17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0.5	59.3	10.3	5.6	57.0
성별	남자	(608)	32.2	59.2	8.6	5.6	58.0
	여자	(592)	28.7	59.3	12.0	5.5	56.0
연령	20대	(197)	29.9	59.9	10.2	5.5	55.7
	30대	(201)	32.8	56.2	10.9	5.7	58.3
	40대	(240)	31.3	57.5	11.3	5.6	57.8
	50대	(243)	28.0	63.0	9.1	5.5	56.0
	60대 이상	(319)	30.7	59.2	10.0	5.6	57.3

〈부록 3-70〉 Q10_18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4	59.8	7.8	5.7	59.3
성별	남자	(608)	33.9	59.7	6.4	5.8	60.3
	여자	(592)	30.9	59.8	9.3	5.7	58.3
연령	20대	(197)	33.5	57.4	9.1	5.7	58.8
	30대	(201)	36.8	53.2	10.0	5.9	60.6
	40대	(240)	32.9	62.5	4.6	5.8	60.2
	50대	(243)	30.9	60.9	8.2	5.7	58.6
	60대 이상	(319)	29.8	62.4	7.8	5.7	58.6

〈부록 3-71〉 Q10_19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0.4	61.8	7.8	5.7	58.4
성별	남자	(608)	31.7	61.3	6.9	5.7	58.9
	여자	(592)	29.1	62.3	8.6	5.6	57.9
연령	20대	(197)	28.4	62.4	9.1	5.6	57.7
	30대	(201)	31.3	61.2	7.5	5.8	59.8
	40대	(240)	30.8	61.7	7.5	5.7	58.4
	50대	(243)	30.0	61.3	8.6	5.6	57.6
	60대 이상	(319)	31.0	62.4	6.6	5.7	58.5

〈부록 3-72〉 Q10_20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7.0	64.0	9.0	5.5	56.6
성별	남자	(608)	30.3	62.0	7.7	5.6	57.7
	여자	(592)	23.6	66.0	10.3	5.4	55.6
연령	20대	(197)	21.3	72.6	6.1	5.5	55.8
	30대	(201)	30.8	60.7	8.5	5.7	58.5
	40대	(240)	26.7	64.6	8.8	5.5	56.1
	50대	(243)	28.0	64.6	7.4	5.6	57.6
	60대 이상	(319)	27.6	59.9	12.5	5.5	55.7

〈부록 3-73〉 Q10_2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8	57.3	8.0	5.8	59.4
성별	남자	(608)	34.9	56.4	8.7	5.8	59.5
	여자	(592)	34.6	58.1	7.3	5.8	59.4
연령	20대	(197)	35.5	54.8	9.6	5.7	58.4
	30대	(201)	36.3	58.2	5.5	5.9	61.8
	40대	(240)	36.3	57.5	6.3	5.8	60.3
	50대	(243)	30.9	58.4	10.7	5.6	58.1
	60대 이상	(319)	35.1	57.1	7.8	5.7	59.1

〈부록 3-74〉 Q10_2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4	57.6	10.0	5.7	58.6
성별	남자	(608)	35.0	55.3	9.7	5.7	59.4
	여자	(592)	29.7	60.0	10.3	5.6	57.9
연령	20대	(197)	34.0	54.3	11.7	5.8	59.4
	30대	(201)	34.3	56.7	9.0	5.8	60.5
	40대	(240)	34.6	59.2	6.3	5.8	60.0
	50대	(243)	28.4	61.7	9.9	5.6	57.2
	60대 이상	(319)	31.7	55.8	12.5	5.6	57.1

〈부록 3-75〉 Q10_2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9	59.6	10.5	5.6	57.1
성별	남자	(608)	31.9	57.1	11.0	5.6	58.1
	여자	(592)	27.9	62.2	10.0	5.5	56.0
연령	20대	(197)	28.9	60.9	10.2	5.6	57.0
	30대	(201)	28.9	62.2	9.0	5.6	58.0
	40대	(240)	32.1	59.6	8.3	5.7	58.4
	50대	(243)	28.4	59.3	12.3	5.5	55.9
	60대 이상	(319)	30.7	57.4	11.9	5.5	56.5

〈부록 3-76〉 Q10_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0	45.9	20.1	5.4	54.8
성별	남자	(608)	34.2	45.1	20.7	5.4	55.0
	여자	(592)	33.8	46.8	19.4	5.4	54.6
연령	20대	(197)	28.9	46.7	24.4	5.1	51.5
	30대	(201)	34.8	41.3	23.9	5.4	54.9
	40대	(240)	34.2	46.3	19.6	5.4	55.1
	50대	(243)	32.9	45.3	21.8	5.3	53.9
	60대 이상	(319)	37.3	48.6	14.1	5.6	57.2

〈부록 3-77〉 Q10_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1	43.3	20.6	5.4	55.3
성별	남자	(608)	37.8	41.9	20.2	5.5	55.9
	여자	(592)	34.3	44.8	20.9	5.4	54.7
연령	20대	(197)	30.5	42.1	27.4	5.1	50.6
	30대	(201)	39.3	40.8	19.9	5.5	55.8
	40대	(240)	36.7	42.1	21.3	5.4	55.3
	50대	(243)	35.0	43.6	21.4	5.4	55.3
	60대 이상	(319)	37.9	46.4	15.7	5.6	57.9

〈부록 3-78〉 Q10_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6	44.9	20.5	5.4	54.7
성별	남자	(608)	36.8	42.1	21.1	5.4	55.4
	여자	(592)	32.3	47.8	19.9	5.3	53.9
연령	20대	(197)	30.5	45.7	23.9	5.1	51.7
	30대	(201)	35.8	46.8	17.4	5.5	56.1
	40대	(240)	34.6	43.3	22.1	5.3	53.6
	50대	(243)	31.3	46.9	21.8	5.3	53.7
	60대 이상	(319)	38.9	42.9	18.2	5.6	57.2

〈부록 3-79〉 Q10_4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3.3	45.5	21.2	5.3	54.3
성별	남자	(608)	34.5	42.9	22.5	5.4	54.5
	여자	(592)	32.1	48.1	19.8	5.3	54.1
연령	20대	(197)	31.0	39.6	29.4	5.0	50.2
	30대	(201)	35.8	43.3	20.9	5.4	55.5
	40대	(240)	33.3	46.3	20.4	5.3	54.3
	50대	(243)	31.7	49.8	18.5	5.4	54.6
	60대 이상	(319)	34.5	46.7	18.8	5.5	56.0

〈부록 3-80〉 Q10_5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3.0	45.8	21.2	5.4	54.5
성별	남자	(608)	34.2	44.7	21.1	5.4	55.4
	여자	(592)	31.8	47.0	21.3	5.3	53.5
연령	20대	(197)	28.9	46.2	24.9	5.1	50.8
	30대	(201)	34.8	45.8	19.4	5.4	55.6
	40대	(240)	32.1	46.7	21.3	5.3	54.0
	50대	(243)	32.5	46.1	21.4	5.4	54.5
	60대 이상	(319)	35.4	44.8	19.7	5.5	56.3

〈부록 3-81〉 Q10_6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3.7	47.9	18.4	5.4	55.5
성별	남자	(608)	35.7	47.2	17.1	5.5	56.4
	여자	(592)	31.6	48.6	19.8	5.4	54.6
연령	20대	(197)	34.5	42.1	23.4	5.2	53.0
	30대	(201)	33.8	47.3	18.9	5.4	55.6
	40대	(240)	33.3	45.8	20.8	5.4	55.1
	50대	(243)	32.9	50.6	16.5	5.4	55.2
	60대 이상	(319)	33.9	51.4	14.7	5.6	57.6

〈부록 3-82〉 Q10_7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3	50.6	17.1	5.4	55.0
성별	남자	(608)	33.1	50.0	16.9	5.4	55.6
	여자	(592)	31.6	51.2	17.2	5.3	54.3
연령	20대	(197)	32.5	47.7	19.8	5.3	53.6
	30대	(201)	33.3	51.2	15.4	5.5	56.4
	40대	(240)	33.3	44.6	22.1	5.3	54.3
	50대	(243)	30.9	52.7	16.5	5.4	54.4
	60대 이상	(319)	32.0	54.9	13.2	5.5	55.8

〈부록 3-83〉 Q10_8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4	48.4	19.2	5.4	54.8
성별	남자	(608)	33.2	48.5	18.3	5.5	56.0
	여자	(592)	31.6	48.3	20.1	5.3	53.6
연령	20대	(197)	32.0	46.2	21.8	5.2	52.7
	30대	(201)	35.8	46.8	17.4	5.4	55.3
	40대	(240)	32.9	45.0	22.1	5.4	54.8
	50대	(243)	29.2	50.6	20.2	5.3	54.0
	60대 이상	(319)	32.6	51.7	15.7	5.5	56.3

〈부록 3-84〉 Q10_9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0.2	51.0	18.8	5.3	54.3
성별	남자	(608)	30.8	51.8	17.4	5.4	55.5
	여자	(592)	29.6	50.2	20.3	5.3	53.2
연령	20대	(197)	27.4	49.7	22.8	5.1	50.7
	30대	(201)	34.8	48.8	16.4	5.6	57.2
	40대	(240)	29.6	46.3	24.2	5.2	52.1
	50대	(243)	26.7	55.1	18.1	5.3	53.9
	60대 이상	(319)	32.0	53.6	14.4	5.5	56.8

〈부록 3-85〉 Q10_10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저성장(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3.3	48.9	17.8	5.4	55.4
성별	남자	(608)	33.6	47.9	18.6	5.4	55.6
	여자	(592)	32.9	50.0	17.1	5.4	55.2
연령	20대	(197)	28.4	50.3	21.3	5.2	52.2
	30대	(201)	36.3	46.8	16.9	5.5	56.0
	40대	(240)	33.8	45.0	21.3	5.4	54.6
	50대	(243)	34.2	49.4	16.5	5.5	56.6
	60대 이상	(319)	33.2	52.0	14.7	5.5	56.5

〈부록 3-86〉 Q10_1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1.8	48.9	19.3	5.4	54.5
성별	남자	(608)	32.4	48.2	19.4	5.4	54.7
	여자	(592)	31.3	49.7	19.1	5.3	54.3
연령	20대	(197)	27.4	50.3	22.3	5.1	51.8
	30대	(201)	34.3	47.8	17.9	5.4	54.9
	40대	(240)	34.2	44.2	21.7	5.3	54.1
	50대	(243)	32.9	47.7	19.3	5.4	55.4
	60대 이상	(319)	30.4	53.3	16.3	5.5	55.6

〈부록 3-87〉 Q10_1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7.1	42.0	20.9	5.5	55.7
성별	남자	(608)	37.8	41.0	21.2	5.5	55.8
	여자	(592)	36.3	43.1	20.6	5.4	55.6
연령	20대	(197)	37.6	39.6	22.8	5.3	54.2
	30대	(201)	39.3	40.3	20.4	5.5	56.8
	40대	(240)	35.0	44.2	20.8	5.4	55.3
	50대	(243)	35.8	42.8	21.4	5.4	55.3
	60대 이상	(319)	37.9	42.3	19.7	5.5	56.4

〈부록 3-88〉 Q10_1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1	41.9	22.0	5.4	54.7
성별	남자	(608)	36.0	41.9	22.0	5.4	54.7
	여자	(592)	36.1	41.9	22.0	5.4	54.6
연령	20대	(197)	35.0	40.6	24.4	5.2	52.9
	30대	(201)	37.8	40.3	21.9	5.5	56.2
	40대	(240)	32.9	45.4	21.7	5.3	53.5
	50대	(243)	36.6	41.2	22.2	5.3	54.3
	60대 이상	(319)	37.6	41.7	20.7	5.5	55.9

〈부록 3-89〉 Q10_14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7.0	43.2	19.8	5.4	55.5
성별	남자	(608)	37.7	42.4	19.9	5.5	55.8
	여자	(592)	36.3	43.9	19.8	5.4	55.2
연령	20대	(197)	32.5	43.7	23.9	5.1	51.7
	30대	(201)	36.3	43.8	19.9	5.4	55.6
	40대	(240)	36.7	46.3	17.1	5.5	56.0
	50대	(243)	35.0	42.8	22.2	5.4	54.4
	60대 이상	(319)	42.0	40.4	17.6	5.7	58.2

〈부록 3-90〉 Q10_15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7.3	50.3	12.4	5.7	58.8
성별	남자	(608)	37.3	49.3	13.3	5.7	58.8
	여자	(592)	37.3	51.2	11.5	5.7	58.7
연령	20대	(197)	34.0	50.3	15.7	5.5	56.3
	30대	(201)	36.8	50.7	12.4	5.7	58.3
	40대	(240)	41.3	49.2	9.6	5.8	60.5
	50대	(243)	32.1	53.5	14.4	5.6	57.1
	60대 이상	(319)	40.8	48.3	11.0	5.8	60.5

〈부록 3-91〉 Q10_16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9.7	48.3	12.0	5.8	59.7
성별	남자	(608)	40.5	47.0	12.5	5.8	59.9
	여자	(592)	38.9	49.7	11.5	5.8	59.5
연령	20대	(197)	39.6	44.7	15.7	5.6	57.9
	30대	(201)	40.3	45.8	13.9	5.7	59.1
	40대	(240)	42.5	48.3	9.2	5.9	61.6
	50대	(243)	38.3	49.8	11.9	5.8	59.9
	60대 이상	(319)	38.2	51.1	10.7	5.8	59.6

〈부록 3-92〉 Q10_17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7.1	52.3	10.7	5.7	59.2
성별	남자	(608)	37.8	52.3	9.9	5.8	60.0
	여자	(592)	36.3	52.2	11.5	5.7	58.4
연령	20대	(197)	34.5	54.3	11.2	5.6	57.9
	30대	(201)	34.8	56.7	8.5	5.8	60.4
	40대	(240)	37.1	53.8	9.2	5.8	60.0
	50대	(243)	38.7	47.3	14.0	5.6	58.1
	60대 이상	(319)	38.9	50.8	10.3	5.8	59.5

25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부록 3-93〉 Q10_18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2.3	48.9	8.8	5.9	61.6
성별	남자	(608)	43.4	49.7	6.9	6.0	62.8
	여자	(592)	41.0	48.1	10.8	5.8	60.5
연령	20대	(197)	44.2	45.2	10.7	5.9	61.3
	30대	(201)	43.3	49.3	7.5	6.0	62.7
	40대	(240)	44.2	49.6	6.3	6.0	62.3
	50대	(243)	39.9	47.7	12.3	5.8	60.2
	60대 이상	(319)	40.8	51.4	7.8	5.9	61.8

〈부록 3-94〉 Q10_19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7	51.8	9.6	5.9	60.7
성별	남자	(608)	40.1	51.3	8.6	6.0	62.0
	여자	(592)	37.2	52.2	10.6	5.7	59.3
연령	20대	(197)	37.6	50.8	11.7	5.8	60.0
	30대	(201)	43.3	50.7	6.0	6.1	63.6
	40대	(240)	37.1	54.6	8.3	5.9	61.3
	50대	(243)	38.7	49.8	11.5	5.7	58.5
	60대 이상	(319)	37.6	52.4	10.0	5.8	60.3

〈부록 3-95〉 Q10_20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8	54.7	10.5	5.7	58.5
성별	남자	(608)	35.4	55.1	9.5	5.8	59.5
	여자	(592)	34.3	54.2	11.5	5.6	57.5
연령	20대	(197)	32.0	57.9	10.2	5.6	57.7
	30대	(201)	40.3	48.3	11.4	5.9	60.6
	40대	(240)	30.4	57.9	11.7	5.6	57.3
	50대	(243)	37.4	51.4	11.1	5.7	58.7
	60대 이상	(319)	34.5	56.7	8.8	5.7	58.4

〈부록 3-96〉 Q10_2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2.2	47.8	10.1	5.9	60.9
성별	남자	(608)	42.9	46.9	10.2	5.9	61.4
	여자	(592)	41.4	48.6	10.0	5.8	60.3
연령	20대	(197)	41.1	49.2	9.6	5.8	60.4
	30대	(201)	42.8	47.8	9.5	5.9	61.6
	40대	(240)	45.4	45.8	8.8	6.0	62.2
	50대	(243)	40.7	46.1	13.2	5.7	58.8
	60대 이상	(319)	41.1	49.5	9.4	5.9	61.2

〈부록 3-97〉 Q10_2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9.3	49.2	11.5	5.8	59.9
성별	남자	(608)	41.4	48.8	9.7	5.9	60.8
	여자	(592)	37.2	49.5	13.3	5.7	59.0
연령	20대	(197)	42.1	46.2	11.7	5.9	60.9
	30대	(201)	38.8	50.2	10.9	5.8	60.2
	40대	(240)	40.8	50.8	8.3	5.9	60.8
	50대	(243)	33.7	49.8	16.5	5.6	56.9
	60대 이상	(319)	41.1	48.6	10.3	5.9	60.8

〈부록 3-98〉 Q10_2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4	49.4	12.2	5.7	59.0
성별	남자	(608)	41.8	46.7	11.5	5.8	60.2
	여자	(592)	35.0	52.2	12.8	5.6	57.8
연령	20대	(197)	37.1	50.3	12.7	5.7	58.8
	30대	(201)	39.3	48.3	12.4	5.7	59.1
	40대	(240)	37.5	50.4	12.1	5.7	59.3
	50대	(243)	39.1	46.9	14.0	5.6	57.9
	60대 이상	(319)	38.9	50.8	10.3	5.8	59.6

〈부록 3-99〉 Q11_1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1.5	37.9	10.6	3.5	62.5
성별	남자	(608)	50.2	39.5	10.4	3.5	62.4
	여자	(592)	52.9	36.3	10.8	3.5	62.7
연령	20대	(197)	47.2	43.7	9.1	3.5	62.2
	30대	(201)	54.7	35.3	10.0	3.5	63.7
	40대	(240)	54.2	38.3	7.5	3.6	64.6
	50대	(243)	51.0	35.0	14.0	3.4	60.8
	60대 이상	(319)	50.5	37.9	11.6	3.5	61.8

〈부록 3-100〉 Q11_2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7.9	36.2	15.9	3.4	60.1
성별	남자	(608)	45.9	36.5	17.6	3.4	58.9
	여자	(592)	50.0	35.8	14.2	3.5	61.3
연령	20대	(197)	47.2	34.0	18.8	3.4	59.0
	30대	(201)	53.2	33.3	13.4	3.5	62.1
	40대	(240)	50.8	37.5	11.7	3.5	61.6
	50대	(243)	46.1	39.9	14.0	3.4	60.4
	60대 이상	(319)	44.2	35.4	20.4	3.3	58.2

〈부록 3-101〉 Q11_3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1.8	37.4	20.8	3.3	56.6
성별	남자	(608)	41.3	37.7	21.1	3.2	56.1
	여자	(592)	42.2	37.2	20.6	3.3	57.1
연령	20대	(197)	37.1	40.6	22.3	3.2	55.6
	30대	(201)	50.2	32.3	17.4	3.4	60.1
	40대	(240)	41.3	40.8	17.9	3.3	57.5
	50대	(243)	38.7	37.9	23.5	3.2	54.9
	60대 이상	(319)	42.0	35.7	22.3	3.2	55.6

〈부록 3-102〉 Q11_4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60.8	31.3	7.9	3.7	66.5
성별	남자	(608)	61.5	30.1	8.4	3.6	66.2
	여자	(592)	60.1	32.4	7.4	3.7	66.8
연령	20대	(197)	61.4	28.4	10.2	3.6	66.1
	30대	(201)	65.2	31.8	3.0	3.8	69.7
	40대	(240)	58.3	32.9	8.8	3.6	65.5
	50대	(243)	62.6	27.2	10.3	3.7	66.3
	60대 이상	(319)	58.3	34.5	7.2	3.6	65.7

〈부록 3-103〉 Q11_5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9.1	32.4	8.5	3.6	65.4
성별	남자	(608)	56.7	34.4	8.9	3.6	64.6
	여자	(592)	61.5	30.4	8.1	3.6	66.1
연령	20대	(197)	61.9	32.5	5.6	3.7	68.0
	30대	(201)	62.2	31.3	6.5	3.7	67.7
	40대	(240)	55.4	37.1	7.5	3.6	64.6
	50대	(243)	55.1	31.7	13.2	3.5	62.4
	60대 이상	(319)	61.1	30.1	8.8	3.6	65.0

〈부록 3-104〉 Q11_6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8.6	34.2	7.3	3.7	66.4
성별	남자	(608)	57.2	35.9	6.9	3.6	65.8
	여자	(592)	60.0	32.4	7.6	3.7	66.9
연령	20대	(197)	56.9	36.5	6.6	3.6	66.2
	30대	(201)	61.2	32.3	6.5	3.7	67.7
	40대	(240)	55.8	37.1	7.1	3.6	65.6
	50대	(243)	57.6	32.1	10.3	3.6	65.3
	60대 이상	(319)	60.8	33.2	6.0	3.7	67.0

〈부록 3-105〉 Q11_7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수형자 증가(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1.1	39.9	9.0	3.5	62.7
성별	남자	(608)	50.0	40.5	9.5	3.5	62.2
	여자	(592)	52.2	39.4	8.4	3.5	63.3
연령	20대	(197)	51.8	38.6	9.6	3.5	62.8
	30대	(201)	57.2	34.3	8.5	3.6	65.2
	40대	(240)	47.5	42.9	9.6	3.5	61.5
	50대	(243)	52.3	35.8	11.9	3.5	61.8
	60대 이상	(319)	48.6	45.1	6.3	3.5	62.8

〈부록 3-106〉 Q11_8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발생(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9.2	31.9	8.9	3.6	65.0
성별	남자	(608)	57.9	32.9	9.2	3.6	64.8
	여자	(592)	60.5	30.9	8.6	3.6	65.3
연령	20대	(197)	58.9	35.0	6.1	3.6	65.5
	30대	(201)	63.7	28.4	8.0	3.6	66.2
	40대	(240)	59.2	32.5	8.3	3.6	65.5
	50대	(243)	57.2	30.0	12.8	3.6	64.1
	60대 이상	(319)	58.0	33.2	8.8	3.6	64.3

〈부록 3-107〉 Q11_9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피해(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8.1	33.3	8.6	3.6	64.3
성별	남자	(608)	57.9	34.0	8.1	3.6	64.4
	여자	(592)	58.3	32.6	9.1	3.6	64.3
연령	20대	(197)	61.4	32.5	6.1	3.6	66.1
	30대	(201)	61.7	30.8	7.5	3.6	65.5
	40대	(240)	58.3	33.8	7.9	3.6	64.1
	50대	(243)	56.4	31.3	12.3	3.5	63.2
	60대 이상	(319)	54.9	36.7	8.5	3.5	63.5

〈부록 3-108〉 Q11_1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7.3	32.9	9.8	3.6	65.5
성별	남자	(608)	56.9	34.0	9.0	3.6	65.6
	여자	(592)	57.8	31.8	10.5	3.6	65.3
연령	20대	(197)	54.8	37.1	8.1	3.6	65.2
	30대	(201)	58.7	31.3	10.0	3.7	66.4
	40대	(240)	61.7	31.3	7.1	3.7	66.6
	50대	(243)	56.8	29.6	13.6	3.6	64.4
	60대 이상	(319)	55.2	35.1	9.7	3.6	65.0

〈부록 3-109〉 Q11_2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4.2	33.3	12.5	3.5	63.0
성별	남자	(608)	55.9	30.4	13.7	3.5	62.5
	여자	(592)	52.4	36.3	11.3	3.5	63.4
연령	20대	(197)	52.8	35.5	11.7	3.5	63.1
	30대	(201)	58.7	30.3	10.9	3.6	65.7
	40대	(240)	59.6	30.0	10.4	3.6	64.2
	50대	(243)	51.0	31.3	17.7	3.4	60.6
	60대 이상	(319)	50.5	37.9	11.6	3.5	62.1

〈부록 3-110〉 Q11_3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5.1	38.3	16.6	3.4	59.1
성별	남자	(608)	44.4	38.0	17.6	3.3	58.4
	여자	(592)	45.8	38.7	15.5	3.4	59.7
연령	20대	(197)	44.2	38.6	17.3	3.4	59.3
	30대	(201)	50.7	34.8	14.4	3.4	61.2
	40대	(240)	43.3	40.0	16.7	3.4	59.1
	50대	(243)	39.5	42.4	18.1	3.3	56.6
	60대 이상	(319)	47.6	36.1	16.3	3.4	59.5

〈부록 3-111〉 Q11_4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62.7	28.6	8.8	3.7	67.8
성별	남자	(608)	61.8	28.6	9.5	3.7	67.4
	여자	(592)	63.5	28.5	7.9	3.7	68.2
연령	20대	(197)	61.4	31.0	7.6	3.7	67.8
	30대	(201)	61.2	32.3	6.5	3.7	68.5
	40대	(240)	65.4	26.3	8.3	3.8	69.3
	50대	(243)	61.3	26.3	12.3	3.6	65.6
	60대 이상	(319)	63.3	28.2	8.5	3.7	67.9

〈부록 3-112〉 Q11_5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61.8	30.6	7.6	3.7	67.0
성별	남자	(608)	60.9	30.6	8.6	3.6	66.2
	여자	(592)	62.8	30.6	6.6	3.7	67.9
연령	20대	(197)	61.4	31.0	7.6	3.7	67.3
	30대	(201)	65.2	27.4	7.5	3.7	68.7
	40대	(240)	58.8	34.2	7.1	3.6	65.5
	50대	(243)	61.3	28.0	10.7	3.6	65.7
	60대 이상	(319)	62.7	31.7	5.6	3.7	67.9

〈부록 3-113〉 Q11_6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60.3	32.2	7.5	3.7	67.2
성별	남자	(608)	62.0	29.6	8.4	3.7	67.0
	여자	(592)	58.6	34.8	6.6	3.7	67.4
연령	20대	(197)	58.9	34.5	6.6	3.7	68.4
	30대	(201)	65.2	29.4	5.5	3.8	69.0
	40대	(240)	59.6	30.8	9.6	3.6	66.0
	50대	(243)	56.4	32.5	11.1	3.6	64.3
	60대 이상	(319)	61.8	33.2	5.0	3.7	68.5

〈부록 3-114〉 Q11_7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수형자 증가(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5.8	35.9	8.3	3.6	65.5
성별	남자	(608)	55.1	37.2	7.7	3.6	65.6
	여자	(592)	56.6	34.6	8.8	3.6	65.5
연령	20대	(197)	51.3	42.6	6.1	3.6	65.4
	30대	(201)	58.7	33.8	7.5	3.7	66.5
	40대	(240)	57.5	32.9	9.6	3.6	65.3
	50대	(243)	53.5	35.8	10.7	3.6	64.4
	60대 이상	(319)	57.4	35.4	7.2	3.6	66.0

〈부록 3-115〉 Q11_8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발생(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63.3	29.9	6.8	3.7	67.5
성별	남자	(608)	64.0	29.3	6.7	3.7	67.8
	여자	(592)	62.5	30.6	6.9	3.7	67.3
연령	20대	(197)	65.5	31.0	3.6	3.8	68.8
	30대	(201)	66.2	27.9	6.0	3.7	67.8
	40대	(240)	62.1	31.7	6.3	3.7	67.0
	50대	(243)	59.3	32.5	8.2	3.7	66.5
	60대 이상	(319)	63.9	27.3	8.8	3.7	67.9

〈부록 3-116〉 Q11_9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피해(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63.3	29.0	7.7	3.7	67.5
성별	남자	(608)	63.8	28.6	7.6	3.7	67.6
	여자	(592)	62.8	29.4	7.8	3.7	67.4
연령	20대	(197)	66.0	29.9	4.1	3.8	69.5
	30대	(201)	64.2	28.4	7.5	3.7	67.2
	40대	(240)	61.7	31.3	7.1	3.7	66.3
	50대	(243)	60.9	30.5	8.6	3.7	66.7
	60대 이상	(319)	64.3	26.0	9.7	3.7	67.9

〈부록 3-117〉 Q13_1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3.8	53.1	13.2	5.6	57.9
성별	남자	(608)	35.4	51.0	13.7	5.7	58.2
	여자	(592)	32.1	55.2	12.7	5.6	57.6
연령	20대	(197)	31.5	53.3	15.2	5.6	56.9
	30대	(201)	32.8	53.2	13.9	5.6	57.6
	40대	(240)	37.5	53.8	8.8	5.8	60.0
	50대	(243)	35.8	49.4	14.8	5.6	58.0
	60대 이상	(319)	31.3	55.2	13.5	5.6	57.0

〈부록 3-118〉 Q13_2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빈곤(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0.8	43.8	5.5	6.3	65.8
성별	남자	(608)	52.5	41.4	6.1	6.3	65.8
	여자	(592)	49.0	46.1	4.9	6.3	65.7
연령	20대	(197)	49.7	43.1	7.1	6.3	65.9
	30대	(201)	52.2	42.8	5.0	6.3	65.9
	40대	(240)	51.3	43.3	5.4	6.3	65.8
	50대	(243)	51.0	43.2	5.8	6.3	65.7
	60대 이상	(319)	49.8	45.5	4.7	6.3	65.7

〈부록 3-119〉 Q13_3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6	49.3	14.2	5.6	58.1
성별	남자	(608)	37.2	48.4	14.5	5.7	58.6
	여자	(592)	36.0	50.2	13.9	5.6	57.5
연령	20대	(197)	32.5	51.3	16.2	5.5	56.9
	30대	(201)	37.8	47.3	14.9	5.6	57.3
	40대	(240)	42.9	45.0	12.1	5.8	60.1
	50대	(243)	35.4	49.4	15.2	5.6	57.9
	60대 이상	(319)	34.5	52.4	13.2	5.6	57.9

〈부록 3-120〉 Q13_4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자살(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9.8	54.8	5.4	6.0	62.9
성별	남자	(608)	41.1	53.9	4.9	6.1	63.6
	여자	(592)	38.5	55.6	5.9	6.0	62.2
연령	20대	(197)	36.5	57.9	5.6	6.1	63.2
	30대	(201)	45.8	46.3	8.0	6.1	63.4
	40대	(240)	42.9	52.9	4.2	6.1	63.6
	50대	(243)	39.1	54.3	6.6	6.0	62.2
	60대 이상	(319)	36.4	59.9	3.8	6.0	62.6

〈부록 3-121〉 Q13_5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8.1	57.4	14.5	5.5	55.8
성별	남자	(608)	28.5	57.4	14.1	5.5	56.1
	여자	(592)	27.7	57.4	14.9	5.4	55.4
연령	20대	(197)	31.0	57.4	11.7	5.6	57.4
	30대	(201)	23.9	59.7	16.4	5.3	53.8
	40대	(240)	28.8	57.9	13.3	5.5	56.6
	50대	(243)	29.6	56.8	13.6	5.5	56.7
	60대 이상	(319)	27.3	56.1	16.6	5.4	54.6

〈부록 3-122〉 Q13_6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1.8	61.9	6.3	5.8	59.5
성별	남자	(608)	31.7	62.5	5.8	5.7	59.3
	여자	(592)	31.8	61.3	6.9	5.8	59.7
연령	20대	(197)	30.5	61.9	7.6	5.7	58.9
	30대	(201)	34.3	61.7	4.0	5.9	60.8
	40대	(240)	34.6	59.6	5.8	5.8	59.8
	50대	(243)	33.7	61.3	4.9	5.9	60.8
	60대 이상	(319)	27.3	64.3	8.5	5.6	57.9

〈부록 3-123〉 Q13_7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이혼(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0.4	55.2	4.4	6.1	63.2
성별	남자	(608)	41.9	53.8	4.3	6.1	63.6
	여자	(592)	38.9	56.6	4.6	6.0	62.8
연령	20대	(197)	41.6	54.3	4.1	6.2	64.8
	30대	(201)	38.8	58.7	2.5	6.0	63.1
	40대	(240)	45.8	49.6	4.6	6.1	63.5
	50대	(243)	39.9	54.3	5.8	6.0	62.9
	60대 이상	(319)	37.0	58.3	4.7	6.0	62.2

〈부록 3-124〉 Q13_8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7.8	64.3	7.9	5.6	58.0
성별	남자	(608)	27.3	64.1	8.6	5.6	57.6
	여자	(592)	28.2	64.5	7.3	5.7	58.4
연령	20대	(197)	26.9	65.5	7.6	5.7	58.4
	30대	(201)	26.4	66.2	7.5	5.6	57.3
	40대	(240)	33.8	60.0	6.3	5.8	59.9
	50대	(243)	26.7	63.4	9.9	5.6	57.5
	60대 이상	(319)	25.4	66.5	8.2	5.6	57.1

〈부록 3-125〉 Q13_9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0.6	54.1	5.3	6.0	62.8
성별	남자	(608)	44.4	50.2	5.4	6.1	63.8
	여자	(592)	36.7	58.1	5.2	5.9	61.7
연령	20대	(197)	40.6	53.8	5.6	6.0	62.9
	30대	(201)	41.3	53.7	5.0	6.0	62.1
	40대	(240)	45.4	50.8	3.8	6.1	64.2
	50대	(243)	42.0	53.5	4.5	6.1	63.3
	60대 이상	(319)	35.4	57.4	7.2	5.9	61.5

〈부록 3-126〉 Q13_10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건강불평등(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8	58.4	6.8	5.8	60.1
성별	남자	(608)	36.2	56.6	7.2	5.8	60.2
	여자	(592)	33.4	60.3	6.3	5.8	60.0
연령	20대	(197)	35.0	58.4	6.6	5.8	59.6
	30대	(201)	36.3	59.2	4.5	5.9	61.4
	40대	(240)	38.8	55.8	5.4	5.9	61.4
	50대	(243)	33.3	59.7	7.0	5.8	60.4
	60대 이상	(319)	32.0	58.9	9.1	5.7	58.2

〈부록 3-127〉 Q13_11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6.8	50.3	2.9	6.3	66.3
성별	남자	(608)	48.0	49.0	3.0	6.3	66.8
	여자	(592)	45.4	51.7	2.9	6.3	65.7
연령	20대	(197)	51.3	45.7	3.0	6.4	67.7
	30대	(201)	44.8	51.7	3.5	6.3	66.0
	40대	(240)	47.9	50.0	2.1	6.3	66.4
	50대	(243)	46.9	48.1	4.9	6.3	65.7
	60대 이상	(319)	44.2	54.2	1.6	6.3	65.9

〈부록 3-128〉 Q13_12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7	55.5	14.8	5.5	55.9
성별	남자	(608)	30.4	54.9	14.6	5.5	56.3
	여자	(592)	28.9	56.1	15.0	5.4	55.5
연령	20대	(197)	32.5	47.7	19.8	5.4	54.5
	30대	(201)	26.9	58.7	14.4	5.4	55.3
	40대	(240)	30.8	55.0	14.2	5.6	56.9
	50대	(243)	28.4	56.4	15.2	5.5	56.0
	60대 이상	(319)	29.8	58.0	12.2	5.5	56.4

〈부록 3-129〉 Q13_13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7.7	55.9	16.4	5.4	55.1
성별	남자	(608)	27.0	55.9	17.1	5.4	54.7
	여자	(592)	28.4	55.9	15.7	5.4	55.4
연령	20대	(197)	25.9	49.2	24.9	5.2	52.1
	30대	(201)	26.4	58.7	14.9	5.4	54.4
	40대	(240)	27.1	55.8	17.1	5.5	55.8
	50대	(243)	27.2	59.3	13.6	5.5	56.0
	60대 이상	(319)	30.4	55.8	13.8	5.5	56.1

〈부록 3-130〉 Q13_15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범죄두려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8	62.0	5.2	5.8	60.3
성별	남자	(608)	34.5	61.3	4.1	5.9	61.4
	여자	(592)	31.1	62.7	6.3	5.7	59.2
연령	20대	(197)	35.5	60.4	4.1	5.9	61.8
	30대	(201)	32.3	60.7	7.0	5.8	60.0
	40대	(240)	33.3	60.4	6.3	5.8	60.2
	50대	(243)	32.9	63.0	4.1	5.8	60.4
	60대 이상	(319)	31.0	64.3	4.7	5.8	59.6

〈부록 3-131〉 Q13_16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1.3	57.3	11.4	5.6	57.3
성별	남자	(608)	29.9	58.7	11.3	5.5	56.9
	여자	(592)	32.6	55.9	11.5	5.6	57.7
연령	20대	(197)	29.9	56.3	13.7	5.5	56.2
	30대	(201)	32.8	52.2	14.9	5.5	56.7
	40대	(240)	33.8	56.3	10.0	5.7	58.6
	50대	(243)	30.9	58.0	11.1	5.6	57.1
	60대 이상	(319)	29.5	61.4	9.1	5.6	57.5

〈부록 3-132〉 Q13_17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0.9	56.8	12.3	5.6	57.1
성별	남자	(608)	31.3	57.9	10.9	5.6	57.8
	여자	(592)	30.6	55.7	13.7	5.5	56.5
연령	20대	(197)	29.9	53.3	16.8	5.5	55.9
	30대	(201)	31.3	58.2	10.4	5.6	57.6
	40대	(240)	32.5	56.7	10.8	5.6	57.8
	50대	(243)	32.9	53.9	13.2	5.6	57.6
	60대 이상	(319)	28.5	60.5	11.0	5.5	56.8

〈부록 3-133〉 Q13_18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3.3	54.2	12.6	5.6	58.0
성별	남자	(608)	33.7	54.3	12.0	5.7	58.4
	여자	(592)	32.8	54.1	13.2	5.6	57.6
연령	20대	(197)	32.5	54.8	12.7	5.6	58.0
	30대	(201)	31.3	54.2	14.4	5.6	57.2
	40대	(240)	32.1	56.7	11.3	5.6	57.9
	50대	(243)	39.1	50.6	10.3	5.8	60.5
	60대 이상	(319)	31.3	54.5	14.1	5.5	56.7

〈부록 3-134〉 Q13_19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6.9	61.8	11.3	5.5	56.4
성별	남자	(608)	27.1	62.0	10.9	5.5	56.9
	여자	(592)	26.7	61.5	11.8	5.5	56.0
연령	20대	(197)	22.8	60.4	16.8	5.3	53.6
	30대	(201)	25.4	63.7	10.9	5.5	56.5
	40대	(240)	28.8	62.5	8.8	5.6	57.6
	50대	(243)	28.0	60.5	11.5	5.6	56.9
	60대 이상	(319)	28.2	61.8	10.0	5.6	56.9

〈부록 3-135〉 Q13_20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3	59.0	11.7	5.6	57.0
성별	남자	(608)	30.1	59.0	10.9	5.6	57.4
	여자	(592)	28.5	59.0	12.5	5.5	56.7
연령	20대	(197)	28.4	54.8	16.8	5.4	55.4
	30대	(201)	29.4	60.2	10.4	5.6	57.7
	40대	(240)	30.0	57.9	12.1	5.6	57.2
	50대	(243)	28.8	61.7	9.5	5.6	57.6
	60대 이상	(319)	29.8	59.6	10.7	5.6	57.1

〈부록 3-136〉 Q13_1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4.3	43.7	12.0	5.9	61.8
성별	남자	(608)	46.4	41.9	11.7	6.0	62.0
	여자	(592)	42.2	45.4	12.3	5.9	61.5
연령	20대	(197)	41.6	45.7	12.7	5.9	61.4
	30대	(201)	45.3	42.3	12.4	6.0	62.0
	40대	(240)	46.7	41.3	12.1	6.0	62.9
	50대	(243)	44.4	43.2	12.3	5.9	60.7
	60대 이상	(319)	43.6	45.5	11.0	6.0	62.0

〈부록 3-137〉 Q13_2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빈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4.8	40.4	4.8	6.5	68.4
성별	남자	(608)	56.9	38.7	4.4	6.5	69.0
	여자	(592)	52.7	42.2	5.1	6.4	67.8
연령	20대	(197)	54.3	41.1	4.6	6.5	69.4
	30대	(201)	54.7	41.3	4.0	6.5	68.7
	40대	(240)	57.9	36.3	5.8	6.5	68.4
	50대	(243)	55.1	39.5	5.3	6.4	67.3
	60대 이상	(319)	52.7	43.3	4.1	6.5	68.5

〈부록 3-138〉 Q13_3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0.7	45.3	14.1	5.8	59.8
성별	남자	(608)	42.4	43.3	14.3	5.8	60.2
	여자	(592)	38.9	47.3	13.9	5.8	59.4
연령	20대	(197)	37.6	46.2	16.2	5.6	57.9
	30대	(201)	36.3	47.3	16.4	5.6	58.0
	40대	(240)	45.0	42.9	12.1	5.9	61.8
	50대	(243)	41.6	42.4	16.0	5.8	59.6
	60대 이상	(319)	41.4	47.3	11.3	5.9	60.7

〈부록 3-139〉 Q13_4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자살(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8.1	47.3	4.7	6.3	65.6
성별	남자	(608)	48.7	46.4	4.9	6.3	65.8
	여자	(592)	47.5	48.1	4.4	6.2	65.5
연령	20대	(197)	49.7	48.2	2.0	6.4	67.6
	30대	(201)	46.3	50.2	3.5	6.2	65.5
	40대	(240)	50.8	45.8	3.3	6.3	66.4
	50대	(243)	48.6	41.6	9.9	6.1	63.8
	60대 이상	(319)	45.8	50.2	4.1	6.2	65.4

〈부록 3-140〉 Q13_5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2	50.0	11.8	5.8	59.4
성별	남자	(608)	38.5	49.0	12.5	5.8	59.7
	여자	(592)	37.8	51.0	11.1	5.7	59.1
연령	20대	(197)	40.6	48.2	11.2	5.8	60.1
	30대	(201)	35.3	53.2	11.4	5.7	59.1
	40대	(240)	39.6	48.3	12.1	5.8	59.8
	50대	(243)	39.9	43.6	16.5	5.7	58.5
	60대 이상	(319)	36.1	55.2	8.8	5.8	59.5

〈부록 3-141〉 Q13_6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0.3	51.8	7.9	6.0	62.0
성별	남자	(608)	41.3	50.5	8.2	6.0	62.4
	여자	(592)	39.2	53.2	7.6	5.9	61.6
연령	20대	(197)	37.6	56.9	5.6	6.0	62.0
	30대	(201)	38.3	55.2	6.5	6.0	62.4
	40대	(240)	43.8	47.5	8.8	6.1	63.5
	50대	(243)	42.0	48.6	9.5	5.9	61.3
	60대 이상	(319)	39.2	52.4	8.5	5.9	61.1

〈부록 3-142〉 Q13_7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이혼(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6.8	48.0	5.3	6.3	65.8
성별	남자	(608)	48.4	46.4	5.3	6.3	66.5
	여자	(592)	45.1	49.7	5.2	6.2	65.0
연령	20대	(197)	46.7	48.2	5.1	6.3	66.8
	30대	(201)	47.8	47.3	5.0	6.2	65.6
	40대	(240)	51.3	42.5	6.3	6.4	67.1
	50대	(243)	44.0	49.4	6.6	6.2	64.5
	60대 이상	(319)	44.8	51.4	3.8	6.2	65.2

〈부록 3-143〉 Q13_8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6	55.3	8.2	5.9	61.3
성별	남자	(608)	37.2	54.3	8.6	5.9	61.0
	여자	(592)	36.0	56.3	7.8	5.9	61.5
연령	20대	(197)	36.0	56.3	7.6	5.9	61.5
	30대	(201)	36.8	53.2	10.0	5.9	60.7
	40대	(240)	42.5	48.3	9.2	6.0	62.4
	50대	(243)	34.6	56.4	9.1	5.7	59.2
	60대 이상	(319)	33.9	60.2	6.0	6.0	62.1

〈부록 3-144〉 Q13_9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9.2	44.8	6.0	6.3	65.8
성별	남자	(608)	52.0	42.3	5.8	6.3	66.7
	여자	(592)	46.3	47.5	6.3	6.2	64.9
연령	20대	(197)	51.8	43.7	4.6	6.3	66.1
	30대	(201)	42.3	50.7	7.0	6.2	64.7
	40대	(240)	53.3	40.8	5.8	6.4	67.4
	50대	(243)	47.7	44.4	7.8	6.1	64.2
	60대 이상	(319)	49.8	45.1	5.0	6.3	66.3

〈부록 3-145〉 Q13_10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건강불평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1.6	51.0	7.4	6.0	63.0
성별	남자	(608)	41.9	51.0	7.1	6.0	63.0
	여자	(592)	41.2	51.0	7.8	6.0	62.9
연령	20대	(197)	41.1	53.3	5.6	6.0	62.8
	30대	(201)	36.8	55.2	8.0	6.0	62.8
	40대	(240)	47.1	46.3	6.7	6.2	64.4
	50대	(243)	42.4	47.3	10.3	6.0	62.2
	60대 이상	(319)	40.1	53.3	6.6	6.0	62.6

〈부록 3-146〉 Q13_11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56.1	40.6	3.3	6.5	69.4
성별	남자	(608)	57.1	39.6	3.3	6.6	69.9
	여자	(592)	55.1	41.6	3.4	6.5	68.8
연령	20대	(197)	59.9	38.6	1.5	6.7	71.2
	30대	(201)	55.7	41.3	3.0	6.5	69.3
	40대	(240)	58.8	38.8	2.5	6.6	69.9
	50대	(243)	54.7	39.5	5.8	6.4	67.6
	60대 이상	(319)	53.0	43.6	3.4	6.5	69.1

〈부록 3-147〉 Q13_12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2	46.1	15.8	5.6	58.1
성별	남자	(608)	38.7	44.7	16.6	5.7	58.5
	여자	(592)	37.7	47.5	14.9	5.6	57.6
연령	20대	(197)	34.0	47.2	18.8	5.5	56.5
	30대	(201)	37.3	46.8	15.9	5.6	57.6
	40대	(240)	39.6	46.7	13.8	5.8	59.5
	50대	(243)	38.7	43.6	17.7	5.5	56.8
	60대 이상	(319)	39.8	46.4	13.8	5.7	59.1

〈부록 3-148〉 Q13_13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7	45.7	17.7	5.6	57.0
성별	남자	(608)	36.7	45.2	18.1	5.6	57.2
	여자	(592)	36.7	46.1	17.2	5.5	56.8
연령	20대	(197)	33.0	43.7	23.4	5.4	54.4
	30대	(201)	33.8	49.3	16.9	5.5	56.5
	40대	(240)	37.9	46.7	15.4	5.6	58.1
	50대	(243)	39.9	40.3	19.8	5.6	57.2
	60대 이상	(319)	37.3	48.0	14.7	5.6	57.9

〈부록 3-149〉 Q13_14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박탈감(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8.6	45.1	6.3	6.2	64.6
성별	남자	(608)	51.2	42.4	6.4	6.2	65.6
	여자	(592)	45.9	47.8	6.3	6.1	63.7
연령	20대	(197)	49.7	43.1	7.1	6.2	64.8
	30대	(201)	49.3	42.8	8.0	6.1	63.9
	40대	(240)	51.3	44.2	4.6	6.3	66.3
	50대	(243)	47.3	42.8	9.9	6.1	63.4
	60대 이상	(319)	46.4	50.2	3.4	6.2	64.7

〈부록 3-150〉 Q13_15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범죄두려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1.0	52.9	6.1	6.0	62.5
성별	남자	(608)	43.8	49.8	6.4	6.1	63.4
	여자	(592)	38.2	56.1	5.7	5.9	61.5
연령	20대	(197)	39.1	57.4	3.6	6.0	62.6
	30대	(201)	36.8	56.7	6.5	5.9	61.8
	40대	(240)	44.6	50.8	4.6	6.1	64.0
	50대	(243)	43.6	46.5	9.9	6.0	62.3
	60대 이상	(319)	40.1	54.2	5.6	5.9	61.8

〈부록 3-151〉 Q13_16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7	49.0	12.3	5.8	59.5
성별	남자	(608)	38.7	49.0	12.3	5.8	59.7
	여자	(592)	38.7	49.0	12.3	5.7	59.4
연령	20대	(197)	38.6	47.2	14.2	5.7	58.6
	30대	(201)	39.3	47.3	13.4	5.7	59.0
	40대	(240)	37.5	50.8	11.7	5.8	59.7
	50대	(243)	42.0	46.1	11.9	5.8	60.2
	60대 이상	(319)	36.7	52.0	11.3	5.8	59.8

〈부록 3-152〉 Q13_17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1.1	45.4	13.5	5.8	60.1
성별	남자	(608)	43.3	43.9	12.8	5.9	60.7
	여자	(592)	38.9	47.0	14.2	5.8	59.5
연령	20대	(197)	37.6	47.2	15.2	5.7	58.6
	30대	(201)	43.3	44.3	12.4	5.8	60.3
	40대	(240)	41.7	47.5	10.8	5.9	61.5
	50대	(243)	44.0	39.5	16.5	5.8	59.8
	60대 이상	(319)	39.2	48.0	12.9	5.8	60.1

〈부록 3-153〉 Q13_18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0.4	45.6	14.0	5.8	59.8
성별	남자	(608)	41.0	44.6	14.5	5.8	60.5
	여자	(592)	39.9	46.6	13.5	5.7	59.1
연령	20대	(197)	41.1	43.1	15.7	5.8	59.7
	30대	(201)	38.8	48.3	12.9	5.8	60.0
	40대	(240)	40.8	46.3	12.9	5.8	59.8
	50대	(243)	41.2	42.8	16.0	5.8	59.5
	60대 이상	(319)	40.1	47.0	12.9	5.8	59.9

〈부록 3-154〉 Q13_19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3	49.4	14.3	5.7	58.4
성별	남자	(608)	36.3	49.2	14.5	5.7	58.6
	여자	(592)	36.1	49.7	14.2	5.7	58.2
연령	20대	(197)	38.1	44.2	17.8	5.5	56.8
	30대	(201)	33.8	51.7	14.4	5.7	58.6
	40대	(240)	35.0	52.5	12.5	5.7	58.2
	50대	(243)	38.3	44.0	17.7	5.7	58.7
	60대 이상	(319)	36.1	53.0	11.0	5.7	59.1

〈부록 3-155〉 Q13_20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7.0	48.2	14.8	5.7	58.6
성별	남자	(608)	37.0	48.0	15.0	5.7	58.8
	여자	(592)	37.0	48.3	14.7	5.7	58.4
연령	20대	(197)	38.1	43.7	18.3	5.5	56.6
	30대	(201)	38.8	44.8	16.4	5.7	58.7
	40대	(240)	36.7	50.8	12.5	5.8	59.6
	50대	(243)	37.9	46.1	16.0	5.7	58.2
	60대 이상	(319)	34.8	52.7	12.5	5.7	59.3

〈부록 3-156〉 Q14_1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2.6	49.3	8.1	5.9	61.8
성별	남자	(608)	44.7	47.9	7.4	6.0	62.9
	여자	(592)	40.4	50.8	8.8	5.9	60.7
연령	20대	(197)	42.1	50.8	7.1	6.0	62.1
	30대	(201)	46.8	44.8	8.5	5.9	61.8
	40대	(240)	40.4	51.3	8.3	5.9	61.0
	50대	(243)	42.0	46.5	11.5	5.9	61.3
	60대 이상	(319)	42.3	52.0	5.6	6.0	62.5

〈부록 3-157〉 Q14_2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빈곤(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6	49.7	17.8	5.5	55.8
성별	남자	(608)	32.7	48.7	18.6	5.5	55.7
	여자	(592)	32.4	50.7	16.9	5.5	55.9
연령	20대	(197)	32.5	44.2	23.4	5.3	53.7
	30대	(201)	35.8	48.3	15.9	5.6	57.4
	40대	(240)	32.5	50.8	16.7	5.4	55.3
	50대	(243)	31.3	50.6	18.1	5.5	56.0
	60대 이상	(319)	31.7	52.4	16.0	5.5	56.2

〈부록 3-158〉 Q14_3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7.3	50.8	11.8	5.7	59.2
성별	남자	(608)	37.5	50.2	12.3	5.7	59.3
	여자	(592)	37.2	51.5	11.3	5.7	59.2
연령	20대	(197)	36.0	44.2	19.8	5.5	55.7
	30대	(201)	38.8	51.7	9.5	5.8	60.4
	40대	(240)	38.3	55.0	6.7	6.0	61.9
	50대	(243)	38.7	49.8	11.5	5.8	59.8
	60대 이상	(319)	35.4	52.0	12.5	5.7	58.3

〈부록 3-159〉 Q14_4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0.5	57.3	12.2	5.6	57.1
성별	남자	(608)	31.4	56.9	11.7	5.6	57.6
	여자	(592)	29.6	57.8	12.7	5.5	56.6
연령	20대	(197)	26.4	55.8	17.8	5.3	53.4
	30대	(201)	31.3	58.2	10.4	5.7	58.5
	40대	(240)	32.9	58.3	8.8	5.7	58.5
	50대	(243)	29.6	59.3	11.1	5.6	57.0
	60대 이상	(319)	31.3	55.5	13.2	5.6	57.5

〈부록 3-160〉 Q14_5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3	54.5	13.3	5.6	56.9
성별	남자	(608)	34.7	52.3	13.0	5.6	58.0
	여자	(592)	29.7	56.8	13.5	5.5	55.8
연령	20대	(197)	33.5	51.8	14.7	5.5	56.4
	30대	(201)	31.3	55.7	12.9	5.6	57.2
	40대	(240)	37.1	52.1	10.8	5.7	58.5
	50대	(243)	32.5	53.5	14.0	5.5	56.7
	60대 이상	(319)	28.2	58.0	13.8	5.5	56.0

〈부록 3-161〉 Q14_6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8.5	63.8	7.8	5.6	57.6
성별	남자	(608)	28.5	63.5	8.1	5.6	57.7
	여자	(592)	28.5	64.0	7.4	5.6	57.5
연령	20대	(197)	27.4	62.9	9.6	5.5	56.2
	30대	(201)	26.9	67.2	6.0	5.6	56.9
	40대	(240)	32.5	60.4	7.1	5.7	59.3
	50대	(243)	29.2	60.9	9.9	5.6	57.4
	60대 이상	(319)	26.6	66.8	6.6	5.6	57.9

〈부록 3-162〉 Q14_7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이혼(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3	57.4	10.3	5.7	58.2
성별	남자	(608)	32.9	55.3	11.8	5.6	58.0
	여자	(592)	31.8	59.6	8.6	5.7	58.5
연령	20대	(197)	31.5	51.8	16.8	5.4	55.2
	30대	(201)	33.8	58.7	7.5	5.7	59.0
	40대	(240)	35.4	55.4	9.2	5.8	60.1
	50대	(243)	30.5	56.8	12.8	5.5	56.7
	60대 이상	(319)	31.0	62.1	6.9	5.8	59.4

〈부록 3-163〉 Q14_8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4.8	63.8	11.4	5.4	55.4
성별	남자	(608)	25.5	61.8	12.7	5.4	55.0
	여자	(592)	24.2	65.7	10.1	5.5	55.8
연령	20대	(197)	21.3	62.9	15.7	5.2	52.5
	30대	(201)	25.9	64.7	9.5	5.6	57.3
	40대	(240)	28.8	61.3	10.0	5.6	57.2
	50대	(243)	25.5	62.1	12.3	5.4	55.5
	60대 이상	(319)	22.9	66.8	10.3	5.4	54.6

〈부록 3-164〉 Q14_9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3	60.6	10.2	5.6	57.0
성별	남자	(608)	30.3	59.5	10.2	5.6	57.0
	여자	(592)	28.2	61.7	10.1	5.6	57.0
연령	20대	(197)	26.4	60.9	12.7	5.4	55.3
	30대	(201)	27.4	61.7	10.9	5.6	57.2
	40대	(240)	33.8	59.6	6.7	5.7	58.5
	50대	(243)	28.4	58.8	12.8	5.5	56.5
	60대 이상	(319)	29.5	61.8	8.8	5.6	57.1

〈부록 3-165〉 Q14_10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건강불평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7.8	62.4	9.8	5.5	56.7
성별	남자	(608)	28.8	61.0	10.2	5.5	56.8
	여자	(592)	26.7	63.9	9.5	5.5	56.5
연령	20대	(197)	24.4	60.9	14.7	5.3	53.7
	30대	(201)	27.9	63.7	8.5	5.6	57.6
	40대	(240)	31.7	60.4	7.9	5.6	58.0
	50대	(243)	28.4	61.7	9.9	5.6	57.6
	60대 이상	(319)	26.3	64.6	9.1	5.5	56.3

〈부록 3-166〉 Q14_11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3	51.0	19.8	5.3	53.4
성별	남자	(608)	30.9	48.5	20.6	5.3	53.7
	여자	(592)	27.5	53.5	18.9	5.3	53.2
연령	20대	(197)	27.9	47.7	24.4	5.2	52.1
	30대	(201)	29.9	51.2	18.9	5.4	55.0
	40대	(240)	29.2	51.3	19.6	5.2	52.4
	50대	(243)	32.5	50.2	17.3	5.4	55.1
	60대 이상	(319)	27.3	53.3	19.4	5.2	52.7

〈부록 3-167〉 Q14_12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8	51.4	11.8	5.7	59.0
성별	남자	(608)	40.1	48.7	11.2	5.8	59.7
	여자	(592)	33.3	54.2	12.5	5.7	58.2
연령	20대	(197)	38.1	48.7	13.2	5.7	58.4
	30대	(201)	34.8	54.2	10.9	5.7	58.8
	40대	(240)	38.3	50.8	10.8	5.8	60.5
	50대	(243)	36.6	49.8	13.6	5.7	58.2
	60대 이상	(319)	36.1	53.0	11.0	5.7	58.9

〈부록 3-168〉 Q14_13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5.7	54.3	10.0	5.8	59.8
성별	남자	(608)	38.0	51.3	10.7	5.8	60.5
	여자	(592)	33.3	57.4	9.3	5.7	59.1
연령	20대	(197)	33.0	57.9	9.1	5.7	59.3
	30대	(201)	33.3	54.7	11.9	5.7	58.7
	40대	(240)	35.0	57.1	7.9	5.9	60.7
	50대	(243)	36.2	50.6	13.2	5.7	58.4
	60대 이상	(319)	38.9	52.7	8.5	5.9	61.2

〈부록 3-169〉 Q14_15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범죄두려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9.9	60.3	9.8	5.6	57.4
성별	남자	(608)	32.1	59.2	8.7	5.7	58.5
	여자	(592)	27.7	61.5	10.8	5.5	56.3
연령	20대	(197)	29.9	60.4	9.6	5.6	57.7
	30대	(201)	31.3	58.7	10.0	5.7	58.2
	40대	(240)	31.3	58.3	10.4	5.6	57.1
	50대	(243)	28.4	60.1	11.5	5.5	56.3
	60대 이상	(319)	29.2	63.0	7.8	5.6	57.6

〈부록 3-170〉 Q14_16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1.8	57.7	10.5	5.7	58.7
성별	남자	(608)	33.1	55.8	11.2	5.7	59.1
	여자	(592)	30.6	59.6	9.8	5.7	58.2
연령	20대	(197)	33.0	56.9	10.2	5.7	58.7
	30대	(201)	31.8	58.2	10.0	5.8	59.8
	40대	(240)	31.7	57.9	10.4	5.7	58.5
	50대	(243)	31.3	57.6	11.1	5.6	58.0
	60대 이상	(319)	31.7	57.7	10.7	5.7	58.5

〈부록 3-171〉 Q14_17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5.6	57.0	7.4	5.8	60.4
성별	남자	(608)	38.8	53.8	7.4	5.9	61.4
	여자	(592)	32.3	60.3	7.4	5.7	59.3
연령	20대	(197)	39.6	51.8	8.6	5.9	61.0
	30대	(201)	35.8	58.2	6.0	5.9	61.2
	40대	(240)	36.3	57.5	6.3	5.9	61.3
	50대	(243)	31.7	60.1	8.2	5.7	58.7
	60대 이상	(319)	35.4	56.7	7.8	5.8	60.0

〈부록 3-172〉 Q14_18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3	54.5	7.2	5.9	61.6
성별	남자	(608)	40.8	52.1	7.1	6.0	62.3
	여자	(592)	35.8	56.9	7.3	5.9	61.0
연령	20대	(197)	40.6	47.7	11.7	5.8	59.8
	30대	(201)	34.8	60.2	5.0	5.9	61.6
	40대	(240)	40.0	54.2	5.8	6.1	63.3
	50대	(243)	38.3	55.6	6.2	6.0	62.0
	60대 이상	(319)	37.9	54.5	7.5	5.9	61.1

〈부록 3-173〉 Q14_19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0	58.4	7.6	5.8	59.8
성별	남자	(608)	36.5	56.4	7.1	5.9	60.7
	여자	(592)	31.4	60.5	8.1	5.7	59.0
연령	20대	(197)	31.0	57.9	11.2	5.7	58.8
	30대	(201)	29.9	63.2	7.0	5.7	58.9
	40대	(240)	35.4	57.5	7.1	5.9	60.6
	50대	(243)	33.3	60.1	6.6	5.7	59.3
	60대 이상	(319)	37.9	55.2	6.9	5.9	60.9

〈부록 3-174〉 Q14_20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3.9	57.0	9.1	5.7	59.1
성별	남자	(608)	35.4	55.8	8.9	5.8	59.8
	여자	(592)	32.4	58.3	9.3	5.7	58.4
연령	20대	(197)	34.5	54.8	10.7	5.8	59.6
	30대	(201)	31.3	59.2	9.5	5.7	59.3
	40대	(240)	35.8	57.1	7.1	5.8	60.1
	50대	(243)	30.5	59.3	10.3	5.6	57.3
	60대 이상	(319)	36.4	55.2	8.5	5.8	59.5

〈부록 3-175〉 Q14_1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7.8	42.1	10.1	6.1	63.2
성별	남자	(608)	51.8	38.8	9.4	6.2	65.1
	여자	(592)	43.8	45.4	10.8	5.9	61.3
연령	20대	(197)	49.2	42.6	8.1	6.1	64.0
	30대	(201)	45.3	44.3	10.4	6.1	63.5
	40대	(240)	49.6	37.9	12.5	6.1	63.1
	50대	(243)	44.9	41.6	13.6	5.9	61.3
	60대 이상	(319)	49.5	43.9	6.6	6.1	64.1

〈부록 3-176〉 Q14_2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빈곤(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8.7	40.4	20.9	5.5	56.2
성별	남자	(608)	39.3	38.2	22.5	5.5	56.5
	여자	(592)	38.0	42.7	19.3	5.5	55.9
연령	20대	(197)	29.9	45.7	24.4	5.1	51.5
	30대	(201)	40.8	40.8	18.4	5.6	57.5
	40대	(240)	41.3	35.0	23.8	5.5	56.4
	50대	(243)	41.6	37.0	21.4	5.6	56.9
	60대 이상	(319)	38.6	43.6	17.9	5.6	57.7

〈부록 3-177〉 Q14_3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2.3	43.8	13.9	5.8	60.3
성별	남자	(608)	42.9	42.6	14.5	5.8	60.4
	여자	(592)	41.6	45.1	13.3	5.8	60.2
연령	20대	(197)	36.5	45.2	18.3	5.5	56.7
	30대	(201)	45.3	44.3	10.4	6.0	62.6
	40대	(240)	42.9	44.2	12.9	5.9	60.9
	50대	(243)	46.5	36.6	16.9	5.8	59.9
	60대 이상	(319)	40.1	48.0	11.9	5.9	60.9

〈부록 3-178〉 Q14_4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6	49.5	15.9	5.6	56.9
성별	남자	(608)	36.3	47.4	16.3	5.6	57.8
	여자	(592)	32.8	51.7	15.5	5.5	56.1
연령	20대	(197)	30.5	51.3	18.3	5.3	54.1
	30대	(201)	32.3	51.2	16.4	5.6	57.2
	40대	(240)	38.3	47.5	14.2	5.7	58.8
	50대	(243)	37.4	44.9	17.7	5.5	56.6
	60대 이상	(319)	33.5	52.4	14.1	5.6	57.4

〈부록 3-179〉 Q14_5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0	50.0	16.0	5.5	56.6
성별	남자	(608)	35.0	48.2	16.8	5.6	57.0
	여자	(592)	32.9	51.9	15.2	5.5	56.2
연령	20대	(197)	37.6	48.7	13.7	5.6	57.4
	30대	(201)	31.8	53.2	14.9	5.5	56.5
	40대	(240)	34.6	49.6	15.8	5.6	57.4
	50대	(243)	34.2	47.3	18.5	5.4	55.1
	60대 이상	(319)	32.6	51.1	16.3	5.5	56.7

〈부록 3-180〉 Q14_6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2	53.8	12.0	5.7	58.3
성별	남자	(608)	35.9	53.1	11.0	5.7	58.8
	여자	(592)	32.4	54.6	13.0	5.6	57.7
연령	20대	(197)	31.5	54.3	14.2	5.5	56.8
	30대	(201)	29.4	58.7	11.9	5.6	57.3
	40대	(240)	41.7	45.4	12.9	5.8	60.2
	50대	(243)	35.0	52.3	12.8	5.6	57.7
	60대 이상	(319)	32.6	58.0	9.4	5.7	58.7

〈부록 3-181〉 Q14_7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이혼(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7.3	49.1	13.6	5.7	58.8
성별	남자	(608)	38.8	46.5	14.6	5.7	58.9
	여자	(592)	35.8	51.7	12.5	5.7	58.7
연령	20대	(197)	35.0	50.3	14.7	5.6	57.0
	30대	(201)	38.3	51.2	10.4	5.8	60.4
	40대	(240)	40.0	42.5	17.5	5.7	59.0
	50대	(243)	35.8	47.3	16.9	5.6	56.9
	60대 이상	(319)	37.3	53.3	9.4	5.8	60.2

〈부록 3-182〉 Q14_8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28.8	57.9	13.3	5.5	55.9
성별	남자	(608)	28.6	57.6	13.8	5.5	55.8
	여자	(592)	28.9	58.3	12.8	5.5	56.0
연령	20대	(197)	24.4	60.9	14.7	5.3	53.8
	30대	(201)	29.4	55.2	15.4	5.5	55.8
	40대	(240)	32.1	55.8	12.1	5.6	58.0
	50대	(243)	27.6	57.2	15.2	5.4	54.5
	60대 이상	(319)	29.5	59.9	10.7	5.5	56.8

〈부록 3-183〉 Q14_9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4.1	51.1	14.8	5.6	57.4
성별	남자	(608)	34.5	49.2	16.3	5.6	57.1
	여자	(592)	33.6	53.0	13.3	5.6	57.7
연령	20대	(197)	31.5	54.8	13.7	5.5	56.2
	30대	(201)	34.3	49.3	16.4	5.6	57.3
	40대	(240)	39.6	47.1	13.3	5.7	59.1
	50대	(243)	31.7	50.2	18.1	5.4	55.1
	60대 이상	(319)	33.2	53.6	13.2	5.7	58.7

〈부록 3-184〉 Q14_10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건강불평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5.8	50.7	13.5	5.7	58.3
성별	남자	(608)	37.0	49.5	13.5	5.7	58.7
	여자	(592)	34.6	51.9	13.5	5.6	57.9
연령	20대	(197)	31.0	53.3	15.7	5.4	55.1
	30대	(201)	34.3	53.7	11.9	5.7	59.3
	40대	(240)	39.2	47.9	12.9	5.7	59.1
	50대	(243)	38.7	45.3	16.0	5.7	58.4
	60대 이상	(319)	35.1	53.3	11.6	5.7	58.9

〈부록 3-185〉 Q14_11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5.5	44.5	20.0	5.4	55.2
성별	남자	(608)	38.7	40.5	20.9	5.5	56.0
	여자	(592)	32.3	48.6	19.1	5.3	54.4
연령	20대	(197)	32.0	45.7	22.3	5.2	52.9
	30대	(201)	38.8	45.3	15.9	5.6	57.8
	40대	(240)	37.5	41.3	21.3	5.4	55.0
	50대	(243)	38.3	38.3	23.5	5.4	54.7
	60대 이상	(319)	32.0	50.5	17.6	5.4	55.4

〈부록 3-186〉 Q14_12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4.3	43.0	12.7	5.8	60.5
성별	남자	(608)	47.7	40.0	12.3	5.9	61.7
	여자	(592)	40.9	46.1	13.0	5.7	59.3
연령	20대	(197)	41.6	45.7	12.7	5.6	58.1
	30대	(201)	43.8	43.3	12.9	6.0	62.1
	40대	(240)	44.6	45.0	10.4	6.0	61.9
	50대	(243)	48.6	35.0	16.5	5.8	59.4
	60대 이상	(319)	42.9	45.8	11.3	5.9	60.8

〈부록 3-187〉 Q14_13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9.8	49.3	10.8	5.8	59.9
성별	남자	(608)	42.4	46.4	11.2	5.9	61.1
	여자	(592)	37.2	52.4	10.5	5.7	58.7
연령	20대	(197)	34.5	55.3	10.2	5.7	58.4
	30대	(201)	39.8	49.8	10.4	5.9	60.8
	40대	(240)	41.7	47.1	11.3	5.8	60.4
	50대	(243)	37.9	46.9	15.2	5.6	58.1
	60대 이상	(319)	43.3	48.9	7.8	5.9	61.4

〈부록 3-188〉 Q14_14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박탈감(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2.3	48.2	19.6	5.4	54.8
성별	남자	(608)	34.7	43.8	21.5	5.4	55.4
	여자	(592)	29.7	52.7	17.6	5.3	54.2
연령	20대	(197)	27.9	50.8	21.3	5.2	52.3
	30대	(201)	34.8	47.3	17.9	5.5	56.7
	40대	(240)	31.7	50.0	18.3	5.4	55.1
	50대	(243)	33.7	44.0	22.2	5.3	54.2
	60대 이상	(319)	32.6	48.9	18.5	5.4	55.3

〈부록 3-189〉 Q14_15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범죄두려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36.3	51.8	12.0	5.7	58.8
성별	남자	(608)	37.8	51.0	11.2	5.8	59.7
	여자	(592)	34.6	52.5	12.8	5.6	57.9
연령	20대	(197)	34.5	53.8	11.7	5.6	57.6
	30대	(201)	37.3	50.7	11.9	5.8	60.1
	40대	(240)	38.3	49.2	12.5	5.8	60.0
	50대	(243)	35.4	49.0	15.6	5.6	57.0
	60대 이상	(319)	35.7	55.2	9.1	5.7	59.2

〈부록 3-190〉 Q14_16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0.0	48.8	11.2	5.8	60.1
성별	남자	(608)	41.0	46.9	12.2	5.8	60.3
	여자	(592)	39.0	50.8	10.1	5.8	59.9
연령	20대	(197)	39.1	49.2	11.7	5.8	59.6
	30대	(201)	39.8	51.2	9.0	5.9	61.8
	40대	(240)	40.4	48.3	11.3	5.8	60.3
	50대	(243)	42.4	45.7	11.9	5.8	59.8
	60대 이상	(319)	38.6	49.8	11.6	5.8	59.6

〈부록 3-191〉 Q14_17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2.9	48.2	8.9	5.9	61.7
성별	남자	(608)	44.7	46.2	9.0	6.0	62.8
	여자	(592)	41.0	50.2	8.8	5.8	60.6
연령	20대	(197)	41.1	50.3	8.6	6.0	61.9
	30대	(201)	43.3	47.8	9.0	6.0	61.9
	40대	(240)	43.8	46.7	9.6	6.0	62.6
	50대	(243)	38.3	51.9	9.9	5.8	59.4
	60대 이상	(319)	46.7	45.5	7.8	6.0	62.5

〈부록 3-192〉 Q14_18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7.2	44.0	8.8	6.1	63.4
성별	남자	(608)	50.5	41.0	8.6	6.1	64.2
	여자	(592)	43.8	47.1	9.1	6.0	62.6
연령	20대	(197)	46.7	44.2	9.1	6.0	62.8
	30대	(201)	47.3	45.3	7.5	6.2	64.9
	40대	(240)	47.1	45.0	7.9	6.1	63.6
	50대	(243)	48.1	42.4	9.5	6.0	63.0
	60대 이상	(319)	46.7	43.6	9.7	6.0	62.9

〈부록 3-193〉 Q14_19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0.7	50.0	9.3	5.9	61.3
성별	남자	(608)	42.8	48.7	8.6	6.0	62.6
	여자	(592)	38.5	51.4	10.1	5.8	60.0
연령	20대	(197)	41.6	46.7	11.7	5.9	60.8
	30대	(201)	38.3	52.7	9.0	6.0	62.3
	40대	(240)	38.8	52.1	9.2	5.9	61.1
	50대	(243)	36.2	53.9	9.9	5.7	58.8
	60대 이상	(319)	46.4	45.8	7.8	6.0	63.1

〈부록 3-194〉 Q14_20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1200)	40.9	48.7	10.4	5.9	60.9
성별	남자	(608)	42.3	47.4	10.4	5.9	61.7
	여자	(592)	39.5	50.0	10.5	5.8	60.0
연령	20대	(197)	43.1	45.7	11.2	5.9	61.3
	30대	(201)	41.8	49.3	9.0	5.9	61.3
	40대	(240)	40.0	50.4	9.6	5.9	61.0
	50대	(243)	37.4	49.8	12.8	5.7	59.2
	60대 이상	(319)	42.3	48.0	9.7	5.9	61.6

〈부록 3-197〉 QQ2. 전공분야

		사례수	사례수	법학	경찰 행정학	사회학	사회 복지학
전 체		150	26.7	20.0	26.7	26.7	26.7
성별	남자	114	32.5	22.8	25.4	19.3	19.3
	여자	36	8.3	11.1	30.6	50.0	50.0
연령	20대	3	0.0	66.7	33.3	0.0	0.0
	30대	25	28.0	32.0	28.0	12.0	12.0
	40대	60	21.7	16.7	30.0	31.7	31.7
	50대	56	32.1	16.1	23.2	28.6	28.6
	60대 이상	6	33.3	16.7	16.7	33.3	33.3

〈부록 3-198〉 Q1.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사례수	범죄예방과 감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피해자 보호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범죄자 검거
전 체		300	67.7	13.0	9.7	7.0	2.7
성별	남자	212	69.8	12.7	6.1	8.0	3.3
	여자	88	62.5	13.6	18.2	4.5	1.1
연령	20대	18	55.6	5.6	33.3	5.6	0.0
	30대	87	71.3	9.2	10.3	8.0	1.1
	40대	116	65.5	17.2	7.8	6.0	3.4
	50대	72	69.4	13.9	4.2	8.3	4.2
	60대 이상	7	71.4	0.0	28.6	0.0	0.0

〈부록 3-199〉 Q2_1. 형사정책 목적-현재 달성도(평균 : %)

		사례수	범죄예방과 감소	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 체		300	49.3	61.5	44.2	41.6	48.0
성별	남자	212	50.9	63.7	46.0	43.3	50.0
	여자	88	45.4	55.9	39.8	37.5	43.0
연령	20대	18	36.4	54.4	28.3	26.4	34.4
	30대	87	47.3	61.1	41.7	40.4	46.1
	40대	116	53.3	63.7	47.2	45.6	50.3
	50대	72	47.5	59.3	45.7	39.9	49.3
	60대 이상	7	58.6	68.6	50.0	47.1	52.9

〈부록 3-200〉 Q2_2. 형사정책 목적-10년후 달성도(평균 : %)

		사례수	범죄예방과 감소	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 체		300	57.0	68.0	54.6	49.6	55.5
성별	남자	212	58.4	69.7	56.4	51.5	57.1
	여자	88	53.6	63.9	50.2	45.1	51.6
연령	20대	18	46.7	62.3	43.1	38.4	45.3
	30대	87	56.1	68.2	52.2	47.9	53.7
	40대	116	59.7	69.8	57.7	53.2	57.6
	50대	72	55.1	65.3	54.6	48.0	56.2
	60대 이상	7	67.1	77.1	62.1	58.6	61.4

〈부록 3-201〉 Q2_3. 형사정책 목적-30년후 달성도(평균 : %)

		사례수	범죄예방과 감소	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	범죄자 교화와 사회복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 체		300	63.7	73.1	63.1	57.1	62.4
성별	남자	212	65.2	74.4	65.2	59.1	63.9
	여자	88	60.3	69.9	58.2	52.1	58.9
연령	20대	18	60.7	72.0	56.4	50.4	56.3
	30대	87	62.1	73.9	61.5	55.0	59.9
	40대	116	65.4	74.4	65.7	60.2	64.1
	50대	72	62.9	69.8	61.9	54.9	63.7
	60대 이상	7	72.9	79.3	72.1	69.7	69.3

〈부록 3-202〉 Q3. 10년후 우리나라 범죄 정도 예측(R)

		사례수	증가 (④+⑤)	변함없음	감소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3.7	18.7	17.7	3.5	63.0
성별	남자	212	61.3	19.3	19.3	3.5	61.7
	여자	88	69.3	17.0	13.6	3.6	66.2
연령	20대	18	72.2	16.7	11.1	3.7	66.7
	30대	87	58.6	20.7	20.7	3.4	60.3
	40대	116	62.9	20.7	16.4	3.5	63.4
	50대	72	68.1	12.5	19.4	3.6	64.2
	60대 이상	7	71.4	28.6	0.0	3.7	67.9

〈부록 3-203〉 Q4. 30년후 우리나라 범죄 정도 예측(R)

		사례수	증가 (④+⑤)	변함없음	감소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5.3	19.3	25.3	3.3	58.6
성별	남자	212	55.7	20.8	23.6	3.4	59.0
	여자	88	54.5	15.9	29.5	3.3	57.7
연령	20대	18	50.0	16.7	33.3	3.3	56.9
	30대	87	49.4	20.7	29.9	3.2	55.7
	40대	116	55.2	19.8	25.0	3.3	57.8
	50대	72	61.1	18.1	20.8	3.5	62.5
	60대 이상	7	85.7	14.3	0.0	3.9	71.4

〈부록 3-204〉 Q9_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2.7	48.3	9.0	5.9	61.5
성별	남자	212	43.9	46.7	9.4	5.9	61.7
	여자	88	39.8	52.3	8.0	5.9	60.8
연령	20대	18	38.9	55.6	5.6	6.2	65.3
	30대	87	37.9	55.2	6.9	5.9	61.2
	40대	116	44.0	45.7	10.3	5.9	61.6
	50대	72	50.0	40.3	9.7	5.9	61.1
	60대 이상	7	14.3	71.4	14.3	5.4	55.4

〈부록 3-205〉 Q9_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6.7	22.7	0.7	7.1	76.6
성별	남자	212	75.0	24.1	0.9	7.0	75.6
	여자	88	80.7	19.3	0.0	7.3	79.0
연령	20대	18	77.8	22.2	0.0	7.3	78.5
	30대	87	73.6	26.4	0.0	7.1	76.1
	40대	116	77.6	21.6	0.9	7.2	77.6
	50대	72	80.6	18.1	1.4	7.0	75.2
	60대 이상	7	57.1	42.9	0.0	7.0	75.0

〈부록 3-206〉 Q9_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2.7	43.7	3.7	6.4	67.7
성별	남자	212	50.9	45.8	3.3	6.4	67.7
	여자	88	56.8	38.6	4.5	6.4	67.5
연령	20대	18	50.0	44.4	5.6	6.5	68.8
	30대	87	52.9	43.7	3.4	6.4	67.7
	40대	116	56.0	39.7	4.3	6.5	68.3
	50대	72	47.2	50.0	2.8	6.3	65.6
	60대 이상	7	57.1	42.9	0.0	7.0	75.0

〈부록 3-207〉 Q9_4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0.7	28.3	1.0	7.1	75.7
성별	남자	212	71.7	27.8	0.5	7.1	76.0
	여자	88	68.2	29.5	2.3	7.0	75.0
연령	20대	18	55.6	44.4	0.0	7.2	77.1
	30대	87	65.5	33.3	1.1	7.0	75.0
	40대	116	75.9	22.4	1.7	7.1	76.1
	50대	72	72.2	27.8	0.0	7.1	75.9
	60대 이상	7	71.4	28.6	0.0	6.9	73.2

〈부록 3-208〉 Q9_5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7	50.3	9.0	6.0	62.5
성별	남자	212	41.5	48.6	9.9	6.0	62.1
	여자	88	38.6	54.5	6.8	6.1	63.4
연령	20대	18	55.6	38.9	5.6	6.6	69.4
	30대	87	32.2	56.3	11.5	5.8	59.8
	40대	116	43.1	47.4	9.5	6.0	62.4
	50대	72	43.1	50.0	6.9	6.1	63.5
	60대 이상	7	42.9	57.1	0.0	6.4	67.9

〈부록 3-209〉 Q9_6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1.0	46.0	3.0	6.4	67.2
성별	남자	212	49.5	46.7	3.8	6.3	66.5
	여자	88	54.5	44.3	1.1	6.5	68.9
연령	20대	18	66.7	27.8	5.6	6.8	72.9
	30대	87	43.7	55.2	1.1	6.4	67.7
	40대	116	51.7	44.0	4.3	6.4	66.9
	50대	72	55.6	41.7	2.8	6.3	66.0
	60대 이상	7	42.9	57.1	0.0	6.1	64.3

〈부록 3-210〉 Q9_7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9.3	58.0	12.7	5.5	56.6
성별	남자	212	29.7	57.1	13.2	5.6	56.9
	여자	88	28.4	60.2	11.4	5.5	56.0
연령	20대	18	5.6	66.7	27.8	4.5	43.8
	30대	87	25.3	63.2	11.5	5.4	55.3
	40대	116	31.0	57.8	11.2	5.6	57.9
	50대	72	36.1	50.0	13.9	5.7	58.7
	60대 이상	7	42.9	57.1	0.0	6.1	64.3

〈부록 3-211〉 Q9_8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6.0	54.3	9.7	5.8	59.4
성별	남자	212	34.4	57.5	8.0	5.8	59.7
	여자	88	39.8	46.6	13.6	5.7	58.8
연령	20대	18	38.9	50.0	11.1	5.8	59.7
	30대	87	29.9	58.6	11.5	5.6	57.9
	40대	116	36.2	53.4	10.3	5.7	59.3
	50대	72	43.1	50.0	6.9	5.9	61.3
	60대 이상	7	28.6	71.4	0.0	5.9	60.7

〈부록 3-212〉 Q9_9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9.7	60.0	10.3	5.6	57.9
성별	남자	212	30.7	58.5	10.8	5.6	57.3
	여자	88	27.3	63.6	9.1	5.8	59.4
연령	20대	18	27.8	61.1	11.1	5.7	58.3
	30대	87	21.8	66.7	11.5	5.5	55.9
	40대	116	30.2	58.6	11.2	5.7	58.3
	50대	72	38.9	52.8	8.3	5.7	59.0
	60대 이상	7	28.6	71.4	0.0	6.1	64.3

〈부록 3-213〉 Q9_10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저성장(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7.3	47.0	5.7	6.3	65.9
성별	남자	212	49.1	43.9	7.1	6.3	66.0
	여자	88	43.2	54.5	2.3	6.3	65.6
연령	20대	18	50.0	38.9	11.1	6.3	66.7
	30대	87	39.1	54.0	6.9	6.1	63.2
	40대	116	51.7	44.8	3.4	6.4	67.0
	50대	72	51.4	41.7	6.9	6.4	67.2
	60대 이상	7	28.6	71.4	0.0	6.3	66.1

〈부록 3-214〉 Q9_1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3.7	57.7	8.7	5.8	60.3
성별	남자	212	33.0	56.6	10.4	5.7	59.0
	여자	88	35.2	60.2	4.5	6.1	63.5
연령	20대	18	50.0	44.4	5.6	6.6	70.1
	30대	87	29.9	60.9	9.2	5.7	58.3
	40대	116	33.6	57.8	8.6	5.8	60.3
	50대	72	33.3	58.3	8.3	5.8	60.2
	60대 이상	7	42.9	42.9	14.3	5.9	60.7

〈부록 3-215〉 Q9_1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2.3	27.7	7.1	75.6
성별	남자	212	74.5	25.5	7.1	76.1
	여자	88	67.0	33.0	7.0	74.4
연령	20대	18	83.3	16.7	7.4	80.6
	30대	87	66.7	33.3	6.9	73.6
	40대	116	75.9	24.1	7.2	77.2
	50대	72	72.2	27.8	7.0	74.7
	60대 이상	7	57.1	42.9	6.9	73.2

〈부록 3-216〉 Q9_1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4.7	34.7	0.7	6.9	73.4
성별	남자	212	64.6	34.9	0.5	6.9	73.6
	여자	88	64.8	34.1	1.1	6.8	72.9
연령	20대	18	77.8	22.2	0.0	7.3	79.2
	30대	87	52.9	46.0	1.1	6.6	70.5
	40대	116	74.1	25.9	0.0	7.1	75.8
	50대	72	62.5	36.1	1.4	6.7	71.7
	60대 이상	7	42.9	57.1	0.0	6.7	71.4

〈부록 3-217〉 Q9_14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7.7	39.7	2.7	6.7	70.7
성별	남자	212	55.7	42.0	2.4	6.7	70.6
	여자	88	62.5	34.1	3.4	6.7	70.7
연령	20대	18	77.8	16.7	5.6	7.5	81.3
	30대	87	55.2	41.4	3.4	6.6	70.0
	40대	116	58.6	38.8	2.6	6.6	70.5
	50대	72	55.6	43.1	1.4	6.6	69.4
	60대 이상	7	42.9	57.1	0.0	6.4	67.9

〈부록 3-218〉 Q9_15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7.7	62.3	10.0	5.6	57.2
성별	남자	212	27.8	61.3	10.8	5.5	56.5
	여자	88	27.3	64.8	8.0	5.7	58.9
연령	20대	18	27.8	55.6	16.7	5.4	54.9
	30대	87	19.5	74.7	5.7	5.5	56.2
	40대	116	28.4	59.5	12.1	5.6	57.1
	50대	72	36.1	52.8	11.1	5.8	59.4
	60대 이상	7	28.6	71.4	0.0	5.4	55.4

〈부록 3-219〉 Q9_16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8.3	52.0	9.7	5.8	60.3
성별	남자	212	38.7	51.9	9.4	5.9	60.8
	여자	88	37.5	52.3	10.2	5.7	59.1
연령	20대	18	33.3	50.0	16.7	5.3	53.5
	30대	87	36.8	56.3	6.9	5.9	60.8
	40대	116	38.8	50.0	11.2	5.8	60.3
	50대	72	40.3	51.4	8.3	5.9	61.6
	60대 이상	7	42.9	42.9	14.3	5.7	58.9

〈부록 3-220〉 Q9_18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6.0	50.7	13.3	5.7	58.3
성별	남자	212	37.7	51.4	10.8	5.8	59.4
	여자	88	31.8	48.9	19.3	5.5	55.7
연령	20대	18	38.9	33.3	27.8	5.3	53.5
	30대	87	29.9	58.6	11.5	5.6	56.9
	40대	116	35.3	50.9	13.8	5.7	58.4
	50대	72	44.4	43.1	12.5	5.9	61.3
	60대 이상	7	28.6	71.4	0.0	5.6	57.1

〈부록 3-221〉 Q9_19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0.3	57.0	12.7	5.6	57.0
성별	남자	212	34.4	55.7	9.9	5.8	59.6
	여자	88	20.5	60.2	19.3	5.1	50.7
연령	20대	18	22.2	50.0	27.8	5.0	50.0
	30대	87	31.0	63.2	5.7	5.7	59.1
	40대	116	31.0	56.9	12.1	5.6	57.2
	50대	72	30.6	51.4	18.1	5.5	56.1
	60대 이상	7	28.6	57.1	14.3	5.4	55.4

〈부록 3-222〉 Q9_20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1.3	62.7	16.0	5.1	51.8
성별	남자	212	25.9	60.4	13.7	5.3	54.4
	여자	88	10.2	68.2	21.6	4.6	45.6
연령	20대	18	16.7	55.6	27.8	4.4	43.1
	30대	87	18.4	70.1	11.5	5.2	52.2
	40대	116	25.0	60.3	14.7	5.3	53.7
	50대	72	19.4	61.1	19.4	5.0	50.3
	60대 이상	7	28.6	42.9	28.6	5.3	53.6

〈부록 3-223〉 Q9_21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1.3	43.3	15.3	5.8	59.5
성별	남자	212	44.3	40.1	15.6	5.8	60.3
	여자	88	34.1	51.1	14.8	5.6	57.5
연령	20대	18	22.2	55.6	22.2	5.1	50.7
	30대	87	43.7	43.7	12.6	5.9	61.4
	40대	116	40.5	46.6	12.9	5.8	59.6
	50대	72	45.8	31.9	22.2	5.7	59.2
	60대 이상	7	28.6	71.4	0.0	5.7	58.9

〈부록 3-224〉 Q9_22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9.7	45.7	14.7	5.7	58.3
성별	남자	212	42.0	45.3	12.7	5.8	59.9
	여자	88	34.1	46.6	19.3	5.4	54.4
연령	20대	18	27.8	44.4	27.8	5.1	51.4
	30대	87	40.2	52.9	6.9	5.9	61.4
	40대	116	39.7	44.8	15.5	5.6	57.4
	50대	72	41.7	37.5	20.8	5.5	56.8
	60대 이상	7	42.9	57.1	0.0	6.4	67.9

〈부록 3-225〉 Q9_23_A. 1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2.7	62.0	15.3	5.2	52.6
성별	남자	212	25.9	60.8	13.2	5.3	53.8
	여자	88	14.8	64.8	20.5	5.0	49.6
연령	20대	18	22.2	61.1	16.7	5.1	50.7
	30대	87	23.0	65.5	11.5	5.3	53.7
	40대	116	18.1	63.8	18.1	5.1	51.4
	50대	72	29.2	54.2	16.7	5.3	53.1
	60대 이상	7	28.6	71.4	0.0	5.6	57.1

〈부록 3-226〉 Q9_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7	48.0	11.3	5.9	60.8
성별	남자	212	41.0	49.1	9.9	5.9	61.3
	여자	88	39.8	45.5	14.8	5.8	59.4
연령	20대	18	50.0	38.9	11.1	6.1	63.9
	30대	87	40.2	51.7	8.0	6.0	62.2
	40대	116	37.1	50.0	12.9	5.8	59.4
	50대	72	45.8	41.7	12.5	5.8	60.6
	60대 이상	7	28.6	57.1	14.3	5.7	58.9

〈부록 3-227〉 Q9_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6.0	23.0	1.0	7.1	76.6
성별	남자	212	75.0	23.6	1.4	7.1	75.9
	여자	88	78.4	21.6	0.0	7.3	78.3
연령	20대	18	88.9	11.1	0.0	7.7	84.0
	30대	87	75.9	24.1	0.0	7.2	77.7
	40대	116	73.3	25.0	1.7	7.0	75.2
	50대	72	77.8	20.8	1.4	7.0	75.5
	60대 이상	7	71.4	28.6	0.0	7.3	78.6

〈부록 3-228〉 Q9_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6.3	41.0	2.7	6.5	69.3
성별	남자	212	55.2	42.9	1.9	6.5	69.2
	여자	88	59.1	36.4	4.5	6.6	69.5
연령	20대	18	55.6	44.4	0.0	6.8	72.9
	30대	87	58.6	37.9	3.4	6.7	70.7
	40대	116	57.8	38.8	3.4	6.5	68.5
	50대	72	50.0	48.6	1.4	6.4	67.0
	60대 이상	7	71.4	28.6	0.0	7.3	78.6

〈부록 3-229〉 Q9_4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5.7	23.7	0.7	7.3	78.3
성별	남자	212	75.9	24.1	0.0	7.3	78.4
	여자	88	75.0	22.7	2.3	7.3	78.3
연령	20대	18	72.2	27.8	0.0	7.6	81.9
	30대	87	73.6	26.4	0.0	7.3	79.0
	40대	116	75.0	23.3	1.7	7.2	77.3
	50대	72	79.2	20.8	0.0	7.3	78.5
	60대 이상	7	85.7	14.3	0.0	7.1	76.8

〈부록 3-230〉 Q9_5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8.0	43.7	8.3	6.2	64.8
성별	남자	212	46.7	44.3	9.0	6.1	64.0
	여자	88	51.1	42.0	6.8	6.3	66.6
연령	20대	18	66.7	27.8	5.6	6.9	74.3
	30대	87	42.5	46.0	11.5	6.0	62.9
	40대	116	45.7	46.6	7.8	6.1	63.5
	50대	72	52.8	40.3	6.9	6.3	66.1
	60대 이상	7	57.1	42.9	0.0	6.7	71.4

〈부록 3-231〉 Q9_6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5.7	41.0	3.3	6.5	69.1
성별	남자	212	51.9	44.3	3.8	6.4	67.6
	여자	88	64.8	33.0	2.3	6.8	72.6
연령	20대	18	72.2	22.2	5.6	7.2	77.1
	30대	87	51.7	46.0	2.3	6.6	70.5
	40대	116	54.3	41.4	4.3	6.4	67.2
	50대	72	58.3	38.9	2.8	6.5	68.2
	60대 이상	7	57.1	42.9	0.0	6.6	69.6

〈부록 3-232〉 Q9_7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5.0	52.7	12.3	5.6	57.7
성별	남자	212	35.4	52.4	12.3	5.6	57.7
	여자	88	34.1	53.4	12.5	5.6	57.5
연령	20대	18	22.2	50.0	27.8	4.8	47.2
	30대	87	26.4	64.4	9.2	5.5	56.2
	40대	116	35.3	53.4	11.2	5.7	58.5
	50대	72	45.8	38.9	15.3	5.8	59.7
	60대 이상	7	57.1	42.9	0.0	6.4	67.9

〈부록 3-233〉 Q9_8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살(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9.3	49.7	11.0	5.8	60.3
성별	남자	212	36.3	54.7	9.0	5.8	60.4
	여자	88	46.6	37.5	15.9	5.8	59.9
연령	20대	18	44.4	44.4	11.1	6.0	62.5
	30대	87	33.3	51.7	14.9	5.7	58.2
	40대	116	34.5	54.3	11.2	5.7	58.6
	50대	72	52.8	40.3	6.9	6.2	64.4
	60대 이상	7	42.9	57.1	0.0	6.1	64.3

〈부록 3-234〉 Q9_9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0	49.0	11.0	5.9	61.1
성별	남자	212	39.2	49.5	11.3	5.8	60.5
	여자	88	42.0	47.7	10.2	6.0	62.5
연령	20대	18	44.4	38.9	16.7	5.8	60.4
	30대	87	36.8	50.6	12.6	5.7	59.3
	40대	116	37.1	52.6	10.3	5.9	60.9
	50대	72	47.2	43.1	9.7	6.0	63.0
	60대 이상	7	42.9	57.1	0.0	6.4	67.9

〈부록 3-235〉 Q9_10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저성장(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0.3	45.0	4.7	6.4	67.1
성별	남자	212	50.0	44.8	5.2	6.4	67.0
	여자	88	51.1	45.5	3.4	6.4	67.2
연령	20대	18	61.1	33.3	5.6	6.5	68.8
	30대	87	44.8	48.3	6.9	6.2	64.7
	40대	116	47.4	50.0	2.6	6.4	67.0
	50대	72	59.7	34.7	5.6	6.6	69.4
	60대 이상	7	42.9	57.1	0.0	6.6	69.6

〈부록 3-236〉 Q9_1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0	50.7	9.3	6.0	62.1
성별	남자	(212)	37.3	52.4	10.4	5.9	61.1
	여자	(88)	46.6	46.6	6.8	6.2	64.5
연령	20대	(18)	66.7	27.8	5.6	6.9	74.3
	30대	(87)	33.3	55.2	11.5	5.8	59.6
	40대	(116)	36.2	55.2	8.6	5.9	61.9
	50대	(72)	45.8	45.8	8.3	6.0	62.3
	60대 이상	(7)	57.1	28.6	14.3	6.1	64.3

〈부록 3-237〉 Q9_1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5.0	23.3	1.7	7.3	78.5
성별	남자	212	74.1	24.1	1.9	7.2	77.9
	여자	88	77.3	21.6	1.1	7.4	80.1
연령	20대	18	83.3	16.7	0.0	7.9	86.8
	30대	87	74.7	23.0	2.3	7.3	78.3
	40대	116	75.0	23.3	1.7	7.2	77.5
	50대	72	76.4	22.2	1.4	7.3	79.0
	60대 이상	7	42.9	57.1	0.0	6.9	73.2

〈부록 3-238〉 Q9_1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8.0	30.0	2.0	7.0	75.1
성별	남자	212	67.0	30.7	2.4	7.0	74.4
	여자	88	70.5	28.4	1.1	7.1	76.7
연령	20대	18	77.8	16.7	5.6	7.4	80.6
	30대	87	60.9	37.9	1.1	7.0	74.7
	40대	116	73.3	25.9	0.9	7.1	75.6
	50대	72	66.7	29.2	4.2	6.9	73.3
	60대 이상	7	57.1	42.9	0.0	7.0	75.0

〈부록 3-239〉 Q9_14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0.7	36.7	2.7	6.8	72.6
성별	남자	212	59.0	37.7	3.3	6.8	72.1
	여자	88	64.8	34.1	1.1	6.9	73.9
연령	20대	18	77.8	22.2	0.0	7.8	85.4
	30대	87	64.4	33.3	2.3	6.9	73.4
	40대	116	57.8	39.7	2.6	6.7	71.0
	50대	72	59.7	37.5	2.8	6.8	71.9
	60대 이상	7	28.6	57.1	14.3	6.0	62.5

〈부록 3-240〉 Q9_15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2.3	58.3	9.3	5.7	58.4
성별	남자	212	33.5	56.6	9.9	5.7	58.4
	여자	88	29.5	62.5	8.0	5.7	58.2
연령	20대	18	22.2	72.2	5.6	5.5	56.3
	30대	87	26.4	65.5	8.0	5.6	57.9
	40대	116	32.8	56.9	10.3	5.6	58.0
	50대	72	40.3	48.6	11.1	5.8	59.9
	60대 이상	7	42.9	57.1	0.0	5.9	60.7

〈부록 3-241〉 Q9_16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3.7	43.3	13.0	5.9	61.4
성별	남자	212	43.9	43.4	12.7	5.9	61.3
	여자	88	43.2	43.2	13.6	5.9	61.6
연령	20대	18	44.4	38.9	16.7	5.6	56.9
	30대	87	43.7	43.7	12.6	6.0	62.2
	40대	116	41.4	45.7	12.9	5.9	61.1
	50대	72	47.2	40.3	12.5	6.0	62.2
	60대 이상	7	42.9	42.9	14.3	5.9	60.7

〈부록 3-242〉 Q9_17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7.0	53.0	20.0	5.3	53.3
성별	남자	212	28.8	54.2	17.0	5.4	55.2
	여자	88	22.7	50.0	27.3	4.9	48.9
연령	20대	18	22.2	38.9	38.9	4.3	41.0
	30대	87	20.7	60.9	18.4	5.2	52.2
	40대	116	26.7	51.7	21.6	5.2	52.6
	50대	72	36.1	48.6	15.3	5.7	58.3
	60대 이상	7	28.6	57.1	14.3	5.9	60.7

〈부록 3-243〉 Q9_18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3	44.7	15.0	5.8	59.5
성별	남자	212	40.6	45.3	14.2	5.8	60.3
	여자	88	39.8	43.2	17.0	5.6	57.8
연령	20대	18	38.9	33.3	27.8	5.2	52.8
	30대	87	37.9	50.6	11.5	5.8	60.1
	40대	116	40.5	43.1	16.4	5.7	59.1
	50대	72	45.8	40.3	13.9	6.0	62.2
	60대 이상	7	14.3	71.4	14.3	5.1	51.8

〈부록 3-244〉 Q9_19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4.0	52.3	13.7	5.6	58.1
성별	남자	212	38.7	50.0	11.3	5.9	60.7
	여자	88	22.7	58.0	19.3	5.1	51.8
연령	20대	18	27.8	44.4	27.8	5.2	52.1
	30대	87	34.5	58.6	6.9	5.8	60.3
	40대	116	33.6	52.6	13.8	5.6	57.7
	50대	72	34.7	47.2	18.1	5.6	57.3
	60대 이상	7	42.9	42.9	14.3	5.9	60.7

〈부록 3-245〉 Q9_20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5.3	58.3	16.3	5.3	53.3
성별	남자	212	29.2	57.5	13.2	5.5	56.1
	여자	88	15.9	60.2	23.9	4.7	46.6
연령	20대	18	16.7	55.6	27.8	4.3	41.0
	30대	87	21.8	63.2	14.9	5.2	52.9
	40대	116	26.7	58.6	14.7	5.4	54.6
	50대	72	29.2	54.2	16.7	5.4	54.7
	60대 이상	7	28.6	42.9	28.6	5.4	55.4

〈부록 3-246〉 Q9_21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6.0	37.7	16.3	5.9	60.7
성별	남자	212	47.6	36.3	16.0	5.9	61.1
	여자	88	42.0	40.9	17.0	5.8	59.7
연령	20대	18	27.8	50.0	22.2	5.2	52.1
	30대	87	50.6	34.5	14.9	6.1	63.4
	40대	116	43.1	41.4	15.5	5.8	60.0
	50대	72	51.4	29.2	19.4	5.8	60.4
	60대 이상	7	28.6	71.4	0.0	6.1	64.3

〈부록 3-247〉 Q9_22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7	43.7	15.7	5.7	59.2
성별	남자	212	42.5	43.9	13.7	5.9	60.8
	여자	88	36.4	43.2	20.5	5.4	55.4
연령	20대	18	27.8	50.0	22.2	5.1	50.7
	30대	87	42.5	48.3	9.2	6.0	62.2
	40대	116	38.8	42.2	19.0	5.6	57.1
	50대	72	44.4	37.5	18.1	5.8	59.9
	60대 이상	7	42.9	57.1	0.0	6.7	71.4

〈부록 3-248〉 Q9_23_B. 30년후 범죄 발생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6.7	57.0	16.3	5.3	54.0
성별	남자	212	30.2	55.2	14.6	5.4	55.3
	여자	88	18.2	61.4	20.5	5.1	50.7
연령	20대	18	44.4	38.9	16.7	5.5	56.3
	30대	87	24.1	62.1	13.8	5.3	53.3
	40대	116	24.1	56.0	19.8	5.2	52.7
	50대	72	29.2	55.6	15.3	5.4	55.2
	60대 이상	7	28.6	71.4	0.0	6.1	64.3

〈부록 3-249〉 Q10_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3.3	44.3	22.3	5.4	55.1
성별	남자	212	34.0	45.3	20.8	5.5	56.0
	여자	88	31.8	42.0	26.1	5.2	52.8
연령	20대	18	16.7	50.0	33.3	4.8	47.2
	30대	87	34.5	42.5	23.0	5.4	54.7
	40대	116	32.8	50.0	17.2	5.6	57.0
	50대	72	38.9	33.3	27.8	5.3	54.3
	60대 이상	7	14.3	71.4	14.3	5.4	55.4

〈부록 3-250〉 Q10_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2.0	29.7	18.3	6.0	62.3
성별	남자	212	55.2	30.2	14.6	6.2	64.5
	여자	88	44.3	28.4	27.3	5.5	56.8
연령	20대	18	27.8	44.4	27.8	5.3	54.2
	30대	87	50.6	28.7	20.7	5.9	61.6
	40대	116	53.4	29.3	17.2	6.1	63.1
	50대	72	56.9	26.4	16.7	6.0	62.5
	60대 이상	7	57.1	42.9	0.0	6.9	73.2

〈부록 3-251〉 Q10_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6.7	45.0	18.3	5.6	57.4
성별	남자	212	39.6	44.3	16.0	5.7	59.2
	여자	88	29.5	46.6	23.9	5.2	53.0
연령	20대	18	27.8	50.0	22.2	5.3	54.2
	30대	87	34.5	47.1	18.4	5.5	56.2
	40대	116	38.8	43.1	18.1	5.6	58.0
	50대	72	36.1	44.4	19.4	5.6	57.1
	60대 이상	7	57.1	42.9	0.0	6.9	73.2

〈부록 3-252〉 Q10_4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2.3	33.7	14.0	6.1	64.2
성별	남자	212	57.5	34.0	8.5	6.4	67.4
	여자	88	39.8	33.0	27.3	5.5	56.4
연령	20대	18	44.4	33.3	22.2	5.7	59.0
	30대	87	51.7	32.2	16.1	6.1	63.6
	40대	116	55.2	33.6	11.2	6.3	65.9
	50대	72	50.0	34.7	15.3	6.0	62.5
	60대 이상	7	57.1	42.9	0.0	6.7	71.4

〈부록 3-253〉 Q10_5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9.0	52.0	19.0	5.3	54.3
성별	남자	212	32.5	51.4	16.0	5.5	55.9
	여자	88	20.5	53.4	26.1	5.0	50.3
연령	20대	18	27.8	55.6	16.7	5.3	54.2
	30대	87	19.5	59.8	20.7	5.0	50.6
	40대	116	31.9	48.3	19.8	5.4	55.5
	50대	72	36.1	45.8	18.1	5.5	56.3
	60대 이상	7	28.6	71.4	0.0	5.7	58.9

〈부록 3-254〉 Q10_6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4.0	51.7	14.3	5.6	57.5
성별	남자	212	36.3	50.5	13.2	5.7	58.4
	여자	88	28.4	54.5	17.0	5.4	55.3
연령	20대	18	16.7	61.1	22.2	5.0	50.0
	30대	87	33.3	55.2	11.5	5.7	58.8
	40대	116	34.5	50.9	14.7	5.6	58.1
	50대	72	37.5	45.8	16.7	5.5	56.1
	60대 이상	7	42.9	57.1	0.0	6.1	64.3

〈부록 3-255〉 Q10_7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4.3	57.7	18.0	5.2	52.5
성별	남자	212	26.9	59.0	14.2	5.4	54.6
	여자	88	18.2	54.5	27.3	4.8	47.6
연령	20대	18	0.0	72.2	27.8	4.4	42.4
	30대	87	19.5	65.5	14.9	5.2	52.4
	40대	116	28.4	56.0	15.5	5.3	54.0
	50대	72	29.2	45.8	25.0	5.2	52.1
	60대 이상	7	28.6	71.4	0.0	5.9	60.7

〈부록 3-256〉 Q10_8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5.7	57.3	17.0	5.3	53.3
성별	남자	212	28.8	59.4	11.8	5.5	55.9
	여자	88	18.2	52.3	29.5	4.8	47.2
연령	20대	18	33.3	38.9	27.8	5.2	52.1
	30대	87	19.5	66.7	13.8	5.2	52.4
	40대	116	24.1	57.8	18.1	5.2	52.6
	50대	72	33.3	48.6	18.1	5.4	55.4
	60대 이상	7	28.6	71.4	0.0	5.7	58.9

〈부록 3-257〉 Q10_9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3.7	55.7	20.7	5.1	51.4
성별	남자	212	26.9	56.1	17.0	5.3	53.3
	여자	88	15.9	54.5	29.5	4.8	46.9
연령	20대	18	16.7	50.0	33.3	4.4	43.1
	30대	87	19.5	63.2	17.2	5.1	51.0
	40대	116	24.1	56.9	19.0	5.2	52.4
	50대	72	30.6	44.4	25.0	5.2	52.1
	60대 이상	7	14.3	71.4	14.3	5.4	55.4

〈부록 3-258〉 Q10_10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저성장(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4.0	48.7	17.3	5.5	56.8
성별	남자	212	40.1	46.2	13.7	5.8	59.4
	여자	88	19.3	54.5	26.1	5.0	50.3
연령	20대	18	16.7	50.0	33.3	4.7	46.5
	30대	87	25.3	54.0	20.7	5.3	53.7
	40대	116	41.4	45.7	12.9	5.8	60.2
	50대	72	37.5	45.8	16.7	5.6	57.1
	60대 이상	7	28.6	57.1	14.3	5.7	58.9

〈부록 3-259〉 Q10_1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2.0	49.3	18.7	5.4	55.1
성별	남자	212	33.5	51.9	14.6	5.5	56.7
	여자	88	28.4	43.2	28.4	5.1	51.1
연령	20대	18	38.9	33.3	27.8	5.3	54.2
	30대	87	28.7	52.9	18.4	5.4	54.9
	40대	116	33.6	50.9	15.5	5.5	56.5
	50대	72	31.9	45.8	22.2	5.3	53.3
	60대 이상	7	28.6	57.1	14.3	5.4	55.4

310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부록 3-260〉 Q10_1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4.3	28.7	17.0	6.0	63.0
성별	남자	212	59.4	28.3	12.3	6.3	65.9
	여자	88	42.0	29.5	28.4	5.5	56.3
연령	20대	18	44.4	22.2	33.3	5.2	52.8
	30대	87	50.6	33.3	16.1	6.0	62.8
	40대	116	57.8	23.3	19.0	6.1	64.3
	50대	72	55.6	33.3	11.1	6.1	63.4
	60대 이상	7	57.1	28.6	14.3	6.4	67.9

〈부록 3-261〉 Q10_1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7.7	36.0	16.3	5.9	61.8
성별	남자	212	50.5	36.3	13.2	6.1	63.8
	여자	88	40.9	35.2	23.9	5.6	57.0
연령	20대	18	22.2	55.6	22.2	4.8	47.9
	30대	87	39.1	48.3	12.6	5.9	61.1
	40대	116	55.2	24.1	20.7	6.1	63.6
	50대	72	52.8	34.7	12.5	6.0	62.8
	60대 이상	7	42.9	42.9	14.3	6.3	66.1

〈부록 3-262〉 Q10_14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3.0	41.3	15.7	5.7	59.2
성별	남자	212	45.8	42.5	11.8	5.9	61.3
	여자	88	36.4	38.6	25.0	5.3	54.1
연령	20대	18	33.3	38.9	27.8	4.9	49.3
	30대	87	42.5	43.7	13.8	5.8	59.9
	40대	116	43.1	40.5	16.4	5.8	59.9
	50대	72	47.2	38.9	13.9	5.8	59.7
	60대 이상	7	28.6	57.1	14.3	5.7	58.9

〈부록 3-263〉 Q10_15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8.0	52.7	9.3	5.8	59.8
성별	남자	212	38.2	50.9	10.8	5.8	59.6
	여자	88	37.5	56.8	5.7	5.8	60.5
연령	20대	18	38.9	55.6	5.6	5.7	58.3
	30대	87	33.3	58.6	8.0	5.7	58.2
	40대	116	41.4	50.9	7.8	5.9	61.9
	50대	72	38.9	45.8	15.3	5.8	59.5
	60대 이상	7	28.6	71.4	0.0	5.3	53.6

〈부록 3-264〉 Q10_16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6.7	45.3	8.0	6.1	63.8
성별	남자	212	47.2	46.2	6.6	6.2	65.0
	여자	88	45.5	43.2	11.4	5.9	60.9
연령	20대	18	27.8	55.6	16.7	5.2	52.1
	30대	87	41.4	49.4	9.2	6.0	62.2
	40대	116	50.0	41.4	8.6	6.3	65.7
	50대	72	54.2	43.1	2.8	6.3	66.5
	60대 이상	7	28.6	57.1	14.3	5.4	55.4

〈부록 3-265〉 Q10_17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봉사 활성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4.0	55.7	10.3	5.7	58.8
성별	남자	212	32.5	58.5	9.0	5.7	59.3
	여자	88	37.5	48.9	13.6	5.6	57.5
연령	20대	18	16.7	66.7	16.7	4.8	47.9
	30대	87	23.0	65.5	11.5	5.4	54.7
	40대	116	37.9	52.6	9.5	5.8	60.5
	50대	72	44.4	47.2	8.3	6.1	63.4
	60대 이상	7	42.9	42.9	14.3	6.0	62.5

〈부록 3-266〉 Q10_18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6.7	47.0	6.3	6.1	64.0
성별	남자	212	48.6	47.2	4.2	6.2	65.3
	여자	88	42.0	46.6	11.4	5.9	60.9
연령	20대	18	27.8	61.1	11.1	5.2	52.8
	30대	87	37.9	55.2	6.9	5.9	61.4
	40대	116	50.9	43.1	6.0	6.2	65.5
	50대	72	56.9	37.5	5.6	6.4	67.4
	60대 이상	7	28.6	71.4	0.0	6.3	66.1

〈부록 3-267〉 Q10_19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7.7	54.3	8.0	5.9	60.8
성별	남자	212	40.1	52.4	7.5	6.0	62.4
	여자	88	31.8	59.1	9.1	5.6	57.0
연령	20대	18	33.3	50.0	16.7	5.4	54.9
	30대	87	35.6	60.9	3.4	5.9	60.9
	40대	116	39.7	50.9	9.5	5.9	61.1
	50대	72	38.9	52.8	8.3	5.9	61.8
	60대 이상	7	28.6	57.1	14.3	5.7	58.9

〈부록 3-268〉 Q10_20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0.0	56.0	14.0	5.5	56.1
성별	남자	212	33.5	53.8	12.7	5.6	57.8
	여자	88	21.6	61.4	17.0	5.2	52.0
연령	20대	18	27.8	44.4	27.8	4.8	47.2
	30대	87	17.2	67.8	14.9	5.2	52.2
	40대	116	37.9	51.7	10.3	5.8	59.8
	50대	72	31.9	52.8	15.3	5.5	56.6
	60대 이상	7	42.9	42.9	14.3	5.9	60.7

〈부록 3-269〉 Q10_21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2.7	38.7	8.7	6.3	66.2
성별	남자	212	54.2	36.8	9.0	6.3	66.6
	여자	88	48.9	43.2	8.0	6.2	65.1
연령	20대	18	44.4	44.4	11.1	6.1	63.2
	30대	87	49.4	42.5	8.0	6.3	65.8
	40대	116	58.6	34.5	6.9	6.4	68.1
	50대	72	51.4	37.5	11.1	6.2	64.9
	60대 이상	7	28.6	57.1	14.3	5.7	58.9

〈부록 3-270〉 Q10_22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3.7	38.3	8.0	6.3	66.0
성별	남자	212	54.7	37.7	7.5	6.3	66.3
	여자	88	51.1	39.8	9.1	6.2	65.5
연령	20대	18	44.4	38.9	16.7	5.7	58.3
	30대	87	47.1	46.0	6.9	6.3	65.7
	40대	116	57.8	35.3	6.9	6.4	67.8
	50대	72	58.3	31.9	9.7	6.3	65.6
	60대 이상	7	42.9	57.1	0.0	6.3	66.1

〈부록 3-271〉 Q10_23_A. 1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0.3	59.0	10.7	5.5	56.8
성별	남자	212	30.7	58.0	11.3	5.6	57.1
	여자	88	29.5	61.4	9.1	5.5	56.3
연령	20대	18	27.8	61.1	11.1	5.3	53.5
	30대	87	27.6	63.2	9.2	5.5	56.8
	40대	116	33.6	54.3	12.1	5.6	57.1
	50대	72	29.2	59.7	11.1	5.5	56.8
	60대 이상	7	28.6	71.4	0.0	6.0	62.5

〈부록 3-272〉 Q10_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안보 불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7.0	42.0	21.0	5.5	56.6
성별	남자	212	39.6	41.5	18.9	5.7	58.1
	여자	88	30.7	43.2	26.1	5.2	53.0
연령	20대	18	38.9	38.9	22.2	5.4	55.6
	30대	87	36.8	43.7	19.5	5.6	56.9
	40대	116	33.6	48.3	18.1	5.6	57.0
	50대	72	43.1	29.2	27.8	5.5	56.1
	60대 이상	7	28.6	57.1	14.3	5.4	55.4

〈부록 3-273〉 Q10_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불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5.0	27.3	17.7	6.1	63.6
성별	남자	212	58.5	27.8	13.7	6.3	65.9
	여자	88	46.6	26.1	27.3	5.6	58.0
연령	20대	18	38.9	33.3	27.8	5.4	54.9
	30대	87	56.3	25.3	18.4	6.2	65.4
	40대	116	50.9	31.0	18.1	6.0	62.6
	50대	72	62.5	22.2	15.3	6.1	64.2
	60대 이상	7	71.4	28.6	0.0	6.9	73.2

〈부록 3-274〉 Q10_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세대갈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1.3	40.0	18.7	5.7	58.4
성별	남자	212	44.8	40.1	15.1	5.8	60.4
	여자	88	33.0	39.8	27.3	5.3	53.4
연령	20대	18	44.4	27.8	27.8	5.6	56.9
	30대	87	40.2	41.4	18.4	5.7	58.2
	40대	116	38.8	43.1	18.1	5.6	58.1
	50대	72	43.1	37.5	19.4	5.6	58.0
	60대 이상	7	71.4	28.6	0.0	6.9	73.2

〈부록 3-275〉 Q10_4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경제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4.0	32.0	14.0	6.2	65.0
성별	남자	212	59.4	31.6	9.0	6.5	68.3
	여자	88	40.9	33.0	26.1	5.6	57.1
연령	20대	18	50.0	22.2	27.8	5.6	56.9
	30대	87	57.5	31.0	11.5	6.3	66.5
	40대	116	51.7	35.3	12.9	6.3	66.2
	50대	72	52.8	30.6	16.7	6.0	62.7
	60대 이상	7	71.4	28.6	0.0	6.9	73.2

〈부록 3-276〉 Q10_5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원고갈(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3.7	46.3	20.0	5.4	55.4
성별	남자	212	37.7	45.8	16.5	5.7	58.3
	여자	88	23.9	47.7	28.4	4.9	48.4
연령	20대	18	44.4	27.8	27.8	5.4	54.9
	30대	87	26.4	51.7	21.8	5.2	52.7
	40대	116	33.6	48.3	18.1	5.5	56.0
	50대	72	38.9	40.3	20.8	5.6	57.1
	60대 이상	7	42.9	57.1	0.0	5.9	60.7

〈부록 3-277〉 Q10_6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산업구조 양극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9.7	45.7	14.7	5.7	59.0
성별	남자	212	42.5	45.8	11.8	5.9	60.8
	여자	88	33.0	45.5	21.6	5.4	54.5
연령	20대	18	27.8	44.4	27.8	4.8	47.9
	30대	87	37.9	52.9	9.2	5.9	61.4
	40대	116	37.9	47.4	14.7	5.7	58.5
	50대	72	45.8	34.7	19.4	5.7	59.0
	60대 이상	7	57.1	42.9	0.0	6.1	64.3

〈부록 3-278〉 Q10_7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식품안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0.3	51.3	18.3	5.3	54.2
성별	남자	212	33.0	52.8	14.2	5.5	56.6
	여자	88	23.9	47.7	28.4	4.9	48.4
연령	20대	18	27.8	38.9	33.3	4.7	46.5
	30대	87	25.3	62.1	12.6	5.4	55.0
	40대	116	28.4	55.2	16.4	5.3	53.9
	50대	72	38.9	34.7	26.4	5.4	54.7
	60대 이상	7	42.9	57.1	0.0	6.1	64.3

〈부록 3-279〉 Q10_8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0.7	49.7	19.7	5.4	54.4
성별	남자	212	33.5	52.8	13.7	5.6	57.2
	여자	88	23.9	42.0	34.1	4.8	47.6
연령	20대	18	38.9	27.8	33.3	5.1	50.7
	30대	87	25.3	58.6	16.1	5.3	54.3
	40대	116	26.7	52.6	20.7	5.2	52.8
	50대	72	40.3	38.9	20.8	5.6	57.1
	60대 이상	7	42.9	57.1	0.0	6.0	62.5

〈부록 3-280〉 Q10_9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오염(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9.3	48.7	22.0	5.2	52.8
성별	남자	212	31.6	50.9	17.5	5.4	55.2
	여자	88	23.9	43.2	33.0	4.7	46.7
연령	20대	18	27.8	27.8	44.4	4.4	43.1
	30대	87	28.7	52.9	18.4	5.2	52.7
	40대	116	24.1	56.0	19.8	5.2	52.4
	50대	72	38.9	36.1	25.0	5.4	55.4
	60대 이상	7	28.6	57.1	14.3	5.6	57.1

〈부록 3-281〉 Q10_10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저성장(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9.0	43.3	17.7	5.6	57.7
성별	남자	212	43.4	43.4	13.2	5.8	60.6
	여자	88	28.4	43.2	28.4	5.0	50.6
연령	20대	18	27.8	38.9	33.3	4.8	47.9
	30대	87	29.9	50.6	19.5	5.3	54.3
	40대	116	43.1	44.8	12.1	5.8	60.2
	50대	72	45.8	33.3	20.8	5.8	59.5
	60대 이상	7	42.9	42.9	14.3	6.0	62.5

〈부록 3-282〉 Q10_1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보격차(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5.0	45.3	19.7	5.5	55.8
성별	남자	212	36.8	48.1	15.1	5.6	57.8
	여자	88	30.7	38.6	30.7	5.1	50.9
연령	20대	18	50.0	16.7	33.3	5.6	57.6
	30대	87	32.2	47.1	20.7	5.4	55.5
	40대	116	31.9	54.3	13.8	5.5	56.7
	50대	72	38.9	36.1	25.0	5.3	54.2
	60대 이상	7	42.9	42.9	14.3	5.6	57.1

〈부록 3-283〉 Q10_1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인간성 상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6.0	26.0	18.0	6.2	64.4
성별	남자	212	59.4	27.8	12.7	6.4	67.3
	여자	88	47.7	21.6	30.7	5.6	57.4
연령	20대	18	38.9	22.2	38.9	5.2	52.1
	30대	87	57.5	26.4	16.1	6.2	65.2
	40대	116	54.3	25.0	20.7	6.1	63.5
	50대	72	61.1	27.8	11.1	6.4	67.7
	60대 이상	7	57.1	28.6	14.3	6.3	66.1

〈부록 3-284〉 Q10_1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가족 유대감 약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0.0	33.0	17.0	6.0	62.8
성별	남자	212	52.4	33.5	14.2	6.2	64.9
	여자	88	44.3	31.8	23.9	5.6	57.5
연령	20대	18	38.9	27.8	33.3	4.8	47.9
	30대	87	41.4	42.5	16.1	6.0	62.2
	40대	116	56.0	25.0	19.0	6.1	63.4
	50대	72	52.8	36.1	11.1	6.3	65.6
	60대 이상	7	57.1	28.6	14.3	6.4	67.9

〈부록 3-285〉 Q10_14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개인주의화(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5.3	38.3	16.3	5.8	59.8
성별	남자	212	48.1	40.1	11.8	6.0	61.9
	여자	88	38.6	34.1	27.3	5.4	54.8
연령	20대	18	38.9	22.2	38.9	4.8	47.9
	30대	87	42.5	43.7	13.8	5.8	60.1
	40대	116	45.7	37.1	17.2	5.8	59.7
	50대	72	51.4	36.1	12.5	6.0	62.7
	60대 이상	7	28.6	57.1	14.3	5.9	60.7

〈부록 3-286〉 Q10_15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소득증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1.0	49.0	10.0	5.9	61.7
성별	남자	212	41.0	47.2	11.8	5.9	61.5
	여자	88	40.9	53.4	5.7	6.0	62.1
연령	20대	18	44.4	44.4	11.1	5.6	56.9
	30대	87	32.2	60.9	6.9	5.8	60.2
	40대	116	44.0	46.6	9.5	6.0	62.4
	50대	72	45.8	40.3	13.9	6.1	64.1
	60대 이상	7	42.9	42.9	14.3	5.4	55.4

〈부록 3-287〉 Q10_16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불균형 격차 해소(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0.0	40.0	10.0	6.2	65.2
성별	남자	212	50.9	40.6	8.5	6.3	66.4
	여자	88	47.7	38.6	13.6	6.0	62.2
연령	20대	18	33.3	33.3	33.3	5.1	50.7
	30대	87	46.0	44.8	9.2	6.1	63.9
	40대	116	50.0	39.7	10.3	6.3	66.6
	50대	72	59.7	36.1	4.2	6.5	68.4
	60대 이상	7	42.9	42.9	14.3	5.9	60.7

〈부록 3-288〉 10_18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주거안정(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9.3	42.3	8.3	6.2	64.9
성별	남자	212	50.5	43.4	6.1	6.2	65.6
	여자	88	46.6	39.8	13.6	6.1	63.4
연령	20대	18	33.3	50.0	16.7	5.4	55.6
	30대	87	43.7	48.3	8.0	6.1	63.2
	40대	116	51.7	41.4	6.9	6.3	66.3
	50대	72	56.9	33.3	9.7	6.3	66.8
	60대 이상	7	42.9	57.1	0.0	6.4	67.9

〈부록 3-289〉 Q10_19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교육수준 향상(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3.3	48.3	8.3	6.0	62.1
성별	남자	212	46.7	46.7	6.6	6.1	63.7
	여자	88	35.2	52.3	12.5	5.7	58.4
연령	20대	18	38.9	38.9	22.2	5.4	54.9
	30대	87	39.1	56.3	4.6	6.0	61.9
	40대	116	44.0	47.4	8.6	5.9	61.9
	50대	72	48.6	43.1	8.3	6.2	64.9
	60대 이상	7	42.9	42.9	14.3	5.7	58.9

〈부록 3-290〉 Q10_20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환경문제 극복(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4.0	51.0	15.0	5.6	57.1
성별	남자	212	36.3	50.5	13.2	5.7	58.5
	여자	88	28.4	52.3	19.3	5.3	53.7
연령	20대	18	27.8	33.3	38.9	4.6	44.4
	30대	87	19.5	65.5	14.9	5.3	54.3
	40대	116	39.7	50.0	10.3	5.8	60.2
	50대	72	41.7	41.7	16.7	5.6	57.8
	60대 이상	7	57.1	28.6	14.3	6.1	64.3

〈부록 3-291〉 Q10_21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고용확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9.3	30.3	10.3	6.4	67.8
성별	남자	212	59.9	30.2	9.9	6.5	68.3
	여자	88	58.0	30.7	11.4	6.3	66.5
연령	20대	18	61.1	16.7	22.2	6.3	66.0
	30대	87	56.3	34.5	9.2	6.4	67.1
	40대	116	57.8	34.5	7.8	6.5	68.8
	50대	72	66.7	20.8	12.5	6.5	68.4
	60대 이상	7	42.9	42.9	14.3	5.7	58.9

〈부록 3-292〉 Q10_22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상호신뢰 증진(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7.0	34.0	9.0	6.4	67.5
성별	남자	212	57.1	34.0	9.0	6.4	67.2
	여자	88	56.8	34.1	9.1	6.5	68.3
연령	20대	18	50.0	38.9	11.1	6.2	65.3
	30대	87	49.4	43.7	6.9	6.3	66.7
	40대	116	59.5	31.9	8.6	6.5	68.2
	50대	72	63.9	23.6	12.5	6.4	68.1
	60대 이상	7	57.1	42.9	0.0	6.3	66.1

〈부록 3-293〉 Q10_23_B. 30년후 범죄 예방에 영향 정도_정치민주화(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6.3	52.0	11.7	5.7	58.6
성별	남자	212	36.8	51.4	11.8	5.7	58.7
	여자	88	35.2	53.4	11.4	5.7	58.5
연령	20대	18	33.3	44.4	22.2	5.4	55.6
	30대	87	33.3	57.5	9.2	5.7	58.9
	40대	116	37.1	50.0	12.9	5.6	58.0
	50대	72	38.9	50.0	11.1	5.8	59.9
	60대 이상	7	42.9	57.1	0.0	5.9	60.7

〈부록 3-294〉 Q11_1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4+5)	보통	낮다 (1+2)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6.7	38.7	4.7	3.6	64.9
성별	남자	212	60.8	35.4	3.8	3.7	66.3
	여자	88	46.6	46.6	6.8	3.5	61.6
연령	20대	18	66.7	27.8	5.6	3.7	66.7
	30대	87	42.5	51.7	5.7	3.4	60.9
	40대	116	61.2	34.5	4.3	3.7	66.4
	50대	72	65.3	31.9	2.8	3.7	67.7
	60대 이상	7	42.9	42.9	14.3	3.3	57.1

〈부록 3-295〉 Q11_2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4+5)	보통	낮다 (1+2)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0.3	38.3	11.3	3.4	60.7
성별	남자	212	49.5	38.2	12.3	3.4	60.0
	여자	88	52.3	38.6	9.1	3.5	62.2
연령	20대	18	44.4	33.3	22.2	3.2	55.6
	30대	87	44.8	43.7	11.5	3.3	58.6
	40대	116	59.5	32.8	7.8	3.6	64.2
	50대	72	47.2	37.5	15.3	3.4	59.4
	60대 이상	7	14.3	85.7	0.0	3.1	53.6

〈부록 3-296〉 Q11_3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9.0	46.0	25.0	3.0	50.3
성별	남자	212	27.8	47.2	25.0	3.0	50.2
	여자	88	31.8	43.2	25.0	3.0	50.6
연령	20대	18	38.9	11.1	50.0	2.8	45.8
	30대	87	23.0	47.1	29.9	2.9	47.7
	40대	116	30.2	49.1	20.7	3.1	51.9
	50대	72	33.3	48.6	18.1	3.1	52.8
	60대 이상	7	14.3	42.9	42.9	2.7	42.9

〈부록 3-297〉 Q11_4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5.3	23.3	1.3	3.9	71.8
성별	남자	212	75.9	22.2	1.9	3.9	71.8
	여자	88	73.9	26.1	0.0	3.9	71.9
연령	20대	18	72.2	22.2	5.6	3.8	69.4
	30대	87	77.0	21.8	1.1	3.9	72.7
	40대	116	81.9	18.1	0.0	4.0	73.9
	50대	72	63.9	33.3	2.8	3.7	67.7
	60대 이상	7	71.4	28.6	0.0	4.0	75.0

〈부록 3-298〉 Q11_5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3.7	54.3	2.0	3.5	63.0
성별	남자	212	41.5	55.7	2.8	3.5	62.0
	여자	88	48.9	51.1	0.0	3.6	65.3
연령	20대	18	66.7	33.3	0.0	3.9	73.6
	30대	87	44.8	55.2	0.0	3.5	62.9
	40대	116	35.3	63.8	0.9	3.5	61.6
	50대	72	50.0	43.1	6.9	3.5	62.5
	60대 이상	7	42.9	57.1	0.0	3.6	64.3

〈부록 3-299〉 Q11_6_A. 1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7.7	38.3	4.0	3.7	66.3
성별	남자	212	54.7	41.5	3.8	3.6	65.6
	여자	88	64.8	30.7	4.5	3.7	68.2
연령	20대	18	66.7	27.8	5.6	3.9	72.2
	30대	87	63.2	34.5	2.3	3.8	69.3
	40대	116	52.6	44.0	3.4	3.6	64.4
	50대	72	56.9	37.5	5.6	3.6	64.6
	60대 이상	7	57.1	28.6	14.3	3.6	64.3

〈부록 3-300〉 Q11_7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수형자 증가(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8.3	28.3	3.3	3.7	68.7
성별	남자	212	72.6	25.0	2.4	3.8	70.0
	여자	88	58.0	36.4	5.7	3.6	65.3
연령	20대	18	44.4	50.0	5.6	3.4	61.1
	30대	87	62.1	35.6	2.3	3.7	67.2
	40대	116	76.7	19.8	3.4	3.8	70.9
	50대	72	70.8	26.4	2.8	3.8	69.4
	60대 이상	7	42.9	42.9	14.3	3.4	60.7

〈부록 3-301〉 Q11_8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발생(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3.7	23.7	2.7	3.9	71.4
성별	남자	212	75.9	21.7	2.4	3.9	72.1
	여자	88	68.2	28.4	3.4	3.8	69.9
연령	20대	18	61.1	33.3	5.6	3.7	68.1
	30대	87	60.9	35.6	3.4	3.7	68.1
	40대	116	87.1	12.1	0.9	4.0	75.6
	50대	72	73.6	22.2	4.2	3.8	70.1
	60대 이상	7	42.9	57.1	0.0	3.6	64.3

〈부록 3-302〉 Q11_9_A. 1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피해(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1.3	26.3	2.3	3.8	70.7
성별	남자	212	74.5	23.6	1.9	3.9	71.7
	여자	88	63.6	33.0	3.4	3.7	68.2
연령	20대	18	66.7	27.8	5.6	3.9	72.2
	30대	87	59.8	35.6	4.6	3.7	67.2
	40대	116	81.0	18.1	0.9	3.9	73.7
	50대	72	70.8	27.8	1.4	3.8	69.4
	60대 이상	7	71.4	28.6	0.0	3.9	71.4

〈부록 3-303〉 Q11_1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1.3	26.3	2.3	3.9	72.9
성별	남자	212	74.5	22.6	2.8	4.0	73.9
	여자	88	63.6	35.2	1.1	3.8	70.5
연령	20대	18	77.8	22.2	0.0	4.2	80.6
	30대	87	69.0	25.3	5.7	3.8	71.0
	40대	116	69.0	30.2	0.9	3.9	71.8
	50대	72	76.4	23.6	0.0	4.1	76.4
	60대 이상	7	71.4	14.3	14.3	3.4	60.7

〈부록 3-304〉 Q11_2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3.3	26.3	10.3	3.7	66.3
성별	남자	212	64.2	24.5	11.3	3.6	66.2
	여자	88	61.4	30.7	8.0	3.7	66.8
연령	20대	18	72.2	11.1	16.7	3.9	73.6
	30대	87	63.2	25.3	11.5	3.6	65.2
	40대	116	65.5	29.3	5.2	3.7	68.1
	50대	72	61.1	25.0	13.9	3.6	64.6
	60대 이상	7	28.6	42.9	28.6	3.0	50.0

〈부록 3-305〉 Q11_3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7.0	41.3	21.7	3.2	54.4
성별	남자	212	36.3	42.9	20.8	3.2	54.5
	여자	88	38.6	37.5	23.9	3.2	54.3
연령	20대	18	55.6	16.7	27.8	3.6	63.9
	30대	87	32.2	40.2	27.6	3.1	52.0
	40대	116	35.3	47.4	17.2	3.2	54.5
	50대	72	41.7	41.7	16.7	3.2	55.9
	60대 이상	7	28.6	14.3	57.1	2.7	42.9

〈부록 3-306〉 Q11_4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7.0	20.3	2.7	4.0	75.7
성별	남자	212	76.9	20.3	2.8	4.0	75.9
	여자	88	77.3	20.5	2.3	4.0	75.0
연령	20대	18	77.8	22.2	0.0	4.3	81.9
	30대	87	75.9	20.7	3.4	4.1	77.0
	40대	116	76.7	21.6	1.7	4.0	74.4
	50대	72	77.8	18.1	4.2	4.0	74.3
	60대 이상	7	85.7	14.3	0.0	4.1	78.6

〈부록 3-307〉 Q11_5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8.3	48.0	3.7	3.6	64.6
성별	남자	212	45.8	49.1	5.2	3.5	63.3
	여자	88	54.5	45.5	0.0	3.7	67.6
연령	20대	18	72.2	22.2	5.6	4.1	76.4
	30대	87	48.3	48.3	3.4	3.6	64.4
	40대	116	39.7	59.5	0.9	3.5	62.7
	50대	72	55.6	36.1	8.3	3.6	64.6
	60대 이상	7	57.1	42.9	0.0	3.7	67.9

〈부록 3-308〉 Q11_6_B. 30년후 중요시 정도_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1.0	33.3	5.7	3.7	67.9
성별	남자	212	59.0	34.4	6.6	3.7	67.2
	여자	88	65.9	30.7	3.4	3.8	69.6
연령	20대	18	61.1	27.8	11.1	3.9	72.2
	30대	87	64.4	28.7	6.9	3.8	69.8
	40대	116	54.3	40.5	5.2	3.6	64.9
	50대	72	66.7	29.2	4.2	3.8	69.1
	60대 이상	7	71.4	28.6	0.0	3.9	71.4

〈부록 3-309〉 Q11_7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수형자 증가(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8.3	17.7	4.0	4.0	74.5
성별	남자	212	79.7	16.5	3.8	4.0	75.0
	여자	88	75.0	20.5	4.5	3.9	73.3
연령	20대	18	72.2	22.2	5.6	4.0	75.0
	30대	87	80.5	14.9	4.6	4.0	76.1
	40대	116	76.7	19.0	4.3	3.9	73.7
	50대	72	81.9	16.7	1.4	4.0	74.7
	60대 이상	7	57.1	28.6	14.3	3.6	64.3

〈부록 3-310〉 Q11_8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발생(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6.7	19.7	3.7	4.0	74.2
성별	남자	212	78.3	17.0	4.7	4.0	74.9
	여자	88	72.7	26.1	1.1	3.9	72.4
연령	20대	18	72.2	22.2	5.6	3.9	72.2
	30대	87	70.1	26.4	3.4	3.9	73.0
	40대	116	79.3	18.1	2.6	4.0	75.6
	50대	72	83.3	12.5	4.2	4.0	74.7
	60대 이상	7	57.1	28.6	14.3	3.6	64.3

〈부록 3-311〉 Q11_9_B. 30년후 중요시 정도_노인 교통사고 피해(R)

		사례수	높다 (④+⑤)	보통	낮다 (①+②)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3.7	23.3	3.0	3.9	73.3
성별	남자	212	74.5	21.2	4.2	4.0	73.8
	여자	88	71.6	28.4	0.0	3.9	72.2
연령	20대	18	72.2	22.2	5.6	3.9	73.6
	30대	87	65.5	29.9	4.6	3.9	71.3
	40대	116	75.9	22.4	1.7	4.0	73.9
	50대	72	79.2	19.4	1.4	4.0	75.0
	60대 이상	7	85.7	0.0	14.3	3.9	71.4

〈부록 3-312〉 Q13_1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1.7	39.3	9.0	6.1	64.3
성별	남자	212	55.2	36.8	8.0	6.2	65.3
	여자	88	43.2	45.5	11.4	5.9	61.8
연령	20대	18	44.4	50.0	5.6	6.4	67.4
	30대	87	46.0	48.3	5.7	6.1	63.4
	40대	116	51.7	36.2	12.1	6.0	63.0
	50대	72	62.5	29.2	8.3	6.4	67.2
	60대 이상	7	28.6	57.1	14.3	5.6	57.1

〈부록 3-313〉 Q13_2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빈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6.0	23.0	1.0	7.1	75.6
성별	남자	212	77.8	20.8	1.4	7.1	75.9
	여자	88	71.6	28.4	0.0	7.0	74.9
연령	20대	18	83.3	16.7	0.0	7.5	81.3
	30대	87	75.9	21.8	2.3	6.9	74.1
	40대	116	76.7	23.3	0.0	7.1	76.0
	50대	72	75.0	23.6	1.4	7.1	76.0
	60대 이상	7	57.1	42.9	0.0	6.6	69.6

〈부록 3-314〉 Q13_3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1.7	44.7	13.7	5.8	59.9
성별	남자	212	45.3	42.0	12.7	5.9	60.9
	여자	88	33.0	51.1	15.9	5.6	57.5
연령	20대	18	44.4	33.3	22.2	5.7	59.0
	30대	87	36.8	51.7	11.5	5.8	59.9
	40대	116	41.4	44.8	13.8	5.7	58.9
	50대	72	50.0	36.1	13.9	6.0	62.2
	60대 이상	7	14.3	71.4	14.3	5.4	55.4

〈부록 3-315〉 Q13_4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4.3	52.0	3.7	6.2	64.5
성별	남자	212	47.6	49.5	2.8	6.2	65.6
	여자	88	36.4	58.0	5.7	5.9	61.8
연령	20대	18	55.6	33.3	11.1	6.5	68.8
	30대	87	42.5	56.3	1.1	6.2	64.5
	40대	116	44.0	50.9	5.2	6.1	63.6
	50대	72	45.8	51.4	2.8	6.2	65.1
	60대 이상	7	28.6	71.4	0.0	5.9	60.7

〈부록 3-316〉 Q13_5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4.7	52.7	12.7	5.6	57.9
성별	남자	212	35.4	51.9	12.7	5.7	58.5
	여자	88	33.0	54.5	12.5	5.5	56.5
연령	20대	18	50.0	38.9	11.1	6.3	66.0
	30대	87	33.3	50.6	16.1	5.5	56.0
	40대	116	31.0	59.5	9.5	5.7	58.2
	50대	72	37.5	47.2	15.3	5.6	57.5
	60대 이상	7	42.9	57.1	0.0	5.9	60.7

〈부록 3-317〉 Q13_6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5.7	63.7	10.7	5.6	57.4
성별	남자	212	27.4	63.2	9.4	5.7	58.4
	여자	88	21.6	64.8	13.6	5.4	55.1
연령	20대	18	38.9	44.4	16.7	5.6	57.6
	30대	87	21.8	70.1	8.0	5.5	56.8
	40대	116	22.4	64.7	12.9	5.5	55.8
	50대	72	34.7	58.3	6.9	5.9	61.8
	60대 이상	7	0.0	71.4	28.6	4.7	46.4

〈부록 3-318〉 Q13_7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이혼(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6.0	49.3	4.7	6.2	65.0
성별	남자	212	45.8	50.0	4.2	6.2	65.0
	여자	88	46.6	47.7	5.7	6.2	65.1
연령	20대	18	33.3	55.6	11.1	5.8	60.4
	30대	87	43.7	49.4	6.9	6.0	62.9
	40대	116	44.0	51.7	4.3	6.2	64.8
	50대	72	52.8	45.8	1.4	6.5	68.4
	60대 이상	7	71.4	28.6	0.0	6.7	71.4

〈부록 3-319〉 Q13_8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6.7	66.3	7.0	5.5	56.8
성별	남자	212	27.8	66.5	5.7	5.6	57.6
	여자	88	23.9	65.9	10.2	5.4	54.7
연령	20대	18	38.9	50.0	11.1	5.8	60.4
	30대	87	25.3	67.8	6.9	5.5	56.5
	40대	116	21.6	73.3	5.2	5.5	55.8
	50대	72	33.3	59.7	6.9	5.7	58.3
	60대 이상	7	28.6	42.9	28.6	5.0	50.0

〈부록 3-320〉 Q13_9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8.0	38.7	3.3	6.4	68.1
성별	남자	212	59.0	38.2	2.8	6.5	68.8
	여자	88	55.7	39.8	4.5	6.3	66.5
연령	20대	18	66.7	27.8	5.6	6.7	71.5
	30대	87	65.5	31.0	3.4	6.6	69.5
	40대	116	50.9	46.6	2.6	6.3	66.8
	50대	72	58.3	37.5	4.2	6.4	67.5
	60대 이상	7	57.1	42.9	0.0	6.4	67.9

〈부록 3-321〉 Q13_10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건강불평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1.7	54.3	4.0	6.1	63.5
성별	남자	212	42.5	53.8	3.8	6.1	63.9
	여자	88	39.8	55.7	4.5	6.0	62.4
연령	20대	18	50.0	38.9	11.1	6.3	66.7
	30대	87	43.7	51.7	4.6	6.0	62.6
	40대	116	37.9	61.2	0.9	6.2	64.7
	50대	72	43.1	51.4	5.6	6.0	62.3
	60대 이상	7	42.9	42.9	14.3	5.6	57.1

〈부록 3-322〉 Q13_11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7.0	31.3	1.7	6.8	72.3
성별	남자	212	67.9	29.7	2.4	6.8	71.9
	여자	88	64.8	35.2	0.0	6.8	73.0
연령	20대	18	83.3	16.7	0.0	7.3	79.2
	30대	87	62.1	36.8	1.1	6.7	71.0
	40대	116	70.7	28.4	0.9	6.9	73.4
	50대	72	63.9	31.9	4.2	6.6	70.5
	60대 이상	7	57.1	42.9	0.0	6.6	69.6

〈부록 3-323〉 Q13_12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3.3	45.0	11.7	5.9	61.1
성별	남자	212	44.8	44.3	10.8	5.9	61.7
	여자	88	39.8	46.6	13.6	5.8	59.7
연령	20대	18	61.1	11.1	27.8	5.7	59.0
	30대	87	40.2	49.4	10.3	5.9	61.1
	40대	116	41.4	47.4	11.2	5.8	60.2
	50대	72	48.6	41.7	9.7	6.1	63.9
	60대 이상	7	14.3	71.4	14.3	5.1	51.8

〈부록 3-324〉 Q13_13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6.0	51.7	12.3	5.6	58.0
성별	남자	212	39.6	50.0	10.4	5.8	59.7
	여자	88	27.3	55.7	17.0	5.3	53.8
연령	20대	18	22.2	55.6	22.2	5.0	50.0
	30대	87	32.2	59.8	8.0	5.7	58.5
	40대	116	38.8	48.3	12.9	5.7	59.2
	50대	72	41.7	47.2	11.1	5.7	59.2
	60대 이상	7	14.3	42.9	42.9	4.3	41.1

〈부록 3-325〉 Q13_14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박탈감(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4.0	34.7	1.3	6.7	71.8
성별	남자	212	65.6	33.5	0.9	6.8	72.3
	여자	88	60.2	37.5	2.3	6.6	70.6
연령	20대	18	72.2	27.8	0.0	6.9	73.6
	30대	87	58.6	39.1	2.3	6.6	70.1
	40대	116	64.7	35.3	0.0	6.8	72.8
	50대	72	68.1	29.2	2.8	6.8	72.0
	60대 이상	7	57.1	42.9	0.0	6.4	67.9

〈부록 3-326〉 Q13_15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범죄두려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2.3	63.0	4.7	5.9	61.5
성별	남자	212	34.0	61.3	4.7	5.9	61.8
	여자	88	28.4	67.0	4.5	5.9	60.7
연령	20대	18	38.9	61.1	0.0	6.3	66.7
	30대	87	26.4	69.0	4.6	5.7	58.9
	40대	116	34.5	61.2	4.3	6.1	63.1
	50대	72	34.7	59.7	5.6	5.9	60.9
	60대 이상	7	28.6	57.1	14.3	5.6	57.1

〈부록 3-327〉 Q13_16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9.3	52.0	8.7	5.9	60.9
성별	남자	212	41.5	50.0	8.5	5.9	61.7
	여자	88	34.1	56.8	9.1	5.7	58.8
연령	20대	18	27.8	50.0	22.2	5.0	50.0
	30대	87	39.1	55.2	5.7	5.9	61.1
	40대	116	37.9	54.3	7.8	5.9	61.4
	50대	72	44.4	44.4	11.1	5.9	61.8
	60대 이상	7	42.9	57.1	0.0	6.4	67.9

〈부록 3-328〉 Q13_17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9.7	59.7	10.7	5.7	58.2
성별	남자	212	32.1	58.5	9.4	5.8	59.4
	여자	88	23.9	62.5	13.6	5.4	55.3
연령	20대	18	33.3	55.6	11.1	5.7	58.3
	30대	87	29.9	58.6	11.5	5.7	58.3
	40대	116	25.9	63.8	10.3	5.6	57.9
	50대	72	36.1	54.2	9.7	5.7	58.7
	60대 이상	7	14.3	71.4	14.3	5.4	55.4

〈부록 3-329〉 Q13_18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7.3	49.3	13.3	5.7	58.5
성별	남자	212	40.1	48.6	11.3	5.8	59.6
	여자	88	30.7	51.1	18.2	5.5	55.8
연령	20대	18	33.3	50.0	16.7	5.4	55.6
	30대	87	36.8	50.6	12.6	5.7	59.3
	40대	116	31.0	53.4	15.5	5.4	55.6
	50대	72	48.6	43.1	8.3	6.0	63.0
	60대 이상	7	42.9	28.6	28.6	5.4	55.4

〈부록 3-330〉 Q13_19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3	48.3	11.3	5.8	60.1
성별	남자	212	42.0	47.6	10.4	5.9	60.9
	여자	88	36.4	50.0	13.6	5.6	58.1
연령	20대	18	22.2	66.7	11.1	5.5	56.3
	30대	87	35.6	55.2	9.2	5.7	59.1
	40대	116	37.9	48.3	13.8	5.7	58.7
	50대	72	52.8	36.1	11.1	6.1	63.7
	60대 이상	7	57.1	42.9	0.0	6.4	67.9

〈부록 3-331〉 Q13_20_A. 1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7.3	54.0	8.7	5.8	60.2
성별	남자	212	41.0	53.3	5.7	6.0	62.3
	여자	88	28.4	55.7	15.9	5.4	55.1
연령	20대	18	22.2	72.2	5.6	5.6	57.6
	30대	87	40.2	51.7	8.0	5.9	60.8
	40대	116	31.9	58.6	9.5	5.7	58.9
	50대	72	45.8	44.4	9.7	5.9	61.8
	60대 이상	7	42.9	57.1	0.0	6.1	64.3

〈부록 3-332〉 Q13_1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6.0	34.3	9.7	6.4	67.2
성별	남자	212	56.6	34.9	8.5	6.4	67.9
	여자	88	54.5	33.0	12.5	6.2	65.3
연령	20대	18	77.8	16.7	5.6	7.1	75.7
	30대	87	52.9	39.1	8.0	6.3	66.5
	40대	116	51.7	36.2	12.1	6.2	65.3
	50대	72	63.9	27.8	8.3	6.6	69.4
	60대 이상	7	28.6	57.1	14.3	5.9	60.7

〈부록 3-333〉 Q13_2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빈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7.0	22.0	1.0	7.2	77.4
성별	남자	212	76.9	21.7	1.4	7.2	77.7
	여자	88	77.3	22.7	0.0	7.1	76.8
연령	20대	18	83.3	16.7	0.0	7.9	86.1
	30대	87	73.6	24.1	2.3	7.1	76.6
	40대	116	77.6	22.4	0.0	7.2	77.3
	50대	72	80.6	18.1	1.4	7.2	76.9
	60대 이상	7	57.1	42.9	0.0	6.9	73.2

〈부록 3-334〉 Q13_3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5.3	42.3	12.3	6.0	62.6
성별	남자	212	47.2	41.5	11.3	6.1	63.1
	여자	88	40.9	44.3	14.8	5.9	61.4
연령	20대	18	55.6	33.3	11.1	6.4	67.4
	30대	87	40.2	49.4	10.3	6.0	63.1
	40대	116	42.2	43.1	14.7	5.8	60.6
	50대	72	56.9	30.6	12.5	6.2	64.6
	60대 이상	7	14.3	85.7	0.0	5.7	58.9

〈부록 3-335〉 Q13_4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9.0	46.0	5.0	6.3	66.5
성별	남자	212	49.5	46.7	3.8	6.4	67.2
	여자	88	47.7	44.3	8.0	6.2	64.6
연령	20대	18	66.7	22.2	11.1	6.8	72.9
	30대	87	44.8	50.6	4.6	6.3	66.2
	40대	116	44.8	50.0	5.2	6.2	64.5
	50대	72	56.9	38.9	4.2	6.5	68.2
	60대 이상	7	42.9	57.1	0.0	6.3	66.1

〈부록 3-336〉 Q13_5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2.0	44.3	13.7	5.8	60.5
성별	남자	212	42.0	44.8	13.2	5.9	60.8
	여자	88	42.0	43.2	14.8	5.8	59.8
연령	20대	18	61.1	22.2	16.7	6.5	68.8
	30대	87	42.5	43.7	13.8	5.8	59.6
	40대	116	35.3	52.6	12.1	5.8	60.1
	50대	72	45.8	37.5	16.7	5.8	59.5
	60대 이상	7	57.1	42.9	0.0	6.4	67.9

〈부록 3-337〉 Q13_6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0.0	59.3	10.7	5.7	58.9
성별	남자	212	30.7	59.9	9.4	5.8	59.8
	여자	88	28.4	58.0	13.6	5.5	56.7
연령	20대	18	44.4	38.9	16.7	5.8	60.4
	30대	87	25.3	67.8	6.9	5.7	59.2
	40대	116	26.7	61.2	12.1	5.6	57.0
	50대	72	38.9	52.8	8.3	6.0	62.2
	60대 이상	7	14.3	42.9	42.9	4.9	48.2

〈부록 3-338〉 Q13_7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이혼(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9.3	46.0	4.7	6.3	66.8
성별	남자	212	48.1	48.6	3.3	6.4	67.2
	여자	88	52.3	39.8	8.0	6.3	66.1
연령	20대	18	55.6	33.3	11.1	6.4	67.4
	30대	87	49.4	44.8	5.7	6.3	66.2
	40대	116	39.7	56.0	4.3	6.1	64.1
	50대	72	59.7	37.5	2.8	6.7	70.7
	60대 이상	7	85.7	14.3	0.0	7.3	78.6

〈부록 3-339〉 Q13_8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1.0	61.7	7.3	5.7	58.5
성별	남자	212	29.2	65.6	5.2	5.7	59.0
	여자	88	35.2	52.3	12.5	5.6	57.4
연령	20대	18	44.4	44.4	11.1	6.0	62.5
	30대	87	32.2	62.1	5.7	5.8	59.9
	40대	116	24.1	69.8	6.0	5.5	56.5
	50대	72	37.5	54.2	8.3	5.8	59.7
	60대 이상	7	28.6	42.9	28.6	5.1	51.8

〈부록 3-340〉 Q13_9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3.3	33.3	3.3	6.7	71.1
성별	남자	212	64.6	33.0	2.4	6.7	71.6
	여자	88	60.2	34.1	5.7	6.6	69.7
연령	20대	18	72.2	22.2	5.6	7.1	75.7
	30대	87	71.3	26.4	2.3	7.0	74.4
	40대	116	54.3	43.1	2.6	6.4	67.9
	50대	72	66.7	27.8	5.6	6.7	70.8
	60대 이상	7	57.1	42.9	0.0	6.9	73.2

〈부록 3-341〉 Q13_10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건강불평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7.3	47.3	5.3	6.3	65.7
성별	남자	212	48.6	47.2	4.2	6.3	66.3
	여자	88	44.3	47.7	8.0	6.1	64.2
연령	20대	18	72.2	16.7	11.1	6.8	72.2
	30대	87	50.6	44.8	4.6	6.4	67.1
	40대	116	38.8	57.8	3.4	6.2	64.8
	50대	72	50.0	43.1	6.9	6.1	63.9
	60대 이상	7	57.1	28.6	14.3	6.1	64.3

〈부록 3-342〉 Q13_11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학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71.0	26.3	2.7	7.0	74.5
성별	남자	212	70.8	26.4	2.8	6.9	73.7
	여자	88	71.6	26.1	2.3	7.1	76.3
연령	20대	18	83.3	16.7	0.0	7.6	82.6
	30대	87	65.5	31.0	3.4	6.8	72.8
	40대	116	71.6	27.6	0.9	6.9	74.4
	50대	72	75.0	19.4	5.6	7.0	75.0
	60대 이상	7	57.1	42.9	0.0	6.6	69.6

〈부록 3-343〉 Q13_12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7.3	40.0	12.7	6.0	63.0
성별	남자	212	48.6	40.6	10.8	6.1	63.5
	여자	88	44.3	38.6	17.0	5.9	61.8
연령	20대	18	50.0	27.8	22.2	6.0	62.5
	30대	87	46.0	42.5	11.5	6.0	62.9
	40대	116	42.2	43.1	14.7	5.9	60.7
	50대	72	58.3	33.3	8.3	6.4	67.7
	60대 이상	7	28.6	57.1	14.3	5.4	55.4

〈부록 3-344〉 Q13_13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8.7	45.0	16.3	5.7	58.7
성별	남자	212	40.1	46.7	13.2	5.8	60.3
	여자	88	35.2	40.9	23.9	5.4	54.8
연령	20대	18	27.8	44.4	27.8	5.0	50.0
	30대	87	36.8	51.7	11.5	5.8	59.9
	40대	116	38.8	44.0	17.2	5.6	57.8
	50대	72	45.8	38.9	15.3	6.0	62.3
	60대 이상	7	14.3	42.9	42.9	4.4	42.9

〈부록 3-345〉 Q13_14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박탈감(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6.7	31.7	1.7	6.9	73.5
성별	남자	212	67.5	31.6	0.9	6.9	73.5
	여자	88	64.8	31.8	3.4	6.9	73.3
연령	20대	18	66.7	27.8	5.6	7.1	75.7
	30대	87	64.4	33.3	2.3	6.7	71.8
	40대	116	62.1	37.9	0.0	6.9	73.4
	50대	72	77.8	19.4	2.8	7.0	75.2
	60대 이상	7	57.1	42.9	0.0	6.7	71.4

〈부록 3-346〉 Q13_15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범죄두려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8.7	56.7	4.7	6.0	63.0
성별	남자	212	39.6	56.6	3.8	6.1	63.4
	여자	88	36.4	56.8	6.8	5.9	61.8
연령	20대	18	55.6	44.4	0.0	6.5	68.8
	30대	87	34.5	59.8	5.7	5.8	60.5
	40대	116	34.5	62.1	3.4	6.0	62.9
	50대	72	47.2	47.2	5.6	6.2	64.9
	60대 이상	7	28.6	57.1	14.3	5.7	58.9

〈부록 3-347〉 Q13_16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4.3	45.0	10.7	6.0	62.6
성별	남자	212	47.2	42.9	9.9	6.1	63.7
	여자	88	37.5	50.0	12.5	5.8	59.8
연령	20대	18	44.4	33.3	22.2	5.3	53.5
	30대	87	40.2	50.6	9.2	6.0	62.2
	40대	116	39.7	49.1	11.2	5.9	61.3
	50대	72	56.9	33.3	9.7	6.3	66.7
	60대 이상	7	42.9	57.1	0.0	6.6	69.6

〈부록 3-348〉 Q13_17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5.3	53.7	11.0	5.8	59.5
성별	남자	212	37.3	53.3	9.4	5.9	61.0
	여자	88	30.7	54.5	14.8	5.5	56.1
연령	20대	18	44.4	44.4	11.1	6.1	63.9
	30대	87	40.2	47.1	12.6	5.8	60.2
	40대	116	28.4	61.2	10.3	5.6	57.4
	50대	72	40.3	48.6	11.1	5.9	60.8
	60대 이상	7	14.3	85.7	0.0	6.0	62.5

〈부록 3-349〉 Q13_18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7	44.0	15.3	5.8	59.8
성별	남자	212	41.5	45.3	13.2	5.8	60.6
	여자	88	38.6	40.9	20.5	5.6	57.7
연령	20대	18	44.4	38.9	16.7	5.8	59.7
	30대	87	39.1	46.0	14.9	5.8	59.8
	40대	116	32.8	49.1	18.1	5.5	56.5
	50대	72	54.2	36.1	9.7	6.2	65.3
	60대 이상	7	42.9	28.6	28.6	5.6	57.1

〈부록 3-350〉 Q13_19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6.3	39.7	14.0	5.9	61.5
성별	남자	212	46.7	41.0	12.3	6.0	62.3
	여자	88	45.5	36.4	18.2	5.8	59.8
연령	20대	18	33.3	50.0	16.7	5.8	59.7
	30대	87	43.7	42.5	13.8	5.8	60.5
	40대	116	42.2	40.5	17.2	5.7	58.7
	50대	72	58.3	31.9	9.7	6.3	66.8
	60대 이상	7	57.1	42.9	0.0	6.7	71.4

〈부록 3-351〉 Q13_20_B. 30년후 노인 범죄 증가에 영향_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4.3	43.7	12.0	5.9	61.8
성별	남자	212	47.6	43.9	8.5	6.1	64.0
	여자	88	36.4	43.2	20.5	5.5	56.5
연령	20대	18	38.9	50.0	11.1	6.1	63.9
	30대	87	44.8	42.5	12.6	5.9	61.5
	40대	116	36.2	50.9	12.9	5.7	59.3
	50대	72	56.9	31.9	11.1	6.2	65.1
	60대 이상	7	57.1	42.9	0.0	6.6	69.6

〈부록 3-352〉 Q14_1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8.7	37.3	4.0	6.5	68.7
성별	남자	212	61.8	34.4	3.8	6.6	69.8
	여자	88	51.1	44.3	4.5	6.3	66.1
연령	20대	18	55.6	33.3	11.1	6.3	66.0
	30대	87	57.5	40.2	2.3	6.5	68.5
	40대	116	56.0	39.7	4.3	6.5	68.4
	50대	72	66.7	29.2	4.2	6.6	70.5
	60대 이상	7	42.9	57.1	0.0	6.0	62.5

〈부록 3-353〉 Q14_2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빈곤(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1.0	33.7	15.3	6.0	62.8
성별	남자	212	56.1	30.7	13.2	6.2	65.2
	여자	88	38.6	40.9	20.5	5.6	57.2
연령	20대	18	44.4	27.8	27.8	5.6	56.9
	30대	87	49.4	36.8	13.8	6.1	63.8
	40대	116	53.4	33.6	12.9	6.1	63.8
	50대	72	54.2	27.8	18.1	6.0	62.8
	60대 이상	7	14.3	71.4	14.3	5.0	50.0

〈부록 3-354〉 Q14_3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4.0	40.3	5.7	6.3	66.8
성별	남자	212	56.6	38.2	5.2	6.4	67.6
	여자	88	47.7	45.5	6.8	6.2	65.1
연령	20대	18	50.0	38.9	11.1	6.1	63.9
	30대	87	51.7	44.8	3.4	6.4	67.7
	40대	116	54.3	37.9	7.8	6.3	66.4
	50대	72	61.1	36.1	2.8	6.5	68.8
	60대 이상	7	14.3	71.4	14.3	5.1	51.8

〈부록 3-355〉 Q14_4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자살(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1.0	53.3	15.7	5.5	56.4
성별	남자	212	32.5	53.8	13.7	5.7	58.1
	여자	88	27.3	52.3	20.5	5.2	52.1
연령	20대	18	33.3	44.4	22.2	5.4	55.6
	30대	87	27.6	56.3	16.1	5.6	56.9
	40대	116	28.4	56.9	14.7	5.4	55.6
	50대	72	40.3	44.4	15.3	5.6	57.8
	60대 이상	7	14.3	71.4	14.3	5.0	50.0

〈부록 3-356〉 Q14_5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7.0	50.3	12.7	5.7	59.0
성별	남자	212	37.3	51.4	11.3	5.8	59.5
	여자	88	36.4	47.7	15.9	5.6	58.0
연령	20대	18	50.0	33.3	16.7	5.9	61.8
	30대	87	40.2	46.0	13.8	5.7	59.1
	40대	116	31.0	59.5	9.5	5.8	59.6
	50대	72	40.3	44.4	15.3	5.7	58.3
	60대 이상	7	28.6	57.1	14.3	5.0	50.0

〈부록 3-357〉 Q14_7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이혼(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0.7	53.0	16.3	5.5	56.4
성별	남자	212	33.5	53.8	12.7	5.7	58.8
	여자	88	23.9	51.1	25.0	5.0	50.6
연령	20대	18	22.2	66.7	11.1	5.4	54.9
	30대	87	26.4	50.6	23.0	5.3	53.2
	40대	116	31.9	56.0	12.1	5.6	58.1
	50대	72	37.5	45.8	16.7	5.7	58.3
	60대 이상	7	14.3	71.4	14.3	5.3	53.6

〈부록 3-358〉 Q14_8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5.3	61.3	13.3	5.4	55.1
성별	남자	212	27.8	60.4	11.8	5.5	56.3
	여자	88	19.3	63.6	17.0	5.2	52.3
연령	20대	18	38.9	50.0	11.1	5.6	57.6
	30대	87	20.7	62.1	17.2	5.3	53.3
	40대	116	25.0	63.8	11.2	5.5	56.6
	50대	72	29.2	61.1	9.7	5.5	55.9
	60대 이상	7	14.3	42.9	42.9	4.1	39.3

〈부록 3-359〉 Q14_9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4.0	48.0	18.0	5.5	55.9
성별	남자	212	35.8	49.5	14.6	5.6	57.8
	여자	88	29.5	44.3	26.1	5.1	51.3
연령	20대	18	38.9	44.4	16.7	5.7	58.3
	30대	87	37.9	42.5	19.5	5.4	55.2
	40대	116	30.2	56.9	12.9	5.6	57.4
	50대	72	34.7	41.7	23.6	5.3	54.3
	60대 이상	7	28.6	42.9	28.6	4.9	48.2

〈부록 3-360〉 Q14_10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건강불평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0.7	51.7	17.7	5.4	54.9
성별	남자	212	33.5	53.8	12.7	5.6	57.5
	여자	88	23.9	46.6	29.5	4.9	48.7
연령	20대	18	33.3	22.2	44.4	4.8	47.2
	30대	87	32.2	51.7	16.1	5.4	54.7
	40대	116	29.3	58.6	12.1	5.6	57.9
	50대	72	30.6	48.6	20.8	5.2	52.6
	60대 이상	7	28.6	42.9	28.6	5.1	51.8

〈부록 3-361〉 Q14_11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7	41.0	18.3	5.7	58.3
성별	남자	212	42.9	42.9	14.2	5.9	61.0
	여자	88	35.2	36.4	28.4	5.1	51.8
연령	20대	18	27.8	38.9	33.3	4.8	47.2
	30대	87	35.6	49.4	14.9	5.6	58.0
	40대	116	45.7	39.7	14.7	5.9	61.6
	50대	72	43.1	33.3	23.6	5.6	56.9
	60대 이상	7	28.6	42.9	28.6	5.0	50.0

〈부록 3-362〉 Q14_12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0.3	43.0	6.7	6.2	65.5
성별	남자	212	54.2	40.1	5.7	6.3	66.6
	여자	88	40.9	50.0	9.1	6.0	62.8
연령	20대	18	44.4	38.9	16.7	5.6	57.6
	30대	87	49.4	50.6	0.0	6.4	67.8
	40대	116	50.0	44.0	6.0	6.3	66.4
	50대	72	55.6	33.3	11.1	6.2	64.6
	60대 이상	7	28.6	42.9	28.6	5.1	51.8

〈부록 3-363〉 Q14_13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6.7	45.7	7.7	6.1	63.9
성별	남자	212	50.5	42.5	7.1	6.2	65.0
	여자	88	37.5	53.4	9.1	5.9	61.2
연령	20대	18	27.8	55.6	16.7	5.3	53.5
	30대	87	46.0	52.9	1.1	6.3	66.5
	40대	116	48.3	44.8	6.9	6.2	65.4
	50대	72	52.8	34.7	12.5	6.0	62.8
	60대 이상	7	14.3	57.1	28.6	4.6	44.6

〈부록 3-364〉 Q14_14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박탈감(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2.7	40.3	17.0	5.7	59.0
성별	남자	212	46.7	39.6	13.7	5.9	61.3
	여자	88	33.0	42.0	25.0	5.3	53.7
연령	20대	18	33.3	33.3	33.3	5.3	54.2
	30대	87	44.8	35.6	19.5	5.6	57.5
	40대	116	45.7	39.7	14.7	5.9	61.3
	50대	72	38.9	47.2	13.9	5.7	58.9
	60대 이상	7	28.6	57.1	14.3	5.4	55.4

〈부록 3-366〉 Q14_15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범죄두려움(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5.3	54.3	10.3	5.8	59.8
성별	남자	212	34.0	56.6	9.4	5.8	59.6
	여자	88	38.6	48.9	12.5	5.8	60.2
연령	20대	18	55.6	33.3	11.1	6.2	65.3
	30대	87	31.0	59.8	9.2	5.8	59.6
	40대	116	35.3	56.9	7.8	5.8	60.3
	50대	72	36.1	50.0	13.9	5.7	58.2
	60대 이상	7	28.6	42.9	28.6	5.4	55.4

〈부록 3-366〉 Q14_16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8.7	47.3	4.0	6.3	66.4
성별	남자	212	53.8	42.5	3.8	6.4	67.8
	여자	88	36.4	59.1	4.5	6.0	62.9
연령	20대	18	38.9	55.6	5.6	5.8	60.4
	30대	87	49.4	49.4	1.1	6.4	67.7
	40대	116	49.1	47.4	3.4	6.3	66.8
	50대	72	52.8	41.7	5.6	6.4	67.2
	60대 이상	7	14.3	57.1	28.6	5.0	50.0

〈부록 3-367〉 Q14_17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8.0	55.3	6.7	5.9	61.3
성별	남자	212	41.0	53.8	5.2	6.0	63.0
	여자	88	30.7	59.1	10.2	5.6	57.0
연령	20대	18	33.3	61.1	5.6	6.1	63.2
	30대	87	37.9	57.5	4.6	6.0	62.1
	40대	116	39.7	53.4	6.9	5.9	61.4
	50대	72	40.3	51.4	8.3	5.9	60.8
	60대 이상	7	0.0	85.7	14.3	4.9	48.2

〈부록 3-368〉 Q14_18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0.7	44.7	4.7	6.4	66.9
성별	남자	212	54.2	42.0	3.8	6.5	68.2
	여자	88	42.0	51.1	6.8	6.1	63.8
연령	20대	18	44.4	50.0	5.6	6.1	63.2
	30대	87	48.3	49.4	2.3	6.4	67.4
	40대	116	44.8	48.3	6.9	6.2	65.1
	50대	72	66.7	31.9	1.4	6.7	71.4
	60대 이상	7	28.6	42.9	28.6	5.3	53.6

〈부록 3-369〉 Q14_19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3.7	43.0	3.3	6.4	68.0
성별	남자	212	59.0	38.2	2.8	6.6	69.7
	여자	88	40.9	54.5	4.5	6.1	63.8
연령	20대	18	50.0	44.4	5.6	6.1	63.9
	30대	87	44.8	54.0	1.1	6.3	66.8
	40대	116	54.3	42.2	3.4	6.5	68.2
	50대	72	65.3	30.6	4.2	6.7	70.8
	60대 이상	7	42.9	42.9	14.3	5.7	58.9

〈부록 3-370〉 Q14_20_A. 1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2.3	44.3	3.3	6.4	68.1
성별	남자	212	55.7	41.5	2.8	6.6	69.5
	여자	88	44.3	51.1	4.5	6.2	64.8
연령	20대	18	55.6	38.9	5.6	6.4	67.4
	30대	87	49.4	48.3	2.3	6.4	67.5
	40대	116	48.3	47.4	4.3	6.4	67.3
	50대	72	59.7	37.5	2.8	6.6	69.8
	60대 이상	7	71.4	28.6	0.0	6.7	71.4

〈부록 3-371〉 Q14_1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경제활동(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9.3	36.0	4.7	6.6	70.2
성별	남자	212	61.8	35.4	2.8	6.7	71.5
	여자	88	53.4	37.5	9.1	6.4	67.0
연령	20대	18	61.1	22.2	16.7	6.4	67.4
	30대	87	55.2	41.4	3.4	6.6	70.1
	40대	116	56.0	40.5	3.4	6.5	68.9
	50대	72	69.4	25.0	5.6	6.8	72.9
	60대 이상	7	57.1	42.9	0.0	6.7	71.4

〈부록 3-372〉 Q14_2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빈곤(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2.7	30.3	17.0	6.1	63.5
성별	남자	212	57.1	29.2	13.7	6.3	66.2
	여자	88	42.0	33.0	25.0	5.6	57.1
연령	20대	18	38.9	22.2	38.9	5.3	54.2
	30대	57	52.9	33.3	13.8	6.2	65.4
	40대	116	50.9	33.6	15.5	6.1	63.6
	50대	72	61.1	20.8	18.1	6.1	64.2
	60대 이상	7	28.6	57.1	14.3	5.4	55.4

〈부록 3-373〉 Q14_3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복지지출(R)

		사례수	큰영향 (7+8+9)	변화없음 (4+5+6)	영향없음 (1+2+3)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8.0	35.3	6.7	6.5	68.5
성별	남자	212	59.0	34.9	6.1	6.5	69.0
	여자	88	55.7	36.4	8.0	6.4	67.2
연령	20대	18	50.0	33.3	16.7	6.4	67.4
	30대	87	58.6	37.9	3.4	6.5	69.1
	40대	116	54.3	37.9	7.8	6.3	66.8
	50대	72	66.7	27.8	5.6	6.7	71.4
	60대 이상	7	42.9	42.9	14.3	5.9	60.7

〈부록 3-374〉 Q14_4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자살(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3.7	49.3	17.0	5.6	57.2
성별	남자	212	35.8	49.5	14.6	5.7	59.2
	여자	88	28.4	48.9	22.7	5.2	52.3
연령	20대	18	38.9	27.8	33.3	5.6	56.9
	30대	87	32.2	52.9	14.9	5.6	57.9
	40대	116	27.6	57.8	14.7	5.4	55.5
	50대	72	44.4	36.1	19.4	5.7	59.2
	60대 이상	7	28.6	57.1	14.3	5.4	55.4

〈부록 3-375〉 Q14_5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자녀의 노인부양(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0.0	46.7	13.3	5.9	60.8
성별	남자	212	41.0	46.7	12.3	5.9	60.9
	여자	88	37.5	46.6	15.9	5.8	60.4
연령	20대	18	55.6	22.2	22.2	6.1	63.9
	30대	87	43.7	44.8	11.5	6.0	61.9
	40대	116	30.2	59.5	10.3	5.8	59.5
	50대	72	47.2	34.7	18.1	5.9	61.1
	60대 이상	7	42.9	42.9	14.3	5.4	55.4

〈부록 3-376〉 Q14_6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력수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6.3	56.0	7.7	5.9	60.9
성별	남자	212	38.2	55.2	6.6	6.0	62.4
	여자	88	31.8	58.0	10.2	5.6	57.4
연령	20대	18	44.4	33.3	22.2	5.5	56.3
	30대	87	34.5	59.8	5.7	5.9	60.9
	40대	116	31.9	61.2	6.9	5.8	59.6
	50대	72	44.4	48.6	6.9	6.2	64.8
	60대 이상	7	28.6	57.1	14.3	5.4	55.4

〈부록 3-377〉 Q14_7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이혼(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3.3	49.7	17.0	5.6	56.9
성별	남자	212	35.4	51.9	12.7	5.8	59.4
	여자	88	28.4	44.3	27.3	5.1	50.7
연령	20대	18	27.8	55.6	16.7	5.3	54.2
	30대	87	31.0	49.4	19.5	5.3	54.2
	40대	116	26.7	60.3	12.9	5.5	56.8
	50대	72	48.6	30.6	20.8	5.9	60.8
	60대 이상	7	28.6	57.1	14.3	5.7	58.9

〈부록 3-378〉 Q14_8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전용교도소(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29.7	57.0	13.3	5.5	56.8
성별	남자	212	32.1	56.1	11.8	5.6	58.0
	여자	88	23.9	59.1	17.0	5.3	54.0
연령	20대	18	38.9	44.4	16.7	5.8	59.7
	30대	87	26.4	58.6	14.9	5.4	55.0
	40대	116	28.4	61.2	10.3	5.6	57.4
	50대	72	33.3	54.2	12.5	5.7	58.3
	60대 이상	7	28.6	28.6	42.9	4.6	44.6

〈부록 3-379〉 Q14_9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단독가구(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6.3	43.7	20.0	5.6	57.1
성별	남자	212	38.7	44.8	16.5	5.7	59.2
	여자	88	30.7	40.9	28.4	5.2	52.0
연령	20대	18	33.3	44.4	22.2	5.4	54.9
	30대	87	41.4	37.9	20.7	5.5	56.8
	40대	116	29.3	56.0	14.7	5.6	57.8
	50대	72	43.1	30.6	26.4	5.6	57.5
	60대 이상	7	28.6	42.9	28.6	5.1	51.8

〈부록 3-380〉 Q14_10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건강불평등(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33.3	49.0	17.7	5.5	56.0
성별	남자	212	36.8	49.1	14.2	5.7	58.3
	여자	88	25.0	48.9	26.1	5.1	50.7
연령	20대	18	33.3	16.7	50.0	4.5	43.8
	30대	87	33.3	50.6	16.1	5.5	56.5
	40대	116	31.0	57.8	11.2	5.7	58.3
	50대	72	36.1	43.1	20.8	5.4	54.9
	60대 이상	7	42.9	28.6	28.6	5.6	57.1

〈부록 3-381〉 Q14_11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학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4.7	36.3	19.0	5.7	59.3
성별	남자	212	46.7	38.2	15.1	5.9	61.9
	여자	88	39.8	31.8	28.4	5.3	53.1
연령	20대	18	38.9	22.2	38.9	4.6	45.1
	30대	87	42.5	42.5	14.9	5.8	59.6
	40대	116	44.8	40.5	14.7	5.9	61.0
	50대	72	50.0	25.0	25.0	5.8	60.2
	60대 이상	7	28.6	42.9	28.6	5.3	53.6

〈부록 3-382〉 Q14_12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사회공공지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6.0	36.3	7.7	6.4	67.8
성별	남자	212	58.5	34.9	6.6	6.5	68.3
	여자	88	50.0	39.8	10.2	6.3	66.6
연령	20대	18	50.0	27.8	22.2	5.8	59.7
	30대	87	55.2	43.7	1.1	6.7	71.6
	40대	116	54.3	37.9	7.8	6.4	67.0
	50대	72	63.9	26.4	9.7	6.4	68.1
	60대 이상	7	28.6	42.9	28.6	5.3	53.6

〈부록 3-383〉 Q14_13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주거환경개선(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5.0	36.7	8.3	6.3	66.4
성별	남자	212	55.7	37.3	7.1	6.4	67.3
	여자	88	53.4	35.2	11.4	6.1	64.3
연령	20대	18	44.4	27.8	27.8	5.5	56.3
	30대	87	57.5	40.2	2.3	6.6	69.7
	40대	116	54.3	38.8	6.9	6.3	66.4
	50대	72	59.7	29.2	11.1	6.3	66.8
	60대 이상	7	14.3	57.1	28.6	4.9	48.2

〈부록 3-384〉 Q14_14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박탈감(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7.0	35.7	17.3	5.8	60.4
성별	남자	212	50.9	34.0	15.1	6.0	62.7
	여자	88	37.5	39.8	22.7	5.4	54.8
연령	20대	18	44.4	16.7	38.9	5.3	54.2
	30대	87	43.7	36.8	19.5	5.6	57.6
	40대	116	47.4	37.9	14.7	6.0	62.2
	50대	72	52.8	33.3	13.9	6.0	62.8
	60대 이상	7	28.6	57.1	14.3	5.6	57.1

〈부록 3-385〉 Q14_15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범죄두려움(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1.0	48.3	10.7	5.9	61.3
성별	남자	212	39.2	52.4	8.5	5.9	61.1
	여자	88	45.5	38.6	15.9	5.9	61.6
연령	20대	18	61.1	16.7	22.2	6.4	67.4
	30대	87	39.1	51.7	9.2	5.9	61.5
	40대	116	37.1	54.3	8.6	5.9	60.8
	50대	72	45.8	43.1	11.1	5.9	60.8
	60대 이상	7	28.6	42.9	28.6	5.6	57.1

〈부록 3-386〉 Q14_16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 보호 법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4.0	41.3	4.7	6.5	68.3
성별	남자	212	57.1	39.2	3.8	6.5	69.3
	여자	88	46.6	46.6	6.8	6.3	65.9
연령	20대	18	55.6	33.3	11.1	6.4	67.4
	30대	87	52.9	44.8	2.3	6.5	68.7
	40대	116	50.9	44.8	4.3	6.4	67.7
	50대	72	63.9	31.9	4.2	6.7	70.7
	60대 이상	7	14.3	57.1	28.6	5.1	51.8

〈부록 3-387〉 Q14_17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건강수준향상(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43.7	48.3	8.0	6.1	63.2
성별	남자	212	45.3	49.5	5.2	6.2	64.9
	여자	88	39.8	45.5	14.8	5.7	58.9
연령	20대	18	61.1	27.8	11.1	6.3	66.0
	30대	87	43.7	49.4	6.9	6.1	63.9
	40대	116	40.5	51.7	7.8	6.0	62.2
	50대	72	47.2	44.4	8.3	6.1	63.9
	60대 이상	7	14.3	71.4	14.3	5.4	55.4

〈부록 3-388〉 Q14_18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58.3	36.7	5.0	6.6	69.5
성별	남자	212	59.9	36.3	3.8	6.6	70.5
	여자	88	54.5	37.5	8.0	6.4	67.0
연령	20대	18	44.4	44.4	11.1	6.0	62.5
	30대	87	55.2	42.5	2.3	6.6	70.0
	40대	116	50.9	42.2	6.9	6.4	67.1
	50대	72	79.2	19.4	1.4	7.0	75.3
	60대 이상	7	42.9	28.6	28.6	5.7	58.9

〈부록 3-389〉 Q14_19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2.0	34.0	4.0	6.7	70.7
성별	남자	212	62.7	34.0	3.3	6.7	71.4
	여자	88	60.2	34.1	5.7	6.5	69.0
연령	20대	18	55.6	27.8	16.7	6.2	65.3
	30대	87	57.5	40.2	2.3	6.6	70.4
	40대	116	57.8	38.8	3.4	6.6	70.0
	50대	72	76.4	20.8	2.8	6.9	74.0
	60대 이상	7	57.1	28.6	14.3	6.3	66.1

〈부록 3-390〉 Q14_20_B. 30년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_노인을위한 법률서비스(R)

		사례수	큰영향 (⑦+⑧+⑨)	변화없음 (④+⑤+⑥)	영향없음 (①+②+③)	9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00	60.0	35.3	4.7	6.6	70.5
성별	남자	212	60.8	35.8	3.3	6.7	71.3
	여자	88	58.0	34.1	8.0	6.5	68.8
연령	20대	18	55.6	33.3	11.1	6.5	68.8
	30대	87	58.6	36.8	4.6	6.7	71.0
	40대	116	54.3	40.5	5.2	6.5	68.3
	50대	72	70.8	26.4	2.8	6.9	74.0
	60대 이상	7	71.4	28.6	0.0	6.7	71.4

〈부록 3-391〉 Q15. 고령사회 대비 위해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

		사례수	노인복지 향상	노인범죄 예방대책	노인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노인전문 법률상담 제도	노인전담 수사관 제도	노인 수형자 관리대책
전 체		300	48.3	32.0	12.3	5.0	1.3	1.0
성별	남자	212	45.8	35.4	11.3	6.1	0.5	0.9
	여자	88	54.5	23.9	14.8	2.3	3.4	1.1
연령	20대	18	50.0	16.7	22.2	5.6	5.6	0.0
	30대	87	51.7	25.3	12.6	6.9	3.4	0.0
	40대	116	46.6	36.2	12.1	3.4	0.0	1.7
	50대	72	45.8	37.5	9.7	5.6	0.0	1.4
	60대 이상	7	57.1	28.6	14.3	0.0	0.0	0.0

연구총서 15-B-01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김진환
등	록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02)575-5282
홈	페이지		www.kic.re.kr
정	가		10,000원
인	쇄		(주)계문사 (02)725-5216
I	S	B	N 978-89-7366-628-7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